

2012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 업 시 행 지 침

전 라 남 도
(친환경농업과)

목 차

I . 2012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9
II . 친환경농업 분야	11
1. 201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13
2. 2012년도 추진계획	15
3. 평가 및 시상	16
4. 기관별 업무분장	16
5.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7
①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17
②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26
③ 친환경 생태연못(뚝방) 조성사업	30
④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35
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53
⑥ 친환경농업기반구축(광역단지조성) 사업	58
⑦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	81
⑧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04
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130
⑩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45
⑪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165
⑫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84
⑬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사업	199

[14]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212
[15]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217
[16]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221
[17]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체험·생산 시설지원	228
6. 2012년도 사업별 달라진 제도	232

Ⅲ. 식량작물 분야 239

1. 2011년도 주요사업 성과	241
2. 2012년도 추진계획	242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43
[1]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43
[2]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280
[3]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295
[4] 조건 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308
[5] 발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322
[6] 농기계 임대사업(국비 사업)	332
[7] 농기계 임대사업(자체 사업)	342
[8]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354
[9]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365
[1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82
[11]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385
4. 2012년도 사업별 달라진 제도	388

IV. 원예·특작 분야	389
1. 201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391
2. 2012년도 추진계획	392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393
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393
②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401
③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412
④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	421
⑤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430
⑥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440
⑦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490
⑧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540
⑨ 과원 유해조수 포획 트랩설치 지원 사업	551
⑩ 소득유망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사업	560
⑪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565
⑫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572
⑬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580
4. 2012년도 사업별 달라진 제도	587
V. 시군별 사업내역	593

I. 2012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I. 2012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중점방향 및 목표

-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
- 저비용 유기농 실천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소득 보전
- 친환경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

시책 추진 방향

- 1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
 -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30%까지 확대
 - 유기농 위주의 친환경단지 조성, 조직화·규모화
- 2 저비용 유기농 실천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 친환경농자재 원활 공급 및 무제초제 농법 확대
 - 비용절감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중심 농업교육 추진
- 3 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소득 보전
 -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적극 추진
 -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공동활용 농기계 등 영농지원
- 4 친환경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
 -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규모화 및 안정생산
 - 고품질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산업화 기반 조성

Ⅱ. 친환경농업 분야

Ⅱ. 친환경농업 분야

1. 201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 『생명식품생산 제2차5개년계획』 1차년도사업 목표 달성
 - 무농약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 : ('10) 62천ha → ('11) 68천ha
- ◇ 규모 조직화, 단지화를 통한 공동영농실천 성과 거양
 - 유기농생태마을 육성 : ('10) 5개소 → ('11) 5개소(5개소 증)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 ('10) 6개소 → ('11) 7개소(1개소 증)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1) 현장체험 등을 통한 교육·홍보 내실화

-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 및 농업인 의식 교육 : 100천명, 5억 원
- 체험행사를 통한 고정고객 농산물 판매 : 6억 원
-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 : 2회 38백만 원

2)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살리기 운동 대대적 전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44천ha, 88억 원
- 토양개량제(석회·규산질 비료) 공급 : 182천톤, 244억 원
-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 513천톤, 257억 원
- 친환경 생태연못(덤병) 조성 : 100개소, 3억 원

3)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13개소, 174억 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74,859ha, 420억 원
-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 5개마을, 10억 원

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38,214ha, 151억 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18천건, 54억 원
- 유기농실천·소비자안심보험 지원 : 2천건, 10억 원

나. 추진성과

-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전국의 60% 차지로 『친환경농업 1번지 녹색의 땅』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0%를 상회함에 따라 수도권 고품질 쌀 학교급식 절반이상 공급, 농식품 가공산업 투자 활성화 기여
-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 및 수질개선으로 농경지의 생물다양성 회복
 - 환경부하 최소화로 농업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긴꼬리 투구새우”발견(강진, 무안 등 10개 시군)
- 친환경농자재 산업중점 육성으로 자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수 : 155개소
- 친환경농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 사용량 감축
 - 유기질 비료, 녹비작물재배, 천적활용 생물학적 방제 등 추진
 - 도 자체 친환경농업단지·유기농생태마을 조성 및 친환경농자재 공급
-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기반구축 및 실천농가 소득보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개소당 100억원) : 완료 2개소, 조성 중 5개소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77개소 318억원 투자
 -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인증비용 지원
- 당초 소규모 농가중심에서 품목별, 지역별 조직화·규모화 기반 구축
 - 도내 친환경농업단지 : 2,619개소 74,859ha

라. 문제점 및 보완대책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이확충으로 무농약 이상 고품질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가공·수출 시스템 미비
 -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 산지 가공·유통시설 기반 확충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 상시운영 필요
 -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과정을 보장하는 유기농 종합보험제 지속 시행
 -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 추적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

2. 2012년도 추진계획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

-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 : 92천ha(경지면적 대비 30% 이상)
 - 유기농 28천ha(9%), 무농약 64천ha(21%)
- ◇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15%이상 감축('09년 사용량 기준)
 - 화학비료 35kg, 농약 1.2kg 감축(ha당 성분량 기준)

가. 추진방향

- 「제2차 5개년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목표: 경지면적대비 30%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구축을 위한 흙살리기 및 생태환경 복원 사업시행
-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및 살기좋은 농촌 모델 조성
 - 자원 순환형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집단화·규모화 단지 조성
 - 유기농 조기정착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원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지원
 - 유기농 종합보험, 부정인증·유통신고센터, 민간중심 자율 명예감시원 운영
-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촉 활동 강화
 - 대량 소비처의 농산물 판촉행사 및 다양한 농산물 유통채널 확보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 기반구축 및 홍보

-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 3,000건, 15억 원
- 토양개량제 보조 : 145천 톤, 195억 원
- 유기질비료 지원 : 527천 톤, 263억 원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51천ha, 110억 원

□ 재배 및 생산

-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 150개소, 3억 원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 8개소, 16억 원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40천ha, 420억 원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 5개소, 10억 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 15천건, 54억 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42천ha, 160억 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5개소, 140억 원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 1,096건, 1억 원
-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 267ha, 19억 원
-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 60천ha, 72억 원
- 유기농 확산을 위한 체험·생산시설 지원 : 10개소, 10억 원

3. 평가 및 시상

-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 － 중 양 : 7개 부문(기초지자체, 친환경농업우수지구, 생산자, 소비유통, 유기가공식품, 학교급식, 우수관계자)
 - － 도 : 13점(자치단체 4점, 민간분야 9점)
 - 자치단체 : 대상 1점, 최우수 1점, 우수 2점
 - 상사업비 800백만 원(대상 300, 최우수 200, 우수 각 150)
 - 시 상 금 21백만 원(대상 10, 최우수 5, 우수 각 3)
 - 민간분야 : 재배·생산 가공·유통 친환경축산 분야 각 3점(최우수 1, 우수 2)

4. 기관별 업무분장

기 관 별		분 장 업 무
행 정	도	· 계획수립·평가, 행·재정적 지원, 계획의 집행상황 점검
	시·군	· 계획의 집행 및 실천, 공무원 교육 및 홍보·계도
지 도	도	· 농법 및 농자재 개발·검증·보급, 농업인 교육·홍보·계도
	시·군	· 영농지도 및 기술지원, 현장 애로기술 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및 민간인증기관 지도감독 · 농산물 농약안전성검사 지원
농 협		· 농자재 생산·공급,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매·가공·판촉

5.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①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1. 목 적

-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농으로 안전하게 진입(실천)할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에 기여
- 잔류농약 검출, 부패 등 소비자 피해와 유통과정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전남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

2. 보험의 구성 : 유기농 실천보험 + 소비자 안심보험

- 유기농 실천보험 : 유기농산물 인증품목(면적)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자부담 지원
- 소비자 안심보험 :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소비자안심보험료’ 지원

3. 추진방침

- 유기농 실천보험은 무농약단계에 있는 농가들이 안심하고 유기농으로 상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자부담 지원
 - 예) 일반품목(보조 80%, 자담 20%) → 유기농 품목(보조 100%)
- 가입대상 및 품목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침에 준하고, 재해피해 발생시 ‘재해보험 기준약관’을 적용,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 소비자 안심보험은 부패, 훼손,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상
 - 전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4.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 기금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5. 추진계획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2. 1~12월

다. 사업량 : 2종(유기농실천보험, 소비자안심보험)

라. 사업비 : 1,458백만 원 - 도비(기금) 350, 시·군비 816, 기타 292

마. 운영보험사

- 유기농실천보험 : 농협(농업정책보험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 소비자안심보험 : LIG손해보험

바. 약정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1년 단위 재가입)

사. 보험료 산출 및 지원 기준

① 유기농 실천보험 :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의 지원(도비 부족시에는 시군비로 충당)

② 소비자 안심보험 : 가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최고 30만원까지이며,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6. 세부 운영방안

① 유기농 실천보험

가. 사업개요

- 가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35품목 중 유기인증 품목(면적)
- 지원대상 : 유기인증을 받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사업비 : 1,158백만 원(도비 278, 시군비 648, 기타 232)
- 보상기준 :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기준에 따름

나. 보험상품(농작물재해보험)

< 벼 >

- 대상품종 : 일반벼(특수미, 찰벼, 말벼, 초 다수성 벼 제외)
- 가입자격 : 4,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 가입방법 : 1,000㎡이상의 농지단위(1,000㎡이내의 연접농지로 가능)
- 가입시기 : 본답 이양전후
- 가입기관 : 농지소재지 인근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 보험료 : 가입금액 × 보험요율 × 할인, 할증
 - 정부 50%, 지자체 30%, 자담 20%

- 표준수확량 : 10a당 지역별, 품종별, 이앙시기, 친환경재배 산정
- 평년수확량 : 보험가입 결과에 따라 보험금 많이 받는 농지와 농가는 낮아지고 재해가 없는 농지와 농가는 올라가는 시스템
- 가입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100% 가입
- 표준가격 : 과거 5년간 농협RPC 매입가격의 평균
- 가입제한 : 하천부지, 상습침수, 대상품종이 아닌 품종, 직파재배, 통상적인 재배를 하지 않은 농지, 연내 도시개발계획의 농지

< 기타 >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기준 참조

다. 사업추진 방법

-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판매 시기에 가입 신청
- 가입신청 시 농가 자부담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
 - 지원 단가는 품목별로 차등 지원하되, 사업(가입)시기별로 정산하고 최종 교부결정에 따른 부족액은 시군비로 충당
- 사업정산은 '농작물재해보험' 정산 시 별도 '유기농 실천보험'으로 지원한 내역을 별도 정산

② 소비자 안심보험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에서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서 직접 판매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개별농가
 -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도지사 품질인증 농특산물 까지 포함
- 보상범위 및 한도
 - 1) 1차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잔류 농약, 이물질, 부패·훼손된 제품의 섭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연간 **1억원까지 보장**(단, 보험가입자가 지원한도액 초과분을 납부할 경우 보장한도액 상향 가능)
 - * 친환경농산물의 섭취 및 그에 직접 기인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소비자에게 신체장애에 따른 치료비용, 입원에 따른 휴업 손실 비용, 위자료 등 보상

- 2) 1차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특약”에 따라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에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가입자(업체)별로 1청구당 1천만 원, 연간 총 2천만 원까지 추가 보상
 - * 피보험자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 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지급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 농약 검출시 소비자에게 일정액의 위로금 보상(1인당 10만원 지급)
- 3) 1차 농산물에 대해 “유통망보전 비용 특약”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반품 요청 시 검사, 회수, 잔존물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유통망 보존망을 유지 할 수 있도록 1청구당 1천만 원, 연간 총 2천만 원까지 보상

나.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1월) → 사업신청 홍보(연중) : 행정·보험사
- 보험가입 신청(8~10월) : 농가(시군 협조) → 보험사
- 약정계약 체결(9~11월) : 농가 + 보험사
- 사업비 확정(보험사) 및 지급(11~12월) : 시군 → 보험사
- 사업비 정산(12~익년 1월) : 시군 → 도
- ‘소비자안심보험 스티커’ 부착 출하(연중) : 농가

○ 보험금 지급 시기(보험사)

- 1) 보험사에서는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을시 지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신체상해 등 피해발생
 - 유통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출이 될 경우
- 2) 보험금을 지급 하였을 경우 월 단위로 도(시군)에 지급현황 제출
 - ※ 기타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보험약관 등을 준용

다. 보험가입 스티커 부착 유통지도

- 시군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이 포장지 신규 제작시는 반드시 ‘보험가입 안내 문구’가 포함되도록 조치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등은 보험가입 배너, 팝업창 설치
- 시군에서 스티커를 일괄 제작, 보급하는 방안 강구

7. 사업비 집행 및 보고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정산)에 만전

나. 유기농 종합보험 추진상황 보고서식

○ 가입실적 보고

① 유기농 실천보험 : 매분기 익월 5일/ *자부담에 대한 지원내역

품목	농가수	가입면적 (ha)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 '12. 10월말 까지

시군	전달까지 신청현황				00월 신청현황				누 계			
	신청 건수	보험료 산출액(천원)			신청 건수	보험료 산출액(천원)			신청 건수	보험료 산출액(천원)		
		계	보조	기타		계	보조	기타		계	보조	기타
계												

○ 지원결과 및 정산보고 : 2013. 1. 15일 까지

① 유기농 실천보험 정산서식

구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사 업 량		예 산 액(천원)				사 업 량		집 행 액(천원)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기타	농가	면적	계	도비	시 군 비	기타	
	호	ha					호	ha					

② 소비자 안심보험 정산서식

구분	사 업 량(건수)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별첨 1】

유기농 실천보험 가입 신청서

☐ 가입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 농가 수 :
 - 대표자 : (생년월일), 연락처 :
- 주 소 :

☐ 운영상황

- 보험가입 품목 :
- 유기 인증면적 :
- 유기 인증번호 :
- 연간 예상생산량 : $kg / 10a$
- 계약 재 배 량 :

붙 임 1. 유기인증 증빙서류 1부.

2. 소속농가별 가입 명부(단체) 1부. 끝.

※ 인증 증빙서류는 농가별 인증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위와 같이 유기농 실천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2. . .

신청자 성명 (인)

00시장 · 군수 귀하

농가별 가입 명부(시군 보관용)

[illegible]

【별첨 2】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 단체(농가명) :

 - 대표자 : 주민번호 : 연락처 :

○ 주 소 :

☐ 운영상황

○ 보험가입 품목(재배작물) :

○ 취급형태 : 1차농산물 또는 가공, 축산물 등

○ 인증구분 : 저농약, 무농약, 유기, 무항생제축산, 도지사품질인증 등

○ 연간매출액 : 백만 원

○ 사업자 등록번호 :

첨 부 1. 친환경농산물 취급 증명서류 1부. 끝.

※ 취급증명서는 친환경농산물(도지사품질)인증서, 계약재배 서류 등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2. .

신청자 성명 (인)

00시장·군수 귀하

【별첨 3】

① 유기농실천보험 가입 신청서 명부

품목	시군	단체명 (대표자)	소 속 농가수	인증 면적	연 간 생산량	유 기 인증번호	신청 일자	전화 번호

② 소비자안심보험 가입 신청서 명부

상품명	시군	신청자 성명(상호)	사업자 번호	주민 번호	연 간 매출액	재배 작물	신청 일자	전화 번호

【별첨 4】

소비자안심보험 보험계약 현황보고

보험 상품	시군	증권 번호	신청자 성명(상호)	보험개시일	보험종료일	보험료	보험목적물

②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업의 1번지, 녹색의 땅 전남”을 수도권 대도시를 비롯한 국내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지원으로 지역의 청정이미지 제고
- 도시 소비자에 대한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구매력을 높여 친환경실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등에 수도권 전시·홍보 행사 지원
- 전시·홍보 부스 운영 시 부스비용 등 홍보 활동 및 운영
- 도내 생산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자 홍보로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

3. 추진기간 : 연중(수시)

4.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개소당 (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50%)	시군비(50%)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20부스	2	40	20	20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자 시행 : 친환경농업 추진 농업인 단체 및 유통업체

-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작목반 등)
- 시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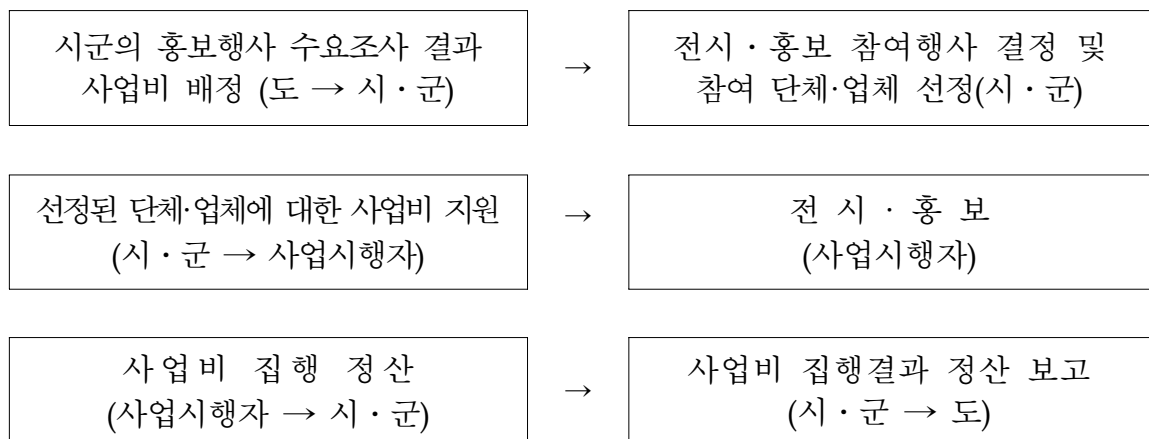
나.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작목반, 영농법인, 영농회사 등), 시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우수 업체

다. 지원 내용

- 부스 1개소당 보조금 지원 : 2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관 부스 임차료
 - 국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 홍보 행사 참여부스
- 전시·홍보 행사 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
 -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한 프랑카드, 홍보 팜플렛 제작
- * 보조금은 전시·홍보 부스 운영 및 기타 행사추진 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전시·홍보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없음

라. 사업시행 체계



마. 세부 추진사항

- 도에서는 시군의 전시·홍보 행사 참여 수요조사 실시 : 전년도 9월
 - 시군에서는 다음연도 행사 참여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하여 매년도 9월 10일까지 제출
- 수요조사 결과와 이전에 홍보 부스 운영 실적을 참고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 및 가내시 : 전년도 11월
- 도에서 전시·홍보행사 안내 및 시군별 행사 참여부스 통보 : ‘12. 상반기
- 행사 참여 대상 시군은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을 참고하여 참가 단체 또는 업체 선정 : 각종행사 2개월전

- 행사 참가 단체 또는 업체에서는 시장·군수로부터 부스임차료 등 전시·홍보 부스 운영비를 지원받아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행사가 끝나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사업비 집행 정산을 하여야 함.

바. 전시·홍보 참가 단체·업체 및 소비처 발굴 관리

- 시군에서는 전시·홍보 부스 설치 운영 참가 단체 및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관리 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추진
- 전시·홍보부스 운영 시 대도시 소비처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소비처는 상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6.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시군에서 행사참여 추진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집행 정산하고 시장·군수는 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제출

7. 행정 사항

- 당해 년도 도, 시군 참가 전시·홍보행사 결정 통보 : 3월~6월
-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운영 : 3월~11월
- 다음연도 사업 수요조사(별지 제1호 서식) : 9. 10까지
- 정산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12. 31까지
- 전시·홍보 운영실적 및 소비처 관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 : 12. 31까지

[별지 제1호 서식]

☐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운영 수요조사

(단위 : 회, 개소)

시 군	계		수도권 행사		기타지역 행사		비 고
	참여횟수	참여부스	참여횟수	참여부스	참여횟수	참여부스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단위 : 천원)

사 업 참 가 단 체	참 여 행사명	사업비 집행상황						도 비 집 행 잔 액 (A-B)
		예 산 액			집 행 액			
		계	도비(A)	시군비	계	도비(B)	시군비	

[별지 제3호 서식]

☐ 전시·홍보 실적 및 소비처 관리

(단위 : 회, 천원)

전시·홍보관 운영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		대량 소비처 발굴		
수 도 권		기타 지역		수도권행사	기타지역	단 체 명	공 급 품 목	월판매액 (백만 원)
운영 횟수	부스 (개소)	운영 횟수	부스 (개소)	관 매 액 (백만 원)	관 매 액 (백만 원)			

③ 친환경 생태연못(뚝방) 조성사업

1) 목 적

- 천적서식처 제공,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정화 등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
- 생태교육 및 친환경농업의 지표로 활용하여 우리도의 청정이미지 확산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단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계곡수, 하천수, 용출수 등 자연수 확보가 가능하여 생태연못「뚝방」의 기능이 연중 유지되는 지역에 설치
- 유기농생태마을, 친환경농업단지와 연계 추진하여 소비자대상 체험교육 및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추진
- 예전 뚝방을 우선적으로 복원 하는 등 습지 생태계 자연화 유도 및 우리도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 생태연못「뚝방」의 기능

- 수변 및 수생식물에 의한 자연정화능력 향상으로 수질개선
- 생태계 먹이사슬 고리 유지로 미생물 다양성 및 천적의 서식처
- 생태학습 등 환경교육 및 도시민 체류형 관광자원 활용 가능
- 친환경농업단지에 설치할 경우 친환경농업실천의 입증 지표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량	개 소 당	사 업 비		
			계	도 비	시 군 비
친환경 생태연못「뚝방」 조성사업	150개소	2,000	300,000	90,000 (30%)	210,000 (70%)

※ 설치여건 및 규모에 따라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4) 세부 추진계획

가. 대상지 선정

- 친환경농업지역(가급적 무농약 이상)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계곡수, 하천수, 용출수 등 자연수 확보가 가능하여 생태연못 「덤병」의 기능이 연중 유지되는 지구
- 가급적 동일 지역내에 2~3개씩 집중 조성하여 친환경농업과 연계 추진
- 덩병 조성지 선정은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고 규모 및 사업비 최소화 추진
- 2012 시군별 덩병대상지 수요량을 반영 교부하되, 연중 추가대상지를 지속 발굴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시 사업비 변경교부 조치

나. 추진주체

-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업단체, 독농가 등

다. 생태연못 조성 기본구상

- 환경특성과 조화되는 조성관련 자료 수집
 - 기존 환경자료 조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환경특성 파악
 - 주변지역과의 관련성을 포함한 생태계 파악
- 생태연못 「덤병」 조성계획 수립
 - 인위적인 시설을 최소화한 생태연못 「덤병」 조성
 - 그 지역의 토착적인 요소를 이용한 공간적 특성을 살린 계획
 - 자연 과정(천이)에 효율적으로 적응·통합하는 계획
 - 모래토양·언덕주변 등 토사유실방지를 위한 지역을 제외한 석축쌓기 지양으로 자연화한 덩병 조성
 - 연못의 원활한 물질순환 환경 조성
 - 물, 에너지, 자원, 유기물 등의 재순환을 촉진
- 생태환경을 고려 옛 덩병을 되살려 인위적인 시설을 축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연못 「덤병」으로 사업 실행계획 수립(별첨 서식1 참조)

- 옛 둑병 복원의 취지에 맞게 별도의 조경 설계 없이 소규모 둑병 조성
 - 수변·수중식물 : 개구리밥, 부레옥잠 등 부유식물
 - 수생어류 등 : 국내 고유 소형어종과 미꾸라지, 소금쟁이, 물방개 등

라)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자 지정 : 시장·군수가 지정
 -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공무원 및 마을 관리책임자
- 생태연못의 기능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실시(시군) : 분기 1회 이상
 - 물 순환 관리 및 수변 수중식물, 수생어류 등

마. 행정사항

- 최종 확정 사업대상지 및 추가 대상지 선정 제출 : '12. 1
 - 사업 신청 총괄표 및 생태연못 조성사업 대상지 현황(붙임1)
- ※ 2014년까지 시군 경지면적대비 조성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추진
 - 조성목표수 : 경지면적 / 1둑병당 단위면적(614ha)
 - 1둑병당 단위경지면적 : 도 경지면적(307,261ha) / 조성목표수(500개)
- 사업 대상지 현지 확인 : '12. 2월
 - 조성계획의 타당성, 입지여건(활용도) 등
- 사업 대상지 확정 및 교부 결정, 사업비 송금 : '12. 2월(도 → 시군)
- 사업완공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 '12. 12월말(붙임2)
 - 시공 전, 시공 중, 완공사진 첨부

※ 2012년도 사업신청 서식(총괄) : 2012. 1월

시군	사업대상지			소유자		연못 조성 면적	소요예산(천원)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m ²			m ²				

[붙임 1]

‘12 친환경 생태연못 「뚝방」 조성사업 대상지 현황

① 위 치	시군 읍면동 번지 (지목)	
② 사업추진주체	주소	성명
③ 규모(조상면적)	m ² (평) 최대수심 : m	
④ 자체협의회 (일시, 참석자, 내용)		
⑤ 소요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도비 , 시군비 , 기타)	
⑥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비 산출내역
	○ 터파기(면적, 깊이) ○ 수변식물(식재종 및 수량) ○ 수서생물(입식종 및 수량) ○ 주변시설 - 옛 뚝방을 상기시켜 가급적 소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주변에 간단한 시설(떼식재)설치 ※ 설계 불필요	※ 터파기, 떼식재 등
⑦ 사업기간	(착공예정 :) ~ (준공예정 :)	
⑧ 시설물사후관리	사후관리 책임자(공무원 , 마을)	
⑨ 기타특기사항 (입지여건, 활용도 등)		

[붙임 2]

생태연못 「둠벚」 조성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① 위 치	시군 읍면동 번지(지목)					
② 사업추진주체	주소 성 명					
③ 규모(조성면적)	m ² (평) 최대수심 : m					
④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배정액					
	집행액					
	잔 액					
⑤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	세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율
	○ 터파기(면적, 깊이) ○ 수변식물(식재종 및 수량) ○ 수서생물(입식종 및 수량) ○ 주변시설(설치종 및 물량) - 폐식재 ※ 상기 항목 이외의 기타 세부 사업도 사업별로 구분 기재					
⑥ 사 업 기 간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시공 전 · 중 · 후 사진						
(시공전)		(시공중)		(완 공)		

4]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용자사업

1) 목적 및 근거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근 거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보조 용자사업의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정에서 위험요인 해소 등 안전장치 마련과 장기저리자금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적극적인 판로확보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개발과 생산시설 자금의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 대출취급기관이 신용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후 회수 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3) 사업개요

가) 용자금액 : 60억 원

나) 사업기간 : 2012. 1. 1 ~ 12. 31

다) 용자기관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시군지부)

라) 용자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업인, 단)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는 도내 거주 및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

※ 법인 :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마) 융자신청 제외자

- 융자신청 자격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
(본인이 금융기관 확인 - 서식1)
- 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바)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사)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친환경농자재 생산 시설 포함) 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개발, 원료구입 및 구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등)

※ 운영자금은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를 우선지원 함

아) 융자한도 (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 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업체당) : 5억 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 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 원 이내
- 도와 협약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 10억 원 이상

자) 대출이율 : 연리 1%, 연체이율 : 연리 10%

차)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필요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카) 융자금 지급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기성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완료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지급

4)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4, 4-1, 4-2)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현지조사는 반드시 시군 또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합동으로 「현지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친환경 관련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분야별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육성자금 추진 주무부서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서식4, 4-1, 4-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자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보고(서식 5, 5-1)
 - 지원대상자가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담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재검토 확정
-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신청액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여도(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등)를 감안 사업계획 융자금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확정 및 시군별 사업비 배정
 - 단,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도가 직접 기획한 사업의 경우 최우선 배정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사항을 본인에게 통지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1) 우선지원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판매활성화 사업
- 친환경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증대사업 등

(2) 우선지원 대상자

- 친환경농업육성(인증면적 및 매출규모) 기여도가 높은 자 우선
- 신규신청자는 기 지원자 보다 우선
- 기 지원자중에서 선정할 경우 지원받은 연도가 오래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우선

※ **용자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포기 시 차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5) 용자계획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가) 공 고(홍보)

- 장 소 : 시·군 , 읍·면·동 , 농협 게시판
- ※ **홍보 :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활용**
- 내 용 : '12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계획
- 신청 시기, 자격, 신청기간, 신청 장소, 지원한도액, 구비서류 등

나)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2 1. 5 ~ 2. 15(40일간)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자의 주민등록지가 관외일 경우 시·군에서 적의 판단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1.2.3, 읍면동·시군 비치)
- 읍면 또는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 등은 신청서 접수 시 담당직원이 확인, 가급적 신청서류 간소화
- 접수 시 유의사항 : 용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나이, 주소 등)
- ※ **무자격자의 신청서 반려 시 반드시 사유를 설명하여 오해소지 차단**

다) 용자신청결과 조치

- 읍면동 : 신청자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총괄집계표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2012. 2. 20 까지**
- 시·군 :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서 취합,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신용도 조회) 검토 및 현지확인 후 별첨 집계표(서식 5), 용자사업 우선순위(서식 5-1)를 도에 제출 : **2012. 2. 28일까지**

6). 용자사업 업무추진 체계

항 목	시 한	내 용
① 사업신청서 접수	1.5~2.15	사업희망자(단체) → 읍면동·시군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용자신청 자격 해당여부 확인 ※ 무자격자 신청시 사유 설명 반려
② 현지조사 및 담보능력 등 확 인	2.20~2.28	시군단위 : 행정+지도+농협 ○ 조사표에 의한 현지실사 평가(서식4, 4-1, 4-2) ○ 신용도 및 담보능력 확인
③ 용자사업 신청 상황 집계보고	2. 28	시군 → 도 ○ 사업분야·자금종류별 등 집계보고(서식5) - 용자사업 우선순위(서식 5-1), 용자사업 신청서 사본(서식 1) 첨부 ※ ②항의 조사결과 부적격자 제외
④ 시군별 용자금 배 정	4월초	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시군농협 ○ 시군신청금액·친환경농업기여도 등 감안 용자사업자 확정 및 시군별 배정
⑥ 자금배정 신청	사업완료 1개월전	시군 → 도 ○ 사업완료 1개월전 소요자금 배정신청(서식6)
⑦ 자 금 배 정	시군신청후 (매월1회)	도 → 기금관리부서·시군·농협 ○ 시군신청에 의거 매월 1회 자금배정 조치
⑧ 용 자 실 행	사업완료후	용자사업자 → 농협 ○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용자신청 및 실행

7) 행정사항

가). 추진일정

- 용자지원계획 통보(도 → 시군) : '11. 12. 31
- 용자계획 공고(시군, 읍·면·동 및 농협 게시판) : '12. 1월
 - 농협은 게시판에 공고문 부착 및 홍보 협조 요청
- 용자신청서 및 총괄 집계표 제출(읍면동 → 시군) : '12. 2. 20까지
- 용자신청서 접수결과 제출(시군 → 도) : '12. 2. 28까지
- 사업대상자 및 시군별 용자금액 확정 통보(도 → 시군) : '12. 4월초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금 집행실적(시군→도) : 매분기말

나).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및 용자금 지급기한 엄수

-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2012. 11. 30한
- 금융기관 용자금 지급 : 2012. 12. 30한

【서식 1】

2012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①신청자	주 소				전 화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	
	친환경관련 종사기간		년 월	신청 분야	생산(),가공(),유통(),농자재()	
② 취급품목			연매출	년 월	전 년 도 매 출 액	백만 원
③사업명						
④기용자 연 도	년	기용자 자금명		기용자 기 관	국 가 () 도 () 시군()	기용자 금 액 백만 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 원	자금 종류	시설() 운영()	상 환 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5년 상환()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거치 일시상환()
	자부담	백만 원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기타()
⑧신용불량, 연체등록			여, 부 (서명)		확인일자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 ○ 시 장 · 군 수 귀하						

-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는 유통업체만 기재하고, ③, ④번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도와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 체결은 한 농협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록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서식 2】 - 개인용

사 업 계 획 서

□ 영농현황

성 명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주 업 종		연간소득액	
농지규모	전 평, 답 평, 과수원 평, 하우스 평, 기타		
친환경농산물 물 재 배	o 재배 : ha(유기농산물 , 무농약 ,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 사 업 비	만원(자기자본 , 육성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사 업 기 간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연간소득액	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 기 자 본	만원
			육 성 기 금	만원
			차 입 금	만원

- ※ 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취급량 및 연간매출액은 유통업체만 기재
2. 농지규모는 상세히 기재

【서식 3】 -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참여농가수	명
사 업 규 모		연간 매출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규 모				
총사업비	만원(육성기금 , 자기자본 , 기타)			
사업기간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주사업내용				
연간매출액	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만원	자기자본	만원
			육성기금	
			차 입 금	

【서식 4】

시군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	--	-------	--

항 목	검 토 의 견	평 점
사업자의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 래 전 망		
사업자의 신용도		
도·시군 시책사업과 관련 성		
종 합 의 견(약술)		

【서식 4-1】

지 원 대 상 자 선 정 평 가 표
(개인- 3천만 원 미만, 단체- 5천만 원 미만)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	--	-------	--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50점)	o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취급 규모 (50점)	o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 (100점)	o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 이상 50 · 3년~5년 미만 30 · 3년 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o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 업 성 (200점)	o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100 · 중 70 · 하 35 o 사업자의 사업운영 능력 · 상 100 · 중 70 · 하 35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o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 상 150 · 중 100 · 하 50 o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 80%이상 100 · 50%이상 70 · 50%미만 50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o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12.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서식 4-2】

지 원 대 상 자 선 정 평 가 표

(개인 -3천만 원 이상, 단체 -5천만 원 이상)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지원사업명	
-------------	--	-------	--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700점)		
① 사 업 자 의 추 진 의 지 (50점)	o 강함 50 보통 30 미약 20	
②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취급규모 (50점)	o 대 50 중 30 소 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 문 성 (100점)	o 친환경농산물 취급(영농) 경력 · 5년 이상 50 · 3년~5년 미만 30 · 3년 미만 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친환경단체 가입 등 확인 o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0	
④ 사 업 성 (200점)	o 사업계획의 충실도 · 상 50 · 중 25 · 하 10 o 해당사업의 경기전망 · 상 50 · 중 25 · 하 10 o 부지확보등 사업추진 용이성 · 상 50 · 중 25 · 하 10 o 원료조달 및 생산·판매능력 · 상 50 · 중 25 · 하 10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 의견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⑤ 사업자 신용도 (250점)	o 담보제공 능력 · 상 100 · 중 50 · 하 30 o 사업자금 조달능력 · 상 70 · 중 50 · 하 30 o 부채규모(신청접수일 현재) · 없음 40 · 1000만원미만 20 · 1000만원이상 10 o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 80%이상 40 · 50%이상 20 · 30%이상 10	
	금융기관 소속 직원 의견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0점)	· 상 50 중 30 하 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12. . .

조사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서식 5】

201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사업 신청 집계표

※ 용자신청상황 · 용자사업자 선정 보고시 활용

1. 용자분야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생산분야		가공분야		유통분야		수출분야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개인												
단체												

2.. 자금종류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계						
개인						
단체						

3. 사업내용별

○ 친환경농산물 생산분야

(단위:백만원)

계		신규시설						기존시설 확충						기타	
건	금액	계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 가공·유통·수출분야

(단위: 백만원)

계		신규시설						기존시설 확충						기타	
건	금액	계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4. 용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계										
개인										
단체										

5. 개인(단체)별 내역

(단위 : 백만원)

No	사 업 자		분야	사업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용 자 희망월
	주 소	성명				계	용자	자담	

【서식 5-1】

201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사업 우선순위

※ 용자사업 신청상황 보고시 활용

(단위 : 백만원)

순 위	신 청 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자금 종류	상환기간
	주 소	성 명			계	용자	자담		

【서식 5-2】

201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 용자사업자 선정 보고 시 활용

(단위 : 백만원)

시 군	신 청 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자금 종류	상환기간
	주 소	성 명			계	용자	자담		

【서식 6】

2012 ()월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자금배정 신청

시군	용자사업자		용자금액 (천원)	자금종류	상환조건
	주 소	성 명			

【서식 7】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금 집행실적

- 2012년 월 일 현재 (매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용자계획(가)		용자배정		용자실행(나)		용 자 실행율 (나/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Ⅴ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기반 확충
- 소비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 단지단위 인증이 가능한 경우 개별농가보다 단지별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촉한 명예감시원의 인증기준 준수, 현장 지도 강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 산업」 육성 제2차5개년계획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5%)	시군비(45%)	자담(40%)
계		5,400,000	810,000	2,430,000	2,160,000
인증 비용 지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15,000건 140명	5,400,000	810,000	2,430,000	2,160,000

※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농관원 위촉인원 증감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

5.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2.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2012년도에 조성하는 친환경농업단지 및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대표(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단,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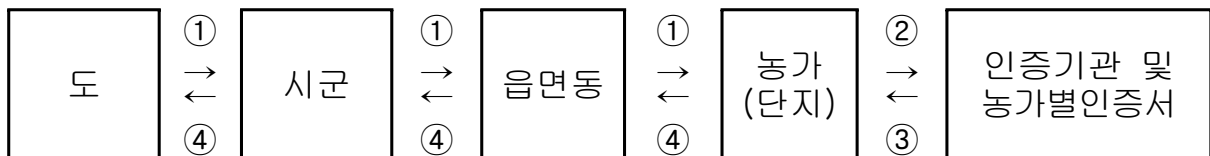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 실천 : '12. 1~1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12. 12월 이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승인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3. 2월

다. 사업시행체계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 및 사본(수질·토양·농약검사 등 분석여부 확인)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6.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가(저농약농산물 연장·무농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을 위한 녹비작물 등 흙 살리기 참여 단지 또는 농가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출장비, 토양검사,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 지원

- 인증 연장신청 농가(단지) 분석비용, 영농일지 제작비 지원
 -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 인증에 따른 생산과정 관리, 측량비, 사후관리 비용, 친환경 유기식품 인증비용 지원 가능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 실천 필지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과정을 주기적으로 순회지도 및 감시토록 하고 활동비 지원
 -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과 협의하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 활동내용
 - 재배작물의 생육상태, 제초제 사용여부, 농약·화학비료 및 사용금지 자재 사용여부, 냉해·우박·병해충 피해발생 여부 등 순회감시활동 전개
 - 주기적으로 도·시군단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육 및 행사에 우선 참여기회 제공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에 지원
 - 신규 인증단지(농가), 인증면적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 단지(농가) 등에 지원
 - 농가보다 단지단위 인증신청으로 비용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
- 명예감시원 활동비 : 시군별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
 - 농관원 시군출장소와 협조하여 활동사항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

다. 지원기준

1) 인증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시 필요한 실 소요비용
- 지원조건
 - 무농약 이상(60% 보조) : 도비 15%, 시군비 45%, 자담 40%
 - 저농약 연장(50% 보조) :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 ※ 단,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인증획득을 못한 농가에 대해 시군예산으로 인증신청비 일부지원 가능
- 인증단계별 유효기간 준수 : 유기농 1년간, 무농약 2년, 저농약 연장 2년간
 - 인증단계 상향 신청시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활동비
- 지원기준 : 도비 25%, 시·군비 75%
 - 활동일수 : 1인 월 3일(1인당 연간 30일 이내)
 - 지원금액 : 1인 1일당 50천 원
- ※ 활동회수 및 활동비 지원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인증비 보조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명예감시원 활동비용은 활동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하여 활동비용을 개별통장에 입금

나.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2회 보고) : '12. 6. 30/ '12. 12. 31
- 도 보고용

구 분	사업량 (건수)	지 원 대 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ha					
비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기타								

- 시군 보관용

사업대상자 (단지명/성명)	인증 구분	품목	지 원 계 획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ha					

※ 인증단계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013. 2. 28한

- 사업비 지원결과

구 분	사업량 (건수)	지 원 실 적			인증 종류별 면적 (ha)		
		농가수	면 적	필지수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호	ha	필지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물 기 타							

-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량 (건수)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물 기 타												

○ 명예감시원 선정현황 : 2012. 3. 31

성 명	주 소	연령	연 락 처 (휴대전화)	주요 경력
계				

○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결과 및 정산 : 2013. 2. 28한

인원 (명)	활동실적 (일)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1인당	연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Ⅵ 친환경농업기반구축(광역단지조성) 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 면적 비율을 12%까지 확대
- 600ha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향후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
- 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600ha이상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60개소를 조성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율을 12%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 주지표)	7.0	5.1	6.4	6.7(p)	2013.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 전체 경지면적 × 100
▪ 광역단지 내 인증면적 비중 (% , 부지표)	27.0	23.2	24.0	25.0(p)	2013.3	광역단지 내 인증면적 / 광역 단지 전체 사업면적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01,385	60,000	76,734	70,000	251,000
보 조	50,885	29,500	34,100	23,800	77,100
지방비	40,400	24,000	31,749	32,200	128,500
자부담	10,100	6,500	10,885	14,000	51,400

○ 전남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 군	총사업비 (’09~’13)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5개소	50,000	13,000	4,700	1,770	4,130	2,400
1년차(10%)	나 주	10,000	1,000	300	150	350	200
	강 진	10,000	1,000	300	150	350	200
2년차(50%)	곡 성	10,000	5,000	1,500	750	1,750	1,000
3년차(40%)	함 평	10,000	4,000	1,600	480	1,120	800
4년차(20%)	화 순	10,000	2,000	1,000	240	560	200

※ 부담비율

- 4년차(이월) : 국비 50%, 지방비 40%(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10%
- 3년차(기존) : 국비 40%, 지방비 40%(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20%
- 2년차(기존) : 국비 3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20%
- 1년차(신규) : 국비 3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20%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지역축협 또는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농협, 지역축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면적 600ha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이 가능한 전 작물

○ 지원시설 및 장비

-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집행
- 교육·체험기반시설(교육시설, 생태공원조성, 에듀팜조성)은 총사업비의 10%이내에서 집행
- 설계·감리를 필요로 하는 주요 시설물에는 설계·감리비 포함
- 아래 항목은 단지당 기준사업비(60~100억원)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와 유사한 사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는 지원
 -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기존 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
 - * 단,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업단 소유가 아닌 단지내 기존시설 인수 활용은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농식품부에서 현지조사 및 적정여부 판단하여 승인)
 - 미곡종합처리장(RPC), 김치공장 등 대규모 가공시설
 - * 단, 브랜드상품이나 학교급식 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가공시설은 가능
 - 트랙터, 콤바인, 무인헬기 등 농기계와 승용차, 트럭 등 차량 구입비
 - * 단, 가축분뇨수거용 차량, 퇴비운반용 지게차 등의 장비는 가능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구입비
 - 브랜드 개발비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비
 - * 참여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단 운영경비 등 소프트웨어 관련 경비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별도 확보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발전계정)
- 사업비 : 개소 당 사업비 60~100억 원 지원
 - * 600ha 이상~800ha 미만: 60억 원, 800ha 이상~1,000ha 미만: 80억 원, 1,000ha 이상: 100억 원
 - * 사업계획 및 사업진행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하여 단지별 총사업비의 70%~13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음
 - * 녹색기술이나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3개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지원)
 - 사업 의무량
 - 1년차 : 사업계획 수립, 설계, 일부 장비구입 및 시설 착공 등
 - 2년차 : 주요 시설·장비의 설치
 - 3년차 : 사업 마무리 등
 - * 단지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주요시설 및 장비내역(예시)》

구 분	시설·장비명	비 고
친 환 경 농 자 재 생산시설 장 비	미생물 배양시설·장비	○ 혐기성균, 호기성균, 광합성균 등 미생물 배양을 위한 배양기, 저장탱크 등의 일체 시설 ○ 살포장비 등
	생물제재 등 제조시설·장비	○ 목초액, 키토산, 아미노산,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버섯추출액, 클로렐라 추출액, 석회보르도액, 유황합제, 담배 추출물, 자연암석 분말용액, 청초액비, 천연식초, 과일효소 등 ○ 왕겨자원화시설 등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장비	○ 농축임수산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등의 제조시설 장비 - 퇴비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 배합기, 분쇄기, 톱밥제조기 등 - 로더, 살포기 등
친 환 경 농 축 산 물 생산시설 장 비	수도작용 공동육묘장	○ 육묘장, 관수시설, 발아실, 대차 등 시설 장비 일체
	농기자재 보관창고	○ 농기계, 농자재 등의 보관시설
	친환경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 볏짚, 총채보리 등 친환경 조사료 배합 및 보관 시설, 수확기, 랩핑기 등 시설·장비 일체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장비	○ 오리·우렁이·쌀겨 농법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우렁이양식장 등 - 쌀겨펠릿 제조기 등

구 분	시설·장비명	비 고
농축산순환 자 원 화 시 설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개방형/밀폐형)	○ 밀폐형 가축분뇨 운반차량 ○ 가축분뇨 저장시설 ○ 톱밥 저장시설 ○ 혼합시설(Skid Loader or Bucket Tractor) ○ 밀폐형 퇴비장 ○ 탈취시설 ○ 기계 교반시설(Screw, 에스컬레이트) ○ 블로어(공기주입기) ○ 침출수 배수시설 ○ 후숙 및 반출용 저장시설 ○ 운반장비(Skid Loader, Bucket Tractor) ○ 포장시설(Bulk, Pellet, 플라스틱 포대) ○ 퇴비 비료성분 분석 장비 - 유기물, 부숙도, 수분, 질소, 구리, 아연 분석 ○ 퇴비 살포 장비
친 환 경 산지유통 시 설	친환경농산물 보관시설	○ 저온·건조·저장 시설 등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 브랜드상품이나 학교급식 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 집하·예냉·저온·선별·포장·저장을 위한 시설 장비
친환경 교 육 체 험 기 반 시 설	교육시설	○ 친환경농업교육장 ○ 홍보·전시장, 사무실 ○ 태양광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 등
	생태 공원(Eco Park) 구성	○ 산책로, 자연 정화형 수로 및 연못, 수생식물 식재, 조망용 텍크(Deck), 태양광 가로등 등
	에듀 팜(Edu Farm) 구성	○ 체험학습장, 농로, 급·배수 시설, 교육용 농기자재 보관창고, 원두막 등

- * 상기 시설 중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를 최우선으로 착공하여야 함.
-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설을 설치하면 안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기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시·군에 통보(전년도 1월초)
- 시·군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까지)

시·군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전년도 1월)
-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전년도 2월)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등의 검토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의견 제출

사업신청 대상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2월)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① 사업자는 지역내 친환경농업 여건, 영농규모, 재배작물, 축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지 내에서 유기질퇴비 등 양분이 자원순환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② 사업자는 지역내 영농구조와 농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당해지역에 적합한 사업모형을 설정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 수립
- ③ 사업단지 내 참여 농업인(축산인 포함)은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와 동시에 단지내 농경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 또는 기존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 ④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추진 완료와 동시에 참여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차별 인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향후 생산될 농산물에 대한 유통계획을 사전에 수립 추진
- ⑤ 사업추진 단지내 축산농가는 무항생제 수준 이상의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계에 맞추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이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⑥ 세부사업 내용 중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은 단지내 경지면적 및 퇴비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무항생제 수준 이상의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무항생제 수준 이상의 축산물을 생산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농가의 축산분뇨를 우선적으로 사용
- ⑦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와 농촌진흥청 등 공인기관에서 효과가 검증된 자재
- ⑧ 단지내 기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APC) 등 기존 시설·장비는 친환경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 관련시설·장비가 중복 또는 과잉투자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관련기관·단체

- 축산과학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면 아래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1월)
 - 축산과학원 : 축산분뇨퇴비·액비화 계획, 유기축산물(무 항생제 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 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 수산 식품부 주관으로 심사 및 실사를 하되, 선정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 발표평가 실시(전년도 9~12월)
 - 1차 평가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류심사
 - 2차 평가 : 현장실사
 - 3차 평가 : 공개발표평가
- * 별도로 평가계획 및 평가표 수립(전년도 8월)
- 평가계획에 따라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전년도 12월)
- 예비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지원 대상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1월)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요령 교육(1월)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2~3월)

시·도(시·군)

-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에 제출(1~2월)

사업대상자

- 지역여건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1~2월)
 - 2개 이상의 농·축협 등이 참여할 경우 실질적인 법인 구성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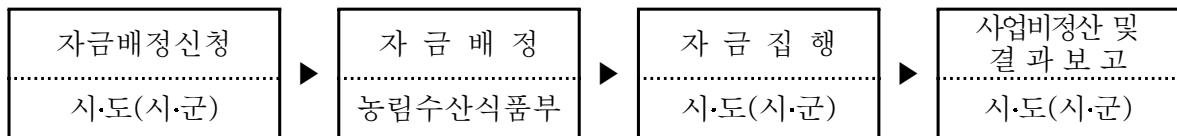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및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와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지급 요청



《사업비지급 및 정산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 단, 사업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1년차 및 2년차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험가동 및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중간정산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최종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설계, 시공업체선정, 착공, 준공 등 단계별 추진상황 및 자금 실 집행 실적 점검(필요시 수시)
 - 사업자선정 후 2년이내에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미 착공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회수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참여농가 변동사항 등 친환경농업실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시·도에서는 익년 2월말까지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제출)
- 기술자문단 구성·운영
 - 광역단지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실시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단, 변경승인 내용이 중대(사업주체 및 사업구역 변경, 내역사업별 사업비 5억 원이상 변경,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공법 변경 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비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 변경승인 요청
- 시공업체 선정
 - 세부사업별 시공업체 선정시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개경쟁 등을 통해 적격업체 선정

- 사업자는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등 주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등 주요시설은 주공법 업체에서 일괄 시공할 수 있다.

※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녹색기술 인증’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기술 인증’을 받은 퇴·액비화 시스템의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지침은 2009년, 2010년 및 2011년 시작 사업의 미집행 사업에도 적용 가능.

- * 사업 주관기관은 시스템 선정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법선정위원회 : 사업주체, 시·도(시·군),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법인 내부 전문가 1/3 이내)
 - 평가항목 : 자산 건전성, 설계도면의 적정성, 물질수지 타당성, 설치 비용의 적정성, 기술력, 시설운영 경제성·편리성 등
- * 단, 중앙부처의 장이 인증한 녹색기술과 신기술인 경우 공모절차 없이 적용·시행할 수 있다.
- * 시설설치 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설 계

- 표준사업 모형의 시설별 설계를 활용하되, 실시설계 등 세부설계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
- 시공업체가 직접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상의 시설물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련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되,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는 2~6개월간 (정상운영 확인기간 포함) 시험가동 후 1개월 이상 정상가동(시설용량의 90% 이상 유입)을 확인하고 시설 준공 및 사업비 정산을 하여야 함 (필요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관련전문가 입회)
- 생산된 퇴·액비 및 방류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퇴·액비 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상반기 실적 : 8월말까지, 하반기 실적 : 익년 2월말까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 분 제 한 기 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 설 비	준 공 일	10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기계 및 장비	구 입 일 또는 준 공 일	5년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광역단지 6개소 이상)는 자체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관내 광역단지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시설과 장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 운영규정」 등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주기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친환경농업실천대장 등을 현지확인 하고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야 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단지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추진단지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단지는 인근 지역으로의 친환경농업의 파급 및 확산을 위하여 농업인 홍보, 현지견학,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추진단지는 단지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하며,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지별로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및 3단계 점검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1단계(사업계획심사시), 2단계(시설 준공시), 3단계(준공 3년경과 후 사업 평가 시)

관련기관·단체

-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친환경농업단체는 사업대상 단지의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지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교육·홍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평가지표 측정〉

- 단지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평가
 - 평가지표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평가일정 : 매년 2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평가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이행실적 및 지원시설·장비의 활용도, 사후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 추가지원 및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단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매년 3~4월
 - 평가대상 : '06이후 지원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평가기준 : 별도 수립

《환 류》

-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자금 지원(농협) 등 각종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지원에 우선 반영
- 친환경농업대상 등 정부포상 대상으로 우수단지 추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시달시기 : 2011. 12월말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 신청(2012.2.20.한)
 - 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 서식)
 - 사업계획서 (별첨서식)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12.2.28.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12.3.31.한)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방침에 의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거쳐 2개소 이내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201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평가계획은 2012. 9~10월중에 별도로 통지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 2013년도 신청사업부터는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자부담비율 조정
 - 국비 30%, 지방비 50, 자담 20 → 국비 30%, 지방비 40, 자담 30

(별지 제1호 서식)

○○광역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서

I. 사업계획서 요약

1. 사업단지 현황

- 사업단지명 : ○○광역시환경농업단지
- 사업주체법인명 : ○○(대표자 : ○○○, H.P :)
 - 참여법인, 참여단체 : ○○농협, ○○법인, ○○, . .
- 주소(사업주체 법인) :
- 참여 농가수 및 경지면적 : 호(ha)
- 단지내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 총 ha(벼 , 콩 , 고추 , 딸기 , . .)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두, 젓소 두, 돼지 두, 닭 수. .)
- 단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 총 ha(유기 : 벼 , 콩 , 고추 , 딸기 , . ., 무농약 : 벼 , 콩 , 고추 , 딸기 , . .)
- 단지내 친환경축산물 인증 : 총 두(유기 : 한우 , 젓소 , 돼지 , 닭 . ., 무항생제 : 한우 , 젓소 , 돼지 , 닭 . .)

2. 세부내역

구 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소 계						
농축산순환 자원화시설	소 계						
친환경 산지 유통·가공시설	소 계						
교육·체험 기반 시설	소 계						
기 타 (설계·감리비 등)							

II. 사업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의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도 개선 방안(친환경농업과-685, '11.8.5)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추가, 작성내용 순서 변경, 작성항목의 제목(문구) 변경 등 가능

1. 사업대상지역 현황 및 여건

- 광역단지 내 농가 및 경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지번, 지적도, 항공사진 등 참여농가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첨)

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사업의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4. 광역단지조성을 위한 준비사항 및 기 추진실적

- 광역단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교육실적 등 사전 준비상황

5.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체계

- 광역단지 사업추진주체·사업추진조직, 역할분담 등 포함
- 광역단지 운영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나. 광역단지 사업모형 구축방안

-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실천방안
- 지역별 농업환경자원을 고려한 양분수지 균형 및 환경부하 최소화 등
- 경지면적에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보완하여 단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

다. 관내(시·군) 및 단지 내 기존시설 현황 및 활용 방안

- 개보수, 증·개축, 리모델링,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방안 등
- 광역단지사업 보조금 외의 사업으로 설치중이거나 설치 계획중인 시설의 진행상황 및 광역단지사업과 연계방안 등

라. 주요 시설·장비 설치 및 지역별 배치계획

- 지역의 생산·유통·소비 여건을 분석, 적정 시설을 연계·설치 계획 등

마. 시설별 부지확보 및 재원(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

- 시설별 부지확보 및 인허가 여부 검토, 토지이용계획 사전 확인사항 등
-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민원해소 상황(사전 공청회, 주민 합의사항) 등
- 재원(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 운영비 확보계획 등

바. 광역단지 운영계획

- 사업단 운영계획
 - 시설·장비별 운영계획
 - 시설별 운영 및 수익창출 계획 포함
 - 유통(마케팅) 운영계획
 - 교육 운영계획
 -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계획('11.8.5, 친환경농업과-685호의 제도개선방안 참조)
 - 3단계 목표치 : 신청시, 사업기간 3년간, 완공 후 사후관리 10년간
- ※ 목표관리시스템 도입(매년 운영협의회에서 평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친환경축산 이행을 제고, 화학비료 감축, 녹비작물 재배면적 확대, 친환경농자재 사용 확대, 단지내 양분수지 총량 분석 및 관리, 친환경농업 교육이수 실적 제고, 시설별 경영수지 제고, 운전자금 확보, 단지내 농업인에 대한 공동이익 창출 제고 등

사.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및 향후 연도별 인증계획

- 사업추진 이전 연도별('08년 말~'10년 말 기준) 인증현황
- 사업추진 이후 연도별 인증계획

6.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시·군 친환경농업의 미래상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단 지 명 :
- 법 인 명 : (대표 , 참여농가 호)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필요시 유관기관 검토의견 제출받아 작성)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시·군지부 등 각 기관·단체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인증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시·군지부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사업 참여자의 채무상황, 고정자산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또는 농과대학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사업단지명 :

2. 대표자성명 :

3.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당초	변경	

* 사업대표자, 사업장 위치 등 비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4. 변경신청 내용

(단위 : 천원)

사업계획(당초)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시설·장비명	총사업비(국고)	시설·장비명	총사업비(국고)	
계	()	계	()	

* 시설·장비 등 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5. 변경사유서 :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사전에 시장·군수의 검토과정을 거쳐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군수가 사업자와 협의 후 직접 변경신청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

1. 사업단지 현황

- 사업단지명 : _____
- 참여 농가수 : _____ 명(대표자 성명 : _____ 연락처 : _____)
- 단지내 주요작물별 면적 : 총 _____ ha(벼 _____, 콩 _____, 사과 _____, 감 _____, 배 _____, 복숭아 _____, 자두 _____, 토마토 _____, 고추 _____, 양파 _____, 감자 _____, 밀 _____, 보리 _____, 수수 _____, 호박 _____, 수박 _____, 멜론 _____, 딸기 _____, 블루베리 _____, 사과 _____, 감 _____, 배 _____, 복숭아 _____, 자두 _____, 토마토 _____, 고추 _____, 양파 _____, 감자 _____, 밀 _____, 보리 _____, 수수 _____, 호박 _____, 수박 _____, 멜론 _____, 딸기 _____, 블루베리 _____)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_____ 두, 젓소 _____ 두, 돼지 _____ 두, 닭 _____ 수, 오리 _____ 수, 기타 _____
- 단지내 친환경농산물인증 주요 작물명 : _____

2. 친환경농업 이행내역

[illegible]

* 주) 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인증 란은 해당년도 말 기준 증감된 농가 및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상/하반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주요 추진내용

- 주요내용에 대해 개조식으로 기술

2. 자금집행상황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담	A-B
계									
주요시설									
주요시설									
기 타									

3.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진도

구 분	시설·장비명	추진 내용	진도	향후 추진계획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소 계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친 환 경 산지유통시설	소 계			
교 육·체 험 기 반 시 설	소 계			

(별지 제6호 서식)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정산(중간정산) 결과

1.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위	정산 내역			
			사업 계획		집행 실적	
			사업량	총사업비(국고)	사업량	총사업비(국고)
합계				()		()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계			()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시설·장비	소계			()		()
농축산 순환 자원화 시설	소계			()		()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소계			()		()
교육·체험 기반 시설	소계			()		()

2. 시설·장비별 집행실적

(단위 : 원)

시설·장비명	예산액(A)				집행액(B)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시설·장비명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2년까지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7.0%(무농약 이상)

성과 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 방식
		'09	'10	'11		
▪ 친환경농산물생산면적 비중(% , 주지표)	7.0	5.1	6.4	6.7(p)	2013. 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전체경지 면적 × 100
▪ 지구조성단지내 인증 면적 비중(% , 부지표)	49.0	41.5	45.0	47.0(p)	2013. 3	지구조성내 인증면적/지구조성내 전체사업면적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330,300	6,000	8,000	8,000	141,200
보 조	127,620	2,400	2,400	2,400	84,000
용 자	29,500	-			-
지방비	104,720	2,400	4,000	4,000	41,000
자부담	68,460	1,200	1,600	1,600	16,200

- '12년 전남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8개소	1,600	460	246	574	32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불가피한 경우(사망·이주 등)를 제외하고는 참여농가 10호 이상 유지 및 사업 참여면적 광역화(200ha 이상) 지양
- 사업대상지구 평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3. 지원대상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95~'11 기간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고 지역여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나,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부문에 선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 1 읍·면·동에 가급적 1개 지구가 조성되도록 추진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시설·장비 ○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개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가공시설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선정당시 주작목으로 지원받은 품목과 관련이 있을 것 (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에서 만 투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라. 친환경 농업 교육시설·장비	○교육장, 교육용 기자재(PC 등) 등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 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마.기 타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사업시행요령>

-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면적, 참여 농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 ~ 무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을 지도
-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원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녹비작물 재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 ⑤ 앞 4.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가~다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i)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 (ii) 사업메뉴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설·장비는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투자
 - (iii) 사업메뉴 라.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항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
- ⑥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는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도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받을 수 있음
- ⑦ 퇴비·액비화 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고,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 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음

⑧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와 승용차, 트럭 등 차량 구입비
- * 다만,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음식점, 숙박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1회성 자재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150~1,000백만 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2월말)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이 가능한 조직에 대해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전년도 1. 31일한)
- 시·군은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후 2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검토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까지)

유관기관 협조사항

- 시·군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역농협,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업신청지구의 사업계획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붙임 5) 작성에 협조

사업신청자

- 신청조직은 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관련 “별지 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3호 서식」,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전년도 1. 31까지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조직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전년도 9월)
- 시·도의 경지면적,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사업신청량, 사업비의 이월·불용액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을 가내시(전년도 10월)

시·도/시·군

- 시·도는 신청조직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후 사업지구별 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7월말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도의 사업지구 선정 원칙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가내시(10월)
 - 시·군별 지역특성과 기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 개소수를 고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지원대상으로 하여금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1월)

시·도/시·군

- 농림수산식품부의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1월)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 관리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 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및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와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 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 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 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 받아 정산 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 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실태를 “친환경 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매년도 2. 28일까지 제출받아 사업 목적 달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자료로 활용
 -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 인 10년 동안 관리
- 시·도별 연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 점검
 - 전담책임자 지정, 시설·장비 관리카드 기록·유지 등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사후관리기간중(2002년 이후)에 있는 지구조성사업 중 3년동안 친환경 농업이행실적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구조성사업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 설비	준공일	10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기계 및 장비 (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구입일 또는 준공일	5년간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중요재산 관리는 동 사업시행지침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도 소급적용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구조성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 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행정사항>

- 반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 이행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3.15.까지) (익년 3.30.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참여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 규칙 별표3)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 성과측정 단계

<평가지표 측정>

- 지구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평가
 - 평가지표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평가일정 : 매년 1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평가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 서식)의 집계결과에 따라 성과분석
 - 시·도별 사업지구의 인증면적 등을 관리하여 예산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조성사업 추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
-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 부문에 추천하여 포상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에 소개하여 홍보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예산배정시 감액
- 농림수산물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1. 12월말)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12. 1. 31까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12. 2. 28까지)하고 시·도는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12. 3. 31까지)
- 지구조성으로 선정이 된지 5년 이상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한 지구에 대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고, 다만 5년 미만지구에 대하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① 번의 경우에는 5년 미만 지구도 가능)
 - 대상지구 우선순위 : ①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부문 선정된 경우 ② 사업지원 전년도 12월말 기준 유기농 인증면적 30% 이상 지구 ③ 사업지원 전년도 12월말 기준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50% 이상 지구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3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①)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②)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③)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④)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별지 제1호서식)

(상·하반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조직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 집행 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 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계	소계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계			
기타사업	소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 수	면적(ha)	농가 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설 립 연 도 :
- 조 직 원 수 : 명(인증 농가 수 : 명)
- 품목 및 면적 : 합계 :
 - 품목별 인증면적 : 합계 :
- 사무실 소재지 :
- 전 화 :

◦ 대 표 자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생산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2.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 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 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표 (시·군/시·도에서 작성)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세) (HP, ☎)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벼	※재배	품목	기재-	
홍길동(○○세) (010-0500-1811)	○○리○○	ha	※없음, 유기, 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 직 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 축산은 참여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축사면적(평)을 기재

(붙임 ③)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 지 면 적 : ha
- 사업 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 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 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④)

부지사용 승인서

지 변 :

지 적 :

상기 토지 m² 중 m²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 시장·군 수 귀하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품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 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 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붙임 ⑥)

사업대상지구평가표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배점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40점)	㉔사업예정지 위치 (10점)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 지역 : 10 •일반지역 : 5		
	㉕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10점)	•30호이상, 50ha이상 : 10 •30호이상, 30ha이상 : 5 •10호이상, 10ha이상 : 1		
	㉖여성농업인 참여비율 (5점)	•30%이상 5점 •15%이상 3점 • 5%이상 1점	•여성농업인 우대	
	㉗사업참여 형태 (5점)	•법인화된 조직 : 5 •작목반 등 영농조직 : 3 •개별농가(비조직화) : 1		
	㉘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10점)	•90%이상 : 10 •70%이상 : 5 •70%이하 : 0	•벼는 인접마을, 과수는 인접읍면기준 (지적도 참조)	
②사 업 계 획 수립의적정성 (25점)	㉔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 •친환경 인증기준(유기~ 무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여부	•우수:10 •보통:7 •미흡:3	•친환경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㉕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 계획의 적정성(10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 순환농업 실천계획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적 정 : 10 •미 흡 : 5 •미설치 : 0	•토양개량과 화학비료 감축 위한 자원순환 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㉖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5점) •미생물 배양시설, 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우수: 5 •보통: 3 •미흡: 0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의 적정규모평가	
③사업 수행능력 (35점)	㉔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15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직거래 등) 여부(5점) •참여농경지의 무농약, 유기 재배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10점)	•우수:5,보통:3,미흡:0 •30%이상 : 10 •20%이상 : 8 •10%이상 : 5 •10%미만 : 0	•자체브랜드 여부등 •유기, 무농약 인증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과수는 지수 1.5를 적용	
	㉕사업수행관련사항(5점)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 (부지사용 승락 포함)	•확보:5, 미확보:0		
	㉖조직리더 열의도(15점) •조직리더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실적	•높음:15, 보통:12, 낮음:9	•언론보도, 포상, 강연 활동,친환경 교육이수 실적 등	
④가 점(10)	•신청 사군의 이행보고서 인증면적(무농약이상) 증가율 평가(10점)	•최근 2년간 증가율을 참고 하여 차등점수화 : 상10, 중7, 하3		
⑤감 점(-10)	•최근 2년간 사업부진지구 발생사·군 •동일 읍·면·동에 지원사업 지구가 있는 곳	•1회발생 : 10점 •5년내 지원실적 : 5점 •10년내 지원실적 : 3점	•민원, 조작내 불화 등으로 변경·이월된곳 •해당지구만 감점 *감점은 최대 10점	
합 계				

(불임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용 〉

[illegible]

Ⅷ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I.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무농약 이상) 비율을 20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12%까지 확대

성 과 지 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 정 방 식
		'09	'10	'11.P		
▪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7.0	4.9	6.4	6.7	'13.3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 100 * 무농약 이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35,759	52,018	37,912	39,286	계속사업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135,759	52,018	37,912	39,286	계속사업

※ 위 예산은 친환경축산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임('09년 10억 원, '10년 30억 원, '11년 30억 원, '12년 70억 원)

○ 전남도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05년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 비	4,306	3,590	7,648	14,589	18,871	18,577	15,041	15,948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 *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10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3. 지원대상

- 2012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2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3년에 사업신청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 / 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 / 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 5년(무농약·저농약은 3년)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3년간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11년 12월~'12년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2년 1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침을 농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2년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 '12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연장 시 인증기관을 달리할 경우도 즉시 인증기관변경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불금 신청기관에 제출하도록 공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12. 3. 1 ~ 3. 31,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 30까지/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5. 10까지)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등을검토
 -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서 상의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증서 발급처리기간(약 1~2달) 등을 감안하여 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1.12월~ '12.3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 업 신 청	(3. 1~3. 31)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 보고	(4. 1~5. 10)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0~5. 20)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수산식품부, 5. 2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 행 점 검	(5. 20~10. 31)	·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6. 15까지) ·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
⑥ 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15)	·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16~12.31)	·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11.16~12월)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지급기간 초과, 농가당 지급한도, 논·밭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 직불금 소요액 지급 요청(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11.15)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사업통합 시스템(Agrix)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

- 사후관리 등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적정처리

《제재》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실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
$$(\text{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text{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times 100$$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만족도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서면 조사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3.3.1~3.31)

☐선정 ☐변경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택전화(휴대전화)			
단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 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종류	품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여부 (○, ×)	재배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 선정, ☐변경)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1.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2.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3.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 품목명 기재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illegible]

※ 1ha = 10,000m²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1.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명(법인명)			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2. 농업인별 명세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대상농지				보조금 예상액 (원)
					인증 종류	재배 품목	재배 면적 (㎡)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여부 (○, ×)	
※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12 년중 인증이 만료예정인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 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당초 사업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휴대전화)				
신고인 (단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 수		명		
당초 사업대상자 (단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 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지현황									변경일자
인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공부상)	재배품목			
합계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가 ()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승계된 인증서 등 관련서류									수수료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신고내역

【 성명 : 】

[illegible]

※ 1ha = 10,000m²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인증기관 변경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단 체		단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단체주소				단 체 전 화 (대표)							
						Fax							
		대표자명				대 표 자 주 민 번 호							
		설 립 일		년 월 일		대 표 자 연 락 처							
		대표자 E-Mail				구성원 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기관	인증 번호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 목 (공부상)	쌀소득등 보조금제 대상여부 (O,X)	면 적 (㎡)	과거 지급 현황 (회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변경													
본인(단체)의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대상 필지의 인증기관이 변경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Agrix에 기재할 양식, 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호, m², 천원)

시·군		합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m²

2. 품목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호, m², 천원)

시·군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m²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무소장
민간인증기관의 장

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실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 번	면 적 (㎡)	지 목 (공부상)	재배 품목

※ 1ha = 10,000㎡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결과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귀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 번	면 적 (㎡)	지 목 (공부상)	

※ 1ha = 10,00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무소장 ⑨

민 간 인 증 기 관 의 장 ⑨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 소요예산액

1. 인증단계별

(단위: 호, m², 천원)

시·군		합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m²

2. 품목별

(단위: 호, m², 천원)

시·군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m²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원)

시·군·별	배정액	지 급 액			미지급액
		계	논 부문	밭 부문	
합계					
○○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필지, ha)

시·군·별	구분	계 획			집행실적			미집행실적							
								소 계		인증취소		사업포기		기 타	
		농가	필지	면적	농가	필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별 집행실적

(단위 : 호, ha, 천원)

시·군별	구 분	합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〇〇	계												
	논												
	밭												
〇〇	계												
	논												
	밭												

※ 1ha = 10,000m²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 작물별 집행실적

(단위 : 호, ha, 천원)

시·군별	구분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실			기 타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〇〇	계															
	논															
	밭															
〇〇	계															
	논															
	밭															

※ 1ha = 10,000m²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9]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유희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녹비작물(綠肥作物)이란 화학비료 대체 또는 절약을 위해 꽃피는 시기에 생체(生體)로 농경지에 넣어주면 서서히 분해되면서 녹아 나온 양분이 농작물에 비료로 이용되고, 분해가 덜된 녹비 식물체 조직은 유기물로 남아 지력을 보강해 주는 일종의 비료식물을 말한다.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제1항,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농경지내 유기물함량을 3.0%까지 확대
- '15년까지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200천ha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녹비작물 실 재배면적(천ha)	110	-	108	103	매년 3월	$\Sigma(\text{품목별종자과종량} / \text{단위면적당 과종량})$
▪ 농경지내 유기물 함량 증가량(g/kg)	0.45	-	-	-	매년 5월	당년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전년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97,130	30,076	24,400	26,000	90,000
- 보 조	48,565	15,038	12,200	10,400	36,000
- 용 자	-	-	-	-	-
- 지방비	48,565	15,038	12,200	15,600	36,000
- 자부담	-	-	-	-	18,000

* '08년까지 균특회계, '09년부터 농특회계 지원/ '13년이후 금액은 '13~'15년까지 합계 금액임

○ '12 전남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국비(40%)	지방비(60%)
50,733ha	10,991	4,396	6,595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유희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다만,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단지)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 추가적으로, 상기 우선순위에서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재배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3. 지원대상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립손클로버, 들묵새 등 5개 품목으로
녹비효과가 있는 지자체 수요 녹비용 작물 종자
- * 클로버는 타 품종보다 녹비·경관 효과가 우수하고 지역 적응성이 높은 크립손클로버로
한정하고, 들묵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상품목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구입한 녹비용 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
는데 소요되는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국비 40%, 지방비 60%)
- 지원기준 및 예정공급단가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kg/ha, 호밀 160kg/ha, 들묵새 20kg/ha, 크립손클로버 25kg/ha
 - 품목별 공급단가는 종자 공급 완료 후 제반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별도 통보 예정(사업년도 11월중)
 - * 다만, 녹비작물 국산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녹비(청)보리는 종자 생산업체
와의 계약재배 수매가를 반영하여 구매·보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를 지원한다.
 -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농가
자부담)
- 녹비작물별 종자 최소 신청물량은 농가(법인)당 20kg 이상으로 한다.
(다만, 들묵새는 1kg 이상으로 한다.)
- 보증종자를 우선적으로 구매(사업계획물량의 50% 이상)하고, 발아율
80%이상 녹비종자 대상 인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경관보전직불제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요조사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1월중)
 - 수요조사는 농가(법인) 현황(성명, 주소, 전화), 경작대상농지 현황(지번, 지목, 지적), 친환경·단지 여부(유기·무농약·저농약, 광역·지구, 일반), 초종별 파종신청면적(m²), 파종예정시기 등을 파악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중)
-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중)

시·도(지자체)

- 수요조사(농가신청서) 양식 : “Ⅳ. 1. 조사양식 참조”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수요조사계획을 참고하여 시군구를 통해 농가(법인)의 사업참여 수요조사 실시 후 보고(사업전년도 12월초) :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구에서는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사업전년도 12월초) : 【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일선농협조합과 협조하여 수요조사 후 해당 시군구에 보고
 -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친환경농가>친환경농업단지>기타)를 고려하여 친환경 농가·단지 및 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당초 신청농가중 적정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는 차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유념)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사업전년도 12월초)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비종자 초종간 공급비율을 조정한 최종 사업량을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녹비종자 초종간 사업량은 가급적 최종예산 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최종 조정 사업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최종 조정 사업량을 바탕으로 시군구에 사업량 조정 및 사업대상자 확정 지시(사업년도 1월중)
- 각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읍면별·농가별 최종 사업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조합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에 통보(사업년도 1~2월중)
 - * 각 시군구는 읍면별·농가별 최종 사업량이 농협전산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해당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에 통보 철저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최종 사업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 년도 1월중)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각 시군구의 읍면별·농가별 최종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농협 일선 조합은 조합별 대상농가 해당물량을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사업년도 2~3월중)
 - * 각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은 해당 시군구에서 통보한 최종 사업량이 농협전산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등록결과는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로부터 보고된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을 검토하여 농협중앙회에 승인여부 결정 통보 및 지자체에 계획(자금배정계획 포함) 통보(사업년도 1월중)

시·도(지자체)

- 시군구에 당해연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초종별 공급량, 공급일정,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등), 해당 녹비용 작물 효용성·재배방법 등을 농가대상으로 홍보·교육·지도토록 지시(사업년도 1~2월중)
- 시군구는 농진청(기술센터),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홍보·교육·지도 실시(연중)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지역의 녹비사업용 녹비(청)보리 종자 생산현황 점검 및 관리 협조

농촌진흥청

- 지자체,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파종 및 월동관리요령 교육 및 홍보
 -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지자체,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적기수확 및 퇴액비 시용방법 등 기술지도
 - 녹비 시용량에 따른 적정시비 지도
- 녹비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홍보 확대
 - 녹비작물 재배 시범포 운영 및 재배기술 보급
 - 녹비작물 재배 필요성 및 효과 홍보(영농교육, 리플릿, 언론보도 등 활용)
- 녹비작물 품종 개발 및 국산종자 재배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행정처리
- 토양 양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녹비작물과 유기질비료의 합리적 혼용 방안(혼용방법, 시용기준량 등) 연구 및 보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국내외 조사를 통한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 및 보고
(사업 년도 1월중)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초종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50% 이상) 확보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 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특히, 초종별 보증종자 50%이상 확보계획, 수입종자 전량 입찰제 전환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승인 받은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에 따라 사업 실시 및 사업추진현황 수시 보고(사업 년도 2~11월중)
 - 녹비(청)보리 종자 계약생산 지정업체를 통한 생육상황 수시 보고(3월 이후 월1회) 등 녹비(청)보리 종자 생산·공급 관리 철저
 - 농가가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초종별 공급 적기 추진(농가단위 공급은 사업년도 10.20일까지 완료)
 - * 초종별 공급기간
 - 헤어리베치,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 8. 20 ~ 9. 10
 - 녹비보리, 호밀 : 9. 10 ~ 10. 20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개산금(또는 선금) 교부가 필요하거나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배정계획 또는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고 연 2회(6월, 11월) 자금 교부(당월 10일까지)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녹비작물 종자별 공급단가 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사업년도 11월중)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농협중앙회(시군지부)로부터 녹비종자 도입·공급 계획 또는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개산급 포함)를 제출받아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자금배정계획을 고려하여 연 2회(5월, 10월) 농림수산식품부(시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당월 20일까지)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연 2회(6월, 11월)에 걸쳐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당월 15일까지)
- 시군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사업실적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나, 6월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시군별 집행계획 총사업비의 70% 상당액)으로 지급
 - 시군구는 재원별 지원비율에 맞춰 기 교부된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 연 2회(6월, 11월) 자금 교부(당월 20일까지)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연중)
- 시도(시군구)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신청된 녹비종자 도입·공급에 필요한 자금(개산급 포함)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지방비 확보 및 자금배정 철저(연중)
- 시군구는 농협중앙회(시군지부)로부터 조합별 녹비종자 최종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녹비종자 확정 공급가격이 반영된 사업비 집행실적을 검토한 후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 정산(사업년도 11월중)
- 시도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당해 년도 사업량 확정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과거 녹비종자 도입실적(자금집행 시기 및 규모) 및 녹비작물별 적정 공급시기를 고려하여 시도별/월별/작물별 녹비종자 도입·공급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사업 년도 1월)
- 농협중앙회(시군지부)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의 도입여건과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녹비종자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매월 소요되는 자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자 도입·공급 계획 또는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개산급 포함)를 작성하여 연 2회(5월, 10월)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요청(당월 15일까지)
 - 다만, 5월에 요청할 수 있는 보조금액(개산급)은 시군구별 총사업비(계획)의 70%로 한다.
 - * 자금배정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종자공급이 완료되면 물자대, 수입 부대경비 등 수입원가 항목을 고려하여 녹비종자별 최종 공급가격 책정 보고(사업년도 10월중)
- 농협중앙회(시군지부)는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에는 농협전산시스템의 녹비종자 공급내역(녹비종자공급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 지급신청(사업 년도 11월중)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적기에 해당 녹비용 작물 종자가 농가에 공급되는지(물량확보 및 공급상황, 초종별 농가 공급시기 등)에 대해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조합(NH무역 포함)에 대하여 연 2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점검완료 후 5일 이내)
- 필요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국 조사를 통해 정선, 소독 및 선적사항 등을 점검하여 적기에 안정적 공급토록 조치하고 그 점검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점검완료 후 5일 이내)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상·하반기 연 2회(4월, 12월) 일제점검(정기) 계획을 수립하여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현황 및 자금 집행사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점검완료 후 5일 이내)
 - 농업인의 실제 녹비작물 재배여부 확인 및 생육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등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일제점검 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타 사업 담당자와 교차점검 또는 합동 점검 실시
- 시군구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IV. 1. 조사양식 참조”)를 바탕으로 농가별 대상필지(지목, 친환경·단지 여부 등), 재배품목, 파종면적, 파종 시기, 녹비작물 생육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대장(전자파일 가능)으로 관리
 - 사업대상필지(농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중복 지원방지 노력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시군지부, NH무역)에 대해 녹비용작물 종자 구매·공급 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시군지부, NH무역)
 - 점검시기 : 연 2회(4월, 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녹비용 작물종자 구매·공급·파종 상황, 타 사업 중복 지원 여부 등
- 타 농림사업(경관보전직불제 등)과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점검시 타 사업(경관보전직불제 등) 담당자와 교차점검 또는 합동 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녹비용 작물 종자 구매·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종자가 부당하게 구매·공급된 경우에는 자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현지점검결과 공급받은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부에 판매하거나, 파종 후 생육 전에 벼짚과 같이 소각하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부터 3년간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녹비종자 공급시기에 적정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I)인 녹비작물 실 재배면적은 녹비종자를 최종 공급한 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일제점검(4월, 12월) 및 정산(12~2월) 보고 결과를 통해 검증된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
- 사업성과지표(II)인 농경지내 유기물함량 증가량은 사업시행 당년도(4~5월)와 익년도(4~5월)를 기준으로 '녹비 시용 전·후 필지의 논·밭·과수원 토양'을 표본 조사하여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유기물함량 증가량(g/kg) = 익년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당년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녹비시용 필지의 논·밭·과수원 토양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시행 익년도 5월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 토양유기물함량 측정 대상은 시도별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하되, 시군구별 지목별(논·밭·과수원) 2필지 이상 표본필지(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지 우선)를 선정하여 측정
-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12년도 녹비사업 성과(토양유기물함량) 측정('13년도 4~5월)을 위해서는 반드시 '12년도 사업대상필지 중 표본필지를 우선 선정하여 '12년도 4~5월 중 토양유기물함량(시행 전)과 '13년도 4~5월 중 토양유기물함량(시행 후)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협중앙회는 농가, 일선농협(NH무역 포함) 등 사업관련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당해 추진사업(녹비종자 생산·구매·공급) 평가 및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사업익년도 2월중)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유공자를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서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연말 장관표창 수여
 - 대상 :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자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유공이 있는 자

《환 류》

- 녹비종자 생산·구매·공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익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
-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시 예산총괄부서는 차년도 예산확대 우선 반영 검토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12년 11월중 각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질 수요조사 실시
 - 각 읍면동 담당자는 일선농협조합과 협조하여 서면으로 수요조사 (붙임 1 참조)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해당 시군구는 해당 시도에 보고
 - 각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수요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리(별지 1호 서식 참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 추진일정 : 수요조사 실시(시·군·구, '12.12.3일한) → 수요조사 결과 보고(시·도, 12.7일한)→ '12년도 녹비사업량 확정(농식품부, '12.12~'13.1월중)

<지자체(시군구) 녹비종자 수요조사 서식>

녹비작물 종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 (남 / 여)					E-mail			
신청농지(필지)							녹비작물 종자 신청		
읍면동	라 통	지 번	지 목	지 적 (㎡)	친환경 구분	단 지 구 분	신청 품목	신청 면적 (㎡)	파종 시기 (월)
			1. 논 2. 밭 3. 과수원		1. 유기농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기타	1. 광역 친환경단지 2. 친환경 농업지구 3. 기타			
상기와 같이 녹비작물 종자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3년도부터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과 통합 및 자부담 부과(5~20%) 계획에 따라 녹비효과 등 경제성, 농가 수요, 국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비작물 대상품목을 제한적으로 운영 예정
- 공급받은 녹비용 작물종자 파종 및 관리가 불량한 농가, 걱정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 등은 '13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시도별 수요조사 보고 서식(엑셀파일)

< 총괄 >

시군	농가수	녹비용 작물 종자 종류												비고
		합 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목새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계														
○○시														
...														

< 친환경농가 : 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인증농가, 친환경단지내 인증농가 포함 >

시군	농가수	녹비용 작물 종자 종류												비고
		합 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목새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계														
○○시														
...														

< 친환경농업단지(일반) : 단지내 일반농가, 단지내 인증농가는 친환경농가에 포함>

시군	농가수	녹비용 작물 종자 종류												비고
		합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목새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계														
○○시														
...														

< 일반 : 친환경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농가>

시군	농가수	녹비용 작물 종자 종류												비고
		합 계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목새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면적 (ha)	물량 (톤)	
계														
○○시														
...														

<2012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지원내용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 지원
 - *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농가 자부담)

□ 사업대상자

-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에게 우선 지원
 - *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 지원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등 녹비효과가 있는 녹비용 작물 종자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26,000백만 원 (국비 10,400, 지방비 15,600)
- 지원조건 : 보조 100%(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신청기관 및 기간 : 시군구(읍면동), '11.11.1~'11.12.2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친환경농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2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무농약 이상)을 12%로 확대(주지표)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부지표)
 - '99~'03년 사용량(375kg/ha) 대비 '13년(225)까지 사용량 40% 감축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9	'10	'11.P		
▪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 주지표) * 무농약 이상	7.0	4.9	6.4	6.7	매년 3월	전체 농산물생산량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무농약 이상
▪ 화학비료 사용량 (kg/ha, 부지표)	236	267	232	251	매년3월	경지이용면적당 화학비료사용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 물량	9,950	2,500	2,500	2,700	3,000
- 보조(국고)	442,550	145,000	125,000	135,000	150,000

- '12 전남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국비(100%)	지방비
526,800톤	26,340	26,340	

* 2011년부터 지방비 600원 / 20kg 정액의무 부담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부여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대상 농가 필지는 후순위 부여
- *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농업 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우선 지원
- * 농업 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농가 자부담)

3. 지원 대상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업체 1개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부숙시설)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만 함)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 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 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 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지원 단가
 - 국고(정액지원)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원/20kg)	1,200	1,000	700
	퇴비(원/20kg)	1,000	800	500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액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취지와 부합하여야 함).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 추가된 것은 의무부담에서 제외.
- * 품질등급이 좋은 퇴비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퇴비에 대한 우대지원 금지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익년도 사업계획을 농촌진흥청, 시·도, 농협중앙회 및 읍면초조합 중앙회에 통보 : 사업전년도 12월상순
- 사업계획에는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예산 배정방법, 사업추진 체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단가 등을 명시

농촌진흥청

- 퇴비의 품질등급 평가기준을 퇴비관련 단체, 농협중앙회에 통보 : 사업전년도 11월말

- 업체별로 등급을 평가한 퇴비의 종류 및 품질등급 현황을 농림수산식부,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보고) : 사업전년도 11월말
- * 추가로 등급을 확정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는 매월말에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보고)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에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이하 “시·군지부”라 함)와 엽연초조합에 통보 : 사업전년도 12월중순까지
 - 사업계획에는 사업비(자부담액 제외), 지원대상, 지원단가, 농가신청 방법,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

농협중앙회(조합)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 포함)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중과 품질등급 생산비중·제형·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참여 공급업체 선정, 농가 신청(신청서식 포함) 등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엽연초조합중앙회의 참여 공급업체는 자회사 퇴비업체에 한함)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지역 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신청내역을 시·군지부에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 조합에서는 농가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신청자 관내 읍·면·동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가 누락·중복·확대 신청 여부를 확인한 이후, 그 결과를 조속히 조합에 통보
 - 조합에서는 읍·면·동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을 최종 확정하여 시·군지부에 제출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품목농협은 신청내역을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군지부에 제출하고, 엽연초조합은 신청내역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지부는 각 조합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1월 10일까지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구입희망 업체, 비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한함), 사용시기(해당 월), 수량을 조합에 신청(신청서식은 조합에 비치한 것을 사용)
 - 사업신청 시기 : 사업전년도 11월하순~12월하순
- 신청방법은 농협(엽연초 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에서는 시·군지부와 엽연초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사업연도 1월중순까지 농가별 지원대상 비종별(등급 포함) 수량 및 지원금액을 확정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하고 시·도에 보고 : 【별지 제2호서식】
 - 농가당 지원기준은 작물별 퇴구비의 토양유기물 시비추천기준(농진청에서 발행한 작물별 시비처방기준)과 신청면적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내역 취합결과 보조금 소요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원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타지역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지방비를 차등 지원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비료에 대한 지원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
- *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우선지원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집계하여 농림수산식품 부에 보고 : 사업연도 1월말까지

농협중앙회(조합)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농업인에게 공지 및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 또는 사업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지부에서 조합별로 일괄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실제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종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 또는 읍연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 제 외 대 상 >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별표 1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퇴비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등급평가 판정을 받지 않은 업체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부숙도 기준에 적합)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퇴비로서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 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퇴비

-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는 보조대상 참여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보조대상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읍연초조합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산물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

* 농가당 300포(20kg기준) 이상 또는 3등급 부산물비료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

- 공급업체가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완료 후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시 계량 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내에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구획·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 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함

- * 자체계량기는 연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 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퇴비공급 시 유의사항
 - 퇴비는 포장지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부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하고,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기준으로 구분·산정
 - * 농협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부산물비료업체는 판매대장과 원료수불대장을 반드시 의무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대장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작성)
- 유기질비료 OEM 공급시 유의사항
 -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한 책임은 생산업자 및 판매자 모두에게 물어야 한다.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별 분기별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시·도별 배정계획 시달)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배정 및 송금

- 시·군·구는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매 분기 익월 말까지 농협 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조합별로 보조금 지급
- 각 시·도는 9월말 기준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시·군·구간 사업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조치하고,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배 요청
 -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예산의 전배로 사업량이 증가되는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 따라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읍면초 조합에 통보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 내역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읍면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 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비료공급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및 읍면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 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주지표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 실적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친환경농산물생산량/전체 농산물생산량)×100
- 사업성과 부지표인 화학비료 사용량은 한국비료공업협회를 통해 산출된 화학비료 출하(사용)량과 경지이용면적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 화학비료사용량(kg/ha) = 화학비료 총 출하량 / 경지이용면적

7.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1) 비료검사기관(농촌진흥청, 시장·군수·구청장) 품질검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3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군·구에서 생산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정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재)실용화재단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한 농촌진흥청 및 시·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및 시·군·구는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 농협중앙회에 통보 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등을 통보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 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부숙도 및 품질등급 불이행 등)를 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농협중앙회 자체 품질검사

- 농협중앙회는 비료 구매자로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되는 비료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중단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표시사항, 서류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품질검사 방법에 준하여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농협중앙회에 반드시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8. 행정사항

가. 기관별 보고사항

(1) 시·도

- 시·군별 지원계획(선정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1월말 까지
- 예산 전배 요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10. 31까지
-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조금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 7. 31까지, 하반기 : 익년 1. 31까지

(2) 농협중앙회 및 읍연초조합중앙회

- 보조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 : 사업개시 전년말까지
- 공급사업 추진계획 보고 : 계획수립 즉시
- 공급실적(농협 시·군지부는 각 시·군·구 보고 포함) 보고
 - 상반기 : 7. 20까지, 하반기 : 익년 1. 20까지

(3)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자체검사 및 시·군·구청에서 검사실적(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검사) 결과(검사업체 수, 위반업체별 위반내역 등)를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보고(통보)
 - 시·도에서는 통보 받은 실적은 시·군·구에 통보

나. 기타사항

- 공급업체 선정, 공급계약 체결, 품질검사 방법, 및 판매관리 실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 중앙회장 및 읍연초 조합 중앙회장이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공급업체 선정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신규로 선정할 경우에만 한함)
-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은 공급업체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하고, 시·도 및 농촌진흥청에 통보
 - 공급업체별 공급비중, 품질등급, 판매가격, 생산능력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 농촌진흥청장,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은 품질검사 결과 비료 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농협 등 비료 공급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별표 1]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의 제2호, 제6호, 제14호, 제15호,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중단 및 회수조치를 하고 해당업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각 시·군·구에서는 불량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퇴비가 농가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공급업체의 제조원료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등록된 원료와 실제 사용하는 원료와 일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편법공급 및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공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2013년부터 사업 참여 대상자 중 생산업체 기준 제한 계획 >

- 퇴비 2개 비중 생산업체의 경우 1개 비중으로만 참여할 수 있음

< 2013년부터 등급간 지원 단가 차액 확대지원 계획 >

- 1등급과 2등급간 차액 : (2012) 200원 / 20kg → (2013) 400 / 20kg
- 2등급과 3등급간 차액 : (2012) 300원 / 20kg → (2013) 400 / 20kg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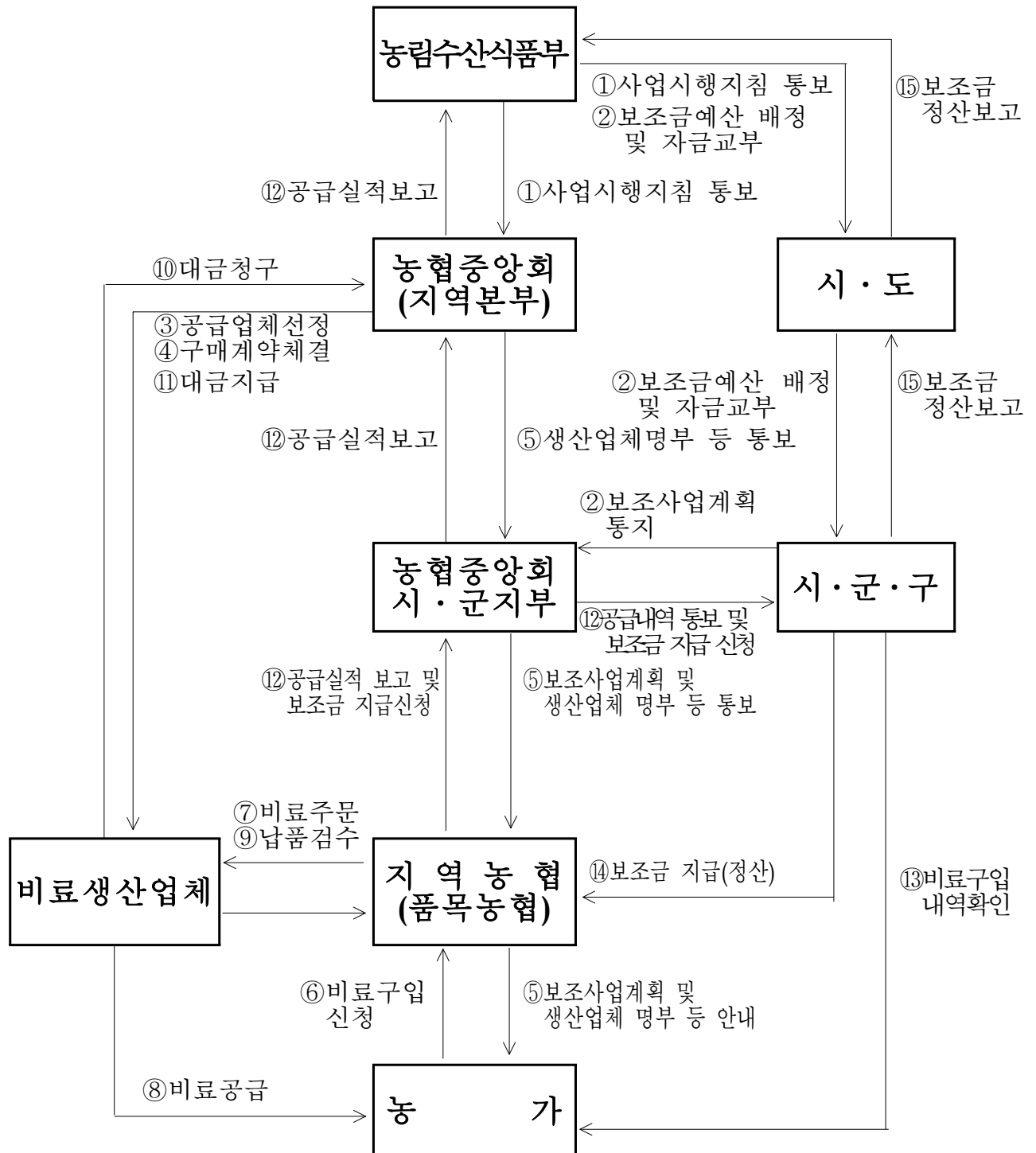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영업정지 1월 : 1년 - 영업정지 2월 : 2년 - 영업정지 3월 : 3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미달	- 경고: 경고 영업정지 1월: 1년 영업정지 2월 이상 : 2년	"
3-2 기타규격(수분, 염분, 유기물대 질소비) 기준 미달	- 경고: 경고 영업정지 1월: 6개월 영업정지 2월 이상 : 1년	
4.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1년 - 2회 : 2년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용한 경우 - 위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사용한 경우	- 2년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기타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 참여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퇴비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퇴비를 보관 또는 공급한 때(퇴비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밭효 및 부숙) 에서 생산한 경우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2년 - 6개월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 - 품질평가 결과, 등급의 최저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등급평가 결과, 2개 등급(1등급 →3등급) 격하할 경우	- 2년 - 1개 등급 격하시, 표시 등급의 최저점에서 1점당 10% 납품물량 공급 감축 - 2년	
14. 1등급톱밥 이외의 톱밥(MDF 등 혼입 톱밥)을 퇴비공장에서 보관 또는 원료로 사용한 경우	- 2년	
15. 퇴비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퇴비·퇴비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6. 판매대장, 원료수불대장 - 동 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동 대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동 대장을 성실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6개월, 2회 : 1년	
17. 무포장(별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8.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 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9. 퇴비·가축분퇴비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 두 가지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퇴비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가지 퇴비에 모두 적용함
- ※ 농촌진흥청 최초 통보한 위반내용 보다 지자체의 행정처분(2개월 이내 처리) 결과가 완화(경감)되었을 때는 당초 제한조치 기간을 50% 경감 적용

[별표2]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체계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읍면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읍면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구입 신청내역

○○시(군)지부

(단위 : 포)

조 합 명	구 입 회 망 수 량									
	계	퇴비			가축분퇴비			혼합	혼합	유기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유박	유기질	복합
계										
○○농협										

[별지 제2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시·군

(단위 : 포, 천원)

조합명	구분	계	일반퇴비			가축분퇴비			혼합	혼합	유기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유박	유기질	복합
계	사업량										
	사업비										
○○농협	사업량										
	사업비										

주)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합한 총 지원금액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유기질비료 예산전배 요청

○○시·도

(단위 : 톤, 천원)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량	사업비(국고)	사업량	사업비(국고)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물량 및 금액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질비료 추진실적(반기보)

○○시·도

(단위 : 톤, 천원, %)

시·군별	사업계획(A)		추진실적(B)				집행율(B/A)	
			당 기		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								
○○군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지원계획으로 확정된 물량·금액과 실제 지원한 물량·금액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유기질비료 보조금 집행실적

○○시·도

(단위 : 원)

시·군별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계								
○○시								
○○군								

- 주) 1. 사업계획의 국고는 예산배정액을 기재
 2.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예산액중 실제 자금교부액을 기재

<2012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유기질비료 지원

☐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예산(사업물량) : 135,000백만원(2,700천톤)

☐ 지원조건 : 국고(정액지원)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원/20kg)	1,200	1,000	700
	퇴비(원/20kg)	1,000	800	500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액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취지와 부합하여야 함).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 추가된 것은 의무 부담에서 제외.

- * 품질등급이 좋은 퇴비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퇴비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농협(신청기간 : 사업 전년도 11월 하순~12월 하순)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P		
▪ 논토양의 유효 규산함량(ppm)	157	-	-	-	매년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 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 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 밭 토양의 토양 산도(pH)	6.5	-	-	-	매년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 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 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 '09~'11년까지는 농과원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 평균치로 산출하였으나, '12년부터 시용필지에 대한 다음 년도 검정결과로 지표 변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82,674	110,141	111,346	106,759	106,759
국 고	65,139	88,113	77,823	74,731	74,731
지방비	17,535	22,028	33,523	32,028	32,028
물 량	599	826	823	799	799
제주도(국고)	(1,739)	(1,700)	(2,211)	(2,900)	(2,900)
제주도(지방비)	(435)	(425)	(948)	(1,243)	(1,243)
제주도(물량)	(15)	(15)	(23)	(31)	(31)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 '12 전남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자담
145,400톤	19,623	13,736	1,962	3,925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우선 지원
 -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농가 자부담)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역농협 또는 시비(施肥)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 토양검정 대상은 토양개량제 살포한 농경지이며 토양 검정시기는 살포한 다음년도에 실시('12년부터 적용)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2월)

시·도(지자체)

- 읍·면·동에서는 3년1주기 사업시행 전년도 1~4월중에 농가 또는 마을이장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제출받아 Agrix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3년 1주기 공급대상지역 선정하고 공급주기에 포함된 년도의 사업시행 전년도 3~4월중에는 변동사항을 접수받아 익년도 사업물량을 조정

농 가

- 농가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가 사업신청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0월)
- 예산(안)을 반영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전년도 10월)
- * 각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우선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 시·군·구에서는 예산(안) 및 Agrix를 통한 농가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공급대상물량 및 금액 확정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 또는 우수단체 표준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구매 및 공급계약 결과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통보
- 각 시·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시기를 제출받아 월별 사업비 배정 계획 마련(당해년 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시기별 공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 시·군·구에서는 Agrix 신청에 따른 읍·면·동별 공급계획 및 농가별 공급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통보(별지 제8호 서식)
- 읍·면·동에서는 Agrix를 통한 신청결과를 반영한 농가별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농가 공급
- 읍·면·동장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7호 서식)」에 공급농가별로 정리된 자료를 농가공급 이전에 마을이장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군지부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급확인서(농협중앙회장이 마련)를 받아 지역 농협장에게 제출
 -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인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톤백 공급 시에는 자체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자체계량기는 연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7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계획을 마련하고,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사업비 배정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포함)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주관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추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 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미살포 및 방치한 농가는 다음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시·도지사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살포 실적을 월별로 파악하여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미살포 방치물량은 없는지 확인
 - 읍·면·동장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7호서식)을 지역농협 및 마을이장에게 먼저 제공하고, 지역농협 및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농가는 살포토록 조치
 - 미살포 농가는 4/4분기에 모두 살포하도록 특별한 대책 추진(살포 대행 등)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살포확인, 살포지원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1) 비료검사기관(농촌진흥청, 시장·군수·구청장) 품질검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2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군·구에서 생산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정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재)실용화재단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한 농촌진흥청 및 시·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및 시·군·구는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등을 통보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농협중앙회 자체 품질검사

- 농협중앙회는 비료 구매자로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납품되는 비료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중단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표시사항, 서류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품질검사 방법에 준하여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농협중앙회에 반드시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3]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 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7.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단계

《성과측정》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년도 시용필지에 대하여 토양검정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로 측정
 - * '12년도는 '11년도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시·군·구별로 3%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토양검정결과를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 농협중앙회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 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3]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영업정지 1월 : 1년 - 영업정지 2월 : 2년 - 영업정지 3월 : 3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미달	- 경고: 경고 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이상 : 2년	"
3-2 기타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기준미달	- 경고: 경고 영업정지 1월 : 6개월 영업정지 2월 이상 : 1년	
4. 입도규격(2.0~5.0mm 90% 이상) 기준 미달	- 1년	
5.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9.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10.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1.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가지 이상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가지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신청지역 : ○○시·군·구 ○○읍·면·동 ○○마을

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 (남/여)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한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석회고토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 (남/여)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 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날인)

음·면·동장 귀 하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남/여)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 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날인)

음·면·동·장 귀 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토양개량제 인수 및 살포 집계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 (월)⑦	농가 서명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서명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 (월)⑦	농가 서명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포)	서명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 대장으로 확인
- ② 신청 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 ③ 신청 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 ⑤ 신청량 : $(③ \times ④) \div 1,000$
-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 ⑧ 농가 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 ⑨ 살포확인 : 읍·면·동장이 지역조합 또는 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 확인
(서명은 조합직원 또는 이장)

[별지 제8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군·구(시·군→시·도)

<규산질 비료>

구분	지적 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m ²)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읍·면·동									
합 계									

<석회질 비료>

구분	지적 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m ²)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읍·면·동									
합 계									

【작성 요령】

- ① 지적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 ② 공급대상(면적, 수량) : 읍·면·동별 3년1주기(3년물량) 공급할 총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 ③ 당해연도 공급(면적, 수량) : 읍·면·동별 당해연도(1년)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 ④ 기 공급(면적, 수량) : 읍·면·동별 3년1주기로 기 공급한 면적 및 수량
- ⑤ 미공급(면적, 수량) : ②공급대상 - (③당해연도 공급 + 기 공급④)

[별지 제9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도(시·도→농림수산식품부)

<규산질 비료>

구분	지적 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m ²)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사·군·구									
합 계									

<석회질 비료>

구분	지적 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m ²)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면적(m ²)	수량(kg)
사·군·구									
합 계									

【작성 요령】

- ① 지적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 ② 공급대상(면적, 수량) : 시·군·구별 3년1주기(3년물량) 공급할 총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 ③ 당해연도 공급(면적, 수량) : 시·군·구별 당해연도(1년)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 ④ 기 공급(면적, 수량) : 시·군·구별 3년1주기로 기 공급한 면적 및 수량
- ⑤ 미공급(면적, 수량) : ②공급대상 - (③당해연도 공급 + 기 공급④)

[별지 제10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분기별)

○○시·도(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규산질 비료>

(단위 : 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 군 구	공 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시 군 구	공 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합계	공 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석회질 비료>

(단위 : 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 군 구	공 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시 군 구	공 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합계	공 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작성 요령】

- ① 연간 공급실적과 살포실적의 계는 같아야 함(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
- ② 석회질비료는 석회고토 및 패화석임
- ③ 공급 및 살포 실적은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보고

<2012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토양개량제 지원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71,831백만원/768천톤(규산 45,796/503, 석회 26,035/264)

* 제주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국고 2,900백만원(31천톤) 별도 수립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환경 유지·보전
- 친환경농업 실천을 단지별로 조직화하여 안정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소비수요 대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계획』에 의거 2014년까지 경지면적 대비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45% 목표달성
-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유기농 확대를 위해 유기농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저농약 지원 폐지
-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단지별 책임운영모델 구축 및 공동영농단 결성·운영으로 농작업 공동 지원
- 벼를 비롯하여 소비수요가 많고 소득효과가 큰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으로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고 축산과 연계 농업환경오염원 경감
 - 일반농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원순환농업(Recycling)의 보급·확산

3. 사업지원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4. 사업지원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사업비 (백만원)		
		계(100%)	도 비(30%)	시군비(70%)
친환경농업단지조성	40,000ha	42,000	12,600	29,400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2.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및 사업주체와 협약체결 : '12. 1~2월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12. 2~12월
- 사업비 정산 및 성과 분석 : '13. 1~2월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임산물 등 인증가능 작물
- 대상지역
 - 2011년까지 친환경농업단지로 이미 조성된 지역
 - 신규조성 단지는 마을 및 들녘단위로 단지화·규모화가 가능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
 - 단지규모는 최소 10ha 이상으로 집단화(지역여건 및 재배작물에 따라 시군 자율적용)
- 지원대상자
 - 지속단지 : 2011년까지 친환경농업단지에 참여, 인증 받은 농가(경작지)로 2012년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농가
 - 신규단지 : 무농약 이상 인증 획득이 가능한 단지
- 협약체결 및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농가를 단지대표로 선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대표는 반드시 시장·군수와 “친환경농업 실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 <별표 1>
 - 마을 또는 단지단위로 규모화하고 “친환경농업 공동영농단 운영규약(안)”을 참고 공동영농단을 구성하여 방제작업 등 주요 농작업 지원 <별표 2>
 - 단지대표는 참여농가들과 협의하여 책임운영모델 구축 <별표 3>
-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농업 이미지 실추 등 불성실 농가 인증취소 및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 (단, 보조금관련 부정행위시 지원금회수 및 모든 농업보조사업 배제)

라.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단지 대표와 단지조성, 공동영농단 구성 등에 대한 사전협약 체결('12. 2월말까지) 및 책임운영모델 구축
- 친환경 농기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인증단계별 사업비 지원

〈 인증단계별 지원단가(ha) 〉

- 유기농 확대 실천을 위해 유기인증 지원 확대, 저농약 지원 폐지 -
 - ◇ 유기인증 농산물 : 150만원 이하
 - ◇ 무농약인증 농산물 : 100만원 이하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무농약 이상 인증단계 상향을 위해 지원단가를 차등적용하고 지원 기간은 시군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추진
- 사업비는 시군 실정에 따라 인증단계별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탄력적 지원
 - 지원규모(면적)는 시군별 사업계획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확대 추진
 - 단지 지원사업비 내에서 생산비절감 농기자재 시범사업 추진 가능
- 사업비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새끼우렁이, 미생물제제, 해충 포획기 등 농기자재 구입·제조 및 공동작업비, 도우미 활동비, 컨설팅, 교육·홍보비 등으로 집행(친환경농업 추진에 따른 직접지원 비용임)

마. 사용가능 농자재

○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 자재(농촌진흥청 목록공시 유기농자재)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
 - 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농기자재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시험검증된 농기자재
 - ※ 도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자재 시범포 운영 등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시험 공표(농업기술원)
- 기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허용하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 주요 사용농자재

〈병해충 관리용〉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활성수,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제, 유산균, 담배추출물 등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용〉

- 지렁이분변토,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기자재〉

- 벼농사 잡초방제용 새끼우렁이, 참깨 등과 이에 따른 우렁이 유출방지망, 그물울타리, 과원 및 논두렁 잡초방제용 생분해 논독시트, 화염방사기 등 (새끼우렁이 농법 포장에서는 반드시 물꼬에 유출방지망 설치)
 - 단지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유인포획기, 유아등, 천적 등
 -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친환경농자재로 인정 또는 특허를 받은 포트묘 이앙기용 포트, 미생물배양기, 이온수·산소수·미네랄활성수 제조기 등
- ※ 일반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상토, 육묘상자 등 농기자재는 제외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하고, 제품별로 제시된 소비자가격 이내에서 구매 사용
- 소비자 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 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으로 결정
- 농가에서 자가제조·생산 사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가격 준용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권장

○ 농자재 공동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사용
 - 단지에서 공동구매시는 제품의 효능과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 구입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또는 농가에서 자재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 토록 하여 공급 수수료 등 절감
 - 새끼우렁이는 생물로 원거리 수송시 폐사와 잡초제거 효과가 저하되는 점을 감안 활동이 왕성한 새끼우렁이 공급과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도내 생산업체와 직접계약 도내산 공급
- ※ 새끼우렁이 공급업체에서 농법실천 등 공급 단지별로 사후관리 추진

바.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보급 확대로 저비용 고효율 농법 실천
- 지역별 벼농사 재배여건 등을 고려 새끼우렁이 농법 최대한 확대

〈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기준 〉

- ◇ 10a당 투입량 : 1.2kg(일정규격의 새끼우렁이 1,200마리 내외)
- ◇ 살포시기 : 씨레질 직후 논에 투입시 제초효과 99%
- ◇ 지원단가 : 12,000원/10a(새끼우렁이 kg당 10,000원 기준)
 - 새끼우렁이 대신 불가피하게 중패 이상 우렁이로 공급시는 새끼우렁이 지원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자부담 조치
 - 새끼우렁이는 반드시 kg당 마리수를 정확히 확인 적정밀도(10a당 1,200마리 내외)를 유지하여 제초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

- 단지를 최소 10ha 이상 들녘별로 규모화하여 공동방제 작업 등 추진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실태 점검·진단으로 단지별 조직화 방안 강구
- 단지별 품종단일화 및 실천농법별 육묘에서 재배관리, 농자재 사용시기(기준) 등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체계 정립
 -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가와 연계 선진지 견학, 자문 등으로 실패 최소화
- 무농약농산물 이상 인증농가는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 의무화 추진

사. 홍보 및 판로대책 추진

- 단지별 지역농협,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RPC(미국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로 고정 소비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대책 마련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 개별농가 단위로 판매망을 확보할 농가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등 판매대책 적극 강구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기회 제공으로 친환경농업 이미지 홍보·교육 추진
-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등 가격 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특성 등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추진
- 무농약 이상 인증쌀 택배비 우선지원 및 각종 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6.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12. 2. 28까지(보고서식)

- 단지조성(협약체결) 현황, 공동영농단 결성, 책임운영모델구축 등

나. 사업비 집행

-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점검 확인하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사업완료 즉시 인증 단계별 실적에 의거 사업비 집행
 -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협약을 체결한 단지대표, 운영위원 연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
- 잡초방제에 필요한 새끼우렁이 등 일부자재는 영농초기 공급되는 점을 감안 농업인의 자재대금 상환편익을 위해 단지 참여농가 위임에 의거 공급한 농협 등에 우선 지급(농가에는 위임액 공제금액 지급)

다.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13. 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1. 사업계획서 : 2012. 2. 28까지 제출

○ 단지조성 현황

단지명	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	인증단계
				성 명	전 화		
계							

○ 공동영농단 결성

단지명	대표자	참여 농가	참여 면적(ha)	보유농기계 수					
				계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콤바인	기타
계									

○ 책임운영모델 구축(2012. 3. 31까지)

단 지 명	운영 주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계획(ha)				참 여 농가수	협약내용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 협약내용 : 친환경농산물 벼 등 수매, 단가계약 사항 등을 기재

2.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2013. 2. 28까지

○ 사업비 집행

(단위 : ha, 천원)

단지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자재명	규격	단가	수량	지원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 자재명은 대표 농자재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작성

○ 책임운영모델 구축 운영실적

단지명	운영 주체	품목별	계 획(톤)			실 적(톤)			수매가격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별표 1〉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 ○ 시장·군수

○ ○ ○ 단지(작목반)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I. 약정기한 : 2012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II. 약정내용

제1조 (구성원의 자격)

-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 ② 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책임과 의무)

-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실천

-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다.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벚짖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 ② 사업추진과정에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를 거쳐 가급적 단지별(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단지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단지대표와 합심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 ⑤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는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금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월 일

“갑”	시 장 · 군 수 :	인
“을”	단지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Ⅲ. 협약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적(m ²)	서명(인)
계						

*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 단지별로 협약대상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서 작성

〈별표 2〉

친환경농업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영농단 결성)

- ① 공동영농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및 단지 또는 작목반단위로 결성한다.
- ② 공동영농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5~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 (명칭 및 대표 선정)

-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공동영농단”이라고 칭한다.
- ② 공동영농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 ③ 단지대표는 공동영농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영농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 (운영)

-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 ③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 (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 ① 공동영농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개별농가 등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 (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영농단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영농단 구성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유 농기계	서명(인)	비고
계					

※ 본 규약은 준칙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영농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별표 3〉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자재 업체, 민간인증기관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ha,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재배작물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으로 한다.

제2조 (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 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야 한다.(ha당 ○톤 기준)
3. “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kg당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 수매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 (협의회 운영)

-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 (유권해석)

-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 (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12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①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①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시군 입회공무원” 소 속 :

직 명 :

성 명 : ①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13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사업

1. 목 적

- 신선과채류의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시설원에 농가의 천적사용 비용이 농약에 비해 높은 점 등을 감안 사업확대 추진
- 유기합성농약 사용 대신 생물적 방제로 전환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농약으로부터 농업인 건강 보호

2. 추진방침

- 시설원에 유기·무농약 인증농산물 생산농가의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작물은 천적활용 효과가 이미 검증된 과채류에 한하되, 농식품부 등에서 추가 검증작물 발표 시 추가 가능
- 지원대상 천적은 국내 생산·증식된 것만 보급하며, 공급업체는 시군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서 농가가 개별 선정하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4. 사업지원 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천적)지원	267ha	1,868	280	654	934

5. 사업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2. 1 ~ 12월(1년간)

다. 사업대상자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지원대상 8개 작물을 온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에 신청(전년도)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에 의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신청자를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에 순위를 부여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 결정
 - ① 유기농산물 인증농가 ② 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
- 시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예산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 교체 승인 등 사업계획 변경
-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천적공급업체와 천적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가 동 계약서 사본을 관할 시군에 제출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원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중 환경제어를 천적활용 해충방제가 가능할 정도로 할 수 있는 3,000㎡이상의 시설에서 지원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본 사업으로 천적을 입식한 기간 중 재배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함

- 다만,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속해 있는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가 천적 활용 해충방제 시는 3,000m² 미만의 시설재배농가도 지원 가능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 중 천적 활용교육 이수농가 우선지원
- 유기농·무농약 단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은 시군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마. 지원대상 작물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수박, 참외 등 8개작물

바. 지원대상 천적 및 업체

- 지원대상 작물의 적용대상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증식되어 보급되고 있는 천적
- 시장·군수가 지원대상 작물의 적용대상 해충별 천적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증식하여 공급하며,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양질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천적이 생물인 점을 감안하여 업체의 지리적 거리, 컨설팅 인력·사무소 참고)로 지정한 곳 중에서 농가가 업체 선정 계약체결
- 시장·군수는 지정된 천적공급업체로부터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 대상작목의 방제면적과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대상자별 보조금액 확정

사.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농가 천적 공급 확인 후 보조사업비 시군에서 농가에 집행
- ※ 지원기간은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자율 결정

아. 농가별 사업량 배정 : 동별 배정 원칙

- 농가별 신청량 대비 비율배정 시 1동 기준 일부면적만을 배정함에 따라 천적이 적정량 투입되지 않아 사업성과 미흡

자. ha당 작물별 지원한도액

- 딸기 6,000천원, 토마토 7,000천원, 파프리카 13,000천원, 고추 7,300천원, 오이 7,200천원, 멜론 6,500천원, 수박 6,100천원, 참외 6,700천원
- ※ ha당 지원단가 이내의 사업비로 무농약이상 인증을 취득할 경우 집행 가능

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교부결정서, 사업시행지침 제규정에 따라 사업비는 천적공급업체의 공급증명서와 농가의 확인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 별지 제5-1호서식의 천적공급 및 컨설팅관리대장 확인 후 사업 완료 농가에 직접 지원(※ 천적공급업체 직접집행 불가)
 - 단, 공급업체는 천적제품 공급 전 시군 담당공무원 검수 후 농가 공급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 서류(무통장 입금확인서 등)를 확인 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작물의 한 작기 단위로 산출하여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산출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 전년도에 증식하여 사업년도 중에 끝나는 경우에도 그 한 작기를 1년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 잔액을 집행하고 정산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6. 행정사항

가. 천적공급업체 생산능력 등 조사분석 통보 : '11. 11~12월

- 농업기술원은 시군별 천적공급업체 지정을 위해 우리 도에 천적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천적 생산시설, 생산품목, 생산능력 등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와 시군에 통보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천적공급계약 체결 : '12. 1월 ~ '12. 2월

다. 신선과채류 해충방제(천적)사업 확정내역 보고(6호서식) : '12. 3월

라. 사업추진(천적입식) : '12. 2월 ~ '12. 12월

마.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13. 1 ~ 2월

바.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천적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 일부농가에서 친환경자재를 동시 사용하고 있으나, 친환경자재는 식물성 살충제로 천적도 죽이는 등 효과가 떨어지므로 개별농가 지도 강화
- 농업기술원은 사업참여 천적공급업체의 천적제품을 수시로 수거 품질을 조사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도와 시군에 통보
- 시장·군수는 농가나 천적공급업체가 천적방제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사업자 변경 또는 공급업체 변경 및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조치 확행
- 지원대상자는 1년 단위로 선정하되, 지원대상자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받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한 경우 자발적 방제확산을 위해 추가 방제면적에 대해 익년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천적)사업 신청서

농 가	성 명	단 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 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m ² (총 동수 : 동)	방제신청면적	총 m ² (총 동수 : 동)
방제신청 시설면적	동별 : 1동 m ² , 2동 m ² , 3동 m ² , 4동 m ² , 5동 m ² , 6동 m ²		
시설유형	☐ 비닐온실 ☐ 유리온실 ☐ 기타()		
사업지역	☐ 수출단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원예단지 ☐ 개별수출농가 ☐ 개별원예농가		
기인증여부	☐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2012년 인증목표	☐ 유기 ☐ 무농약
재배유형	☐ 토경 ☐ 양액 ☐ 수경 ☐ 암면 ☐ 베드 ☐ 기타		
주 요 문제해충	☐ 진딧물 ☐ 응애 ☐ 온실가루이 ☐ 총채벌레 ☐ 잎굴파리 ☐ 나방 ☐ 기타 ()		
기 존 방제방식	☐ 사용농약 :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m ² ☐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관 매 처	☐ 수출 ☐ 백화점 • 대형할인점 ☐ 전문매장 ☐ 도매시장 ☐ 농협 ☐ 직거래 ☐ 생협 ☐ 기타		

위와 같이 시설원예작물의 해충을 방제하고자 2012년도에 신선과채류 해충방제(천적)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시 장 ,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대상자 평가표

신청농가 또는 법인명 : 0 0 0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 점수
계		
① 온습도 등 환경제어 가능성	양호(10), 보통(8), 미흡(5)	
② 방제대상 시설현황	유리온실(10), 비닐온실(8), 비가림시설 등(6)	
③ 방제 신청 면적	10,000㎡이상(10), 6,000㎡이상(8), 3,000㎡이상(6)	
④ 사업지역의 단지화, 규모화 여부	수출단지(10), 원예단지(8), 개별수출농가(6), 개별원예농가(4)	
⑤ 친환경농산물인증여부	유기(10), 무농약(8), 저농약(6)	
	2012년 인증목표 : ☐ 유기 ☐ 무농약	
⑥ 기 천적 방제 실적	3년이상(5), 2년이상(4), 1년이상(3) 10,000㎡이상(5), 6,000㎡이상(4), 3,000㎡이상(3)	
⑦ 천적교육 이수실적	3회이상(10), 2회(8), 1회(6)	
⑧ 판 매 처	수출 (10), 내수 판매 (8)	
⑨ 천적방제기술의 수용능력과 실천의지	양호 (20), 보통 (16), 미흡 (10)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신 청 자 평 가 집 계 표

<시·군 → ·도 제출용>

순위	신청인	평가점수	재배작물	재배면적	천적방제신청면적 (㎡)
1					
2					
3					
4					
.					
.					
.					
.					

[별지 제4호 서식]

신선과채류 해충방제(천적) 사업자 선정통지서

<시·군 → 사업대상자 통보용 >

수신 : ○ ○ ○ 귀하

년 월 일

발신 : ○ ○ ○ 시장, 군수 (인)

농 가	성 명	단 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m ² (총 동수 : 동)	방제지원면적	총 m ² (총 동수 : 동)
방제지원 시설면적	신청지번 : 동별 : 1동 m ² , 2동 m ² , 3동 m ² , 4동 m ² , 5동 m ² , 6동 m ²		
방제지원액	총 지원액 : 원 (보조금 : 원, 농가부담금 : 원)		
시설유형	☐ 비닐하우스 ☐ 유리온실 ☐ 기타()		
2010년 인증단계	☐ 유기 ☐ 무농약		
재배유형	☐ 토경 ☐ 양액 ☐ 수경 ☐ 암면 ☐ 베드 ☐ 기타		
주 요 문제해충	☐ 진딧물 ☐ 응애 ☐ 온실가루이 ☐ 총채벌레 ☐ 잎굴파리 ☐ 나방 ☐ 기타 ()		
기 존 방제방식	☐ 사용농약 : ☐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 면적 : m ² ☐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 매 처	☐ 수출 ☐ 백화점·대형할인점 ☐ 전문매장 ☐ 도매시장 ☐ 농협 ☐ 직거래 ☐ 생협 ☐ 기타		

위와 같이 귀하를 2012년도 신선과채류 해충방제(천적)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군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서 선택하여 천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급업체가 해당 시·군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

[illegible]

위와 같이 “갑”과 “을”간에 천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대금지급의무를, “을”은 천적공급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갑”과 “을”간에 천적방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회수조치,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갑” : 방제사업자(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 ○ ○ (인)

“을” : 천적회사 대표 ○ ○ ○ (인)

○○ 시장 · 군수 귀하

[별지 제5-1호 서식]

천적공급 및 컨설팅 관리대장

□ 농가명 : (전화 :)

○ 주 소 :

○ 작 물 명 :

○ 천적지원면적 : m²(재배면적 : m²)

○ 재 배 시 기 : 년 월 ~ 년 월

○ 천적 업체명 :

□ 천적사업 계획 및 천적 공급대장

○ 천적업체의 예상결과 천적활용 해충방제계획

○ 천적 공급 및 컨설팅 관리대장

천적공급 및 컨설팅 일 자	천적명	공급량	공급단가 (원)	발생 해충	컨설팅 내용	확 인(서명)		
						공급자	농업인	지자체

- ※ 1. 현장 점검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농가포장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시·군에 제출
2. 업체별 시군 담당공무원의 천적제품 검수 후 농가 공급
3. 사업기간 중 시군 담당공무원 2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컨설팅 내용 등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컨설팅 내역서를 작성 첨부
4. 컨설팅 내용의 농가이해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농업인 서명란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신선과채류 해충방제(천적)사업 내역

<시·군 → 도 제출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호, ha, 천원)

구분	농가	사업량	천적명	천 적 공 급 량	금 액	비 고 (천적공급업체)
계						
딸기						
메론						
토마토						
오이						
고추						
파프리카						
수박						
참외						

2. 시군별 자체재원 천적방제 추진실적

구분	사 업 량	지원단가	지원금액
00시군	딸기 ○○ha 메론 토마토 오이 고추 파프리카 수박 참외	○○○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보고서

수신 : 전라남도지사

발신 : 시장 · 군수

우리 시 · 군의 신선과채류 해충방제(천적)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 위 : 천 원)

사업 추진실적				ha당 단가	사 업 비 정 산 결 과								
작목	농가 (호)	면적(ha)			계 획				집 행				도비 집행 잔액
		유기	무농약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

14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1. 목 적

-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여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유기농업의 거점화로 육성
-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마을 전체를 유기농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촌관광 명소화로 주민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친환경농업의 솔선 실천과 주민 공동체의식이 뚜렷하고 일정규모 이상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육성
- 유기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필요한 공동시설 및 현장체험 시설, 민박, 유기농식당, 생태환경조성 등 농촌관광 명소화
- 행복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관련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성과 제고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지침

4.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유기농 생태 마을 육성	5개소	1,000	200	600	200

5. 사업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2. 1~12월(1년간)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마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 심의 후 도 제출 : '12. 1 ~ 2월
- 마을 세부사업계획 도 승인 후 사업시행 : '12. 2 ~ 3월

라. 세부 사업계획

- 지원대상 마을 : 5개 마을
 - 나주 공산, 광양 다압, 보성 겸백, 화순 도곡, 무안 현경

〈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기준 〉

- 유기농 실천의지와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뚜렷한 마을 —
 - ◇ 농가수 20호이상, 경지면적 20ha이상으로 규모화된 마을
 - ◇ 경지면적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50%이상이고 유기 인증이 10%이상 마을

- 사업비 지원 : 1,000백만 원(도비 200, 시군비 600, 자담 200)
 - 지원단가 : 200백만 원(도비 40, 시군비 120, 자담 40)
 - ※ 재원별 :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지원대상 사업
 - 유기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촉진 등 부가가치 제고에 필요한 사업
 - 유기농산물 홍보를 위한 현장체험·교육시설, 민박, 유기농식당, 생태환경조성 등 유기농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장비

〈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

- ◇ 유기농 생태마을을 체험·판매·민박 등과 연계하여 유기농 확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유기농 거점마을로 육성
- ◇ 씨뿌리기, 우렁이 넣기, 수확체험 등 영농단계별로 다양한 유기농 체험 활동 전개
- ◇ 대도시 소비자·관련기업 등과 연계 유기농산물 판매촉진 방안 추진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보조금 교부 결정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
-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사진촬영)과 관련 증빙자료 징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별첨서식)

6.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2012. 2월말까지

나.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다. 사업비 정산보고 : 2013. 1~2월(사업비 집행직후 제출)

라. 사후관리

-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 마을 전체 경지면적에 대해 유기농 실천 확대 등 유기농 거점화를 위한 관리 강화
-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 매년 친환경농업 실천현황을 조사하여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 시 지정 취소
 -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기간 : 2년(지정기준 준수 시 연장)
 - 유기농 생태마을 실천현황을 매년 말 조사하여 지정기준 미달마을 1년간 유예기간 설정하고 1년 후 실천상황 재조사
- ※ 재조사 결과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 시는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 강화
-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사후방안 적극 추진

(보고서식)

1. 사업계획서 : 2012. 2월말까지

☐ 유기농 생태마을 현황

마을명	재배작목	경지면적 (ha)	인증단계별			참여 농가	마을대표		농가 소득
			유기	무농약	저농약		성명	전화	
계									

☐ 세부사업계획(사업별로 자세히 기재)

세부 사업명	규격	단가	수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세부 사업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2. 사업 추진실적 : 2012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마을명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추진실적	종합공정 (%)

3.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2013. 1~2월

○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세부 사업명	사업량	규 격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사업성과 분석

- 체험장 운영 및 교육실적

소비자 체험장 운영			교육실적		
횟수	참석인원	체험내용	횟수	참석인원	교육내용

- 친환경 농산물 판매 현황

주요 작물	인증 구분	수량	총 판매 가격	판 매 방 법					
				직 거 래					인터넷 기타
				학교급식	아파트	기업체	백화점	기타	
계									

※ 판매수량은 포장방법에 따라 표기, 단 통일을 위해 kg을 ()로 표기

15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1. 목 적

- 무농약 이상 인증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인증단계 상향에 따른 농약사용 차단으로 소비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

2. 추진방침

- 잔류농약 분석용 시료채취는 해당농가(단지대표), 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출장소), 민간인증기관 등이 합동으로 실시
- 수도권 등 학교급식, 대량소비처 공급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 우선 실시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사용 의심 또는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 필지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검사 실시
- 명예감시원, 농가도우미, 책임운영모델 등이 현장지도 과정에서 적발된 필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시
-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전문기관에 의뢰 실시 공정성 확보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

4.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30%)	시군비 (70%)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지원	1,096건	166,500	50,000	116,500

※ 건당 152천원 기준, 추가부담액은 시군(농가) 부담

5. 사업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2. 1~12월(1년간)

○ 사업추진 : 연중

- 각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 상시 운영
- 인증단지(농가)에 대하여 연중 부정기적으로 친환경 실천상황 점검강화
- 명예감시원, 농가도우미, 책임운영모델 등이 현장지도 점검
- 신고·의심된 필지 친환경농산물 시료채취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잔류농약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민간전문분석기관 등(인증기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기관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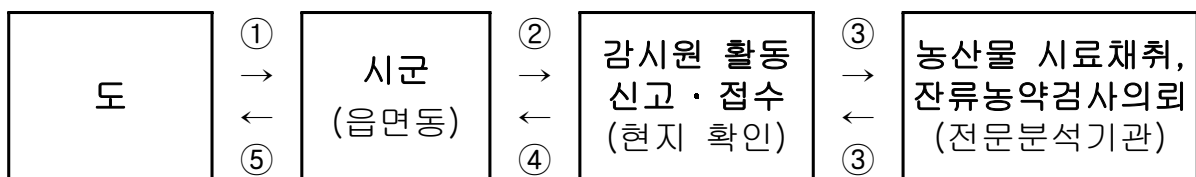
○ 사후관리

- 잔류농약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필지 농산물 판촉 지원 등
- 부적격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및 각종 보조금 지원 중단(3년간)

○ 추진상황 보고 : 6월, 9월, 10월 다음달 5일까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13. 2월

다. 사업시행체계



- ① 사업계획 수립 대내외 홍보 ② 사업추진(신고 접수, 현지확인)
- ③ 의심·신고 접수필지 농산물 시료채취 잔류농약 검사의뢰
- ④ 인증취소 통보 및 보조지원 중단, 사후관리, 추진상황 보고
- ⑤ 추진상황 보고, 사업비정산, 결과분석

라. 검사대상

- 잔류농약 분석용 시료채취는 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출장소), 민간인증기관 등이 합동으로 실시

- 각 시군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지 및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사용 의심 필지 농산물
- 명예감시원, 농가도우미, 책임운영모델 등이 현장지도 과정에서 적발건 중 농가와 분쟁이 발생한 필지 농산물
-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급식업체에 인증품을 납품하는 농가 및 품목을 사전 파악하여 생산단계 및 출하전 잔류농약 분석 실시 후 적합품 출하
- 기타 도 및 시군에서 잔류농약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검사 및 지원방법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전문분석기관, 재)생물방제센터 등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52천원/건/(도비 30%, 시군비 70%)
- ※ 잔류농약검사 증가 등 배정사업비를 초과한 시군 자체예산 확보(또는 농가부담) 추진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분석기관에 직접 자금 집행
 - 잔류농약검사 결과 농약검출로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와 생산농산물 유통에 피해를 초래한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지원배제 등 패널티 부여
-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사업비 정산 및 정산결과 도에 보고

6. 행정사항

가. 추진상황 보고 : 6월, 9월, 10월말 실적 다음달 5일까지 보고

나.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3. 2월말까지

다. 사후관리

- 신고, 의심필지로 잔류농약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필지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농산물 판촉지원 강화
- 부적합 친환경농산물 판정 시 인증취소 등 조치 및 각종 보조지원 중단(3년간)
 -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검출 시에는 그 내역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처분 요청

(보고서식)

1. 잔류농약검사 실적 보고 : 3회(6월, 9월, 10월말)

사업량 (건수)	검 사 실 적								검사기관		
	신고		적발		의심		기 타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정상	부적합	농관원	전문기관	기타

2. 잔류농약검사결과 농약검출에 대한 조치사항

위 반 자			위 반 상 황			조치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품목	위반내용	위반일자	

3. 사업비 정산보고 : 2013. 2. 28

사업량 (건수)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천원)
계획	실적	%	계	도비	사군비	자담	계	도비	사군비	자담	

16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1. 추진목적

-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 무농약 이상 신규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벼농사 제초비용 절감 등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
- 일반답에 대한 무제초제 농법 실천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녹색전남 이미지 제고

2. 추진방침

- 벼 제초용 왕우렁이농법을 새끼우렁이농법으로 전환 확대 추진
 - 벼 친환경농업단지 위주로 새끼우렁이농법 적극 실천
- 관행재배 농가에 새끼우렁이농법 보급 무제초제농법 실천으로 무농약 이상 신규 인증기반 확충(‘슈퍼잡초’ 방제효과 제고)
 - ※ 저농약 인증 : ‘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15년부터 완전 폐지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4.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60,000ha	7,200	480	2,400	4,320

5. 사업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2. 1~12월(1년간)

다.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 60,000ha
- 사업비 : 7,200백만 원
 - 재원별 : 도비 480(6.7%) 시군비 2,400(33.3%) 자담 4,320(60%)
- 지원내용
 - 새끼우렁이 구입비(ha당 12kg)의 40% 지원
 - 저농약 인증 포장 및 벼 일반(관행)재배지
- 10a당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급량 : 1.2kg(새끼우렁이 1,200마리 내외)
 - 적정밀도 유지로 제초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살포 마리수 준수
 - ※ 새끼우렁이 : kg당 900~1,100마리(평균 1,000마리) 크기의 우렁이
 - 지원단가 : 12,000원(새끼우렁이 kg당 10,000원 기준)
 - 새끼우렁이 대신 중패 이상 큰우렁이 공급 시 지원단가를 새끼우렁이 단가로 적용 지원하고 초과액은 자부담
- 벼 관행재배 포장 새끼우렁이 보급으로 무제초제농법 실천
 - 친환경농업단지 기준을 적용 시군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
 - 제초제 대비 새끼우렁이 비용절감 효과(50%) 등 저비용 홍보강화

라. 사업추진요령

(1) 우량 새끼우렁이 안정적 공급

-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가급적 책임운영모델 운영주체 또는 단지별로 직접계약 공동 구입
 - 계약시는 농가별로 공급시기를 명시하여 적기 공급 추진
- 공급량은 10a당 1.2kg 기준으로 공급하되, 원거리 수송시 새끼우렁이 폐사와 잡초 방제효과 제고 등을 감안 도내 업체산 새끼우렁이 공급
 - 새끼우렁이 공급업체의 기술지도 및 신속한 사후관리 도모

(2) 새끼우렁이 공급 확인

- 우렁이 공급업체에서 단지(농가)별로 새끼우렁이 공급 후 공급확인서를 발급 단지대표(농가) 등에 제출
 - 단지대표는 새끼우렁이 검수 및 농가별 적기살포 지도
- 공급업체에서 발급한 단지별 공급확인서에 의거 행정, 지도 등 읍면 담당공무원이 단지(농가)별로 공급상황 확인
 - 시군별 실정에 맞게 새끼우렁이 현지 공급상황 점검·지도

(3) 사업비 집행·정산

- 단지대표 또는 담당공무원 공급 확인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영농 초기에 공급되는 점을 감안 필요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인절차와 관계없이 조기집행 등 탄력적으로 운용
- 농가위임에 의거 단지대표, 농협, 우렁이생산자연합회, 공급업체 등에 새끼우렁이 대금 일괄지급 가능

6. 담당기관(단체)별 역할

가. 전라남도

- 벼농사 저비용 새끼우렁이농법 확대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관계기관단체, 농업인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
- 새끼우렁이농법 대대적 홍보 및 권역별 교육 추진(1~3월 중)
- 새끼우렁이농법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교육 실시(농업기술원)
- 무농약 이상 인증기반 확충과 제초효과 제고를 위한 일반재배답 새끼우렁이 무제초제농법 지속 추진

나. 시·군

- 2012년 새끼우렁이농법 전환에 따른 친환경농업단지 및 관내 우렁이 생산업체에 사전홍보 강화
 - 관내 우렁이생산 업체에 새끼우렁이 확대생산 사전대비 지도

- 새끼우렁이는 반드시 도내업체 새끼우렁이를 입식하도록 지도
- 새끼우렁이 공급 시 농가별 공급일자, 공급량, kg당 개체수, 공급단가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급계약 체결토록 지도
- 단지대표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급확인 절차이행 후 사업비 집행
 - 영농초기에 공급되는 점과 재정 조기집행 등을 고려 친환경농산물인증 확인절차와 관계없이 조기집행 가능
 - 농가위임에 의거 단지대표, 우렁이생산자연합회, 공급업체 등에 지급

다. 우렁이 생산·공급업체

- 연차별 새끼우렁이농법 확대보급에 사전 대비 새끼우렁이 확대생산 등 수급 안정대책 적극 강구
 - (사)전남우렁이생산자연합회 회원 업체에 확대생산 대책 홍보
- 생산업체에서 새끼우렁이 공급 시 적정밀도 유지를 위해 일정크기(kg당 900~1,100마리 기준)로 선별하여 출하
- 단지(농가)대표와 공급일자, 공급량 및 공급단가 등에 대해 사전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 검증절차를 거쳐 우량품 공급
 - 새끼우렁이 공급확인서를 발급(서식별첨) 단지대표(농가)에 제출
- 새끼우렁이 공급 과부족시 (사)전남우렁이생산자연합회 차원에서 적정 수급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차질없이 공급
- 새끼우렁이 도피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
 - 생태계 미치는 영향 등 불식을 위해 공급업체에서 솔선 설치
- 기타 새끼우렁이 공급시부터 제조작업 기간 중 사후관리 실시

7.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12. 4. 30까지(보고서식)

나. 추진실적 제출 : '12. 7. 31까지(보고서식)

다.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13. 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1. 사업계획서

(단위 : ha, kg)

단 지 명	계획면적 (ha)	새끼우렁이 소요량(kg)	공급계획		
			업체명	업체 소재지	공급량(kg)
계					

※ 10a당 새끼우렁이 소요량 1.2kg 기준

2. 새끼우렁이 공급실적

① 농업인 교육·홍보실적

○ 교육실적 : 회, 명

- 일자별 :

○ 홍보실적(홍보매체별)

-

-

② 새끼우렁이 공급실적

(단위 : ha, kg)

단 지 명	공급면적 (ha)	새끼우렁이 소요량(kg)	공 급 내 역		
			업체명	업체 소재지	공급량(kg)
계					

③ 기타 특이사항

○

○

○

○

○

○

3.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2013. 2. 28까지

○ 사업비 집행

(단위 : ha, 천원)

단지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지명	공급면적 (ha)	공급량 (kg)	단가	지원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지담
	계						

【참 고】

농법별 제초비용 절감효과(10a)

구 분	새끼우렁이	큰우렁이	제초제
살포시기	써레질 직후	모내기 후 5일 이내	모내기 후 7~10일
살 포 량	1~1.5kg (평균 1.2kg) ※ kg당 900~1,100마리	3~5kg (평균 4kg) ※ kg당 250마리	제제별로 상이
소요비용 (구입비)	10,000~15,000원 (평균 12,000원)	15,000~25,000원 (평균 20,000원)	24,000원 (초중후기, 3회 살포)
제초비용 절감효과	○ 큰우렁이 대비 8,000원(40%) 낮고 ○ 제초제 대비 12,000원 (50%) 절감 가능	○ 제초제 대비 4,000원 (17%) 낮고 ○ 새끼우렁이 대비 8,000원(40%) 추가 소요	○ 새끼우렁이 대비 2배 이상 추가 소요 ○ 큰우렁이 대비 20% 추가 소요
비 고	○ 제초효과 99% 이상 입증 (‘09 농업기술원) ○ 큰우렁이 제초효과 (95%) 보다 좋아 농가에서 호응	○ 양식기간이 50일 이상 으로 길어 사료 투입량 증가 등 양식비용 과다 소요 ○ 제초효과 95%	○ 화학적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일명 ‘수피잡초’방제 제초효과 낮음

「공급업체 보관용」

새끼우렁이 공급확인서

=====

(No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양식장 소재지	
공급농가	주 소	(성명)
	공급가격(kg/원)	새끼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새끼우렁이 , 기타)
	공급일자	2012. . .

----- (절취선)

「단지(농가)제출용」

새끼우렁이 공급확인서

=====

(No :)

공급업체	업 체 명	대표 (인)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양식장 소재지	
공급농가	주 소	(성명)
	공급가격(kg/원)	새끼우렁이 , 기타
	공 급 량	kg(새끼우렁이 , 기타)

위와 같이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귀하

17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체험·생산 시설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따른 새끼우렁이 농법의 지속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새끼우렁이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 공급
- 새끼우렁이를 이용한 무제초제 농법 실천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및 농업환경 보전

2. 추진방향

- 새끼우렁이 소요량을 감안하여 수요가 달리는 시군에 우선 설치하여 영농기 저비용 적기 공급
- 우량제품 적기 생산·공급 및 영농지도로 새끼우렁이를 이용한 제초 효과 극대화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4.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새끼우렁이 생산시설	10개소	1,000	170	430	400

- 재 원 별 : 도비 17%, 시군비 43%, 자담 40%
 - 지원단가 : 개소당 100백만 원
- 사업내용 : 씨우렁이 부화시설, 새끼우렁이 양식시설, 선별시설 등

5. 세부사업추진요령

-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 나. 추진기간 : 2012. 1~12월
- 다. 지원대상 : 농업법인, 작목반, 농업인 등

라.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새끼우렁이 양식기술 및 생산경험이 있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
- 영농기 이전에 생산시설을 갖춰 2012년 영농에 차질없도록 공급이 가능한 자
- 새끼우렁이 수요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 선정

〈선정 우선순위〉

- ① 100ha 이상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된 지역
- ② 단지 및 마을단위로 새끼우렁이농법을 실천하면서 기존에 생산시설이 없는 지역
- ③ 저농약 단지로서 무농약으로 상향하기 위해 새끼우렁이농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지역
- ④ 기타 농업법인, 작목반, 농업인 등 사업추진 의지가 있으며, 시장·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마. 시설물 및 장비설치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물은 설계서에 의한 완벽시공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비는 공정규격 제품을 사용
- 동 사업추진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주체 및 담당공무원이 기 설치한 지역을 벤치마킹한 후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 사업 시공업체는 가능한 도내 업체를 선정하여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할 것

바. 제품생산·공급 및 판매

- 사업추진주체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구성원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우선 공급
- 동 사업을 최대한 조기 완공하여 당년도 영농철부터 필요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제품을 생산·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사업추진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
- 제품의 생산·공급시에는 새끼우렁이 농법 실천요령을 지도하고, 폐사 등으로 영농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재공급 등 사후관리 철저

6.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2012. 2월말(서식 1)

나.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 완료 후(서식 2)

다. 보조금 정산 : 사업 완료 후(서식 3)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사업비 집행
- 시설물의 표준단가, 장비설치 등은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하고, 사업 완료 즉시 정산 보고
- 사업추진 해당군수는 사업비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라.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동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구연한을 최대한 연장
- 사업주체는 시설·장비업체와 A/S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

보고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서식 1)

○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자		세부사업(시설·장비)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명 칭	규 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첨부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새끼우렁이 생산 및 공급계획

생산량 (톤)	공급량 (톤)	공급지역	비 고
계			

□ 사업추진실적(서식 2)

세부사업명	사업추진			사 업 비 (천원)				사업비 집 행 (D)	D/C (%)
	계획(A)	실적(B)	B/A (%)	계(C)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시설·장비별로 작성

□ 사업비 정산(서식 3)

세부 사업명	사업추진			사업비집행								도비 집행 잔액 (C-D)
				계 획				실 적				
	계획 (A)	실적 (B)	B/A (%)	계	도비 (C)	시군비	자담	계	도비 (D)	시군비	자담	
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6. 2012년도 사업별 달라진 제도

<유기농 종합(실천)보험 지원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대상 품목	○ 1품목(벼)	○ 35개 품목 (정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사업 규모	○ 2천건 / 10억 원	○ 3천건 / 15억 원
지원 대상	○ 유기농벼에 한해 10농가 이상 집단화 지역	○ '12년 정부의 농작물재배보험 가입품목 중 유기인증 받은 모든품목(면적)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전액 지원

<친환경 생태연못(뚝방) 조성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업 비	○ 개소당 3백만 원	○ 개소당 2~3백만 원 * 뚝방 사업규모 및 지역실정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탄력적 지원 * 가능한 석축상기 지양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융 자 금 대출 이율	○ 융자금 지원 대출이율 2%	○ 융자금 지원 대출이율 1%
상환 조건 (상환기간연장)	○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대상자 신 청	○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및 개별농가	○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사 업 비	○ 300천 원/건	○ 360천 원/건
지원대상	○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가공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가능	○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 유기 식품 인증비용 지원 가능 ※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은 도 축산정책과에서 지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단가(ha당)	· 유기인증농산물 150만원이하, · 무농약인증농산물 100만원이하, · 저농약인증농산물 20만원이하 지원	· 유기인증농산물 150만원이하, · 무농약농산물 100만원이하, · 저농약농산물 지원 없음 * 저농약단지는 일반답 새끼 우렁이 지원사업으로 대체 - 무제초제농법 실천 논 새끼 우렁이 공급사업비 12만원 지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2011)	변 경 안(2012)	변경 사유
○지원자격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인 지역	불가피한 경우(사망·이주 등)를 제외하고는 참여농가가 10호 이상 유지 및 사업참여 면적 광역화 (200ha 이상) 지양	참여농가 10호미만 지구방지 및 사업관리 효율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2011)	변 경 안(2012)	변경 사유
○설치 주요시설 및 장 비 내 역	○ -	○상기 시설 중 농축산순환 자원화시설을 최우선 착공 하여야 함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설을 설치하면 안됨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 부여
○농림수산물부 주관 사업자선정 단계	○-1차평가 : 현장실사 -2차평가 : 공개발표 평가	○-1차평가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류심사 -2차평가 : 현장실사 -3차평가 : 공개발표평가	○사업계획 충실도를 자체 평가하는 서류 심사 단계 신설
○세부계획수립 및 시 행 단 계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1~3월) ○사업대상자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 군에 제출(1월)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2~3월) ○사업대상자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1~2월) ○2개이상의 농·축협 등이 참여 할 경우 실질적인 법인 구성	○1월 중 사업설명회 후 작성·제출토록 조정 ○형식적 참여 방지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물부)	○ -	○사업자선정 후 2년이내에 농 축 산 순 환 자 원 화 시 설 미 착공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회수 ○기술자문단 구성·운영 -광역단지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실시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 부여 ○제도개선 반영
○이행점검단계 (시·도, 시·군) -변경승인	○변경내용이 중대 하거나	○변경내용이 중대(사업주체 및 사업구역 변경, 내역 사업별 사업비 5억원이상 변경,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공법 변경 등)하거나	○농식품부 사업변경 승인대상 구체화 -잘은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사업비 편법증감 방지
	○ -	○시·도지사(광역단지 6개소 이상)는 자체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관내 광역단지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실시 하여야 한다.	○제도개선 반영
○2013년 사업신청	○ -	○2013년도 신청사업부터는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자부담비율 조정 -국비 30%, 지방비 50, 자담 20 → 국비 30%, 지방비 40, 자담 30	○제도개선 반영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2011)	변 경(2012)	변경 사유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신 설>	▪ 1순위 : 친환경농업(법)인 (유기>무농약>저농약) ▪ 2순위 : 친환경농업단지 (광역>지구) ▪ 3순위 : 기타(지자체 결정)	▪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와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 으로 사업 추진
▪ 대상 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들묵새, 클로버	▪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들묵새, 크림손클로버	▪ 녹비·경관 효과 및 지역적응성 우수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 40%, 지방비 60%	▪ 지역 공공재성 사업 으로 지자체 실천 의지 중요
▪ 지원사업량	▪ 헤어리베치 50kg/ha, 호밀 180kg/ha	▪ 헤어리베치 60kg/ha, 호밀 160kg/ha	▪ 농진청 연구결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 신청기준 (사업최소량)	▪ <신설>	▪ 20kg 이상/1인 (단, 들묵새는 1kg 이상/1인)	▪ 분포장에 따른 변거로움과 비용 최소화
▪ 수요조사	▪ 농가명, 경작지주소(지 번), 초종별 파종희망 면적	▪ 농가명, 주소, 전화, 지번, 지목, 지적, 친환경·단지 여부, 초종별 파종신청 면적, 재배예정작물, 파종 예정시기 등	▪ 사업대상자 선정시 효율성 제고 및 정책수립에 활용
▪ 성과지표 측정방법 (토양유기물함량)	▪ 농촌진흥청의 논·밭 토양 유기물함량 조 사자료를 근거(농촌진 흥청 최종 보고)	▪ 시도 및 시군구가 도기술원 및 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녹비사용 전후 필지의 논·밭·과수원 토양을 표본 조사하여 산출(시도 최종 보고) * 표본수 : 시군구별 지목별 (논·밭·과수원) 2필지 이상	▪ 녹비사용 필지를 표본추출하여 산출 함으로써 성과측정의 적정성·객관성 확보
▪ 만족도 조사	▪ 필요시 실시	▪ 농협중앙회는 농가, 일선 농협 등 사업관련자 대상 만족도 조사,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추진사업 평가 및 업무효율화 방안 검토 보고(사업익년도 2월중)	▪ 사업의 핵심요소인 녹비작물 종자를 구매·공급하는 업무 전반에 걸친 성과 평가 및 환류 필요
▪ 사업대상자 제한	▪ <신설>	▪ 농가가 적정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시 차년도 공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에 대한 의무부과 등 책임성 강화로 사업 추진 효율성 증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2011)	변 경(2012)	변경 사유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 설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 단지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대상 농가 필지는 후순위 부여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및 단지농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중복 지원은 최소화
	○ 신 설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제외 (농가 자부담)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기재부)에 따른 조치
지원 단가	○ 가축분퇴비 1등급 1,100원 3등급 800원 ○ 일반퇴비 1등급 900원 3등급 600원	○ 가축분 퇴비 1등급 1,200원 3등급 700원 ○ 일반퇴비 1등급 1,000원 3등급 500원	○ 등급간 인센티브 확대를 위하여 격차를 1~2등급 200원, 2~3등급 300원으로 차등지 원 확대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	○ 신 설	○ 퇴비,가축분퇴비 검사 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된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비료공정규격 개정 (11년)에 따 른 참 여 제한기 준 신설
‘13부터 생산업체 기준제한 계획	○ 신 설	○ 퇴비 2개 비종 생산 업체의 경우 1개 비종 으로만 참여할 수 있음	○ 2개 비종 생산업체의 경우 원료구분에 대한 타업체의 민원 지속 제기로 원료혼입 사전방지
‘13부터 등급간 지원단가 차액 확대 지원 계획	○ 신 설	○ 1,2등급간 차액(현행 200원) 및 2,3등급간 차액(현행 300원)을 400원으로 확대 지원	○ 등급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퇴비의 공급을 유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2011)	변 경(2012)	변경 사유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 설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에서 제외 (농가 자부담)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기재부)에 따른 조치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신 설	○ 지역농협 또는 시비대행 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 에서 지원할 수 있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 공동살포 여건이 좋지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자율 보조로 공동살포 여건 조성
공급 단위	○ 포대(20kg)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공급을 원하는 농가에 대하여 톤백 공급으로 효율적 살포유도
공급방법 (현지확인)	○ 신 설	○ 세부착지별 300포 이상 공급할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일 경우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 (톤백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	○ 현장확인에 따른 토양개량제의 효율 적이고 투명한 공급 추진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 신 설	○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 신설	○ 비료 품질강화를 위한 규정신설로 비료 품질을 제고 하고 농업인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 도모
성과 측정	○ 농진청 국립농업 과학원의 주요 농경지 토양검정 결과 활용	○ 전년도 사용필지(시· 군별 3%를 무작위로 선정)에 대하여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 석회 (패화석)는 산성도로 측정	○ 사용필지에 대한 사용후 측정으로 성과측정의 효율성 및 효과측정 가시화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사업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비 집행	· 천적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사업완료 농가에 직접지원 ※천적공급업체 직접집행 불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달라진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지급단가 <논> - 유 기 : 392천 원 / ha - 무농약 : 307천 원 / ha <밭> - 유 기 : 794천 원 / ha - 무농약 : 674천 원 / ha ○ 지급기간 : 3년	○ 지급단가 <논> - 유 기 : 600 천 원 / ha - 무농약 : 400 천 원 / ha <밭> - 유 기 : 1,200 천 원 / ha - 무농약 : 1,000 천 원 / ha * 저농약은 현행유지 ○ 지급기간 : 유기 5년 * 무농약·저농약은 현행유지

Ⅲ. 식량작물 분야

Ⅲ. 식량작물 분야

1. 2011년도 주요사업 성과

가. 농업 경영혁신 및 안전 영농 기반 구축

- ◆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적극추진으로 재배 면적 감소에 기여하였으며, 10a당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6% 증가함
- 재배면적 : 174,930ha 【전년 183,804ha 보다 8,874ha 감(4.8%)】
 - 쌀 생산량 : 829천톤 【전년 846천톤 보다 17천톤 감(2.0%)】
 - 10a당 수량 : 477kg 【전년 465kg 보다 12kg 증(2.6%)】

1) 고품질 쌀 대표품종 생산단지 기반 구축

- 고품질 쌀 대표품종 재배 82% 및 조기재배 확대 11% 추진
 - 일미 23%, 새누리 14, 호품 13, 온누리 11, 운광 9, 황금누리 8, 남평 4% 등
 - 전국 햅쌀시장 고객 확보를 위한 조기재배 확대 : 19,232ha(11%)
- 고품질 쌀 생산단지 및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RPC계약재배 68천ha(39%), 고품질쌀생산단지 650ha, 친환경농업단지 58천ha(34%)

2)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들녘별 쌀농업회사 육성

- 들녘별 쌀 농업회사 육성 : 32개소(목표 30개소 대비 107%)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 육묘장 33동 설치, 광역방제기 30대 구입 지원

3)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

- 녹비작물재배('10) 49천ha→('11) 47천ha, 규산질비료('10) 149천톤→('11) 117천톤
- 질소비료 감축 시용(10a) : 8.6kg(표준량 9kg 대비 4.4% 감축)

나. 농가소득보전 및 벼·보리 대체작목 육성

1)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 및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 200천ha/1,359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30개 품목) : 19,341ha/107억원
- 병해충 정밀예찰 및 돌발 병해충 적기방제 추진 : 19천ha/19억원

2)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에 타작물재배 및 보리 대체작목 육성 추진

- 논에 타 작물재배 : 7,757ha(계획 8,200ha 의 95%, 약정 9,053ha 의 86%)
 - 1년생 5,424ha, 다년생 1,040ha, 조사료 1,123ha, 가공용 벼 170ha
- 보리 대체작목 육성 : 국산 밀 확대재배 7,493ha, 청보리 재배 27천ha

2. 2012년도 추진계획

가. 고품질 쌀 대표품종 육성 및 종자 확보·공급 대책 추진

1) 재배단계부터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 추진

- '12년도 벼 재배면적은 '11년 수준인 174천ha 정도 유지될 전망
 - 감소요인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지속 추진 및 농지전용 등
 - 증가요인 :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완료, 신규 간척지 재배 등
- 고품질 쌀 주력 상위 10개 품종 재배 : 90%이상
 - 일미 28%, 새누리 23%, 온누리 15%, 황금누리 13%, 호품 11%
- 시장성 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부 보급종 공급 계획 : 4,000톤
 - 일미 1,130, 새누리 900, 황금누리 550, 호품 500, 온누리 410, 기타 600
- 햅쌀·기능성 쌀 시장선점을 위한 **조기재배 확대** : 재배면적의 10%
- 최고 품질쌀 생산단지 조성(650ha) 및 친환경농업 단지조성(60천ha)

2) 들녘단위 조직화 및 품종단일화 등 쌀 생산비 절감대책 마련

- 들녘별 규모화·조직화한 쌀농업회사 육성(누계) : ('11) 32 → ('12) 50개소
 - 공동육묘장, 광역살포기 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 142억 원
 - 들녘별 쌀농업회사 육성사업 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 : 10개소/4억 원
- 인력 절감형 및 발작물 생산용 농기계 공급 : 5,000대/133억 원
- 임대용 농기계 구입(10개소/33억 원) 및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등(4개소/40억 원)

나.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 및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적극추진

1) 유기농 실천을 위한 흙 살리기 사업 및 질소비료 감축

- 토양개량제 공급(173천 톤/232억 원), 유기질비료(527천 톤/263억 원)
- 토양 유기물 공급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 공급 : 51천ha/110억 원
-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새끼 우렁이 공급 : 60천ha/72억 원
- 고품질 쌀 생산 및 벼 쓰러짐 방지를 위한 질소질 비료 덜 주기 전개 : 20~30%

2) 다양한 직불제와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 185천ha / 1,455억 원
-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 17천ha / 96억 원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 8,200ha / 250억 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 35개 품목 / 200억 원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 기준이며, 향후 내용 변경될 수 있음

가. 목 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다. 성과목표 및 지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의 97.5% 이상 유지

라. 2012년도 사업시행요령

1) 지급대상농지(법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법 제13조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2) 지급 대상자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농업에 종사(휴경 제외)하는 농업인등
 - ㉠ 농업인: 1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 2년 이상 주소 : 사망한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사망 직전 주소를 달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논농업에 종사함이 증명(이장 확인서)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음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나”에 해당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①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같은 시·군 :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시·군에 1만㎡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자가 화성시에 있는 농지 1만㎡ 이상 경작한다면 지급 대상이고, 화성시 6천㎡, 평택시에 5천㎡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군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 해당 시·군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말함
- * 2년 경작기간 : 벼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할 수 있음
- * 연접한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 ③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⑤ 법 제13조제2항에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신청 자격

-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 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 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가능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5) 지원형태 및 기준

가)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
-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나)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다)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 지급단가(농림부 고시 제2006-48호)
 -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ha당 746천원(m²당 74.6원)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ha당 597천원(m²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시기 : 2012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12년산 적용)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변동 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 고정 직불금 단가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당해 연도 10월1일~다음 연도 1월31일
- 고정 직불금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 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61가마(80kg) × 벼 재배 면적(ha),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kg로 고정
- 지급시기 : 2013년 3월중

마. 사업추진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용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도(지자체)

- 도(시·군)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가) 등록신청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2. 4. 15 ~ 2012. 6. 15일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
-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신청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 ①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05-'08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그 밖의 자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민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 제출
- ㉠ 법 제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 ㉡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 ① (신규 신청인)이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입증서류
 - ⇒ AgriX시스템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휴경하는 경우 제외)
 -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신청자 명의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08~'09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 * 면적계산(1만 또는 5만 제곱미터) : 타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

㉞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로 인하여 사망 당시 주소를 같이 하지 못한 경우 : 이장 확인서

⇒ 농업인 증명 : 1천 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

㉞-1 다만,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② (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②-1 (농촌 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㉞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벼 등 계약재배 계약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㉞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㉟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군에 소재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08~'09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 등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별지 제1호의23 서식)

* 군사지역 안의 농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한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다음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㉔ 벼 등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㉕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로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 서류 : ㉓, ㉔, ㉕, ㉖ 등 넷 중에서 2개를 의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기타 서류》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서명

② (타인 소유 농지)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임차한 농지를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의 확인서 제출

* '09년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0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2. 4. 15 ~ 2012. 6. 15일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2012. 4. 15 ~ 2012. 6. 20일까지
 - 등록신청서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의 각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확인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 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여부
 -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에 해당되면 지급대상
-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 확인
 -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 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지급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개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이 지급상한 적용을 받음
- 여타 농업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권한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5년 이내)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차해 주거나, 등록제한 기간 내에 새로 구입한 농지도 등록신청 대상농지에서 제외

*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 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신청할 수 있음

다)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

* 2011년도 신규신입 자는 2012년에도 신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여부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라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

☞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 제곱미터(법인 5만 제곱미터)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논농업을 승계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승계자의 자격요건

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②-1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의 농업의 주업 요건 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같은 사건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법인: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

〈농산물의 개념〉

-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과,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및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군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③ 쌀직불금 제외 대상자 확인

☞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①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 ②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③ 기타 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6.20일)을 종료한 후 30일간
- 정보공개 방법
 - 열람하고자 하는 자 :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
 -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2. 7. 25일까지
- 현지조사 등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 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에게 2012.7.25일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

가)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
- 등록증 발급 : 2012. 8. 5일까지
- 발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 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3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서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8호 서식)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농외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 등록증은 시장·군수가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도착되도록 발급

나)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기간 : 2012.9.30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 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
 - *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변경등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 ① 발급된 등록증
-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 (추가 등록신청)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 신청)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서류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군수는 변경등록 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도에 자금 배정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2. 10. 10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는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 * 보고는 AgriX시스템으로 하되, 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1호 서식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는 세부점검기준 수립·시행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2개월간
- 점검대상 농지 : 시·군의 AgriX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AgriX시스템으로 전송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 ID를 부여받은 시·군지사는 해당 시·군 등록증 발급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농지정보현장조사 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 점검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 시·군(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청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보고, 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 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이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업기술원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
 - 농업기술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수확직전 ~ 11월 상순
- 검사대상 농지 : 쌀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 (AgriX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08년~'10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kg)	유효인산함량 (mg/kg)	치환성칼리함량 (cmol ⁺ /kg)
일반 농지	11 ~ 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 ~ 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 ~ 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 ~ 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2.15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별지 제13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장·군수는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11.30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 (AgriX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시료 채취
 -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2kg 분석의뢰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 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별지 제14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자금배정

-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도에 배정 통보

○ 변동직접지불금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위탁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시장·군수 : 직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12년 12월
-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
- 금액산정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 농업진흥지역 746,000원 / 1ha, 농업진흥지역밖 597,000원 / 1ha
- 도는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는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고정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들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15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도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된 후 자금요청 (별지 제16호 서식)
 - 시·군은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별지 제17호 서식)
- 재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지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 지급금액 :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쌀80킬로그램당 금액
 - $\times 1\text{만 제곱미터 쌀의 생산량}(61\text{가마}) \times \text{벼재배 면적}$
 -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 평균한 금액(700천원 / ha)을 사용
 - 1만 제곱미터 쌀의 생산량은 쌀 61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로 고정함.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수산물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장·군수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에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금
 - * 변동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들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제 제18호 서식)
- 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제 제19호 서식)

농협중앙회 : 기금관리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운용 등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

○ 위탁 사무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변동직불금 부담 수령금의 회수 관리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 :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제공
 -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 및 농림수산식품부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1월1일부터 12월31일)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31일까지
- 신고기관
 - 주무관청 : 농림수산식품부
 - 관계 행정기관 :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 등록신청한 읍면 및 이를 관할하는 도

- 신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대장 :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에 등록(별지 제21호 서식)
- 조사절차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에 이송
 - 시·군 : 신고자 자격요건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 신고자 청문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는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 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기금(변경될 수 있음)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해당 시·군에 자금배정, 시·군에서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지급 제외자
 -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 시장·군수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 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시장·군수

- 부당이득금 회수 :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아야 함,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부당이득금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
- 법 제13조제1항제2호(지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3호(농지처분 명령, 무단점유) 제4호(형상유지, 토양농약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분명히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 → 농업인 등 반납 → 농협 계좌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계좌

○ 가산금 부과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 중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2호 서식)

마) 벌칙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 ④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바) 사업추진상황 점검

- 도(시·군)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할 경우에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 지급면적 초과신청,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7) 보고 사항

시·군

- 시·군은 다음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제9호서식) : '12.8.30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0호 서식) : '12. 10월말까지
 - 2009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11호 서식) : '12. 10월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2. 12. 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5호 서식) : '12. 12월말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16호 서식) : '12. 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2. 4월말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9호 서식) : '12. 12월말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화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12. 12월말까지
- 시·군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17호 서식) : '13. 2.1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12.11.15일까지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지사, 시·군)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2.12.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지사, 시·군)에게 보고
- 농약 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4호 서식) : '12. 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도지사, 시·군)에게 보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및 도(시·군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에 7일이내 통보, 해당 시장·군수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8)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물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당해 연도 12월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기준 연도 목표가격)×100	-익년도 2월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 연도 10월1일 ~ 다음 연도 1월31일

-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하반기
 - 조사대상 :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수혜농가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수산물부

9) 사업평가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 +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농가소득지지율이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97.5%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물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당해 연도 12월 -당해 연도 고정 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기준 연도 목표가격)×100	-익년도 2월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 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바. 2012년도 사업추진계획(안)

□ 신청서 제출기간 : '12. 4. 15 ~ '12. 6. 15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현지 사정에 따라 마을 대표에게 제출 가능), 마을대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12.4~6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시장·군수)
↓		
② 신청자 명단 공개	(‘12.7월초)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③ 신청내용 등 확인조사 및 등록증 교부	(‘12.8~9.15)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자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비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읍·면·동) · 정보제공 동의 여부,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비재배 등) 상황점검(농어촌공사) →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에게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장을 통해 등록증 교부(시·군)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전산입력 결과 인쇄, 농식품부에 1차 보고(시·도)
↓		
④ 이의(변경)신청 기회 부여	(‘12.8.15~10.15)	· 등록내용 수정사항 신고(시·군/읍·면·동) · 종합소득금액(국세청 협조) 확인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비재배 등) 점검 결과 입력(농어촌공사) · 등록변경 사항 신고 및 처리
↓		
⑤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12.11.1)	· 지급대상자 확정(시·군) ·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요청(시·군)
↓		
⑥ 이행상황 점검	(‘12.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12.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
↓		
⑧ 변동직불금지급	(‘13.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13.3월~)	· 농식품부 홈페이지(시·군)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별표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 원 이상인자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법 제13조 제1항제2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법 제13조 제1항제3호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 직접 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의 고정 직접 지불금 1/2 감액 해당 농지의 고정 직접 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 지불금 전부 미지급	
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가) 농약: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 지불금 1/2 감액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 지불금 전부 미지급	

②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논 8,200ha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를 유도하여 쌀 40천톤 이상 감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8	'10	'11		
▪ 논 소득기반 다양화에 따른 쌀생산 감축 비율(%)	95	-	5,539	7,757	'12.11월	사업추진에 따른 쌀생산 감축량/감축예상량×100 - 쌀감축 예상량 40천톤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8,000	24,750	25,000	25,000
○ 논소득기반다양화		18,000	24,600	24,600	24,600
○ 사일리지 제조비		-	150	400	400

나. 2012년 사업계획

1) 사업대상자

- '10~'11년도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쌀 변동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은 논·농가
- '11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농가
- * 사업신청자는 위 논·농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허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11년도 벼를 재배한 논에 '12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가
- '11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2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가
- * 시장·군수는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농가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접수와 대책마련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대상 품목 선정 유도 >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 유도 ○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 ○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품목 ○ 농식품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품목 등 ○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 중점홍보 ○ 채소류의 경우 농협 등과 채소수급안정 사업의 계약재배와 연계추진 < 신청결과 대책 > ○ 수급불안 품목인 대파, 배추 등은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사항 > ○ 다년생 작물 재배는 가급적 지양 ○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보조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논·농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 ○ 과수류의 경우 농가단위 대체 과원 위주로 지원 등 < 신청결과 대책 > ○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 재배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3)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ha)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8,200(100%)	25,000	
1 년 생	5,700(70%)	17,100	
조 사 료	2,500(30%)	7,900	사일리제조비포함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추후 통지

4) 지원대상

- '10~'11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에 '12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11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2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벼 이외 다른 작물 : 1년생 작물, 조사료, 가공용 벼(계약재배) 포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이상
- 사업 의무량 : 사전 신청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 지급시기 : '12. 12월중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신청 면적 한도는 없으며, 논 10a당 300천원 지원

다.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2.1.5 ~ '12.2.21)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여부 결정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 사업신청 서류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다음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1-2호 서식]
- 시·군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시장·군수
 - 구성 :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가 등 15명 내외
 - 기능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계획 심의조정,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농지중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한도는 없음
 - 사업신청자와 사업비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로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읍·면·동장(시장·군수)
 - 읍·면·동 또는 시·군별 목표 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 대상자
 - ① '11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
 - ② 들녘별,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신청자
 - ③ '10년 ~ '11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
 - ④ 사업 참여 논 면적이 많은 신청자
 - ⑤ 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품목 및 논
 - ① 수급불안 품목인 **대파, 쪽파, 배추** 등 작목은 제외
 - ② 논외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자
 - ③ 4대강 사업(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보상을 받은 논
 - ④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
- 도는 필요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 시장·군수는 확인 결과를 계통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시 제출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사업선정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하여 약정이행사항을 관리토록 함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원 : 종자대 지원(보조 30%),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3만원/톤, 보조 90%), 기계·장비 지원 등
 - * 조사료 생산기반 활성화 사업과 연계 지원
 - 농식품부(농진청)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 :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 다른 농림사업과 연계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구체적인 연계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시 적극 지원
 - 규모화·조직화 된 경영체 우대 : 들녘별 경영체(30개), 원예·밭작물 브랜드(30개), 전통잡곡 단지(23개) 경영체 등에서 신규로 논에 타작물 30ha이상 재배시 우대

< 우대지원 계획 >

- ① 농식품부의 다른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한 사업 신청시 평가·지원
- ② 대상 경영체에 교육·컨설팅비 지원(30ha이상 개소당 2천만 원)
 -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는 3년간 타작물 재배의무
 - 사업계획서 제출시 평가·선정 지원

4)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군)에 '12년 하반기중 배정
- 자금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12. 12월중 보조금 지원
 - 사업비 지급 단가 : 1ha당 300만원(300원/㎡, 필지별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한국농어촌공사장(시군지사)은 사업시행 지침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 실시
 - 약정이행 점검시 세부 확인요령은 시·군으로부터 통보받은 논에 타작물 재배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작성
 - 시장·군수와 마을대표는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의 약정이행 확인에 적극 협조
 - 한국농어촌공사장(시군지사)은 약정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 및 다음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약정이행 점검내용

- ① 점검기간 : '12. 8월 ~ 10월
 - '11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인지, '11년 벼 재배 논인지 병행 점검
- ② 점검내용
 - 약정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이행 면적의 일치여부
 - 4대강 사업(농지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논인지 여부
 -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인지 여부 등
- ③ 위반사항 조치
 - 점검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

6) 성과측정단계

- 시·군별 사업대상 면적 중 이행점검 결과와 통계청 발표 '12년 벼 재배 면적 및 쌀 생산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측정 시기 : '12. 12월중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가 필요하여 관련사업 신청 시 최대한 지원

- 시·군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시상 계획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목표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및 경영체 단지를 중점 발굴
 - 논콩·지역특화작목·사료작물 재배단지 등 대체작물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 경영체 단지 평가·시상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인센티브	패널티
○ 농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 선정시 우대지원 ○ 도(시·군) 별 시상 확대 ○ 우수 유공자, 경영체 시상 확대 - 정부포상 등	○ 농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 선정시 패널티 부여

라. 보고(통지)사항

1) 시·군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신청 접수결과(‘12.1월~2월까지 순별) : 『별지 제2-1호 서식』
 - 사업대상자 약정체결 결과(‘12.05.20일까지) : 『별지 제2-2호 서식』
 - 사업비 지급 요청 결과(‘12.10.30일까지) : 『별지 제2-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약정체결 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에게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사업비 지급을 『별지 제2-2호 서식』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도에 요청(‘12. 10. 25일까지)

2)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

- 한국농어촌공사장(시군지사장)은 사업대상농지에 대한 약정이행 현장 점검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통보(11. 15일까지)

마.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3년도 사업수요 조사 등은 별도로 하지 않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등은 별도 안내

[별지 제1-1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신청서												
①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HP)						
신 청 농 지 (논)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 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 확인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재배작물별 면적				(1년생) :				(다년생)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 번호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약정서 2부.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 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사업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 이행 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m^2 단위로 기입합니다.
-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합니다.
 - * 다년생 작물 신청 시 유의 사항 : 비진흥지역 위주로 신청하되 1차 년도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차 년도에는 미지급,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 시 주의사항

- ⑥란은 신청농지가 '11년 쌀 변동직불금 대상 논, '12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 위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 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 ⑨-1란은 다년생 작물 신청 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사업』 약정서

() 시장·군수

() 신청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2년 00월 00일부터 2012년 00월 00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 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2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2. 약정내용 및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 제①항 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2년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대상지에서 제외)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 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사업비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 제①항 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 제①항 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사업비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 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논 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자
3. 4대강 사업(농지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논
4.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
5.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6.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 제6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의 경우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12.6.1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칸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1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집계표

시·군명 :

(월 일 현재)

시·군명	신 청			적 합			부적합		
	면적(ha)	필지수	신청수	면적(ha)	필지수	신청수	면적(ha)	필지수	신청수
계									
1년생작물									
조사료재배									
가공용 벼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 작물별 내역

시·군명 :

(월 일 현재)

약정 면적	조사료재배				1년생 작물								가공용벼		
	수단	옥수수	사료벼	기타	콩	감자	고추	채소류	약용 작물	특용 작물	잔디	기타			

[별지 제2-2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체결 결과

시·군명 : (월 일 현재)

시·군명	약 정 체 결			사업비 지급 소요 예상(천원)
	면 적(ha)	필이지 수	약정 체결 수	
계				
1년생 작물				
조사료재배				
가공용 벼				

[별지 제2-3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자금 요청

시·군명 : (월 일 현재)

시·군명	약 정									사업비지급 요청(결과) (천원)
	약정 체결			약정 이행			약정 불이행			
	면 적 (ha)	필지수	약 정 체결수	면 적 (ha)	필지수	약 정 체결수	면 적 (ha)	필지수	약 정 체결수	
계										
1년생 작물										
조사료재배										
가공용 벼										

[별지 제3-1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 결과 통지

약 정 체 결 자								약 정 체 결 농 지							
성명	생년월일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전화번호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신청면적(m²)	농지소유(자,타,공유)	약정면적(m²)

※ 작성방법 : 1년생, 조사료, 가공용 벼 등으로 분류작성

[별지 제3-2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

약 정 체 결 자								약정체결 농지						현장점검결과		
성명	생년월일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번	지	신청면적(m ²)	약정면적(m ²)	실제농지면적(m ²)	① 지급조건 이행여부	② 재배작물

※ 작성방법 : 1년생, 조사료, 가공용 벼 등으로 분류작성

③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들녘별 공동 농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 전남 쌀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을 농업인 주도하고 생산비 절감 및 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들녘별 쌀 농업회사」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4년까지 들녘별 쌀 농업회사 70개소 육성 생산·유통 체계화 구축

* 육성계획 : (‘11) 30개소 → (‘12) 50개소 → (‘14) 70개소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9	‘10	‘11		
▪ <u>노동시간 절감비율</u>	40%			신규	12월	$\frac{\text{실 노동시간}}{\text{평균 노동시간}} \times 100 (\text{공동 농작업만 계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510	710	532	400	1,000
국 비	255	355	266	200	500
도 비	61	85	64	48	120
시군비	143	199	149	112	280
자부담	51	71	53	40	100

나.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들녘별 쌀농업회사, 정부인정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및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 들녘별 쌀농업회사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RPC·DSC, 농협, 농업법인
 - 단,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
 - * 들녘별 쌀경영체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 육묘·이앙·재배관리·수확 중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 단 육묘는, 묘종 공급면적이 100ha 이상인 조직
 - DSC, 농협, 농업법인은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 인정

3) 지원대상 및 자금 용도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 지자체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 결정(우수 사업자는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신규 신청자는 사업자로 우선 선정 지원
- 자금용도
 - 교육지원 :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 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컨설팅 지원 : 작부체계(전작·축산 연계 등),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들녘별경영체 관리, 생산비 절감, 향토자원 활용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
 - 운영비 지원 :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임차료 또는 유류비, 수리비, 공동 육묘 시 필요한 유류비·종자비(운영비는 지원 금액의 30% 내외 지원 가능)
 - * 운영비를 30% 이상 사용할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후 40%까지 사용 가능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직전연도 교육·컨설팅을 받은 사업자(1~2년차) 중 들녘별 쌀경영체의 규모화 및 조직운영 실태 등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
 - *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육묘 : 자동화 공동 육묘장 및 부속시설
 - 방제 :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교육·컨설팅 : 공동 농작업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 100ha 미만 10백만 원, 100ha이상~200ha 미만 20백만 원, 200ha 이상 30백만 원
- 사업량 및 지원조건
 - 교육·컨설팅 10개소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 개소수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5) 들녘인정 기준

- 소재지 동·리와 상관없이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생산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인정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1월 31일까지 신청
- 신청서 양식 : [붙임1] 참조
- 아래사항을 포함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신청서와 같이 시·군에 제출

구 분	내 용
공 동 생 산	· 공동생산 범위(육묘, 이앙, 재배관리, 수확) ·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종류와 대수 및 확보 방안 · 공동생산에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
고품질 쌀 생산	· 재배품종 및 품질기준 · 약정체결서
자금 집행 계획	· 농작업료 비용 및 환원 방법 등
사업비집행계획	· 시설·장비 구입계획, 교육·컨설팅·운영비 집행 계획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 : 자체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한후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에 2.15일까지 신청
- 도 : 시·군 평가결과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한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에 2월말까지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 도 평가결과 및 평가단 평가를 통해 3월말까지 사업자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는 세부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자금집행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전체 사업비 중 자금집행 계획 이 30% 미만 변경시 시·군의 승인을, 30% 이상 변경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 외부업체와 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를 준용하여 계약 체결
 - 다만,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시군 홈페이지·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개찰도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자체실시 가능
- 사업자는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완료 후 시·군에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정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단말기에서 출력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자는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공동 농작업 시간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거나 경영장부를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도는 매년 11월말까지 공동 농작업 시간을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자 확정 후 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예산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한 후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 시·군은 사업자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되면 자금사용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군은 상·하반기 각 1차례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금집행의 적정성, 계약체결의 적정성 등
 -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군의 상·하반기 점검 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달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단독 또는 시·군 합동으로 연 2회 점검 실시

《제 재》

-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게 자금이 집행된 경우 시·군은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
- 시·군은 사업자가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용한 것을 확인한 경우, 부당사용액에 대하여 반납 받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반환
 - 부당사용금액과 비율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사업자금 지원 중단

6) 성과측정단계

- 시·군은 들녘별 쌀경영체가 공동농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조사하여 11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붙임4 양식)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교육·컨설팅 최대 3년간 지원 또는 공동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정부보급종도 사전주문을 받아 우선 공급

라. 2013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12.5월까지 제출하면 시·군은 도를 경유하여 '12.6월까지 농식품부에 신청
- 농식품부는 '12.9월까지 평가기준에 따라 '13년 사업자 우선 순위 선정하고, 국회 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붙임 1]

특별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상호명			설립년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지원내역	지원횟수	회
	휴대전화				지 원 액	백만 원
	주 소					
	조직형태	RPC, 농협, DSC,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신청내역	사업량	들녘별 쌀경영체 ____개소, 공동농작업 _____ha				
	재원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시설·장비	구입 시설·장비명				
		구입액			(백만원)	
	교육·컨설팅	계	교육	컨설팅	운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2. RPC·DSC·농협과 들녘별쌀경영체간 계약재배 체결서 3. 들녘 항공사진(참여 농지 구분 표시) 4. 법인등록증(농업법인에 한함)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시설·장비 지원에 한함) * 통장사본은 통장인감으로 원본대조 날인하여 제출 6. 사업자 선정 평가표(교육·컨설팅 지원에 한함)						

<첨부서류 1>

○○RPC(농협·농업법인) 들녘별 쌀경영체 세부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공동농작업(계약재배) 면적		ha	계약재배 벼매입량		톤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m ²),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트랙터 대, 이앙기 대, 콤바인 대				
		임대현황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들녘별 경영체 1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참여농가수	호
	공동농작업 면 적		ha	공동농작업 종 류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m ²),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들녘별 경영체 2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참여농가수	호
	공동농작업 면 적		ha	공동농작업 종 류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m ²),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들녘별 경영체 3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참여농가수	호
	공동농작업 면 적		ha	공동농작업 종 류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m ²),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2. 사업계획

가. 공동 농작업

☐ 공동 농작업 종류 및 면적

- (해당 지역의 논 면적 중 들녘별 쌀경영체가 공동생산하는 면적, 향후 계획 등)

-

*

- (육묘, 이앙, 병해충관리, 물관리, 수확 등 공동 농작업의 종류)

☐ 농기계·시설 확보 방안

- (사업자가 보유한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 현황)
- (사업자가 보유한 농기계, 시설로는 공동생산이 어려울 경우 부족한 농기계, 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인력확보 방안

- (공동농작업에 필요한 인부를 어떻게 확보할지 기재, 예를 들면 농협 직원 활용, 농작업 대행 농업인에게 노임 지급 또는 임시노동자 고용 등 상세방안)

나. 고품질쌀 생산

☐ 계약재배 면적 및 품종

- (계약재배 품종, 품종별 계약재배 면적)

☐ 품질기준 및 생산지도

○ 품질기준

- (질소함량·품종순도 등 품질기준 및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재배 방법, 품질 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 생산지도

-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지도 방안)

○ 제재사항

- (품질기준 위반시 제재사항)

※ 계약재배 약정체결서 첨부

다. 자금 운영 계획

□ 농가의 공동 농작업 비용 처리 방법

- (육묘, 방제 등을 대행해 줄 경우 해당 농지 농업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납부하는 지, 납부금액은 관행비용에 비교할 때 얼마나 저렴한지 등)

-

*

□ 농가로부터 받은 임작업료 처리 방법

-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를 누가 관리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지, 수입과 지출은 참여농업인에게 어떻게 보고되는지 등)

-

*

4. 사업비 집행계획

구분	집행액	집행내역
계	천원	
시설·장비지원	천원	· 광역방제기 구입 = ○○천원 (방제기) = ○○천원 (운반차량) = ○○천원
교육 지원	천원	· ○○교육 ○○원 = ○명×○회×○원 · ○○선진지 견학 ○○원 (교통비) = ○명×○회×○원 (도시락) = ○명×○회×○원
컨설팅지원	천원	· ○○컨설팅 ○○천원 ·
운영비지원	천원	· ○○임차료 ○○원 = ○대×○일×○원 · ○○유류비 = ○○천원 (광역방제기) = ○대 ○○원 (무인헬기) = ○대 ○○원 · ○○수리비 = ○○원

[붙임2]

교육·컨설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1. 들녘규모 (30)	20	○ 참여 농지면적이 50ha 5점, 50ha 추가마다 5점 가점 (최대 20점)	
	10	○ 공동농작업 참여 농업인수가 20명당 1점 가점 (최대 10점)	
2. 공동농작업 규 모 (40)	20	○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헬기 보유(개소당 10점), 임차 (개소당 5)	
	10	○ 육묘장(661㎡, 200평 기준) 1동 5점, 2동 이상 10점	
	10	○ 신청자 보유 농기계(트랙터·이앙기·콤바인) 대수당 2점 * 법인명의로 면세유를 받는 농기계 또는 법인명의로 용자 구입한 농기계이거나 농협직영 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농기계에 한하여 인정	
3. 조직운영 (10)	10	○ 들녘별 쌀 경영체 운영기간에 따라 배점 - 5년 이상 10점, 4년 이상 8점, 3년 이상 6점, 2년 이상 4점, 1년 이상 2점, 1년 미만 1점	
4. 신 청 자 조직형태 (10)	10	○ 사업자의 조직형태에 따라 배점 - RPC 10점, 농협 9점, DSC 8점, 영농조합법인 8 점, 농업회사법인 7점 * 농업인·조합원이 많은 조직 우대	
5. 시도지사 평가점수 (10)	10	○ 시도별 신청자 수에 따라 강제배분(상위 20%는 10점, 이후 20%마다 2점씩 차감) * 5등분 후 남는 사업자는 상위 등급 순으로 강제배분 (미 배분 시 2점 처리)	
합 계	100점		

[붙임3]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1. 들녘규모 (30)	20	○ 참여 농지면적이 200ha 5점, 50ha 추가마다 5점 가점 * 사업자가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참여농지면적에서 보유 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은 차감하고 배점(광역방제기·무인헬기 400ha 차감, 육묘장(200평) 100ha 차감)	
	10	○ 참여 농업인수 50명인 경우 5점, 40명 추가마다 1점 가점	
2. 농기계 이용의 용이성 (15)	15	○ 참여농지가 들녘으로 집단화되어 있고, 광역방제기·무인헬기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곳 : 15점 ○ 참여농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광역방제기·무인헬기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곳 : 12점 ○ 참여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나, 축사나 온실 등이 들녘내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방제기·무인헬기의 이용시 유의가 필요한 곳 : 9점 ○ 참여농지가 분산되어 있고 축사나 온실 등이 들녘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방제기·무인헬기의 이용시 유의가 필요한 곳 : 6점 ○ 참여농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거나, 광역방제기·무인헬기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 : 3점	
3. RPC와 연계성 (20)	20	○ RPC와 계약재배 후 출하한 비율 - 공동농작업 면적의 생산량(통계청 시·군별 평균 생산량 자료 활용) 중 RPC와 계약재배하여 출하한 비율에 20을 곱하여 배점 * RPC와 들녘별쌀경영체간 계약, 농협·DSC·농업법인과 RPC간 계약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4. 조직운영 (25)	10	○ 고품질 쌀 생산(재배) 체계 구축 여부(세부평가 항목별 합점) - 메뉴얼 구비 : 2점 - 메뉴얼 교육 : 2점 - 메뉴얼 준수 확인 가능 : 2점 - 메뉴얼 위반시 제재 가능 : 2점 - 메뉴얼 이행 : 2점	
	5	○ 수입·지출 및 결산(생산 경비, 영농대행 소득 등)의 투명성 - 수입·지출의 기록 정리 : 1점 - 이사회 등 대표자 보고(집행부 보고 제외) : 2점 - 총회 등을 통한 참여 농업인 보고 : 5점	
	10	○ 공동농작업 등 경영체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참여 농업인에게 환원한 금액의 비율(연도말 기준) * 환원 비율에 따라 배점, 수익이 없는 경우 10점	
5. 자금조달 능력 (10)	5	○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로 확인	
	5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 * 법인명의 통장 잔액 금액으로 확인(단기 차입금 제외)	
합 계	100 점		

[붙임4]

○○ 시·군 사업 결과보고

1. 사업자명 :

2. 공동 농작업 면적 및 노동시간

구분	들녘별 쌀 경영체명		들녘별 쌀 경영체명	
	작업면적(ha)	노동시간(hr)	작업면적(ha)	노동시간(hr)
묘판 및 온상				
파 종				
기경 및 정지				
이 앙				
물 관리				
시 비				
제 초				
병해충 방제				
수 확				
운 반				
건 조				

* 노동시간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공동작업업에 대한 공동노동 시간만
계산(시간×인원)

Ⅳ 조건 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 기준이며, 향후 내용 변경될 수 있음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4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 내지 33조

Ⅱ. 2012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島嶼)지역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2. 사업대상 토지

- 조건 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 제2조 상의 농지 및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04 . ' 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어야 함.

<조건 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보조금 지급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다만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정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 ◆ 「지적법」 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
- ◆ 임야에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60세 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 시 등

3. 지원자격 및 지급요건

- 지원 자격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 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 이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 재원 및 지원기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80%, 지방비 20%
- 지급단가 :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건 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AgriX 유지 보수단에 통지(3월초)

AgriX 유지보수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 등을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3월말)

도, 시·군, 읍·면

- 도지사는 '조건 불리지역'을 시장·군수에 통지(3월초)
- 시장·군수는 '조건 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 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에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3월말까지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 해당 읍·면의 조건 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신청 단계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 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 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 단위로 조건 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마을 발전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말까지)

- 시·군(읍·면)에서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3월초)
-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 마을발전계획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 민통선 안, 섬지역 등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지원대상 법정리는 해당 읍·면 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마을 농지로 출입 영농하는 농업인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마을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4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표고,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가능

3. 사업자 선정 단계

농업인등 · 운영위원회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약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대리 작성시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

< 약정신청서 구비서류 >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임차/사용차 농업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 * 마을대표의 확인서는 불인정
-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보조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시·군(읍·면)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약정신청서'를 배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후 제출
- * 약정신청서에는 공부상 면적, 신청제외 면적(묘지, 창고, 유흥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실경작) 면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
-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약정 신청 전에 농지원부(조사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본을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약정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협조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및 신청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를 현장확인 후 신청인의 공람을 거쳐 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5월말까지)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등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 * 현장확인은 운영위원 활용,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금 사용 가능

읍 · 면

(가) 서류 구비·보관

- 읍·면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유무 및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제출자료 및 전산자료 등)를 구비·보관
- 기 지원자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전산 출력한 약정신청서만 구비·보관

(나) 구비서류와 전산자료(Agrix)를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Agrix의 G4C 등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수탁영농 여부 등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처분대상농지, 전용농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지 등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여부를 Agrix(또는 서류)로 반드시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 공부·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신청농지(초지)의 이용(관리) 현황, 소재지, 면적 등은 구비서류, Agrix의 토지대장 등을 통해 대조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 여부 확인

- Agrix를 통해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등록 후 신청토록 조치

(다) 현장조사 및 확인 후 Agrix에 신청인 및 토지 정보 입력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는지 여부와 창고, 축사, 묘지, 목장, 산림 등으로 이용되고 일부만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는데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확인결과를 Agrix에 정보 입력

* 신규 신청 농업인 등과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 실시

- 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의 협조하에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실경작 여부 등 신청자격 유무와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 토지면적을 확인 후, 확인결과를 Agrix에 정보 입력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인지, 중급 이상으로 관리되는 초지인지 여부와 창고, 축사, 묘지 등으로 전용되거나, 목장, 산림 등 일부경작 농지(초지)임에도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 기 지급 신청인 및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 유무 등 현장 확인·조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라) 확인결과 제출

- 읍·면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유무 및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별지 제5호 서식>와 약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7월말까지)

시·군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 (8월 말까지)
- 현장 확인은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부적격 사항이 발견된 마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실시
 - * 관리협약 체결 시, 관리협약 이행표<별지 제6호 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 *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에게 알려야 함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지급약정 변경을 신청(10월 말까지)
- ◆ **읍·면** : 지급약정 변경신청인이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농지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시장·군수에게 보고
- ◆ **시·군**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보조금 지급전에 제세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유권이전 등 소유권 변경여부를 최종 확인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서, 지급대상자 변경 승인을 받는 자에게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 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 조건 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 운영위원회의 임무
- ◆ 조건 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 조건 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 조건 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 조건 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마을발전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조건 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부당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등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간 교체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 시·군의 이행점검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Agrix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이행점검 완료를 전산 보고(10월말까지)

마을(법정리·행정리)

-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및 '조건 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별지 제6-1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9월말까지)

읍·면

- 시·군의 이행점검계획 및 점검요령에 따라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제출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또는 별도 작성한 지급대상 토지의 지번별 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실시
- * 읍·면에서는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을 Agrix에서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시 · 군

1)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 시장·군수

-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행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Agrix를 통해 도에 이행점검 완료를 전산 보고(10.20일까지)
- 위원장이 제출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시 운영위원장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가) 농지관리의무(필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위원장, 운영위원 및 마을주민의 의견청취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되 신청 농가의 30% 이상 현지조사(3년내 1회 전수조사)
 - 위원장이 읍·면을 경유하여 제출한 조건 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 점검표<별지 제 8호 서식>를 활용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되,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면적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차감

- ◆ 보조금 지급개시 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 ◆ 농지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하거나, 작목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거나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

(나)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의무) 및 적정관리 여부 확인

- 마을별 연 2회 이상 점검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 등을 점검·지도
- '10년 혹은 '11년에 조건 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 시까지 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 상태 등을 계속 점검·지도

- ◆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들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08년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 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 (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다) 마을활성화 실천(1개 이상 의무이행) 등 이행여부 확인

- 마을에서 제출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표'를 참고로 시장·군수와 체결한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등
-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기반정비, 토지개량사업
- ◆ 지역마케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 * 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추가 가능

2)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

- 이행점검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

- 시장·군수는 이행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별 이행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단, 대상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하여 도에 이행점검 완료 전산 보고(10.20일까지)

5. 자금배정, 보조금 지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도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 후 Agrix의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확정 및 교부(천원미만 올림)
 - * Agrix를 통한 행정처리 간소화 등을 위해 별도공문 없이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도

- 시·군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에 따른 Agrix의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

-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보조금 산정기준 : 지급단가(m^2 당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에 지급 대상 면적(m^2)을 곱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
 -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의 공동기금 조성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 *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1) 대상자 관리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5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2) 제재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된 농업인등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참여를 제한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5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5년간)

※ 면책기준 : 자연재해의 경우,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5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3) 보고

- 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8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 10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 : 익년도 1월말까지(Agrix 별지 제8호 서식)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후 마을 이탈농지지율(%)
 - 측정방식 =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 사업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 수 / 작년 농가 수 × 100] 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 Agrix 사업신청서에 입력된 농가수를 토대로 성과지표 산출 및 평가

<만족도조사>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PCRM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제도개선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보조금 지급 이후(11월~12월)
 - 조사대상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12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면적, 미지원 법정리(마을) 중 '13년 사업 추진 가능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면적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지자체를 통한 '12년 미지원 법정리에 대한 '13 사업 추진 가능 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후렛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의 선정, 지급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결과, 보조금 지급액 확정, 보조금 지급(정산)결과 보고 등의 업무 처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처리

5) 발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1) 목 적

-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브랜드 육성
-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지원 대상 및 요건

- 브랜드 경영체 : 품목조직,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기존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참여하는 법인체
 -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관리 체계 구축
 - '12년 신규사업체가 지역통합 브랜드 경영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승인 전(2월말)까지 법인설립·등록을 완료

다) 지원 대상 품목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직운영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교육, 경영 컨설팅 등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공정육묘장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 기타 상기 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지원한도는 10억 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 지방비 50%
 - 브랜드경영체가 시군유통회사와 동일주체인 경우 사업비 지원 제외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사업비 지원한도는 10억 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 지방비(도 및 시군비)는 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하며,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자부담을 시군비로 부담 가능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1년간
- 개소당 사업비 기준 :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예산범위내 사업비 규모 증감 가능
 - 발작물 : 시설사업 10억 원/개소(기금보조 3, 지방비 5, 자부담 2)

4) 사업추진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13년 신규사업 대상)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 시행('11. 12월)

지방자치단체

《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12. 3월말까지)

《시·군》

- 시장군수는 브랜드경영체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사업신청 품목의 통합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시장·군수 주관) 심의를 거쳐 시도에 제출('12. 2월말까지)
 - 통합브랜드육성계획은 사업품목의 생산현황, 사업주체, 기존시설과 연계 활용 계획, 시설부지, 자부담 이행계획 등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
 - * 계획서 작성 서식은 농식품부 기본계획으로 예시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공청회 등 농업인, 참여조직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전문가 심의위원회》

- 도 및 시·군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되, 산·학·관·연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지역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 직원 포함)

브랜드경영체

-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12. 1월말까지)

나) 사업자 선정단계('13년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평가)

- 농식품부 : 심사평가 기본계획 수립·시행('11.12월), 대상자 확정발표('12.12월)
 - 단계별 심사평가 기준, 일정 제시 등
 - 10명이내의 평가단 구성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계획 수립·시행, 평가단 운영
 -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사업추진심의회 세부계획 수립·시행

다) '12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2년 세부사업계획 작성요령 별도 시행('11.12월)
- 지자체 제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시행('12.2월말)
 - * 실무 검토·조정의견을 사업추진심의회에 상정, 심의

도 및 시·군

- 해당 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연차별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이를 검토하여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 농식품부에 제출('12.1월말)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경영체 운영실적을 농림사업 통합정보 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야 함
- 도, 시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농산물 브랜드경영체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괄 발주 가능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다.
- 도, 시군에서는 농산물 브랜드경영체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방안(조례 등)을 마련

브랜드 경영체

- 연차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12. 1월)
 -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서(필요성,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제출
 - 사업 계획수립 시 일괄발주가능 사업은 일괄발주 계획수립
- 사업법인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
 - 사업계획 수립, 평가, 농업인 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브랜드경영체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 확보 계획 수립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도와 농식품부에 제출
 - 다만, 단위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단위사업간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위사업은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시설지원 등으로 중분류된 사업이며, 세부 사업은 단위사업내 사업임(예시 : 조직운영사업 중 교육사업, 컨설팅사업 등)
- 사업시행주체는 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라)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신청서(보조금 : 지자체, 융자금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근거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도에 자금 한도액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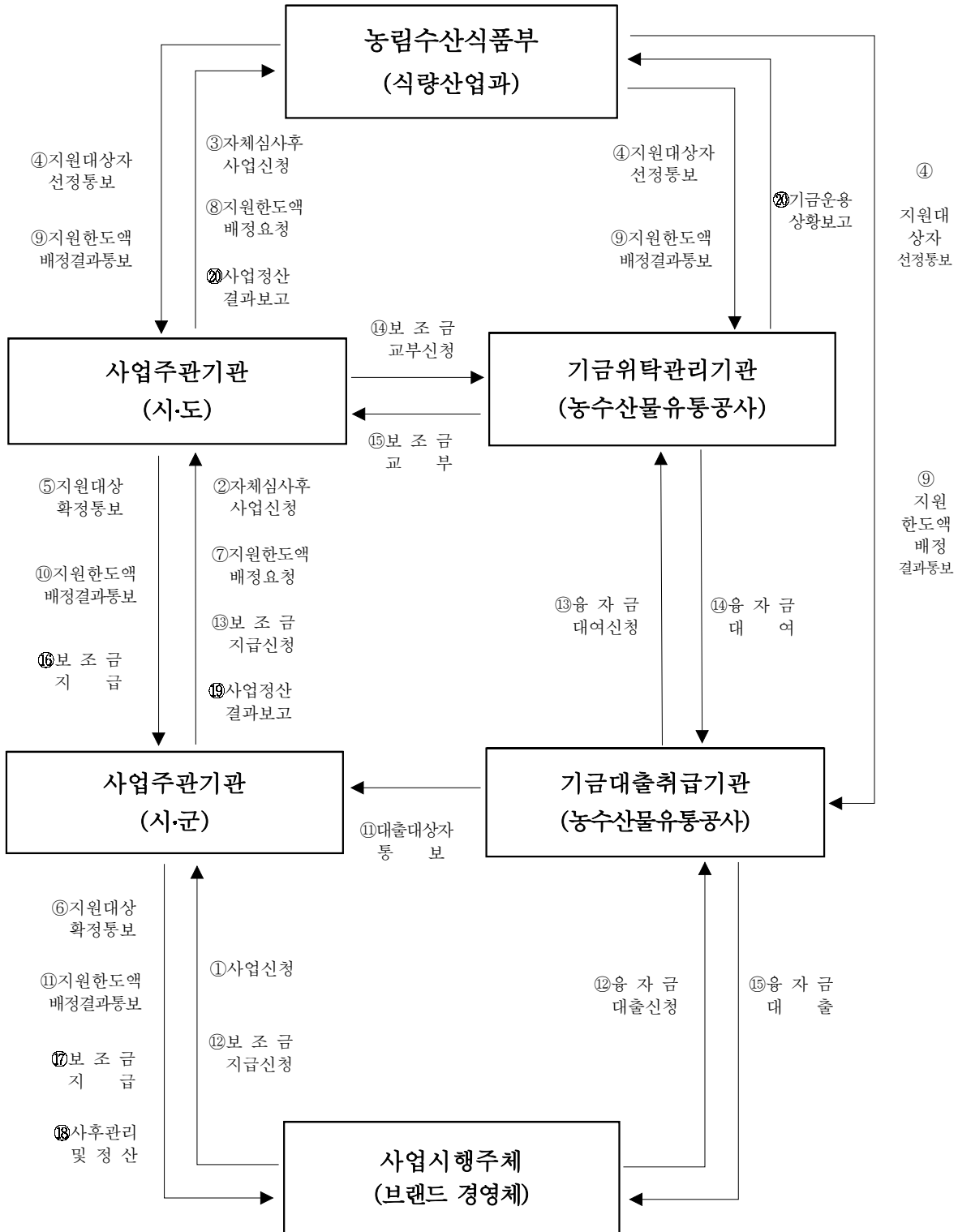
도 및 시·군

- 월별 소요자금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한도배정 요구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시·군)에서 자금배정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체계도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 연도 5월, 10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 법인설립, 자금집행상황, 시설부지확보, 조직운영, 마케팅 등 세부사업 추진상황
 - 결과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등

사업주관기관(도 및 시·군)

- 중간점검(신규 및 계속 사업체 모두 적용)
 - 점검 시기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후점검(원예브랜드 계속사업체에만 적용)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익년 2월중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고, 연차평가(중양) 자료로 제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장·군수는 예산 이월, 불용이 예상될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이월, 불용사유서,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 시장·군수는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물사업실시규정 제 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차량, 장비 등	사업완료 익년 1월부터	5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건축물 - 콘크리트, 블록조 - 철근콘크리트	"	10년간		

-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용자금 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행(매년 3월중)
 - 대출이후 13개월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지원용도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 개별생산시설 용자금은 시설설치전과 완료 후에 공사(관할지사)에서 현지 확인

《제 재》

사업관리주체(도 및 시·군)

- 사업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실적 확인결과 사업의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규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대출금 회수, 대출 제한, 위약금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식품부와 도(시·군), 브랜드경영체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브랜드경영체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일정 : 연차평가 시행 시 성과측정 병행(매년 3월)
- 매년 사업성과지표 측정시 부진사업(기성고 및 집행율 70%미만)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 시행

《만족도 조사》

- 조사기관 : 농식품부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행
- 조사시기 및 방법 : 매년 10월중, 외부 조사기관에 용역
- 조사대상 : 사업관계자(브랜드경영체, 지자체 등), 브랜드경영체의 주거래 업체, 소비자, 농산물 유통종사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지원, 지원 중단,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패널티 부여
 - 대상자 확정 후 법인등록까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8)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13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12.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도 → 농식품부
- ※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본 사업신청서 접수

나)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세부내용은 별도 시행(농식품부, '11.12월)
 - 기한 : 브랜드 경영체(1월말까지) → 시·군(2월말) → 도(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13년 사업신청자는 발표평가전까지 출자지분, 시설부지 등을 확정하고, 법인설립 완료 신청자에 한하여 발표평가 자격이 있음(법인설립이 완료 안된 사업자는 발표평가 불가)
- '13년도 사업대상자 결정(농식품부) : '12년 12월

다) 기타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11월 30일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신청서

사도(사군)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 청 내 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주 사업장소 (예정지)	지목 : 면적(부지) :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 자 계 획	보 조	구 분	'11	'12	'13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조직운영					
		마케팅 강화					
		공동생산기반시설					
		종합처리시설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 하 ※ 예비신청서도 본 양식으로 하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군>

(단위 : 천원)

사업 체 별	시· 군	단 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세 부 사 업	품 목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국 고	도 비	시 군 비	융 자	자 부 담	계	국 고	도 비	시 군 비	융 자	자 부 담	국 고	도 비	시 군 비	융 자	국 고	도 비	시 군 비
						%																				

- 주) 1. “단위사업”은 조직운영, 마케팅강화,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4.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

Ⅵ 농기계 임대사업(국비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할 것
 -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 발작물브랜드, 고품질 쌀 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 조사료생산 등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용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에 임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연간 이용시간이 적거나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용 파종·이식 및 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구입은 가능하나, 트랙터(40마력이상), 승용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추진

- 임대농기계는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다만, 밭작물브랜드, 고품질쌀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의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직영조합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체형(통합) 모델을 발굴 선정(부속작업기 등), 직영조합에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 직영조합 : 농협이 직접 농기계를 보유관리하면서 농가 농작업을 대행하는 조합
- 내용연한이 종료된 기종의 대체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음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 ※ 가급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운영비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연간 30백만 원 이내)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자체예산을 활용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3개소
- 사업단가 : 1,000백만 원 / 개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도비 15%, 시·군비 35%
- 총사업비 : 3,000백만 원(국고 1,500백만 원, 도비 450, 시·군비 1,050백만 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도지사는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신설(최초·추가) 사업에 한해 사업단가 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보관창고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총사업비의 50%이내 이어야 하며,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 적합한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 최초 신설사업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
 - ※ 추가 신설사업 :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군·구 관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조건, 자금용도, 임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도에 시달(전년도 12월)

도

-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이 제출한 임대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우선 순위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시·군

- 시·군은 농기계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단, 여성 농업인 1인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농기계 구입(임대기종 선정, 수익계약 시 업체선정 등),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심의
- 사업계획은 반드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대상 지역의 영농현황,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가 통보한(기초 기술공학과-259호, '06.10.24)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계적재 방안 등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계획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전년도 12월)
- 고품질쌀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 발작물브랜드 등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 구입계획, 농기계 임대방식, 임대료 징수방법 및 이용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세부계획서(최하3년 이상)를 수립하여 추가 제출함
 - 장기 임대시는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 등의 보관창고 확보현황, 수리비 부담, 공동이용 농가 및 경지면적, 농기계 공동이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수립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도지사가 제출한 임대사업신청서의 적정성, 농기계임대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별 사업계획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 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관창고부지·운영조직 확보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농가수, 발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최초 신설(설치)의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추가 설치의 경우 그 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이용율) 등을 감안 선정
 - 다만, 농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시·군은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도

- 농림수산식품부가确定的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사업대상자로 确定的된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确定통보 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함(수시)
 - 단,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지자체의 자체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추진(임대농기계 추가구입, 보관창고 확대설치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와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임작업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임대농기계를 재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
 - 임대료 산정 시 반드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의 명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사용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2월)

도

- 시·군별,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2월)
- 농림수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함(분기별)

시·군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 제출함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 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 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도)

-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점검은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13.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하여야 함.[서식별도 통보]
 - 시·군의 보조 사업비 정산 시 임대농기계 구입 증빙서류를 징구·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본 제출

자금관리주체(시·군)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을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 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실적 보고서에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 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2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 기종별 내용연수 - 탈곡기, 곡물건조기 : 8년 - 경운기, SS기 : 6년 - 관리기, 방제기 등 : 5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의 사용금지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임대농기계 보관 창고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제 재》

사업관리주체(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자금관리주체(시·군) 및 관련업체)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은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04년 이후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한 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서식별도 통보]에 의거 '12. 12. 20.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임대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 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 류)임대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2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 → 도 → 농림수산물식품부
- 신청서류 :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3. 1. 20까지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신청 [세부계획서 양식 전년 동일] 은 '12. 7월말까지 제출, 기타 사항은 '12년도와 동일함

[별지 1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최초 신설 ()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추가 신설 ()					
사업내용	시설·장비			소요예산(백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보관창고 설치 : m ²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례 제정여부	제정(), 미제정()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추후 확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시장·군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수요조사서 제출 시에는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 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	---------------------------------

구입 금액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원			

구입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 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 입 처	회 사 명		
	전화번호		
	홈 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㉞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 절감형농기계를 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하여 임대 지원으로 농가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

II. 2012년 사업시행 계획

1. 사업내용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3,334,000천원(도비 1,000,000, 시군비 2,334,000)
- 지원 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 대상 : 시장·군수(단,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운용)
- 사업 내용 : 농작물 파종·수확 농기계 등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군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시군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할 것
-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 밭작물브랜드, 고품질 쌀 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 조사료생산 등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시장·군수는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예시) 영광·진도 : 대파 이식기, 무안·신안 : 마늘파종·수확기·양파 수확
잡곡 수확기 등 시·군 실정에 맞는 발작물용 농기계

- 임대농기계는 연간 이용시간이 적거나 기계화율이 낮은 발농사용 파종·이식 및 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구입은 가능하나, 트랙터(40마력이상), 승용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에서 『농기계은행 사업』으로 추진

- 임대농기계는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함.
- 내용연한이 종료된 기종의 대체농기계를 구입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 농진청에서 개발한 “농기계 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산정프로그램”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보관창고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총사업비의 60% 이내 이어야 하며,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적합한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계획 수립(시·군)

- 시·군은 농기계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단, 여성 농업인 1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농기계 구입(임대기종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등),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심의
- 사업계획은 반드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대상 지역의 영농 현황,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 사업계획 수립 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계재 방안 등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2. 사업계획 승인단계(도)

- 시장·군수가 제출한 임대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농기계임대사업 선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하여, 시·군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계획 승인 시 고려사항
 - 보관창고부지·운영조직 확보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발면적 등을 고려

3. 사업추진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
 -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도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
- 도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함(수시)
 - 단,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자체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추진(임대농기계 추가구입, 보관창고 확대설치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그 결과만 제출함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와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
-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임대농기계를 재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 산정
 - 임대료 산정 시 반드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의 명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사용하여야 함

4. 사후관리 및 제재

《사후관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을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 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실적 보고서에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 도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2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 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전라남도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 기종별 내용연수 - 탈곡기 곡물간판기: 8년 - 경운기, SS기 : 6년 - 관개기 방제기등: 5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 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 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임대농기계 보관 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제재》

- 도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은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IV. 추진일정(시·군 협조사항)

-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 '12. 1. 31일 한
- 시·군 사업계획서 검토(도) : '12. 2. 1 ~ 15일
-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도 → 시·군) : '12. 2. 20일 한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보고(시·군 → 도)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정산 보고(시·군 → 도) : '13. 1. 10일 한

[별지 1호 서식]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 승인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자체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사업내용	시설·장비			소요예산(천원)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보관창고 설치 : m ²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미제정()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추후 확보()			
2012년도 친환경농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시장·군수(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						

<붙임>

농기계임대사업 세부계획서

1. 일반현황(시·군)

☐ 경지면적 및 농가수

(“10.12월말 현재)

논	밭	농가 수	호당 면적		비 고
			논	밭	
ha	ha	호	ha		실 재배면적 기준

☐ 농기계 보유현황

(“10.12월말 현재)

구 분	논 농사용							밭 농사용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광역방제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계	관리기	SS기	농산물건조기	온풍난방기
보유대수	대											
보급율	%											

2. 임대사업소 현황

☐ 농기계 보관창고

(“11.12월말 현재)

설치년도	면적(m ²)	구조(형식)	비 고

☐ 임대농기계 보유

(“11.12월말 현재)

구 분	논 농사용					밭 농사용						
	계					계						
보유대수												

☐ 인력현황

(“11.12월말 현재)

계(명)	정규직	비정규직	기 타	비 고

3.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 기간 : 2012. . ~00.00(0일간)
- 조사 지역 : ○○군 관내
- 응답 농가 수 : 000농가 (조사대상 000명)
- 작물별 조사결과(“예시”)

구분	합 계	경종	원예			특용 작물	축산			비고
			소계	과수	시설		소계	낙농	한우	
조사농가 수	500	300	100	30	70	50	50	10	40	
응답농가 수	227	146	49	16	33	13	19	4	15	
응답비율(%)	45	49	49	53	47	26	38	40	38	

- 기종별 수요 및 임대농기계 구입반영 결과(“예시”)
- 기종은 농가당 3~5개 내에서 복수희망

기종 명	농가 수	비율(%)	구입여부	기종 명	농가 수	비율(%)	구입여부
합 계	227	100		휴대용지동전동기위	35	15.4	반영
논두렁조성기	89	39.2	반영	곡물건조기	32	14.1	미반영
트랙터	82	36.1	미반영	돌수집기	30	13.2	반영
보행관리기	78	34.4	반영	모우어	25	11.0	미반영
비료살포기	75	33.0	반영	사료배합기	22	9.7	미반영
주행형분무기	62	27.3	반영	육묘상자이송기	18	7.9	미반영
파종기	61	26.9	반영	콩탈곡기	17	7.5	반영
이앙기	60	26.4	미반영	곡물적재함	15	6.6	미반영
비닐피복기	59	25.9	반영	농용로우더	13	5.7	반영
콤바인	55	24.2	미반영	농용굴삭기	12	5.3	반영
플라우	54	23.8	반영	반전집초기	11	4.8	반영
심토파쇄기	52	22.9	반영	배토기	10	4.4	미반영
결속기	52	22.9	반영	잔가지파쇄기	8	3.5	반영
로우더	51	22.5	반영	저울(톤백용)	7	3.1	미반영
로타베이터	50	22.0	반영	종자탈아기	5	2.2	미반영
경운기	47	20.7	반영	지게차	4	1.8	미반영
농용동력운반차	45	19.8	반영	측조시비기	2	0.9	미반영
동력제초기	42	18.5	반영	콩예취기	1	0.4	반영
승용관리기	41	18.1	반영	콩정선기	1	0.4	반영
파종기	38	16.7	반영	휴립복토기	1	0.4	반영

4. 세부 사업추진계획

☐ 임대농기계 구입

구 분	기종 명	규 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비 고
임대농기계						
(소계)						
관리장비						
(소계)						
합 계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면적 (㎡)	구 조	설치장소(주소)	부대시설	완료시기

* 부대시설은 호이스터, 세차시설, 정비실 내역 등을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임대료 징수기준 또는 징수(안)

- 기종별 임대료 징수금액(안) 및 산출근거를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 민간 임작업자가 징수하는 임작업료 현황을 참고로 추가

☐ 임대 농기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임대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임대농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교육명, 교육시기(월), 교육대상, 교육인원 수 등 포함
- 임대농기계 관리방법 등을 표기
 - 임대용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세부내용
 - 전산프로그램운영, 임대차 계약, 수리비용 확보계획, 대체농기계 구입계획 등
-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임대농기계 공제(보험) 가입계획

□ 세부사업 추진일정

사업별	내용 및 추진일정	비 고
임대농기계 구입	○ 입찰공고 : 2012. . . ○ 계약체결 : ○ 납품완료 :	
보관창고 설치	○ 설계완료 : ○ 건축완료 :	
조례 제정	○ 조례(안) 확정 : ○ 의회 의결 :	
사업추진 실적	○ 사업추진실적 보고 : 2012. 12. 20.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보고 : 2013. 1. 10.	

5.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 임대실적 및 임대료 징수액('09~'11까지 3개년 실적)

연도별	벼 농사용				밭 농사용			임대료 징수액 (천원)
	농기계 임대실적 (대)	임 작업· 임대일수 (일)	작업 면적 (ha)	수 해 농가 수 (호)	농 기 계 임대실적 (대)	임 작업· 임대일수 (일)	수 해 농가 수 (호)	
2009								
2010								
2011								

□ 기종별 임대실적

기 종 명	연도별 임작업·임대일수			비고
	2009	2010	2011	
평균 이용일수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 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	----------------------------------

구입 금액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원			

구입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	회 사 명		
	전화번호		
	홈 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Ⅷ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 자율 선택
- 중·소형 농기계 우선 공급과 지원액 차등 지원으로 수혜농가 확대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수확 농기계 우선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4) 추진계획

(단위: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기타	
13,334,000	2,000,000	4,667,000	6,667,000	

5)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 타 분야의 국·도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11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

나.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자율 선택하되 70만 원 이상의 중·소형 농기계 및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수확기계 우선 지원

다. 농기계 공급자

-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사후관리 이행협약을 체결한 시군단위 사후관리업소로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운영 조합

-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농업기계를 우선 구매·공급하고, 공급지역은 사후관리업소 소재 인접한 시군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에 한함
- * 단,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를 임대 및 폐지한 사후관리업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기종별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자 등

라.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500만 원 초과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500만 원)
 - 500만 원 미만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250만 원)
- 재 원 별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 예시 】

- 500만 원 초과 농기계 구입의 경우(지원 한도액 500만 원)
 - 예시) 농기계 가격 1,300만 원의 「승용관리기」 구입의 경우
 - ⇒ 보조금 지원 한도액 50%인 보조 500만 원 / 자담 800만 원
- 500만 원 미만 농기계 구입의 경우(지원 한도액 250만 원)
 - 예시) 농기계 가격 480만원의 「트랙터용 로우더」 구입의 경우
 - ⇒ 보조금 지원액 50%인 보조 240만원/ 자담 240만원

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림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시·군 : 친환경농업과(농정과)

다.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조합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 「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시군「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및 농기계 선정
- ※ 시군에서는 행정, 지도, 지역농협,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실수요자 및 실효성이 높은 기종이 선정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

라.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 중고 농기계는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운기·트랙터용 트레일러는 저속차량표시등 장착기종에 한함(11.1.1부터 의무화)
-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희망자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맞춤형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의 기종 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 지원 대상자 및 농기계 구입 신청내역을 해당 지역농협, 시중은행 지점에 통보(용자실행 시 한도 내에서 실행되도록 주의)
- 지원대상자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기계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농기계를 인수
- 농기계 공급자는 시군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 지급 신청
- 시군에서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전에 농기계 구입 및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
 - ※ 경운기·트랙터용 트레일러에 저속차량표시등 미부착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농기계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과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마.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맞춤형 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망,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전환 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림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해당금액을 시군에 감액 배정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주 요 기 계·장 비	구입일	기 종 별 용자기간 (별표 1)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 기타사항(융자지원한도액 산정방식, 사후관리 등)은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와 동일함

바. 행정사항

- (1) 농기계 공급 및 집행실적 : 매분기 1회
- (2) 최종 집행(정산)실적보고 : 사업완료 후(2012. 11. 30까지)
- (3) 농기계 공급대장 작성 비치 : 시·군(읍·면·동)

별표 1

맞춤형 농기계 지원 기종별 사후관리 기간

※ 예시) 트랙터 사후관리 기간 : 8년(정부유자지원기간 적용, 1년거치 7년상환 * 1년+7년)

기종명	유자기간	기종명	유자기간	기종명	유자기간
1. 농용트랙터	1년거치 7년상환	46. 농용톱밥제조기	1 " 5 "	93. 원격조종형 동력분무기	1 " 4 "
(1). L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1년상환	47. 농용펌프	1 " 4 "	94. 육묘상자세척기	1 " 4 "
2. 보행형동력경운기	1 " 5 "	48. 농용혼합기	1 " 5 "	95. 육묘상자이송기	1 " 4 "
(2). L 부속작업기	1 " 5 "	49. 농용환풍기	1 " 5 "	96. 육묘용과종기	1 " 4 "
3~4. 동력이앙기(보행, 승용)	1 " 4 "	50. 농축사용공기정화기	1 " 4 "	97. 인칼균배양기	1 " 4 "
L 부속작업기	1 " 4 "	51. 동력배토기	1 " 5 "	98. 자동관수분배기	1 " 4 "
5. 콤팩트(자탈형)	1 " 4 "	52. 동력분무기	1 " 5 "	99. 자주식베일러	1 " 5 "
6. 콤팩트(보통형)	1 " 4 "	53. 동력살분무기	1 " 4 "	100. 자주형심토파쇄기	1 " 5 "
7. 보행형관리기	1 " 4 "	54. 동력상토조제기	1 " 4 "	101. 정전대전방제기	1 " 4 "
(7). L 부속작업기	1년거치 4, 5 2년상환	55.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 " 5 "	102. 조사료수경재배기	1 " 4 "
8. 승용관리기	1 " 4 "	56. 동력연무기	1 " 4 "	103. 종자발아기	1 " 4 "
(8). L 부속작업기	1 " 4 "	57. 동력예취기	1 " 5 "	104. 종자봉입기	1 " 4 "
9. 가정형도정기	1 " 5 "	58. 동력이송기	1 " 4 "	105. 종자소독기	1 " 4 "
10. 고추정선기	1 " 4 "	59. 동력이식기	1 " 4 "	106. 주행형동력분무기	1 " 4 "
11. 곡물건조기	1 " 7 "	60. 동력제초기	1 " 5 "	107. 채소자동접목기	1 " 5 "
12. 곡물냉각기	1 " 7 "	61. 동력중경제초기	1 " 5 "	108. 축분고액분리기	1 " 5 "
13. 곡물수집차	1 " 5 "	62. 동력퇴비살포기	1 " 5 "	109. 콩예취기	1 " 4 "
14. 곡물이송기	1 " 4 "	63. 동력파쇄기	1 " 5 "	110. 콩정선기	1 " 5 "
15. 곡물적재함	1 " 4 "	64. 동력과종기	1 " 4 "	111. 콩탈곡기	1 " 5 "
16. 파수용작업대	1 " 5 "	65. 마늘줄기절단기	1 " 5 "	112. 탈망기	1 " 4 "
17. 파수인공교배기	1 " 5 "	66. 마늘쪽분리기	1 " 5 "	113. 토양소독기(전용형)	1 " 4 "
18. 파실수집기	1 " 4 "	67. 무인자동방제기 (자주형동력분무기)	1 " 4 "	114. 하우스환경 제어장치	1 " 5 "
19. 파실수확기	1 " 4 "	68. 무인항공방제기	1 " 5 "	115. 회전형방상팬	1 " 5 "
20. 농가용 식물영양제제조기	1 " 4 "	69. 미생물배양기	1 " 4 "	116. 휴대용전동가위	1 " 5 "
21. 농산물건조기	1 " 7 "	70. 버섯동력천공접종기	1 " 5 "	117. 시간계측기	1 " 5 "
22. 농산물결속기	1 " 5 "	71. 버섯배지살균기	1 " 4 "		
23. 농산물교반기	1 " 5 "	72. 버섯배지제조기	1 " 4 "		
24. 농산물선별기	1 " 5 "	73. 버섯배지탈면기	1 " 4 "		
25. 농산물세척기	1 " 5 "	74. 버섯종균분쇄기	1 " 4 "		
26. 농산물수확기	1 " 5 "	75. 벼도정수율자동 판정기	1 " 5 "		
27. 농산물저온저장고	1 " 4 "	76. 버직파기(전용형)	1 " 4 "		
28. 농산물제피기	1 " 4 "	77. 버품위자동판정기	1 " 5 "		
29. 농산물포장기	1 " 5 "	78. 사료급여기	1 " 5 "		
30. 농업용결속기	1 " 5 "	79. 사료배합기	1 " 5 "		
31. 농업용리프트	1 " 5 "	80. 소형발쟁기	1 " 5 "		
32. 농업용수처리기	1 " 4 "	81. 수래용마늘파종기	1 " 5 "		
33. 농용지주설치기	1 " 4 "	82. 수막난방용 용수공급장치	1 " 4 "		
34. 농용고소작업차	1 " 5 "	83. 스피드스프레이어	1 " 5 "		
35. 농용고압세척기	1 " 4 "	(83). L 부속작업기	1 " 5 "		
36. 농용공기교반기	1 " 5 "	84. 승용감자수확기	1 " 6 "		
37. 농용공기순환제습기	1 " 4 "	85. 승용양파수확기	1 " 6 "		
38. 농용굴삭기 (자체중량1톤미만)	1 " 5 "	86. 신선도유지기	1 " 4 "		
39. 농용난방기	1 " 5 "	87. 온습도조절기	1 " 5 "		
40. 농용냉난방기	1 " 4 "	88. 온실난방용대체 에너지화기기	1 " 7 "		
41. 농용동력운반차	1 " 5 "	90. 온실용살수기	1 " 5 "		
42. 농용로우더 (자체중량2톤미만)	1 " 5 "	91. 완전미도정수율 자동판정기	1 " 5 "		
43. 농용음이온발생기	1 " 5 "	92. 원거리용방제기	1 " 4 "		
44. 농용콘베이어	1 " 4 "				
45. 농용탄산가스발생기	1 " 5 "				

2012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000000-1☆☆☆☆☆☆
- 주 소 :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전화번호(핸드폰) :
- 농기계 주용도 : (예시) 감자 수확, 밭작물 두렁 조성 등
- 영농규모(계획) : m^2
 - 전작 m^2 (주요작물), 수도작 m^2 , 하우스 등 m^2
 - 기타사항 :

* 쌀 농업회사법인 등인 경우 회원 현황 및 단지 면적, 계약재배 등을 기타 사항란에 기재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 조 회 사 :
- 규격(형식명) :
- 농기계 가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단가 : 천원 / 대
- 공급업체(상호명) : 000농기계 000대리점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12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정산서

1. 사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2. 맞춤형 농기계구입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내역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사명	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 보증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농기계 납품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① 본 사업자(자필 서명)는 자부담을 ()업체에 납부하고 위와 같은 농기계를 인수함.

② 본 사업자는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위임하니, 공급자가 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피위임자(공급자)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송금계좌 : (농협)

첨 부: 세금계산서 1부, 기대구입 사진 내역

위와 같이 2012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2. . .

주 소 :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2년 맞춤형 농기계 공급 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구 입 자		기종명	규격	수량 (대)	단가 (천원)	농기계 구입 금액(천원)		
주 소	성 명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상기와 같이 2012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의거 농기계를 공급하였기에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어 보조금을 공급자가 정하는 송금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계좌번호 : (농 협)

붙임 : 별지 제2호 서식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012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공급대장

(음·면)

[illegible]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맞춤형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및 실질적 보고

(단위 : 대, 천원)

[illegible]

9)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 목 적

-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
- 보리수매 제도 폐지로 밀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과 두류, 잡곡 등 수확에 따른 인력 절감을 위한 수확 기계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자급도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을 제고를 위해 마을별·들녘별 쌀 농업회사를 중심으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유망한 특화품목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기자재 등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이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을 높이고,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른 밀 등 재배 확대에 따른 기반 시설 중점 지원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기타	
14,214,000	2,132,000	4,975,000	7,107,000	

5) 사업추진

가)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12. 1~12월

다) 사업추진 체계

< 업무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① 자침 시달·홍보 ↓	('11.12~ '12.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② 사업계획 수립신청 ↓	(1월)	▪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읍·면·동) - 시군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립 ▪ 사업신청(읍·면 → 시·군/ 1.31일한)
③ 사업계획 수립 보고 및 확정 ↓	(2~3월)	▪ 사업계획 보고(시·군 → 도/ 2.28한)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 3.31한)
④ 사업발주 및 추진 ↓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⑤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⑥ 보조금 지급 ↓	(6~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⑦ 사업비 정산	(11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1.30일한/ 시·군)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 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지원규모 : 개소 당 660m² 이상(필요시 확대 가능)

○ 지원 단가 : 150백만 원/660m²(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 대상

- 농업인 등이 출자하고 조직통합 및 기업화를 추진하여 쌀 농업회사를 설립 하는 조직체(들녘별 50ha 이상)
- 들녘별 집단화(100ha이상) 된 농업인 단체와 육묘 공급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31호) 제48조(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4의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사항을 둠

⇒ 들녘별 조직화된 쌀 농업회사 육성을 위해 신규 쌀농업회사도 지원 가능토록 함

○ 사업내용

-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컨테이너, 최아기 등
-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상자 공급량을 검토·제작하여 예산 절감 노력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국산 밀 건조·저장 시설 설치

○ 목 적

- 국산 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밀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 지원 단가 : 100백만 원/1개소(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 대상 : 밀 주산단지로서 계약재배 생산자 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건조·저장시설(저장창고, 건조시설)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구 분	규모(규격)	수량	비고
합계		2종	
저장창고	330m ² 이상	1개소	
곡물건조시설	10톤(열풍, 순환)	1대	

※ 부지는 사업대상자 확보 원칙

다. 포트 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

- 목 적
 - 친환경농업단지, 보리, 밀 등 이모작지대에 적합한 포트육묘 이앙기 (45일묘 이앙) 지원으로 건전육묘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 단가 : 60백만 원/대(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 대상 : 무농약 이상 벼 재배단지 단체 또는 이모작 집단화 단지 등
- 사업내용 : 포트이앙기, 파종기, 육묘상자 세트 지원
- 기대효과 : 3.3m²당 50주 이내 식재로 잡초 등 영농관리 용이 조직화·규모화 육성 추진

라. 검정콩 등 두류·잡곡 수확기 구입 지원

- 목 적
 - 밭작물 집단 지역에 대해 인력 절감이 높은 다목적 수확기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기계화율 제고
- 지원 단가 : 120백만 원/대(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 대상 : 밭작물 재배 집단화한 작목반(농업인) 및 작목반과 계약재배가 체결된 지역 농협, 논 소득 다양화사업과 연계된 밭작물 재배단지 등
- 사업내용 : 다목적 수확기 및 부속 장비
 - 수확작목 : 콩, 팥, 메밀, 수수, 조, 들깨, 울무 등
- 기대효과 :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밭작물 수확에 있어 다목적 수확기를 통해 인력 절감과 품질 향상 도모

마.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

○ 목 적

-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벼 재배단지에 대형 방제 장비 지원으로 인력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

○ 지원 단가 : 보조금 상한가 적용

- 광역살포기(차량제외) : 70,000천 원(도비 21,000, 시군비 49,000)
-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 18,000천 원(도비 5,400, 시군비 12,600)
- 무인헬기(차량제외) : 92,000천 원(도비 27,600, 시군비 64,400)
- 무인헬기 탑재차량 : 8,000천 원(도비 2,400, 시군비 5,600)

* 광역살포기(영세율 품목), 무인헬기(부가세환급금 품목) 적용가

* 차량 구입 시 농업회사법인·지역농협 중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환급금 발생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후 보조금 잔액 발생 시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추진

○ 지원 대상

- 농업인 등이 출자하고 조직통합 및 기업화를 추진하여 쌀 농업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체(들녘별 50ha 이상)
- 들녘별 집단화(100ha이상) 된 농업인 단체와 공동 방제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31호) 제48조(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4의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사항을 둠

⇒ 들녘별 조직화된 쌀 농업회사 육성을 위해 신규 쌀 농업회사도 지원 가능토록 함

○ 사업내용 : 광역살포기·무인헬기, 운송용 차량

○ 중점추진 사항

- 고품질 쌀 및 친환경농업단지 등이 집단화 되고 우수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쌀 농업회사 및 계약재배를 체결한 지역농협 우선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지원신청서, 대상기종 선정, 구입계약, 방제(친환경 자재 살포)계획, 운전요원교육 계획 등을 징구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 대행 요구를 원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광역방제기(광역살포기·무인헬기) 및 차량 구입 시 각각의 업체로부터 공급 원칙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 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의무사항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붙임 5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이용실적을 제출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음을 명시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이용실적을 도에 보고(보고 기한내 취합 후 5일 이내)

7) 추진요령

가)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1)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농업 경영의 규모화,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시군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
 -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선정

나) 사업비 집행요령

- 도에서 시군에 사업비 교부결정 및 자금 배정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다)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 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 또는 관련 업체를 통한 공동 구매 등을 실시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함

라)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붙임3에 의거 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시행규정 제 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바) 사후관리

- 포트육묘 이앙기, 다목적 수확기,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의 경우 농기계 사후관리대장(서식 1)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붙임5에 의거 이용실적 제출 (광역 방제기 10월 말, 그 외 사업은 사업완료 즉시)
- 벼 자동화 육묘장,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 대장 (서식 1)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 현황(년 1회) 및 이용실적 보고(10월 말)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림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해당금액을 시군에 감액 배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건 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 요 기 계·장 비	구입일	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 참조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사)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2월말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에서는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을 제고를 위해 마을별, 들녘별 농업 회사 단체에 대해 현장 실사 예정

- 시장·군수는 당초 도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20%범위 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도와 사전 협의 후 시장·군수가 변경 추진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 사업집행(정산)실적 보고는 붙임 4에 의거하여 보고
 - 주요보고내용 : 사업실적, 사업비 집행실적, 이월액 및 발생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등

8) 행정사항

- (1)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계획서(붙임 2) 제출 : 2012. 3월말
 - (2) 사업 추진(붙임 3) 실적 및 최종 집행(정산)실적보고(붙임 4) : 8월, 12월
 - (3)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관리대장(서식 1) 및 사업실적(붙임 5) 제출 : 12월
- ※ 사업실적은 사업 대상자 보고 기한 내 자료 취합 후 5일 이내 제출

<붙임 1>

2012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신청서

회 사 명 (단체·농가)			주 소	군 리	읍면 번지
대표자 (연락처)	000-0000-0000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무농약	ha ha
사업신청 내 용	☐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사업 ☒ 해당사업 체크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지원 ☐ 검정콩 등 두류·잡곡 수확기 구입 지원 ☐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광역살포기 ☐ ·무인헬기 ☐)				
사업량	m ²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합 계	도비	군비	자담	
2012년 친환경농업과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끝.					

2012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벼 자동화육묘장, ☐밀 건조저장시설

☐ 사업계획

- 기 간 : 2012. . ~ .(착공예정일 :)
- 예 정 지 : 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사 업 규 모 (*육묘장의 경우 출아실 포함)	육 묘 컨테이너	최아기	곡물건조기	기 타
m ² (구조형태 :)	대	대	톤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 여 농가 수	육묘생산량 (밀 수확량)	비 고
ha	호	상자/톤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월)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6월말)

- 위 사업 신청자(대표) _____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붙임 5)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12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포트육묘 이양기, ☐검정콩 등 두류·잡곡 수확기,
광역방제기(☐광역살포기, ☐무인헬기)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12. . .
- 보관장소 : 군 읍면 리 번지
* ○○○주택, ○○○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직접 구매,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살포(이양,수확) 면적	참여(수혜) 농가수	방제(이양,수확) 작업비	비 고
ha	호	원/10a당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광역방제기 10월말, 사업완료 즉시)

- 위 사업 신청자(대표) _____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붙임 5)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2>

2012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량 : 중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개소, 대, 천원)

세부 사업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사업량	지 원 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150,000				
국산 밀 건조· 저장시설 설치			100,000				
포트 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			60,000				
검정콩 등 두류·잡곡 수확기 구입 지원			120,000				
광역방제기 (광역살포기,무인헬기)			보조금 상한				

<붙임 3>

2012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세부 사업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사업량	실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붙임 4>

2012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등 (대표자)	추진실적			세부사업내용
		계 획	실 적	진도	
합 계		(㎡, 대)	(㎡, 대)	(%)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조치계획 포함) 첨부

☐ 기타 건의사항(문제점)

○

별첨 : 서식 1호

(서식 1)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다목적 수확기, 포트육묘 이앙기, 광역방제기				
법인단체/ 농협/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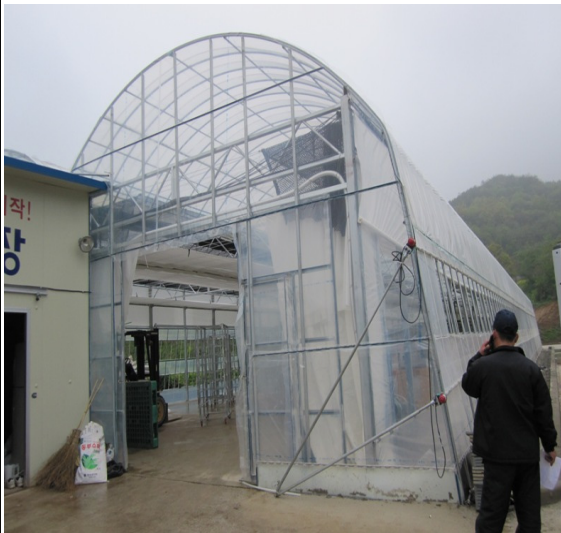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서식 1)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쌀농업회사 법인/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컨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m²)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진 모두 첨부

<붙임 5>

□ 벼 자동화 육묘장 공급 실적

(단위 : m², ha, 상자, 원)

시 군	보 유 단 체 명	설치 년도	시설 규모	재배면적	육 묘 생산량	육 묘 공급량	공급 단가	주품종 (2개이내)
합 계								

※ 엑셀 작성 제출

□ 광역방제기 방제실적 (광역살포기 · 무인헬기)

(단위 : ha, 회)

시 군	보 유 단체명	기종	규격	방제지역	방제 면적	방제 횟수	친환경 여 부	방제비용 (10a/원)	전년도 실 적
합 계									
				00군 면 리					

※ 참고 : 기종(광역살포기, 무인헬기), 친환경여부(유기, 무농약)

※ 엑셀 작성 제출

□ 밀 건조저장시설, 포트육묘 이앙기, 두류 · 잡곡 수확기

(단위 : m², 대, ha, 원)

시 군	보유단체명	설 치 (구입)년도	기 종 (제조회사)	시설 규모(대)	재배(이앙 · 수확)면적	농작업비	비 고
합 계							

※ 밀 건조저장시설은 비고란에 처리 방법(계약재배 등) 기재, 엑셀 작성 제출

1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 목 적

-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경영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 보장

2) 근거법령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 3

3) 추진방침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
 - 벼,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피해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2. 1. 1~12. 31
- 사업량 : 20천ha
- 사업비 : 8,160백만 원(도비 1,632, 시군비 3,264, 자담 3,264)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농협)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참조)
- 지원기준 :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60% 지방비 지원
 - 재원은 도와 시군에서 일정비율로 지원하되, 도비교부결정 후 추가 지원대상이 발생할 경우 시군자체 예산으로 지원
 -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도에 있는 자

5)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공제보험팀)
 - 취급사무소 :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사무소
- 사업추진 방법(요령)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의 해당 농가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관내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판매(가입)시 농가부담액 중 일부(60%)를 사전 공제하고 판매(가입신청) 접수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재해보험 가입자대상의 자부담 중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식 1)
- 시장·군수는 보험판매기관(농협)이 농가부담 보험료의 보조금부문을 교부신청 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이 종료되면 즉시 가입자 명단 및 보조금지원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서식 2)
- 재해보험 가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기간 중 농가가 가입을 임의 탈퇴 또는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조치(농협→시군)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 대상품목 : ('11) 30개 품목(본사업 12, 시범 18) → ('12) 35개(본사업 18, 시범 17)
 - 본 사업 : 18개 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뽕은감, 참다래, 자두, 쿡, 가을감자, 가을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 시범사업 : 17개 품목(고추(해남), 수박, 시설딸기(담양), 토마토, 시설오이(순천), 참외, 대추, 시설꽃고추(나주),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담양, 함평),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 시설하우스(영암)

- '12년 신규도입예정(5품목) :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 '12년 전국 확대예정(6품목) : 벼,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 보상재해
 - 특정위험방식 :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 종합위험방식 :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냉해, 한해 등 기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
- 보험료 구성 : 국고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
- 주요약관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성립하여,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약관을 교부·설명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환급

6) 행정사항

- '12년 농작물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농협↔시군) : 수시(서식 1)
 - 시범사업 품목별 보험판매 시기 : 2011 농식품부 지침 참조

- '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통보(시군농협→시군) : 수시(서식 2)
- '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지역본부→도) : 분기별(서식 3)
- '12년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시·군→도) : 익년 2월말(서식 4)

< 보고서식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농가수 (호)	면적(h a)	계	국고	농가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기 교 부									
금회교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명단(서식 2)

읍면	농가명	주소	가입 품목	가입 면적 (㎡)	보 험 료 (천원)					비고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서식 3)

품 목	농가수	가입면적 (ha)	보 험 료 (천원)					비고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농작물재해보험료 정산내역(서식 4)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도비집 행 잔액 (A-B)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농가	면적	계	도비(A)	시군비	자담	농가	면적	계	도비(B)	시군비	자담	
호	ha					호	ha					

- 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Ⅱ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1) 목 적

-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및 쌀 전업농, 농약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지원 공급하되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지원 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 1조(방제복 1벌, 개량마스크 5개, 보안경 1개)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보안경 공급은 농업인의 선호도에 따라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조정가능

3)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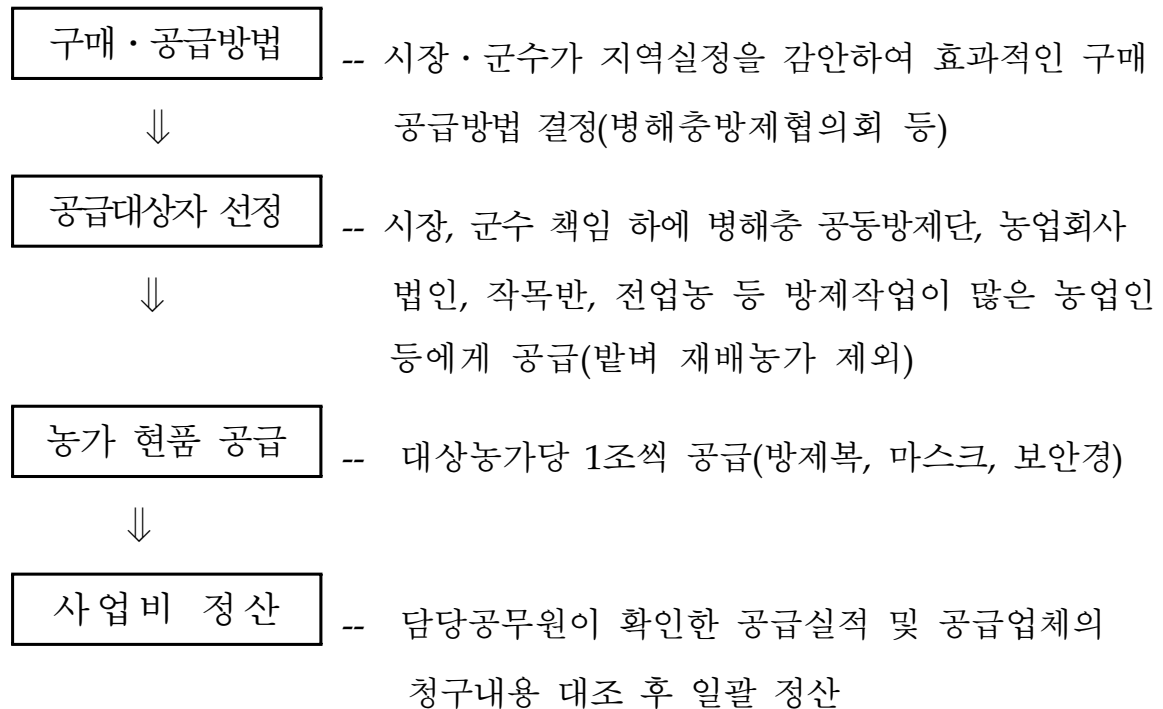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26천조	40,000원	1,040,000 (100%)	156,000 (15%)	884,000 (85%)

4) 세부추진요령

- 가) 추진기간 : 2012. 1~5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완료)
- 나) 공급규격 : 공인검사(시험) 및 검정을 받은 규격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내부에서 발생한 땀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 다) 구매(공급) 방법
 - 구매방법은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협의 후 결정
 - ※ 기준단가는 예시가격이므로 조달구입, 비교견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정가격으로 공급
 - 담당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사업추진 체계>



5) 행정사항

가)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방제대책
협의회 등 자체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공급 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나) 보조금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사후관리
- 농약 안전 사용장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 내용을 대조한 후 공급업체에 일괄 정산

다) 보고사항

- 지원대상 선정상황 : 2012. 3. 30
- 공급 및 정산실적 : 2012. 6. 30
- ※ 공급대장 작성 : 2012. 6. 30

< 보고서식 >

〈지원 대상 선정상황〉

지원계획	대상자선정	공 급 계 획		구입방법	비 고
		조당단가	공급회사		
조	호	원			

- 구입방법은 조달,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기재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조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도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 잔액발생 사유 :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대장〉 - 비치

일련 번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비고
	성명	면,리(동)	수량	일자	직	성명	
'10 -			조				

4. 2012년도 사업별 달라지는 제도

사 업 명	현 행	변 경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 지원 단가 : 300백만 원/ha ○ 대상농지 - '10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 및 '10년 쌀 소득변동 직불금 대상농지 - 다년생 작물 재배 시 1회만 지원 ○ 대상작물 - 1년생 작물인 콩, 잡곡 등 - 논벼 중 가공전용 벼 품종(고아미) - 조사료 작물 · 사일리지 제조비 3만원/톤당, 종자대 30% 보조	○ 지원 단가 : 300백만 원/ha ○ 대상농지 - '11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 및 '10~'11년 쌀 소득변동 직불금 대상농지 - 다년생 작물 재배 시 1회만 지원 ○ 대상작물 - 1년생 작물인 콩, 잡곡 등 - 논벼 중 가공전용 벼 품종(고아미, 설갱, 드래찬) - 조사료 작물 · 사일리지 제조비 3만원/톤당, 종자대 30% 보조 * <u>다년생 및 수급불안품목(대파, 양파, 배추)</u>은 대상작물에서 제외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 대상품목 : 30개 품목(본 사업 12, 시범사업 18) - 본 사업(12) :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뽕은감, 감귤,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 - 시범사업(18) : 밤, 고추, 수박, 벼,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시설(딸기, 토마토, 참외, 오이), 대추, 시설(풋고추, 호박), 복분자, 장미, 국화 ○ 가입방법 : 전년과 동일 ○ 포도, 복숭아는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 대상품목 : 35개 품목(본 사업 20, 시범사업 15) - 본 사업(20) :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뽕은감, 감귤,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 <u>벼, 고추, 수박, 고구마, 옥수수</u>, 밤, <u>마늘, 매실</u> - 시범사업(15) : 시설딸기(담양), 토마토, 참외, 시설오이(순천), 대추, 시설풋고추(나주,영암), 호박, 복분자(담양, 함평), 장미, 국화, <u>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u> ○ 가입방법 : 전년과 동일 ○ 포도, 복숭아는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IV. 원 예 · 특 작 분 야

IV. 원예 · 특작 분야

1. 201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가. 한·칠레(미)FTA 등 대내·외 농업환경 및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대표품목 중심으로 생산·유통혁신과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을 위한 기업화 및 기능성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유통기반 확충

- 원예작물 및 과수브랜드 육성 : 5개소, 95억 원
-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유통개선 : 6개권역, 162억 원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 19개소, 13억 원
-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 1,500ha, 67억 원

나. 시설원예 생산기반 현대화·규모화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경영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난방기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 시설원예 품질개선 : 7개단지, 199억 원(시설현대화 184ha, 단지증개축 21ha)
- 원예·특화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 7종 67억
 - 내재해형하우스 79.5ha, 버섯재배시설현대화 10ha 등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 200ha, 249억 원(지열, 보온커튼 등)
 - 지열 냉난방 5ha, 63억 원, 목재펠릿 24ha, 36억 원, 절감시설 171ha, 150억 원

다. 지난해 가격이 좋았던 영향으로 가을 무·배추 등 김장채소와 쪽파·대파 등 양념채소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는 등 파동발생

- 산지폐기 : 나주, 해남, 영암 등 7개 시군 73ha(배추 45, 무 28)
 - 시장격리 : 나주, 해남, 영암 등 10개 시군 287ha(배추 211, 무 76)
 - 소비촉진대책 추진
 - 김장시설 개설·운영 및 김치 나누기, 김장 더 담그기 홍보
 - 김치 가공업체 묵은 김치, 절임배추 가공·저장물량 확대 지원
 - 가격 및 출하동향 등을 지속 관리하여 출하량, 시기조절 지도
- ⇒ 농업관측강화와 적정재배 등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근본적 수급 인정대책 적극 추진 필요

2. 2012년도 추진계획

가. 기본방침

-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 지역 대표품목 중심의 조직화·기업화로 원예 특작산업 경쟁력 제고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과 마케팅 조직육성을 통한 과수산업 선진화
-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보급하여 시설원예 경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하여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수급불안 품목 자율 수급안정 체계 구축 및 작목전환 확대

나. 중점 추진방향

- 친환경 고품질 생산 및 경영비 절감으로 원예농가 경영안정 도모
 - 원예전문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 228억 원
 - 품질 고급화를 위한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 167억 원
 - 난방비 절감을 위한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 : 475억 원
 - 지열 냉난방시설 38억 원, 목재펠릿 47억 원, 에너지절감 390억 원
-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주산지 중심 원예브랜드 육성 : 3개소, 112억 원
 -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아열대 과수단지조성 : 188억 원
 - 지역특화품목 농업 법인체 육성 : 24개소, 12억 원
 -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 4개소, 20억 원
 - 수출품목 중심의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 20억 원
 - 과원 유해조수 포획트랩 설치 지원 : 5억 원(포획트랩, 조류기피제 등)
- 원예작물 자율 수급조절 역량강화 및 수확기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 소득·약용작물재배 지속 지원 : 1,500ha, 67억 원
 - 수급불안 품목(무, 배추, 양파 등) 작목전환 : 235ha, 54억 원
 - 주산지 시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 : 9개시군, 90억 원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브랜드 육성
-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우수 브랜드 경영체 40개소 육성을 통해 브랜드 농산물 점유율을 10%까지 확대

성 과 지 표	2012 목 표 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9	'10	'11		
▪ 브랜드 유통비율(%)	2.5	1.2	2.2		2013.4	$\Sigma [(품목별\ 브랜드\ 출하량 / 품목별\ 전국\ 출하량) \times 100\%] / 품목\ 수$ * 대상품목 : 사업시행 품목
▪ 브랜드 취급비율(%)	60	53	56		2013.4	$\Sigma [(브랜드상품\ 취급액 / 경영체\ 취급액) \times 100\%] / 경영체\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전국	계	132,318	75,730	36,100	36,260	152,000
	기금보조	26,426	19,030	13,870	12,350	48,450
	융 자	65,600	27,630	-	-	-
	지 방 비	30,482	21,757	15,010	17,450	84,150
	자 부 담	9,810	7,313	7,220	6,460	28,900
전남	계	23,101	19,522	8,694	11,200	44,800
	기금보조	5,461	5,449	3,230	3,740	14,900
	융 자	9,450	5,900	-	-	-
	지 방 비	5,951	5,639	3,774	5,364	21,500
	자 부 담	2,239	2,534	1,690	2,096	8,400

* 2012년 신규사업인 고흥마늘 사업비는 농식품부 최종확정 후 추경에 확보

II. 2012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 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2012년 사업대상자 : 3개 브랜드 경영체
 - (3년차) 해남 배추, (2년차) 화순 약용작물, (1년차) 고흥 마늘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법인체
 -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동출자법인 등
- 자격요건 : '13년 사업신청자는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최근년도 참여조직의 매출액 50억 원 또는 공동 계산액 30억 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 조직이 포함된 법인체
 - 참여조직의 매출액, 공동 계산액은 원예작물만 해당

3. 지원 대상

-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직운영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교육, 경영 컨설팅 등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공정육묘장(고추, 양파 등), 우량종구 생산단지(마늘)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은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조직운영 및 마케팅 : 지원한도는 10억 원이며(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브랜드경영체가 광역유통주체와 동일주체인 경우 원예브랜드 사업비 지원 제외
 - * 광역유통주체에서 원예브랜드 사업품목의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비 반영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지원한도는 85억 원(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공정 육묘장(고추, 양파), 우량종구 생산단지(마늘) 반드시 설치
 - * 지방비(도 및 시군비)는 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자부담을 시군비 부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3년간
 - 년차별 사업비 배분 :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 * '10년까지 사업대상자는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 연차별 사업비 배분은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개소당 사업비 기준 : 95억 원(기금보조 28.5, 지방비 49.5, 자부담 17)
 -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사업비 감액 조정
 - * 조직운영·마케팅 지원과 시설지원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액은 다를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13년 사업신청자는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참여조직의 매출액 50억 원 또는 공동 계산액 30억 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에 한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12.1월 말까지)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지방자치단체·참여기관 협약서, 브랜드 경영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및 매출액 또는 공동계산액 증빙서류 각 1부

- 시·군은 사업신청 품목의 통합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는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3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13년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평가)

- 선정주체 : 평가단(10명 이내)의 3단계 평가 및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12.12월)
- 선정방식 : 현장평가는 선정에 참고,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 반영

3. '12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연차별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2.1월말)
 - * 사업시행 경영체 중 2년차는 국고보조 57백만 원, 3년차는 76백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계획 수립(감액 사업비는 연차평가 결과 환류 재원으로 활용 계획)
- 사업법인은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각 단위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서(필요성,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포함
 - 사업계획 수립 시 일괄발주 가능사업은 일괄발주 계획수립
- 사업법인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
 - 사업계획 수립, 평가, 농업인 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으로 해결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자금 확보 계획 수립
- 시·군은 사업추진 및 경영체 운영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농산물브랜드 경영체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방안(조례 등)을 마련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군에서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

4. 자금배정 단계

- 시·도, 시·군은 월별 소요자금을 사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전까지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자금 한도액을 배정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요구가 있으면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5. 이행 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 연도 5월, 10월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 자금집행상황, 시설부지확보, 조직운영, 마케팅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가급적 원안대로 추진하고 계획 변경 시 도, 시·군의 의견 등을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중간점검(신규 및 계속 사업체 모두 적용)
 -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후점검(계속 사업체에만 적용)
 -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익년 2월중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고, 연차평가(중앙) 자료로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 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차량, 장비 등	사업완료 익년 1월부터	5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건축물 -콘크리트,블럭조 -철근콘크리트	"	10년간		

- 사업주관기관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사업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 브랜드 경영체 운영 부실,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브랜드 경영체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일정 : 연차평가 시행 시 성과측정 병행(매년 3월)
- 매년 사업 성과지표 측정 시 부진사업(기성고 및 집행율 70%미만)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페널티 시행

《만족도 조사》

- 조사기관 : 농식품부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행
- 조사 시기 및 방법 : 매년 10월중, 외부 조사기관에 용역
- 조사대상 : 사업관계자(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브랜드 경영체의 주거래 업체, 소비자, 농산물 유통중사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패널티 부여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이 불투명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 '13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12.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브랜드 경영체에 한해서 본 사업신청서 접수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세부내용은 별도 시행(농식품부, '11.12월)
 - 브랜드 경영체(1월말) → 시·군(2월말) → 시·도(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13년 사업신청자는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참여조직의 매출액 50억 원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30억 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 한함
- '13년도 사업대상자 결정(농식품부) : '12.12월

3. 기타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

사도(사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매출규모	최근연도(예 : ‘11년) 매출액 : 또는 공동계산액 :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주 사업장소 (예정지)	지) :				지목 :	면적(부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 자 계 획	구 분		’13	’14	’15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조직운영						
마케팅 강화								
공동생산								
기반시설								
종합처리시설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 하 ※ 예비신청서도 본 양식으로 하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브랜드경영체 참여조직의 매출액 또는 공동계산액 증빙서류 각 1부								

②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I. 사업 개요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 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화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사업대상자는 전문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시군(읍면)단위 심의회에서 공개 선정하고 사업예산 적기 집행
- 세부 사업계획은 포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등을 감안 수립하고 도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와 협의 후 시군 자체 사업계획 변경
- 사업비 부풀리기 등 일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부담 선 집행 의무강조 및 **사업별 지원 단가 제시**
- 지원대상자를 D/B화, 편중 또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점 관리하고 사업별, 농가별 추진일정 수립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시군비	기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	16,667,000 (100%)	2,500,000 (15%)	5,833,500 (35%)	8,333,500 (50%)

II.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12. 1~12월

다) 사업추진 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자침 시달·홍보	(‘11.12~ ’12.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홍보(시·군, 읍·면)
↓		
② 추진계획수립	(1월)	▪ 신청접수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안 수립(시·군, 읍·면) - 사업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 자율 수립
↓		
③ 사업계획 승인 및 대상자 선정	(2월)	▪ 사업 대상자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시·군, 읍·면) - 심의회 개최 ▪ 세부 사업계획 수립결과 보고(승인신청)(시·군 → 도/ 2. 28일한, 서식 1)
↓		
④ 추진일정 수립 및 사업 착공	(3~4월)	▪ 세부사업별·지원대상자별 추진일정 수립, 사업계약 체결, 사업 착공(시·군) - 복수견적, 일괄계약, 농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사업비 절감 및 투명성 제고
↓		
⑤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4~11월)	▪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독려(도·시·군) - 사업장별 현지 점검 및 문제점 도출 - 추진지침, 설계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⑥ 보조금 집행	(5~11월)	▪ 보조금 송금 및 적정 집행(도, 시·군) - 사업성격 등을 감안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잔액 집행 ※ 자부담 선 집행 지도 및 확인
↓		
⑦ 사업비 검정 및 정산	(12월~약 1. 10)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군)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서식 3) ※ 자부담 집행실적(증빙자료) 철저 확인

2. 세부사업 추진

① 원예작물 분야

가. 사업목적

-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활용,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지원

나. 추진방침

- 지역별 농식품부 표준규격 및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적용
-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 농가가 희망하는 작물 근권환경 개선 시설에 대해 현장 설치사례 등을 감안, 해당시군 판단하에 실정에 적합한 시스템 선택 시행

다. 사업내용 :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 생산비 절감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 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표준규격 및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
- 기타시설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원예분야 시설·장비 등(시·군에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신청)

라. 지원기준(시설물 설치)

1) 농식품부 표준규격 및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 지원 단가 : 표준규격 9,000천 원/10a, 내재해형 20,000천 원/10a
 - 지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농림식품부 고시 2010-128호, 2010. 12. 7)」 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나주, 무안, 함평, 영광, 구례, 장성 등 폭설피해 우심 지역은 가급적 연동을 지양하고 내재해형으로 견고하게 설치

2) 자동제습시스템 및 양액재배시스템

- 지원 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12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의 단가를 적용하되, 반드시 비교견적 등 합리적 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 ※ 기준단가 예시(천원 / 600평당)
 - 자동제습 시스템 20,000, 양액시스템 25,000 등

3) 기타시설

- 지원 단가 : 정부 고시 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설치방법 :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공급 적격업체를 선정 사업시행

마.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시군별 대표품목으로 재배작목을 집단화하여 전문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농가 및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우선선정 지원

바.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② 특화작물 분야

가.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 고소득 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확충,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추진 방침

- 소비자 신뢰확보와 전남산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 제재 및 유기질 퇴비, 부직포 등 친환경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원**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자재 공동구매 기반구축**으로 우량자재 사용과 농가부담 최소화
* 단, 개별농가 지원 시에는 연내 작목반 또는 법인 참여 유도
- 단지화 된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신규 작목 전환**을 신청하는 농가에 **우선하여 지원**
- 소비수요가 늘고 있는 **버섯**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 기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 친환경 유기 인삼재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우수재배기술 검증 후 확대

다.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사업명	지원 사업 내용	지원 범위 및 지원 한도액 기준
특 화 작 물	녹 차 품 질 고 급 화	◦ 지원범위 : 관수시설(관정포함), 잡초억제용 부직포, 초생재배, 해충포획기, 방상시설, 수확기(채엽기), 소규모제다시설 ◦ 지원기준 : 정부 고시기준 및 비교견적 등 객관 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버 섯 생 산 시 설 현 대 화	◦ 지원범위 : 버섯재배사, 냉난방시설, 가습기 배지제조 일관작업기 등 ◦ 최대 한도액 - 재배사 신축 : 21,600천원/100m² - 시설 보완 : 10,800천원/100m²
	유기인삼 재배지원 (시범사업)	◦ 지원범위 :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 지원기준 : 최대 20백만 원/10a
	기 타	◦ 시군별 특화품목 경쟁력 제고 필요 사업 - 지원기준 : 정부고시기준 및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곡성군을 포함한 유기인삼재배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은 동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

라. 지원 대상 : 녹차, 버섯, 인삼 등 특화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또는 신규로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중 사업 적격자 우선 지원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 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동일사업으로 2년 이내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농기계 구입 및 유통시설,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 사업 지원 단가

- 지원대 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 ※ 기종, 규격, 형식 등 사양에 따라 사업단가가 다르므로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발행 “농기계가격” 참조
- 버섯 재배사 등 주요 농업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농림식품부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에 의한 규격시설 및 「농가보급형 표준설계도」 등에 의한 규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3.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전에 도와 협의 후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 및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5.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 사업집행(정산)실적 보고는 붙임 1 서식에 의거하여 보고
 - 주요보고내용 : 사업실적, 사업비 집행실적, 이월액 및 발생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등

III. 행정 사항

1.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서식 1>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 사업신청(농업인→읍·면→시·군) : 1월 30일까지
- 사업 계획 및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 → 도) : 2월 28일까지

2.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시행)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도 → 시·군) : 3월 20일까지
- 반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보고(시·군 → 도) : 2회(7. 5, 11. 5)

3. 사업 완료 상황 및 집행(정산)실적 보고 <서식 2, 3>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시·군 → 도) : 익년도 1월 10일까지

< 서식 1 >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승인신청)

☐ 사업개요

- 사업량 : 개 사업
- 예산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계획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농가수	사업량	지원가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천원				

※ 농가수요, 시군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외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한 경우에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별도 작성 제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 금후 중점 추진할 사항

-

< 서식 2 >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실적(/ 분기)

☐ 사업개요

○ 사업량 : 개 사업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사업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개소)		(%)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 서식 3 >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업량 : 개 사업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부 사업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

③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I. 사업 개요

1. 목 적

- DDA/FTA, 농산물 소비시장에서 지역간 경쟁 등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 품목별 규모의 경영체 육성 및 수직적 계열화로 지역 농업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
- 농업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생산·유통혁신으로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고 경영 안정 도모

2. 추진방침

- 시군별 특화품목 중심의 기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개별 농가를 통합하여 시장교섭력을 갖춘 주식회사로 육성
 - 영농조합법인(공동책임) → 주식회사(권한에 준한 책임)
- 국·도비 지원사업 등은 품목별 법인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책수립 등 도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담당
 -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영체로 육성

3. 사업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기 타
24개소	1,187,500 (100%)	400,000 (34%)	787,500 (66%)	-

※ 21개 시군에 50,000천원(도비 25%, 시군비 75%)씩을 지원하며, 광역 단위 사업비(137,500천원)는 3개소를 공모·선정하여 지원(도비 100%)

II.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세부사업 시행

- 가)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나) 사업추진 기간 : 2012. 1~12월
- 다) 사업내용 : 품목별 법인체(농가) 통합 등을 통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 우선 지원 대상 >

- 생산·가공·유통·수출까지 포함하는 수직적 계열화 법인체
- 기존 법인체 통합(조직연합) 형식의 광역·시군단위 법인체
- 핵심주체 마인드가 함양되고 수출조직으로 발전 가능한 법인체

라) 지원 사업 : 시군(광역)단위 법인체 육성 등을 위한 기반사업

- 규모화·기업화 최적모델 창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생산·유통 혁신을 위한 매뉴얼 개발, CEO 영입비 등 지원

마) 대상품목

-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에 따라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 「농업 경영체 조직화·활성화육성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품목
- 「지역 고유농산물 명품화·세계화 대책」에 반영된 품목
-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품목
- 고품질 쌀 경영체(공동 영농단) 및 새로운 소득 작물 육성을 위해 규모화·기업화가 필요한 품목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도단위 조직의 유기농 품목별 연구모임의 활성화 등을 위한 품목
- ※ 도 단위 광역법인체를 육성할 경우 주관 단체(농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통식품도 지원 가능

바) 사업비 집행

- 품목별 법인체 육성, 통합·연합조직화 등 규모화·기업화 모델 창출 및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전문가 컨설팅, 교육·회의, 세미나·연찬회, 조직·법인화를 위한 협의체(핵심주체) 구성·운영, 법인설립 등
- 생산·유통역량 강화 및 혁신, 품질관리, 경영개선 등에 소요 되는 비용
 - CEO 영입, 브랜드 개발, 생산·가공·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홈페이지·경영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 ※ 포장재 지원, 홍보물·카달로그 제작, 홍보·판촉행사비,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은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 중점 추진할 사항

- 시장·군수는 규모화, 기업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수출농산물로 성장 가능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연차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육성
- 사업계획은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하고 선진 우수사례를 등을 연찬 후 여건에 맞게 수립하되, 수직적 계열화 및 시장 교섭력 제고가 가능하도록 참여범위 등을 확대
-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부사업을 엄선,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비는 항목(분야)별 적정 배분
-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변경필요 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비 30%미만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자체승인, 30%이상은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2. 추진일정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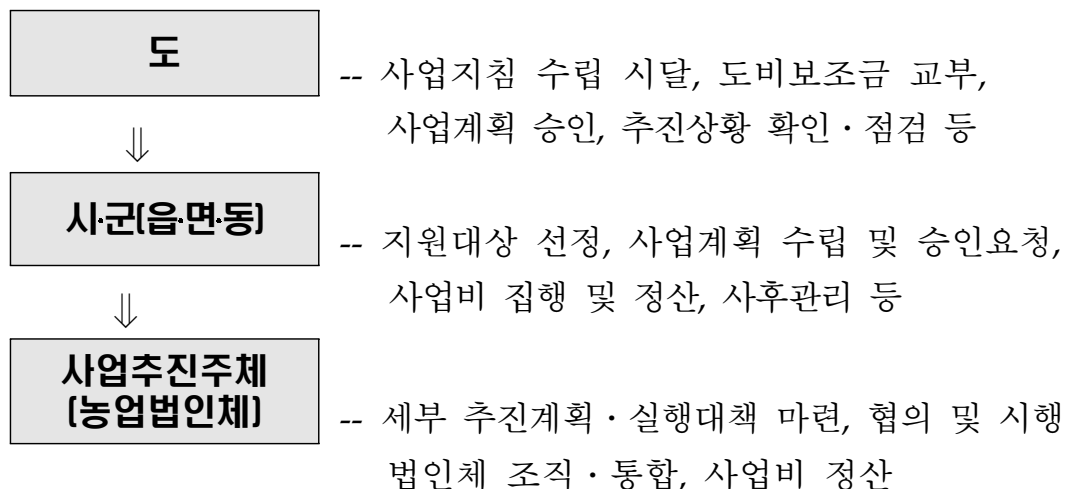
가) 사업대상 선정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군) : 1~2월

- 품목별 조직·법인체, 유관 기관·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대책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밀도 있게 수립
 - 세부 사업비는 품목별, 참여범위 등을 감안 시군에서 적정하게 수립

나) 사업계획 승인요청 및 승인, 사업비 확정(시군↔도) : 2~3월

다)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3~12월

라) 사업추진 체계



3.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규모화·기업화된 법인체가 생산, 유통역량을 제고하여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수출농산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우수 법인체에 대해서는 생산·유통·저장시설, 디자인 개발비, 홍보·판촉비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III. 행 정 사 항

- 컨설팅은 반드시 역량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고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고 치밀한 컨설팅이 되도록 적극 조치
 -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 생산자 조직간 규모를 확대하는 단순 협력 수준의 수평적 조직화 등은 지양
- 보고서식
 -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식 1, 2) : 2월 28일까지
 - 추진상황 보고(서식 3) : 매 분기 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4) : 익년도 2월 20일까지

< 서식 1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신청서

□ 조직현황

조직의 명칭		설립연월일	
주 소	(대표자)		
전 화	(핸드폰 :)		
참여농가 수	호(영농법인 , 작목반 , 개별농가)		
품 목		생산면적/ 생산량(11)	ha/ 톤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기반구축	소 계				
주체육성	소 계				
역량강화	소 계				

* 첨부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참여 법인 및 작업반 현황(있을 경우) 1부.

3. 참여 영농법인, 작업반, 농가와 협의결과(있을 경우) 1부.

2012. .

신청자 : (인)

○○시장 · 군수(전라남도지사) 귀하

< 서식 2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 사업계획

□ 품목선정(시군)

- 품 목 :
- 재배면적 : ha(농가 수 호)
 - 개별농가 ha, 작목반 ha, 영농조합 ha
- 생 산 량 : 톤(생산액 억 원)
- 가공·유통·판매실태 및 문제점
 -
 -
- 품목선정 사유
 - 지역 특화품목인 사유 및 법인체 육성(규모화·기업화) 필요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기타)
- 법인체명 : ‘가칭’ 주식회사(대표) - 신규, 통합, 연합여부
- 출자목표 : 백만 원(1구좌당 0000천원)

구 분	참여인원	재배면적	생산량	유통·가공량	비 고
계	명	ha	톤	톤	
00영농법인					
00작목반					
개별농가					
0000					

- 시군 전체 재배면적 : ha의 %

※ 사업신청이 없는 시군은 타 사업배정 시 패널티부여 등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전략(기본계획/목표)
 - 품목별 법인체 통폐합을 통한 주식회사 설립방안 등
- 추진대책
 -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컨설팅 등
 - 수직적 계열화, 참여확대 및 구성계획 등
 - 생산·가공·유통 및 품질관련 규약체결 및 매뉴얼 개발
 - 법인화 완료
- ※ 사업완료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내용 상세 기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농조합법인 통폐합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추진기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기반 구축	소계						
	0000						
주체 육성	소계						
	0000						
역량 강화	소계						
	0000						

주) 기반구축(컨설팅, 교육, 회의, 설명회 등), 주체육성(협업체 구성·운영, 연찬회, 벤치마킹, 법인설립 등), 역량강화(CEO영입, 매뉴얼개발,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 금후계획

- 추진일정
 -
- ※ 상기 추진대책에 대한 추진일정을 세부 기재
- 법인화 이후 발전·관리방안
 - 생산·유통역량 강화 및 기업화 촉진 방안
 - 운영 활성화 및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대책 등

< 서식 3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기타)
○ 법인체명 : (신규, 통합, 연합), 대표자 : 성명(☎)
○ 법인화(통합·연합) 규모 (명, ha, 톤)

구 분	참여인원	재배면적	생 산 량	유통·가공량	비 고
계					
00영농법인					
00 작 목 반					
개 별 농 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컨설팅 개요
 - 컨설팅 기관 :
 - 주 요 내 용 :
- 항목별 추진실적
 -
 - * 출자금 모집현황(농가수, 금액) : 계획대 실적

세부 사업명		사 업 량			사업비 집행(천원)			
		계 획	실 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기 타
계								
기반 구축	00							
	00							
주체 육성	00							
	00							
역량 강화	00							
	00							

※ 문제점 및 대책

□ 앞으로 추진일정

- O

< 서식 4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정산실적

☐ 사업개요

○ 법인체명 : (대표자 :)/ 신규, 통합, 연합

○ 법인화(통합·연합) 규모

(명, ha, 톤)

구 분	참여인원	재배면적	생 산 량	유통·가공량	비 고
계					
00영농법인					
개 별 농 가					
0000					

☐ 정산실적

○ 사업추진

세부 사업명	사 업 량			추진기간	세부 사업내역
	계 획	실 적	진도(%)		
계					
00					
00					
00					

○ 사업비 집행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 사업비 미집행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 금후 관리·육성계획(사업성과)

○

○

4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

I. 사업 개요

1. 목 적

-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등 매년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품목의 적정 면적 재배를 위하여 시군별로 비교우위를 지역특화품목 및 틈새 소득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육성
- 수급불안 농작물을 다년생 작목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적정재배 유도
- 지역특화품목, 틈새 소득 작목 중심 작목전환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침

- 대체작목은 수급불안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특화 품목 중 수급불안 품목과 재배시기가 겹쳐 대체할 수 있는 작목
- 농산물 소비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단지화, 규모화, 기계화가 가능한 품목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수입농산물과 가격과 품질 면에서 또는 가격 및 품질의 어느 한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기존 유통망을 이용 하거나 신규 시장개척이 가능한 품목
- 가공·유통전망을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기존 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품목
- 가공·수출을 통한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고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품목 위주 육성

3. 사업계획

- 추진근거 :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 5개년 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35ha	5,413,000 (100%)	812,000 (15%)	1,894,500 (35%)	2,706,500 (50%)

※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 5개년 계획('08~'12) : 1,000ha, 24,060백만 원

5. 2012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12월

○ 사업비 : 5,413백만 원(도비 812, 시군비 1,894, 자담 2,707)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은 별첨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지역특화품목 재배 등을 위한 묘목, 비료(퇴비) 등 농자재 구입, 기타 채소류 재배에 필요한 시설 등

○ 지원대상자

-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등 수급불안 농작물을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 5개년계획(친환경농업과-8459호, '07.7.19)에 포함된 시군별 대체작목으로 작목전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마늘, 고추는 수급불안 품목에서 제외

- 농업기술원의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된 품목을 확대 재배코자 하는 농가

※ 기존 대체작목을 변경 및 추가할 때에는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선정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전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사업 지원 단가

- 세부사업별 단가는 농림사업 중 농업종합자금 사업비 단가를 적용

※ 예시) 지원 단가(10a당) : 내재해형 하우스 20,000천원

- 농업종합자금에 없는 사업 단가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비교견적)에 기초하여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단가 조정심의를 거쳐 적용

II.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체계

-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계획」 보고(시군→도) : 2월 25까지
 -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역특화작목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 시군 작목전환계획 검토·승인(도→시군) : 3월
- 사업추진 : 사업시행년도 3월 ~ 12월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 익년도 2월 20일까지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대체작목의 적정성, 자담 투입여부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필지별 작목재배 현장을 사진첨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3.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약정체결사항 이행여부 지속 확인
- 대체작목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급불안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도록 농가 교육 및 지도, 홍보 등의 필요한 대책 마련하여 추진

4.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자	보고기한	보고서식
○ 수급불안품목작목전환 사업계획	시장·군수	2. 25일까지	2호
○ 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장·군수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3호
○ 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시장·군수	익년도 2 20일까지	4호

<서식 1호>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약정서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책임과 임무)

-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작목전환사업으로 약정하여 지원받은 필지(면적)에 대해서는 수급불안품목을 3년 이상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2. “을”은 약정 체결한 소유 및 임차농지는 물론 추가 임차를 통해서도 수급불안품목은 재배하지 않는다.
- ② 점검결과 제①항 제1호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제2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보조금 미지급 및 별도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자격박탈)

- ① “갑”은 “을”이 약정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을”의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참여대상자격을 박탈한다.
- ② “갑”은 제①항의 “을”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① “갑”은 “을”이 제1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기간의 매년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시설은 시설이 완료된 직후 지급한다.
- ② “갑”은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식 2호>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지역(위치)

○

☐ 지역특화 대체작목 지정품목 :

☐ 주요 사업내용

○

○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시군비 확보사항)
사 업 비					
부담율(%)	100%				

○ 세부단위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세부단위사업	사업량	총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 세부단위 사업별 사업비 산정 산출기초 작성

2. 사업추진계획(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확보
- 세부설계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공사추진
- 공사완료

3. 사업효과

-
-
-
-
-
-

4.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약정체결 결과

시·군 (읍면)	신 청 농 가				작목전환 신청내역						
	호수	수급불안작물		작목전환 면 적	노지생산			시설생산			
		작목명	재배면적		작목명	면적	사업비	작목명	시설명	면적	사업비
계	호		ha	ha		ha	천원			ha	천원
00시군											
00읍면											
00읍면											

※ 작목전환면적은 확인에 의한 약정 당년도 약정농가의 실재배면적임

※ 시설명에는 주요시설을 기재(예 : 비가림시설 등)

<서식 3호>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품목		농가 수 (호)	작목전환 세부사업명	사 업 추 진			비 고
대상품목 (수급불안)	전환작목			계 획	실 적	비 율	
				ha	ha	%	

<서식 4호>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 완료실적

사업품목		농가 수 (호)	작목전환 세부사업명	사 업 추 진			비 고
대상품목 (수급불안)	전환작목			계 획	실 적	비 율	
				ha	ha	%	

□ 사업비 집행상황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 업 비					
집 행 액					
집 행잔액					

※ 사업비 미집행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

㉔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I. 사업 개요

1. 목 적

-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 등에 소득·약용작물 등 지역적응 고소득 작물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창출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 방향

- 소비수요가 늘고 있는 인삼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을 위해 잠업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를 우선 지원
- 지역별, 품목별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공·유통 등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 제고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우량자재 구입·사용 및 농가부담 최소화
※ 단, 개별농가 지원 시에는 연내 작목반 또는 법인 참여 유도
- 품목별로 단지화 된 지역과 신규 작목을 발굴하여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

3.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소득·약용작물생산단지조성	1,500ha	6,667,000 (100%)	2,000,000 (30%)	4,667,000 (70%)

II.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1년)

2. 사업주관 : 시장·군수

3. 지원조건

- 품목별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수준에서 보조지원

4. 지원범위

- 소득·약용작물 : 종자(묘)대, 비료대(퇴비), 부직포 등 친환경기자재, 기타 재배에 필요한 시설비
- 인삼 : 종자, 묘삼, 차광막, 친환경인삼 재배시설, 안개분무시스템
- 잠엽 : 묘목, 친환경양잠자재

5. 최대 지원한도액 : 품목별 차등 지원

〈소득 작물〉

- 정부고시 및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실제단가 적용(최고 4,500천원/ha)

〈약용작물〉

- 4,500천원 / ha당(16개 품목) : 작약, 오미자, 적하수오, 구기자, 복분자, 오가피, 비파, 목단, 둥글레, 헛개, 치자, 패모, 복령, 황칠, 블루베리, 어성초
- 3,500천원 / ha당(17개 품목) : 지황, 맥문동, 사삼, 길경, 석창포, 우슬, 후박, 감국, 환민들레, 잔대, 영경귀, 백화시설초, 천문동, 함초, 모시, 지초, 인진쑥
- 3,000천원 / ha당(11개 품목) : 황금, 당귀, 시호, 산수유, 감초, 백출, 애엽, 소엽, 백지, 방풍, 산채류

▶ 기타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시장조사를 통해 실제 단가를 적용하되, 지원 상한액은 최고 지원 단가(4,500천원/ha당)이내에서 지원, 단 택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인삼〉

- 신규재배 : 10,000천원/ha,
- 시설보완 : 7,500천원/ha

〈잠업〉

○ 묘목 : 750원/1주

○ 친환경양잠자재 : 정부 고시 기준 및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6. 지원 대상

○ 소득·약용작물 : 논 및 밭벼 재배지 작목전환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임야 제외-공부상 지목이 임야 여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 시 지원 가능) 지역 소득 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

○ 인삼·잠업 : 동일(대상자 및 대상지역, 지원내용)사업으로 최근 2년 이내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또는 벼 재배농지에 대해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중 사업 적격자 우선 지원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전남생약농협협동조합 등과 계약재배 등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녹차 등)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동일사업으로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인삼·잠업만 해당)
⇒ 타작물 사업신청자가 없을 시는 2년 이내 지원받은 실적이 있어도 지원가능(후 순위 지원)
※ 동일사업이란?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한계농지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한함

- 농기계 구입 및 유통시설,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7. 추진체계별 담당기관 역할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지침 시달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단지조성계획·세부계획 수립 및 농업인교육(시·군)
② 사업신청 접수	(~1월)	▪ 사업신청요령 홍보 및 신청접수(시·군) ▪ 시군 단지조성계획·세부계획 및 농업인 교육 실시결과 보고(시·군→도)
③ 대상자 선정	(~2월)	▪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농정심의회 등 자체 심의 거쳐 선정
④ 사업계획제출	(2~3월)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결과보고(시·군)
⑤ 보조금교부결정 및 이행상황 점검	(3~10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원(도, 시·군) ▪ 사업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읍·면) ▪ 보조사업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 - 자부담 집행실태 및 추진상황
⑥ 사업완료 검사 및 사업비 집행	(11~12월)	▪ 사업완료 검사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검사 신청(보조사업자→시·군)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시·군)
⑦ 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익년도 1. 10)	▪ 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사업 완료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시·군)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보고(시·군→도)

8. 기 타

가. 사업비 집행

- 도에서 시군에 사업비 교부결정 및 자금 배정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소득·약용작물, 인삼, 잠엽의 종자(묘목)대 지원 시 파종 및 생육상황을 파악하여 **70%이상 생육 및 활착이 된 경우** 집행 단, 인삼은 파종, 덕시설(차광막) 등 인삼재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함

나. 기자재 구입

- 기자재 지원 대상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 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도내 품목별 조합 또는 업체를 통한 공동구매 등을 실시 비용절감을 유도해야 함
 - ※ 기종, 규격, 형식 등 사양에 따라 사업단가가 다르므로 한국농기계 협동조합 발행 “농기계가격” 참조
 - 인삼 등 주요 농업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농림 식품부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에 의한 규격시설 및 「농가보급형 표준설계도」 등에 의한 규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 지원 단가 산정

- 지원 대상 세부 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라.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바. 사후 관리

- 농약안전사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품질 소득·약용작물 생산토록 농가 재배관리 및 지도 철저
- 단지별·품목별 재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생산자 단체와 대량 소비처간 직거래사업 적극 추진

사.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정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보고는 붙임 1 서식에 의거하여 보고
 - 주요보고내용 : 사업실적, 사업비 집행실적, 이월액 및 발생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등

III. 행정 사항

1.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서식 1>

- 생산단지조성계획 수립 및 농업인 교육결과 제출(시·군→도) : 1월 30일까지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 사업신청(농업인→읍·면→시·군) : 1월 30일까지
-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 → 도) : 2월 28일까지

2.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사업시행)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도 → 시·군) : 3월 20일까지
- 반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보고(시·군 → 도) : 2회(7. 5, 11. 5.)

3. 사업 완료 상황 및 집행(정산)실적 보고<서식 2, 3>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시·군 → 도) : 익년도 1월 10일까지

※ 보고서식은 붙임 참조

<서식 1>

2012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량 : 농가 수 ha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사업내용 :

2.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량		참여농가	지단가	사업비		
품목	면적			계	도비	시군비
계	ha	호	천원			

※ 농가별 사업계획 및 자체 농정심의회 자료 등은 시군에서 자체 보관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여건(기본계획/ 목표, 생산 및 가공, 유통현황)
 -
 -
- 추진대책
 -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기술센터와 연계한 농가교육
 - 생산자 조직화 및 단지화, 품목별 시군 대표협의체 구성운영
 - 판매촉진을 직거래확대 대책, GAP 우작물 생산매뉴얼 개발
 - 연차별 생산 및 수급대책, 종자공급 대책 등
 - ※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계획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2012년 중점추진 사항
 -

<서식 2>

상반기(하반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품목	면적	농가수	실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계	ha	호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서식 3>

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가. 사업실적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실 적						집행률
	계 획			실 적			
	품 목	면 적	농가 수	품 목	면 적	농가 수	
	계	ha	호	계	ha	호	%

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집 행 액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조치계획 반드시 포함) 첨부

다. 사업성과(소득)분석 보고

시군	재 배 농가수	재배 품목	재배 면적	재배 기간	생 산 예상량	예상소득 (천원)			호당 평균 소득	10a 평균 소득
						판매액 (A)	제경비 (B)	순소득 (A-B)		
	호		ha		톤					

※ 2012년 재배실적 및 소득액을 작성, 시행 전과 시행 후 사진 첨부

라. 기타 건의사항(문제점)

Ⅵ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어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성과목표

- '17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에너지절감시설 10,050ha, 신재생에너지 2,375ha 설치지원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연간 에너지 절감량 (천TOE)	56	5	5	5	'13.2월	○지열면적(ha)*65.6TOE + 목재펠릿면적(ha)*108.66TOE + 절감시설면적(ha)*43.44TOE * 지 열 면 적ha당 기준 - 737kw (난방용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전 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52,000	265,500	224,060	244,500	1,222,500
국 고	15,600	139,650	125,450	100,300	501,500
지 방 비	15,600	59,650	45,130	60,275	301,375
용 자	10,400	13,100	16,700	33,225	166,125
자 부 담	10,400	53,100	36,780	50,700	253,500

<전 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5,589	43,394	24,925	47,485	237,425
국 고	1,676	20,527	9,399	11,476	57,380
지 방 비	1,676	10,514	6,878	13,870	69,350
용 자	1,118	1,595	2,694	12,643	63,215
자 부 담	1,119	10,758	5,954	9,496	47,480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법인 포함)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어업법인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수산 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축산법」 제22조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포함)을 경영 중인 자
-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
 - 온실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한국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이어야 함
 - 단,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함
 - * 연간 면세유 50만 리터 이상 사용 농가는 '15년까지 지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배정 및 정부사업 지원 배제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시설원에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 수산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사업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시설재배 온실내 유류난방기, 전기난방기 사용 농가 순으로 우선지원
 - ※ 단,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농가 제외

<목재펠릿난방기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시설내에서 채소·화훼·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포함)
 - 버섯분야는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2.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공통사항>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 우선 지원
- 동 사업으로 냉난방시스템 설치 시 기존 난방시설을 가능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 보조난방시설 교체 시는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 사업신청을 위한 요건

- 지원 대상시설 요건과 생산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 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돼지사육농가 : 「축산법」에 따라 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마리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 : 「축산법」에 따라 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천마리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법」에 따라 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5천 마리 이상인 농가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포함)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포함)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 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농수산업법인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4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어업 시설

-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이상
- 버섯재배사 면적 600㎡이상
- 무창계사로서 30천 마리 이상 사육 시설
- 무창오리사로서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1천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사업장의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 면적 600㎡이상인 시설(종묘생산어업의 경우에는 水면적 300㎡ 이상인 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철골조온실, 연동형 파이프비닐온실을 말함

○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단열기준을 갖추어야한다.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버섯재배사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 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시설의 판넬구조는 두께 50mm 이상 (측벽 및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지열 열교환용 설비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사업대상자가 필요 면적을 공사착수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권장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작목 재배기간과 수확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함)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 사업신청자는 지열 열교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 지열열교환용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 권장면적
 -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축산 및 수산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지열 이용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붙임 참고1)하고, 버섯 재배사는 느타리, 팽이, 새송이 버섯으로 정한다.
- 공정 육묘장은 대상작물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난방이 필요한 작물 선택
 - * 별첨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을 적용하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 (붙임 참고1)

라. 지원 시설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한다.
- 양돈 및 계사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를 추가 포함(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폐열원을 이용하는 농어업시설의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를 활용한 시스템 구성으로 지원 가능

- *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 대상시설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농가별(법인포함)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단열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한다.
 - *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을 적용하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을 선택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붙임 참고1)

다. 지원 시설

- 공기 대 공기 형식
 -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위한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환코일 유니트,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프 성능기준

- ①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중 제한기준 이상 성적계수
 - 일반형(COP) : 한랭지(2.70) / 한랭지형(COP) : 한랭지(2.90)
 - ②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시험방법(KS B ISO 15042)으로 동 기준 「6.1.2.3 온도조건」의 <표 7> 난방능력시험 조건 H2, H3 온도조건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
- ※ 지원시설 중 히트펌프(멀티에어컨디셔너)는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 공기 대 물 형식

-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위한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축열조탱크, 순환 펌프 및 배관시설, 웬코일유니트,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프 성능기준

-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농업용냉난방기(히트펌프식, 공기 대 물)검정방법」 성능기준 이상

※ 지원시설 중 히트펌프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히트펌프식 공기 대 물) 검정방법」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에 한해 보급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

3.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사업비는 해당 투입비율(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대로 조정
 - 국고지원 또는 지방비의 추가 투입 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 신청함(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불가항력의 사유란 사업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등을 말한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예특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예특회계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공기열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 신청함(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예특회계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4.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 (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과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 적용단가

구 분		적용단가(천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열교환기-히트펌프	1,207

- *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70% 용량으로 결정
-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예정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 용량을 (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구 분	단 가	적용단가(천원/kW)
설 비 형 식	공기-공기(공급) 형식	617
설 비 형 식	공기-물(공급) 형식	865

※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70% 용량으로 결정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세부사업	단 가	지 원 내 용
◦목재펠릿난방기	온수형 1.5억원/ha	◦설치비 지원 목록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온수) : 급수분배기(해다), 배관, 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온풍형 0.8억원/ha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 온수형 설치시 온실내 배관시설 등 내부시설 미설치시 차감지원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5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보온자재는 보온율(향온법 기준) 65% 이상
	예인식, 외부권취식 13천원/㎡	◦알루미늄스크린을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의 보온커튼은 보온율(향온법 기준) 52%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알루미늄 스크린 13천원/㎡	◦알루미늄 스크린은 보온율(향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5천원/㎡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2.5천원/㎡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 1)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는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2) 보온자재의 열 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 3) 모든 사업은 보급시설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 농가, 농자재 보급업체 등이 참석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 4) 지방자치단체는 지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 완료농가명단을 11월말 까지 농·수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사업시행요령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1.11월)
- 농식품부는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11.11월)
 - 중앙심의위원회 구성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열전문가 등 10명 내외
 - * 중앙심의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
- 시·군, 시·도의 예산요구를 심사하여 자금배정 통지('11.12월)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11.11~)
- 지자체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 지원('11.11~)
- 중앙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 작업 수행

시·도

- 시·군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
- 시도 농림수산심의회에서 지원우선순위를 심의(붙임 4호)하여 그 결과와 함께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지원신청금액 20억 이상의 경우 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어업기술자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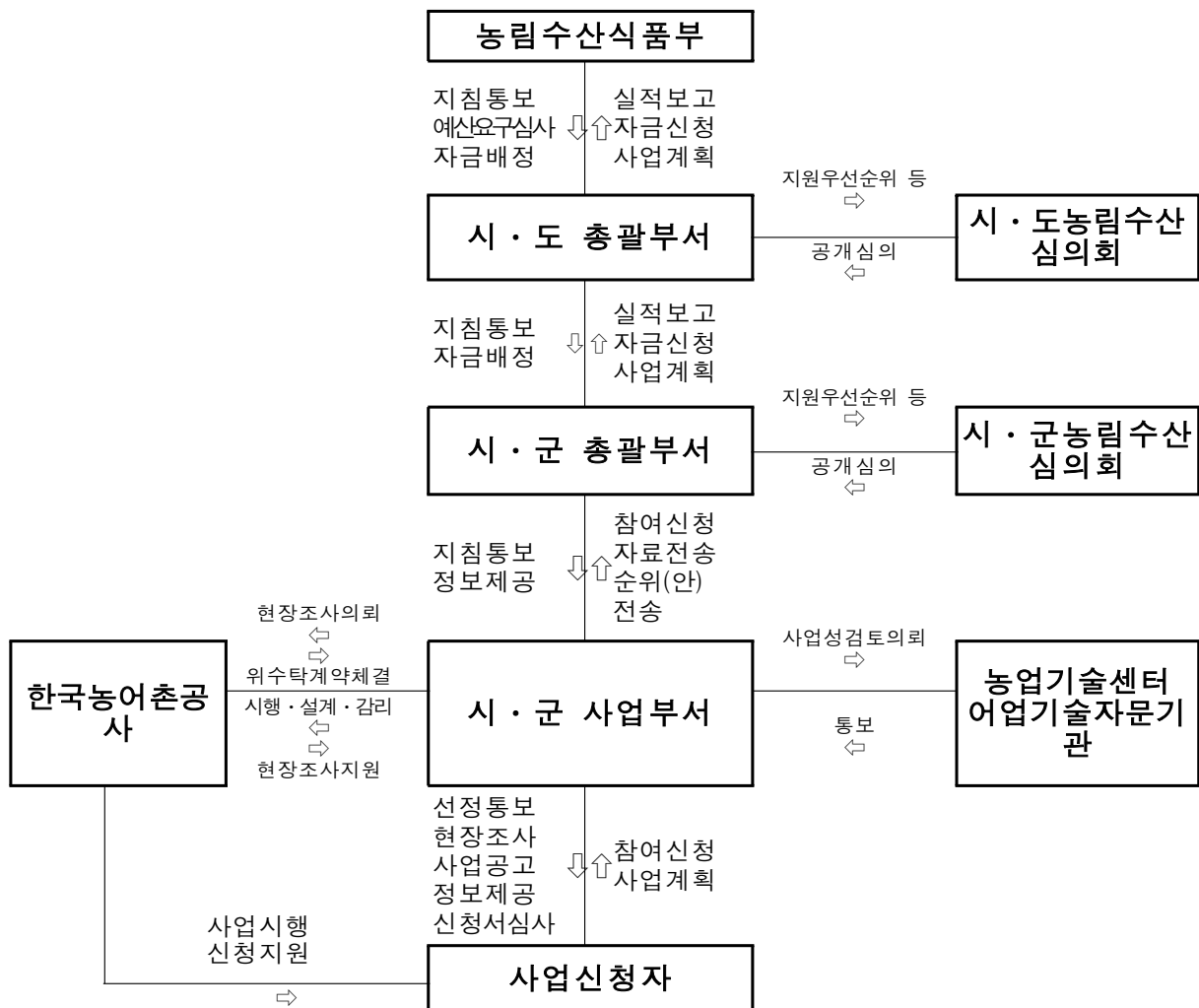
-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11.11월)
- 농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검토의견서(붙임 5호)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1.11월)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붙임 서식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군에 통보(붙임 5호)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붙임 2호)
 - * 어업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수산기술사업소, 수산사무소 등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심의(심의기준 덧붙임 참조)를 시행하고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호), 사업계획서(붙임 3호, 3-1호 또는 3-2호), 현장조사 결과서식(붙임 2호), 사업성 검토서(붙임 5호)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농(어)업기술센터, 농기계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1.11.~)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호), 사업계획서(붙임 3호, 3-1호)

(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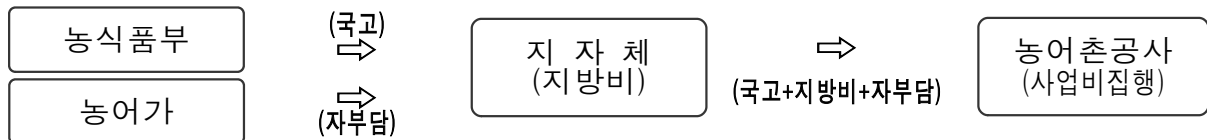


2. 사업시행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지자체장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과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자금 흐름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 시·군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 사업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군에 계약대행 및 시·군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함을 협의
-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시·군,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시·군, 시·도는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 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해당 시·군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직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지원받은 자가 법인경영체인 경우 시·군 기계, 전기, 건축, 토목 등 기술직 입회)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지자체장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자의 요청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

구 분 \ 대상액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2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100억 원 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7.10	6.89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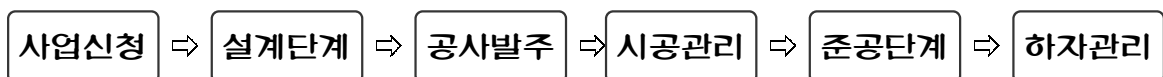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50%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지열이용검토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지방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전문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어업인(농어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 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지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지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및 시군담당자)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3. 사후관리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지자체 및 농(어)업기술센터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시·군 농(어)업기술센터 등 자문기관은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물 생산 기술지도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지열·공기열 이용설비)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지열·공기열 이용설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사후관리부실기업 신고제도 시행) 시장·군수는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신고할 것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축산농가 및 농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붙임 6호 서식)

4. 성과 측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종료 익년 7~8월중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실적·장비의 활용도, 사후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농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대상 : 전체 사업지구
 - 평가기준 : 별도 수립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종료 익년 7~8월중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업인의 의견수렴정도, 지역실정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 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 관련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우편,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대상 : 지자체 공무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참여농업인 등
 - 조사방법 : 전화, 우편, 면담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지자체 및 농(어)업 기술센터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열·공기열 이용설비 보급사업장에서 생산현황 조사 및 현장평가 등 사업추진 성과를 정밀 분석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사업익년 8월)
- 각 시·군 농(어)업기술센터장은 지열·공기열 이용설비 설치 사업장별 에너지 절감 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사업익년 8월)

② 목재펠릿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1.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지 조사계획(온실 및 가온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배정 등)을 시·도지사에게 시달('11.11월)

시·도

- 사업 대상지 조사계획 및 사업량 배정계획을 시·군에 시달('11.10월)
- 시·군에서 제출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검토 후 시·도 단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1.12월)

시·군

- 시장·군수는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로부터 시달 받은 사업 배정량에 따라 시·군 단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11.12월)
 - 농업인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농진청, 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검토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및 단가 등 지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 목재펠릿난방기는 시·도 또는 시군별로 농가대상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펠릿 및 난방기의 성능, 열효율 및 A/S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신청토록 조치.

농업인(사업자)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계획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협중앙회에 통보('11.12월)

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농업인(법인)에 통보('11.12월)

3. 사업시행 단계

농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검토·조정·보완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사업시행요령 및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시 절차>

- 사업자(농업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계획변경 신청내용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로 변경 사항을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 기관에 소요 자금 한도액을 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고,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월별 소요 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융자금 대출 실행 원활을 위해 사업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에너지관리공단, 농협중앙회

- 에너지관리공단사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에 의거 자금을 대출취급기관에 대여
- 대출취급 기관이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집행 기성고(준공)확인서 등에 의하여 대출

5. 이행 점검 · 관리 단계

《 사후 관리 》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지자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함

자금관리 주체

- 자금관리 주체는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 및 사업자로부터 지원 및 사용 관련 입증서류 확인과 시설 설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금을 정산하여야 함

<제 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금관리 주체는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 및 각 지자체는 사업종료 익년 7~8월 중 전년도 사업성과 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2.10~11월
- 신청자격 : '1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13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2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통보

<첨부1 :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붙임 1호 서식)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 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 설 규 모	농업시설	계	유리온실		비닐연동		버섯재배사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축산시설	계	무창돈사		무창계사				기타		
		마리/ m ²	마리/ m ²		마리/ m ²		마리/ m ²		마리/ m ²		
	어업시설	계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난방방법	난방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난방면적	m ²		m ²		m ²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현 사용전력		
		m ²	m ²		m ²				kW/h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년간		수출국			시기	월 ~ 월까지		
사 업 신 청 내 용	신청내용	지열·공기열 이용설비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사업규모(산정부하(kW) x 형식별단가)										
	희망유형(○)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수열교환기-히트펌프(),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지열교환기 설치공간확보	가능면적	m ²		설치장소(○)		온실내부() 온실외부()				
	농가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 가	임차잔여 기간	자 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경영 계획	생산물									
면적/수량											
시기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위와 같이 지열·공기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〇〇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 계획서(지자체 요구서식)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③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붙임 참고2 서식)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붙임 참고2 서식)

<공통사항>

4.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
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
회보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
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 ③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
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
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붙임 2호 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I)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가온재배경 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 타			
		면적/마릿수	m/마리									
		난방면적	m ²									
	난방방법 *(○)	기 중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석탄	전기	기타			
		1년총 사용량	-		L	L	톤	kW				
		1년총 사용액	백만원									
		난방기간 : 월 ~ 월(일간) 동계최저설정온도 : ℃										
부대시설 및 규모									기 타			
	m ²		m ²		m ²							
수출납품	품 목 별	계										
	최근2년 실적 (톤, 백만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국										
		수출시기		월 ~ 월		월 ~ 월		월 ~ 월				
참여년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 청 자 재정상황	자산	동 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예금	백만원			
	부채	금융 대출	백만원		임대보증 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연소득	농어 소득	백만원		농어외소 득	백만원		기타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현 장 조 사 확 인 서 (Ⅱ)												
신청자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설립년월일						
	주 소											
사업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공기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地番까지)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준/신규	*기준시설()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반자동() *수동()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규 모	m ²									
		동 고	m									
		층 고	m									
		단 동 폭	m									
		보온 시설	지붕									
	벽체											
	단열재											
	유형확인 *(○)	*수평밀폐형지열시스템() *수직밀폐형() *SCW형()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지열교환기 설치공간 *(○)	공간확보 가능면적	m ²		설치장소		*온실내부() *온실외부()					
		설치공간 토지소유자		*자가() *임차 : 잔여기간(년)								
	신청자여건 *(○)	자부담(20%) 능력		시설부지		소유권자		생산시설		소유권자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 기 간		자가	임차잔여 기 간				
						년				년		
	입지여건 *(○)	설치장소 토양조건			전기시설		신청 장소 금후 10년이내개발예정		최 근 침 수 피 해 연 도			
양질토		암석토	매립지	현재 계약용량	한전 인입 거리	개발예 정연도	*비대상					
			kW		m		년		년			
생 계 산 획	생산물		작물명		가축명		어종					
	면적 및 규모		m ²									
	시기		월 ~ 월									
최저설정온도		℃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3호 서식)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 계획서												
담당 자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휴대폰			이메일					
사업수행 기관						신청지역 최저기온(최근10년평균)					℃	
사업신청시군 사업관련현황	대상농 어가수	계(가구)	OO작물	OO가축	OO어종	기타	난방 면적					
	면적 (다면적순)	계 (ha)	생산물(작물/가축/어종)								기타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가구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설치장소	(地番까지)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시설현황	사업대상 시설규모	계							기타	
		m ² (마리)								
	부대시설	m ²		m ²		식				기타
추진계획	공사입찰	년	월	순	공사계약	년		월		
	착공시기	년	월	순	완공시기	년		월		

지열·공기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사업신청자(대표) : (인)

확인자 : ○○시군 ○○과장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붙임 3-1호 서식)

지열난방시설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m ²						m ²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고
시설형태	면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m ²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벤로형유리온실 ②양지붕형유리온실 ③비닐연동 ④비닐단동
⑤기타

- 기존/신규 : ①기존 보유 ②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양액재배 ②점적관수 ③자동환경제어 ④공정육묘장 ⑤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유리 ②PE ③EVA ④PO ⑤불소수지 ⑥PET ⑦PC ⑧PVC
⑨외피복 1중 ⑩외피복 2중 ⑪외피복 3중 ⑫보온판넬 50mm
⑬보온판넬 75mm ⑭보온판넬 100mm ⑮보온판넬 100mm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2중)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예냉시설 ②저온저장고 ③저온처리실 ④집하장 ⑤선별처리

⑥보광시설 ⑦선별기 ⑧운송차량 ⑩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동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동대기사00m²

2. 사업계획

가. 지열난방 시스템 설치

지열난방 시스템 선택									추열조용량	기계실면적	내교기형 실열환유
계	수 평 형					수직밀폐형	수직개방형	수교기-트프 해열기-히트펌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m²	m²					m²	m²	m²	톤	m²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m ² (마리)	월 순				℃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0		2011		201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m ²	톤	백만원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붙임 3-2호 서식)

공기열난방시설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거리	비상발전기
m²					m²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고
시설형태	면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m ²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벤로형유리온실 ②양지붕형유리온실 ③비닐연동 ④비닐단동
⑤기타

- 기존/신규 : ①기존 보유 ②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양액재배 ②점적관수 ③자동환경제어 ④공정육묘장 ⑤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유리 ②PE ③EVA ④PO ⑤불소수지 ⑥PET ⑦PC ⑧PVC
⑨외피복 1중 ⑩외피복 2중 ⑪외피복 3중 ⑫보온판넬 50mm
⑬보온판넬 75mm ⑭보온판넬 100mm ⑮보온판넬 100mm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2중)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예냉시설 ②저온저장고 ③저온처리실 ④집하장 ⑤선별처리

⑥보광시설 ⑦선별기 ⑧운송차량 ⑩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동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동대기사〇〇m²

2. 사업계획

가. 공기열난방 시스템 설치

공기열난방 시스템 선택					축열조 용량	기계실 면적	실내열 교환기 유형	
계	수 평 형			온수형				온풍형
	면적	설치장소(○)						
		시설내부	시설외부					
m ²	m ²			m ²	m ²	톤	m ²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리)	생산 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m ² (마리)	월 순				℃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0		2011		201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m²	톤	백만원					

라. 자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붙임 4호 서식)

(사업 신청자 농림수산심의회 선정 심의기준 I)

일련번호

시도명 - 1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기준 (I)

지 역	○○시군	신청자 또는 법인체명						
주 소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불 량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7), 반자동(5), 수동(4), 인력(3), 시설낙후(1)			7	5	4	3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커튼+ 부직포(6), 다겹커튼(5), 부직포 2중 (4), 부직포 1중(3),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mm이상(6), 75mm이상(5), 75mm미만(4)			6	5	4	3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6),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5), 201~500m(4), 501~1,000m미만(3), 1,000m 이상(1)			6	5	4	3	1	
4. 최근 2년간 수출납품 실적 및 수출 참여기간 <개인> - 납품액 2천만 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1천만 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5백만 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5백만 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법인체> - 납품액 3억 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2억 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1억 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5천만 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경영 참여 경력 - 10년이상(5), 6~9년(4), 2~5년(3), 2년미만(2), 무경험(0) -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 10일 이상(2) -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 5일 이상(1)			7	5	4	3	1	

조 사 항 목	배 점					득 점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불 량	
6. 사업신청 장소 토지 소유권자 - 자가 토지(10), 임차 잔여기간 16년 이상(8), 임차 잔여기간 11~15년(6), 임차 잔여기간 6 ~10년(4), 임차 잔여기간 5년 이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 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7) - 난방비 5백만 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5) - 난방비 3백만 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4) - 난방비 1백만 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 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7	5	4	3	1	
8. <시설원예> 재배작물 선택의 적합성(불임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적용) - 고온성작물선택/육묘장/최저설정온도 20℃ 이상(7) - 고온성작물선택/육묘장/최저설정온도 15℃ 이상(5) - 중온성작물선택/최저설정온도 12℃ 이상(4) - 중온성작물선택/최저설정온도 10℃ 이상(3) - 저온성작물선택/최저설정온도 10℃ 미만(1) <시설원예 이외의 경우> - 최저설정온도 30℃ 이상(7) - 최저설정온도 25℃ 이상(5) - 최저설정온도 20℃ 이상(4) - 최저설정온도 10℃ 이상(3) - 최저설정온도 10℃ 미만(1)	7	5	4	3	1	
계	60					
<심의위원 의견>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사업신청자 농림수산심의회 선정 심의기준 II)

일련번호	시도명 - 1		
지열·공기열난방시설 보급사업 대상농가 선정 심의기준 (II)			
지 역	○○시군	신청자 또는 법인체명	
주 소			
조 사 항 목		배 점	특점
1. 지역안배, 지역별, 면적 등 적용		5	
2. 신청자 지열난방 시스템 선택유형 적정성 - 수평형, 수직밀폐형, 수직개방형,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5	
3.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가능성 - 축열조, 기계실 등		5	
4. 지열교환장치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가능성 - 자가 토지 확보가능 우선		5	
5.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기타 설치 불가능한 토양 여부 - 개발예정지역 여부 - 상습침수지역 여부		7	
6. 채원확보 및 농가 여건 - 당년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 사업신청자 자부담능력 가능 여부 - 온실 등 시설물의 임차농 여부 - 신청자자산 및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재정건전성의 취약 정도		7	
7. 유형별 특성화단지 우선 선정 - 에너지절감 특성화 센터 - 수출농업 육성 특성화 센터 - 기타 특성화 단지		6	
계		40	
<심의위원 의견>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5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지방비	자담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 가			검 토 의 건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장 (인)

(붙임 7호 서식)

지열·공기열난방시설 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시 군	성 명 법 인 체 명	재배(사육, 양식)대상	시설 유형	면적 (㎡)	방법 (재배/사육/양식)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단,분)
○○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 군	성 명 법 인 체 명	총수량(kg,단,분)			上品 수량(kg,단,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	성 명 법 인 체 명	구 분	외피복재	내피복재	난방기간	기 설 정 온 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	kW	천원	L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유리 ②PE ③EVA ④PO ⑤불소수지 ⑥PET ⑦PC ⑧PVC ⑨외피복 1중
⑩외피복 2중 ⑪외피복 3중 ⑫보온판넬 50mm ⑬보온판넬 75mm ⑭보온판넬 100
⑮보온판넬 100mm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붙임 8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재지 :
4. 사업 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변경		사 유
당초 내용	금 액	변경 내용	금 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붙임 참고1)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작물	중온성작물	저온성작물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쪽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팬지, 안개초, 프리지아, 페츨니아, 프리물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건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 ~ 30	35
고추	13	16	23 ~ 30	35
가지	13	16	22 ~ 30	35
파프리카	15	18	25 ~ 30	35
토마토	10	16	25 ~ 30	33
호박	10	11	23 ~ 25	35
오이	8	12	25 ~ 28	35
참외	8	11	22 ~ 28	35
수박	10	13	25 ~ 30	35
무	8	11	15 ~ 20	25
딸기	3	6	17 ~ 20	30
배추	5	8	13 ~ 18	23
상추	5	8	15 ~ 20	25
시금치	5	8	15 ~ 20	25
샐러리	5	8	15 ~ 20	25
쪽갓	5	8	15 ~ 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 ~ 25	30
장미	5	15	24 ~ 27	30
아나나스	12	15	20 ~ 25	30
야자류	12	15	25 ~ 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 ~ 25	30
백합	13	16	20 ~ 25	30
국화	7	15	18 ~ 20	30
거베라	7	13	16 ~ 20	30
고무나무	10	13	25 ~ 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 ~ 30	35
동양란	10	13	20 ~ 25	40
선인장	10	13	25 ~ 30	50
카네이션	7	13	15 ~ 21	30
철쭉	4	8	20 ~ 25	35
프리지아	7	10	13 ~ 16	30
튜울립	5	10	15 ~ 20	30
아이리스	7	10	15 ~ 20	30
숙근안개초	7	10	15 ~ 18	20
금어초	7	10	15 ~ 20	25
스톡크	7	10	20 ~ 25	25
팬지	7	10	15 ~ 20	25
데이지	7	10	15 ~ 20	25
페츨니아	7	10	20	30
프리물라	7	10	15 ~ 20	25
시크라멘	7	10	18 ~ 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붙임 참고2)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협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첨부2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 >

(붙임 1호 서식)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지 개요	부 류	채소류/화훼류/과실류		온실규모	m ²	
	생산품목			재배규모	m ²	
	대표자(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시 설 규 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m ²	자동화온실 m ²	일반온실 m ²	기 타 m ²	계 m ²
	부대시설	선 별 장 m ²	예냉저온시설 m ²	선 별 기 식	기 타	-
사 업 계 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별 사업량(m ² ,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12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시행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농가개요

성명		생산품목		생년월일	(남/녀)
주소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팩스 :
시설재배규모	m ²			난방면적	m ²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m²)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 및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부대시설 및 장비(보유한 경우)

(단위 : m², 대, 톤, 백만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규모 및 수량	시설비	보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사업명	규모(m ²)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목재펠릿 원료 조달계획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다.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목재펠릿 난방기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m ²)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3. 시·도 및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가. 시·도의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의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3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지 개요	부 류	채소류/화훼류/과실류		온실규모	m ²	
	생산품목			재배규모	m ²	
	대표자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시 설 규 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m ²	자동화온실 m ²	일반온실 m ²	기 타 m ²	계 m ²
	부대시설	선 별 장 m ²	예냉저온시설 m ²	선 별 기 식	기 타	-
사 업 계 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별 사업량(m ² ,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첨부 1-1호 서식>

‘12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시행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농가개요

성명		생산품목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팩스 :
시설재배규모	㎡			난방면적	㎡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 및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부대시설 및 장비(보유한 경우)

(단위 : ㎡, 대, 톤, 백만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규모 및 수량	시설비	보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사업명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비고

다.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m ²)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3. 시·도 및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가. 시·도의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의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⑦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원예전문생산단지 >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 추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8	-	18.9	8	'12.2월	○ '12년 사업추진 원예전문 생산단지의 전년대비 수 출 증가율 - '11년 사업 미추진 원예전문산단지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전 국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67,160	61,348	44,308	58,300	291,500
보 조	14,920	12,440	11,660	11,660	58,300
융 자	37,320	36,468	20,988	17,490	87,450
지 방 비	-	-	-	17,490	58,300
자 부 담	14,920	12,440	11,660	11,660	11,660

< 전남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31,938	24,085	19,878	15,457	77,285
보 조	6,388	4,817	3,975	3,092	15,460
지 방 비	9,582	7,226	5,962	4,637	23,185
자 부 담	15,968	12,042	9,941	7,728	38,640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하 '농식품부'라 함)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 (채소·화훼)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대상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ZNN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등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단지 증·개축 :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
- 증·개축은 기존 시설에서의 구조개선 및 덧붙여 설치하는 것만 허용
- * 증축은 농가별·단지별 기존온실 면적(최초 사업 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지원 제외 대상>

- 시설부지 매수 및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시설비의 5% 초과하는 시설 증축 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
- 전기·유류 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용도

- 단지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소요액을 지원방식으로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이하 “농협”이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지 표준사업비(10ha 기준) : 시설현대화 70억 원, 단지 증개축 90억 원
 - 지원 하한액(10ha 기준) : 사업비 기준 5억 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을 시·도에 시달(‘11.11월)

시·도

-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달(‘11.11월)
-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 위 사업계획안 (종합의견 첨부)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1.12월)

시·군

- 시장·군수는 시설원예(채소·화훼)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11.11월)
- 신청서 양식 : [붙임 1] 양식 참조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자(대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농어촌공사, 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1.11월)
- 신청서 양식 : [붙임 1] 양식 참조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11. 12월)

3. 사업시행 단계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사업 계획(안) 제출(원예단지→지자체→농식품부) ⇒ 사업대상 선정 통보(농식품부→지자체·농협→사업자)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자→시장·군수→시·도지사) ⇒ 사업시행승인 결과보고(시·도지사→농식품부) ⇒ 사업
시행(시장·군수)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시장·군수)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조정·보완('11. 12월)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승인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 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2)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온실, 공정육묘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실, 암반관정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한다.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 온실>

- 철골(유리·경질판)온실은 「온실구조설계기준(농림부 채특51240-870; '99.11.18)」,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시설원예시험장)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을 설계·시공한다.
- 자동화 비닐온실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농식품 고2010-128호('10.12.7))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한다.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한다.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사)
SPVHS	KSD 3760	25.4*1.5	○○○○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 (인장강도) 400N/mm²이상, (항복강도) 295N/mm²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m² 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효율기준을 적용

(단위 : %)

구분 \ 대상금액		10억원 까지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철골 온실	설계	3.06	2.89	2.65	2.45	2.26	2.03	1.87	1.72
	감리	4.12	4.00	3.78	3.57	3.37	3.12	2.91	2.70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	0.95

* 설계·감리비 효율은 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50%를 적용

* 효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자재대를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온실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의 6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효율기준 관리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온실, 공정 육묘장 신규설치(또는 재설치) 규모가 1,000m²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를 통해 시공

○ 온실 내부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은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 3개 이상의 관련업체의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업체 선정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

○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는 (재)한국식품연구원(이하 “한식연”이라함)이 개발한 “예냉시설표준설계도”등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시공 하되 농촌진흥청, 한식연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

○ 시공업체선정 :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동등한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는 농촌진흥청(농업공학부)에서 개발한 성능검사기준에 합격

<기타 시설>

- ERP시스템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 등을 참고하여 정보센터의 자문을 받아 품목별 특성에 맞게 설계·구축
- 관정은 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관리
-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등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A/S망” 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루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 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실시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안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주요 사업계획내역이 총사업비의 30%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사업승인 후 변경 집행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 → 농식품부) ⇒ 융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 → 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유통공사→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사용예정 전월 25일까지 「붙임 2호 서식」에 의해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 자금사용 및 지원 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비 융자금 대출 원화를 위해 사업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다.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 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내에서 대출기관에 자금을 대어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5. 이행 점검 단계

<사후 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 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설비시설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사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공사는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한다.
- 유통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원 입증서류 확인과 시설설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금을 정산한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붙임3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는 매년 상반기 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2.10~11월
- 신청자격 : '1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13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2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원예시설 >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제외한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일반원예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 3,000ha 지원 추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시설현대화 지원시설 생산 증가율(%)	10	-	-	-	'13.7월	○ 일반원예시설 중 현대화 지원시설 생산 증가율 - 시설재배 단수 / 노 지 재배 단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전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	-	-	50,000	250,000
보 조	-	-	-	10,000	50,000
용 자	-	-	-	15,000	75,000
지 방 비	-	-	-	15,000	75,000
자 부 담	-	-	-	10,000	50,000

<전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	-	-	7,330	36,650
보 조	-	-	-	1,466	7,330
용 자	-	-	-	2,199	10,995
지 방 비	-	-	-	2,199	10,995
자 부 담	-	-	-	1,466	7,330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품목·지역단위 시설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APC, 농협, 영농법인 등 (이하 “조직”라 함)
 - 원예전문단지 이외의 시설로 조직과 3년 이상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업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 우선 지원요건
 -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12년도 사업을 신청한 농업 경영체

3. 지원 대상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채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제습기,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시설 등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시설 개·증축은 경영체별 기존 시설물 면적(사업신청시 기준) 30%이내

<지원 제외 대상>

- 시설부지 매수 및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시설비의 5% 초과하는 시설 증축 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
- 전기·유류 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용도

- 조직·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소요액을 지원방식으로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1ha 기준) : 경영체별 시설현대화 7억 원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1.11월)
- * '13년 사업시행지침은 '12.9월에 시·도로 시달 예정

시 · 군

-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관계자, 농업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시설원에 산업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함)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7월)
- 발전계획에 따라 농정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2월말까지)
 - 자체 심사·평가를 거쳐 농식품부 서면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은 시·도에 제출 시 사업신청 제외

시 · 도

- 시·도 발전계획을 시·군과 같은 절차로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도 발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시·군 발전계획 평가
 - 자체 심사·평가 시 농정협의회 등의 심사·평가 실시
 - 농식품부 서면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시행계획은 신청에서 제외
-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3월말까지)
- * 발전계획이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것은 농식품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12년도에 시행할 발전계획은 '12. 1월에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경 영 체

-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를 작성하여 조직에 제출(1월)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조 직

-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이하 “농가”라 함)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전년도 7월)
 - * 해당 지자체는 조직의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
- 지원대상 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전년도 11월말)
 -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자체 시설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1) 『일반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주체 : 지자체
- 계획기간 : ‘17년까지(필요한 기간 임의 산정)

(2) 지자체별 “농정심의회” 등 운영

- 역할
 - ① 지자체의 발전계획 자문
 -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 지역단위 또는 품목 조직단위로 발전목표를 설정
-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수출사업 등이 연계되도록 추진하되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지역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생산·유통의 계열화 주체가 있는 품목별 조직단위로 지원계획 수립
- FTA, DDA 등 시장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선택과 집중

(4)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 시설원예산업 현황(생산, 유통 등), 여건분석 및 향후 과제
- * 발전계획의 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 또는 공공기관 자료인용
- 중장기 비전 및 육성목표, 사업추진 전략 및 로드맵
- 시행사업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구성내역 및 컨설팅 계획
- 사업시행주체의 사업여건 분석 및 발전목표 설정
- 사업시행주체 육성목표 및 목표달성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사업량
- 사업별 단가 산정기준 및 목표달성 전략

(5) 사업계획 세부작성 요령 : 별지서식 참조

(6) 사업계획서 변경 금지

- 서면평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사항은 농식품부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발전계획 선정 통보(전년도 10월)
 - 각 시·도에서 신청한 발전계획 선정은 별도의 선정방법에 따름
- * '12년도에 시행할 발전계획은 '12. 2월말까지 지자체에 선정·통보

시 · 군

- 조직에서 추천한 농가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등을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는 사업자 선정시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 예)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림수산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3조 내지 제25조 참조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 년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 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 * '12년도에 시행할 사업대상자는 '12. 2월까지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선정 순위>

- 1 순위 : 조직과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가
- 2 순위 : 조직과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가
- ①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
- ② 대상자 선정 순위 준수(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 ③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 ④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 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사업 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⑥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업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 ⑦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 기간 부여
- ⑧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 ⑨ 참여조직별로 사업량을 균등분배하여 사업시행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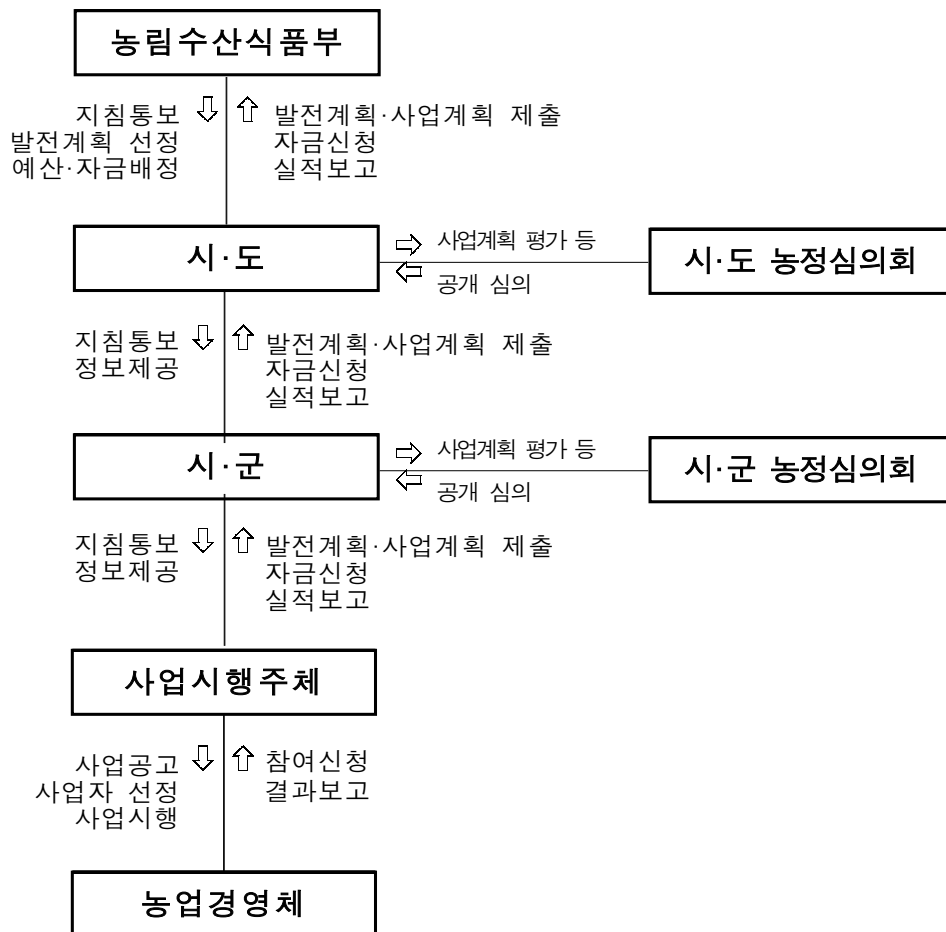
3.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확정된 발전계획의 조직, 사업대상지역, 지원 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 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 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필요
- 조직은 지원대상조직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한다.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 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원 단가 조정은 농정심의회 등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방법은 필요한 경우 농정심의회 등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관기관이 정한다.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제습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조합 등 조직이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사업 추진 체계도)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확정된 발전계획의 조직,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 참여 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한다.
 - 조직별 지원단가 총액을 50%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3(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
(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5. 이행 점검 단계

<사후 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설비시설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 후 6개월 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지 자 체

- 지자체장은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 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붙임3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농협)

- 농협은 사업자가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의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주요 시설원예(채소·화훼)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조사내용 : 시설원예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지원받은 사업지와 지원 받지 않은 비사업지로 구분 조사
 - 조사방법 : 통계청의 통계조사 결과 및 지자체를 통하여 생산량 조사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3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2.10~11월
- 신청자격 : '1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13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2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3,600ha 보급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9	'10	'11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의 생산량 증가 배수	2.5	-	-	-	'13.11 월	- 시설재배 단위/ 노 지재배 단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	-	-	14,400	250,000
국고	보조	-	-	-	2,880	50,000
	융자				4,320	75,000
	(소계)	-	-	-	7,200	125,000
지방비		-	-	-	4,320	75,000
자부담		-	-	-	2,880	50,000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농업인(법인 포함)으로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가
 - 고추 종합처리장 설치 인근 시·군 농가도 계약재배를 실시할 경우 지원 가능
- ※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시·군(8개) : 괴산, 청양, 안동, 봉화, 의성, 영양, 고창, 임실
- 기타, 고추 주산지 시·군으로서 농협 등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가
 - ※ 밭 기반 정비사업 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내 사업희망 농가 우선선정

2. 지원 대상 시설

-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수산 식품부 고시 제2010-128호)의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및 동 고시의 지역별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지원방식

- 시·군별 사업 확정결과에 따라 농가단위 실소요액을 지원
- 시설 완공 후 5년간은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고추재배 과정에서 풍수해, 병해충 등으로 고추재배가 곤란하여 후작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계약사항 미실행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 등 사후 관리 강화

4. 지원조건

- 국고 재원 : FTA기금
- 농가 단위 지원 면적 : 3,000m² 내외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m²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농가의 용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대체보조 가능
 - 용자금리 :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지침을 시·도에 시달('11.11월)

시·도

-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을 시·군에 시달('11.11월)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단위 사업 계획안(종합의견 첨부)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1.11월)

시·군·도(지자체)

- 사업신청서 접수(신청서 양식 : 붙임 참조)
 - 고추종합처리장(농협 등)에서 농가의 신청서를 1차 접수하여 검토 후 시·군에 일괄 접수
- 시장·군수는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가 사업신청 내역과 종합처리장의 계약재배 약정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11.11월)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고추종합처리장

- 사업신청 농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 후 시·군에 일괄 신청(제출)
- 농가의 고추재배경력 및 계약재배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시·군에 약정내역 제출
 - 재배기술 지도, 수확기 인력지원, 별도 시설 등 지원
- ※ 사업 완료 후 농가별 약정이행 내역을 시·군에 제출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지자체) ⇒ 사업 신청서 제출(농가→고추종합처리장→지자체) ⇒ 지자체 사업 계획 제출(지자체 →농식품부) ⇒ 사업대상 지자체 사업량 통보(농식품부→지자체) ⇒ 사업 대상자 선정(시장·군수) ⇒ 사업시행(시장·군수)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시장·군수)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정('11. 12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 최종확정 및 사업 시행·관리
 -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추종합처리장 등과 협의

3. 사업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검토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여부 승인, 약정 이행여부 확인

1) 사업 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 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2) 설계·시공·감리

-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시행지침을 준용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시행지침을 준용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시행지침을 준용

5) 고추종합처리장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대상자의 약정이행 여부 확인

4. 자금배정 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및 자금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요구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유통공사→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기타 동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원예산업과에서 별도 통보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3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3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3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2.10~11월
- 신청자격 : '1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13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2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조 직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재배규모		㎡		
	생산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 준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기 타 ㎡		계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 원)	원예 전문 단지	시설개선 및 현대화	고품질 생산시설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					
		단지 증·개축	기존단지 증축 :						
			기존단지 개축 :						
	일반 원예 시설	양액재배시설 :				고설재배시설 :			
		환경 제어시설 :				보광·관수시설 :			
		자동개폐기 :				○○○○시설 :			
	재원조달 (백만 원)	계			국 고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첨부 1-1호 서식>

‘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단지)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조직명		생산품목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단지규모		m ²		전체농가수	호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 시설규모	m ²
기 지원액	(지원년도 : 사업명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수출업체명		전화 :		담당자 :	
기술지도 기 관		전화 :		담당자 :	
단지관리 기 관		전화 :		담당자 :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m²)

시설규모(합 계)	시 설 종 류 및 규 모					
	유리(경질판)온 실	자동화비닐온 실	일반비닐온 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부대시설 및 장비

(단위 : m², 대, 톤, 백만 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규모 및 수량	시설비	보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목표 :

다. 세부 사업내역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규모(m ²)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 농가수 (호)	비 고
원예전문단지	시설현대화사업	고 품 질 생산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장비					난방기는 사 용 연료 표시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계					
	단지증개축사업	온실 등 개축					
		온실 등 추가설 치(부대시설 포 함)					
		계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사 업	기존 단지면적		()				
	기존면적 대비 증·개축면적 비율		()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m²(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라. 자금 세부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 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외부차 입
원예 전문 단지	시설현대 화						
	증·개축						
	합 계						
일반원예시설							

마.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m ²)	추정가격		소재지 (지 번)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바.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원예전문단지)

구 분	연 도	품목(품종)	수출국(업체)	재배면적	물량(톤)	금 액
생산 실적 및 계획	2009년					백만 원
	2010년					백만 원
	2011년					백만 원
	2012계획					백만 원
수출 실적 및 계획	2009년					천불
	2010년					천불
	2011년					천불
	2012계획					천불
수출 비율	-	-	-	-	%	%
수출 신장	-	-	-	-	%	%

* 수출비율은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비율(금액기준), 수출신장은 전년대비 당년도 수출 증감율(금액기준)

사. 수출 및 선별방법(원예전문단지)

구 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 체	위 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 약
2009년	%	%	%	%	%	%	%	%
2010년								
2011년								
2012계획								

아. 교육실적(수출 등 관련)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2) 수출 확대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5) 기 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1) 사업 참여 의향 조사

○ 전체 농가 수 : 호

○ 참여 농가 수 :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 연락처 :

○ 구성원 수 :

- 구성원 :

○ 운영실적 및 계획

-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 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 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나. 고품질 안전성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7.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사업추진상 문제점

○

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

8. 시·도 및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가. 시·도의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의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1-2호 서식>

‘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현황

□ 단지명 : (대표자 :)

(단위 : m², 톤)

[illegible]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온실 및 일반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사업계획 내용(요약)은 증축, 개보수 등 간단히 기재

주3) 참여농가가 5호이상인 경우,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붙임 2 서식)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진상황보고

1. 사업단지(지역) :

2. 사업자 : ○○○법인(작목반), 대표 □□□(외 △개 법인 또는 농가)

3. 사업진도(총괄)

□ 총사업비 : 백만 원

○‘09년 : 총 백만 원(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담)

○‘10년 : 총 백만 원(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담)

○‘11년 : 총 백만 원(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담)

○‘12년 : 총 백만 원(국고 , 용자 , 지방비 , 자담)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별	사 업 량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계 획	실 적	비 율	주요 추진 내역	공 정	계		국 고		용 자		지 방 비		자 담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합계			%		%										

주) 가. “사업단지(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나.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², ha 등으로 기재

다. “세부사업별”란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별,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 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바.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 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붙임 3 서식)

() 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단 지 명	대표 자 외 농 가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 비 (D /C)	차 년 도 이 월 액	불 용 또 는 집 행 액			
		세 부 사 업 명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 A)	계	국 고 보 조 (C)	융 자	지 방 비 보 조	자 부 담	계	국 고 보 조 (C)	융 자				지 방 비 보 조	자 부 담	
합 계					%														

-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², ha 등으로 기재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암반관정, 저온저장고 등을 기재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라.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 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 첨 부 >

지자체의 시설원예산업 발전계획 작성 예시

○○시설원예산업발전계획

1. 시설원예산업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 ☐ 사업신청품목 : (주품목) (부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 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4년전(a)							
2년전							
신청년도(b)							
a/b등락율(%)							

*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작성

☐ 시설원예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 0.5	0.5 ~ 1.0	1.0 ~ 1.5	1.5 ~ 2.0	2.0 ~ 3.0	3.0ha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
면 적(ha)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2년전						
	1년전						
	비율						100
생산량 (톤)	2년전						
	1년전						
	비율						1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시설면적(㎡)			육묘장		방풍시설(㎡)	기 타	
고정식			이동식	묘포장 면적(㎡)			종묘생산 실 적
계	연동	단동					
					천본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 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m ²)								
전년도처리량(톤)								
투자비(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시설원예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지역 시설원예산업 청사진 제시

○

☐ 항목별 목표

구 분	경영체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총소득 (억원)	경영체별 소득 (만원)
전년도						
()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나. 추진전략

- 시설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추진 로드맵(※ 사업추진년도부터 4년간)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 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라.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현황

가. 사업시행주체(총괄사업조직) 현황

☐ 조직명 :

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생산시설	시설면적(m ²)				육묘장		방풍시설	기타	
	고정식			비고정식	묘포장 면적 (m ²)	종묘생산 실적			
	계	연동	단동						
					천본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 고	일반창고	선별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사업실적	품목		출하실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 이익 (백만원)
			계	공동 출하	개별출하	수출			
	2년 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년 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등 농림수산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원예 규모별 농가 수(연령별), 재배면적, 품목별 현황 등
- 고품질·안전 시설원예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 실적자료 첨부)
 - IPM, INM, GAP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진흥청, 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 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구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경영체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시설원에 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 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시설간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
(※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 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1) 조직명 : ○○ 조합

조직 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시설면적(m ²)					육묘장		방풍시설	기 타
	고정식			비고정식	묘포장 면적(m ²)	종묘생산 적 실			
	계	연동	단동				천본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 저장고	일반창고	선별 (과)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2년전	물량(톤)					/	/	
		금액(백만)					/	/	
	1년전	물량(톤)					/	/	
		금액(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 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시설면적(m ²)					육묘장		방풍시설	기 타
	고정식			비고정 식	묘포장 면 적	종묘생산 적 실			
	계	연동	단동				천본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 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2년 전	물량(톤)					/	/	
		금액(백만)					/	/	
	1년 전	물량(톤)					/	/	
		금액(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참여조직(단체)은 전부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보 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시설현대화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목별·재배형태별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 시설채소 및 화훼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출하주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브랜드 마케팅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6. 기대효과

☐

○

7. 1차년도 사업추진 계획(20 년)

가. 1차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용자(C)	자담(D)	
합 계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용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인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용),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1) 시설현대화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등) 조달계획

○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 확보 등

2-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등)

2-2.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1. 친환경인증, GAP,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3-2. 시설원예(채소, 화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4-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4-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4-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4-5.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진흥청, 센터 등 확인)

4-6. 조직(단체)의 친환경안전과실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4-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5. 사업 준비 상황 및 실적자료

5-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5-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5-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5-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5-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5-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5-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5-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 산출 자료

(참고 1 자료)

‘12년도 원예전문단지 사업자 선정 기준

- 대 상 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
- 지원대상 : 시설현대화, 단지 증·개축(기존시설)
- 선정방법 :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단, 동점일 경우 수출실적이 많은 단지 순으로 결정)
- 선정기준

구 분	사업자 선정기준																							
	현 행		변 경																					
선정방법 (평가)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원예 전문단지) 평가지표 기준에 의한 평가(매년 12월)		○ 원예전문 생산단지 관리지침 제14조 (원예전문단지의 평가 등) 최근 3개연도 원예전문단지 평가결과 100%(100점) 적용 - '09년도 20%, '10년도 30, '11년도 50																					
사업대상자 제외	-		○ 예비단지 ○ 최근 평가결과 2년 연속 저평가 단지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																					
가·감점	-		<가점>																					
			○ 지열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지 또는 시설계획이 있는 단지(10점) - 단지 총면적 중 시설 비율																					
			<table><tr><td>구 분</td><td>50% 이상</td><td>40~50% 미만</td><td>30~40% 미만</td><td>20~30% 미만</td><td>1~20% 미만</td></tr><tr><td>실적</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r><td>계획</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구 분	50% 이상	40~50% 미만	30~40% 미만	20~30% 미만	1~20% 미만	실적	5	4	3	2	1	계획	5	4	3	2	1
			구 분	50% 이상	40~50% 미만	30~40% 미만	20~30% 미만	1~20% 미만																
실적	5	4	3	2	1																			
계획	5	4	3	2	1																			
<감점>																								
			○ 사업기간중 일부 또는 사업을 포기한 단지(5점)																					

(참고 1 서식)

기성고 확인서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사업명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20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총투자계획 (A)	보 조(B)		국고용자(C)	자 담(C)
		국고보조	지 방 비		

4. 사업실적(20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A)	사업실적(E)	비율(E/A)	계획(D)	실적(F)	비율(F/D)

5.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 천원(기 지원 , 금회지원)

6. 입금통장 번호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용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 협 장 귀 하

(참고 2 서식)

온 실 설 치 공 사 도 급 표 준 계 약 서			
계 약 자	발 주 자 (갑)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 약 내 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W)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W)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W)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시장·군수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불임서류 1.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온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갑(영농조합법인 대표) 을(공사수급인) 을의 연대보증인 입회 및 승인자(시장·군수·구청장) 인 인 인 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보급 사업 신청서									
신청지 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신청자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시설 규모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노지 재배 ㎡		기 타 ㎡		계 ㎡		
	부대시설	건조기 식	건조장 ㎡		세척기 식		기 타		
사업 계획	사업신청 규모	* 시설종류별 사업량(㎡)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 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 내용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고추 비가림재배시설(단동 비닐하우스))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첨부 2-1호 서식>

‘12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단동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농가개요

성명		생산품목		생년월일	(남/녀)
주소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팩스 :
시설재배규모					m ²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단위 : m²)

시설규모(합계)	시설종류 및 규모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부대시설 및 장비(보유한 경우)

(단위 : m², 대, 톤, 백만 원)

부대시설·장비명 (설치년도)	시설규모 및 수량	시설비	보관, 처리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건조기, 건조장, 세척기, 고추정식기, 피복기 등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사업명	규모(m ²)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계약재배 물량
단동 비닐하우스				

다.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단동 비닐하우스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m ²)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3.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가. 시·군의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Ⅷ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I.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3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9	'10	'11		
▪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24	신규	21	23	2013.1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100 * 주요과실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 평균수량은 품종을 감안하여 최근 5년 평년치로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82,700	16,225	21,200	106,000
국 고	20,675	3,245	4,240	21,200
지 방 비	20,675	4,868	6,360	31,800
융 자	16,540	4,867	6,360	31,800
자 부 담	24,810	3,245	4,240	21,200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 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2. 지원 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공동브랜드 및 GAP 등 참여농가 우선지원
- 지원 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우선지원

3. 지원 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 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및 시설하우스 개보수
* 시설하우스 개보수는 '13년부터 실시
-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⑥ 2011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단, 한·칠레 FTA 폐업지원 대상품목(시설포도·키위·복숭아)의 경우 2004. 5. 31이후 조성된 과원
- ⑦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자금지원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는 “붙임”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가

-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및 시행주체에 제출(전년도 10월말)

사업시행주체

- 지원 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은 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전년도 11월말)
- * 중도 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시 · 군

-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농가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등을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 예)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림수산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3조 내지 제25조 참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 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선정 순위>

- 1순위 : 거점APC와 3년 이상 생산량의 5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업인
 -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3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업인
- ① 1, 2, 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
 - ② 대상자 선정 순위 준수(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 ③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 ④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 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⑥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 ⑦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⑧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 ⑨ 참여조직별로 사업량을 분배하여 추진 금지
 - ⑩ 품종갱신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농가에 대해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및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 참여 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 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 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 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 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 단가 총액 조정, 지원 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 단가 총액을 30% 초과 증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 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농정심의회 등” 을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시공방식 결정 등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농가)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에서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인의 업체 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4. 자금배정 단계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 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 · 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현금거래 불가)
 - 직접노무비는 3천만 원 미만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농가에서 1인에 한해 지급 가능
- 시장·군수는 동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기계·장바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 폐업 지원 사업에 준하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 평가
 - 조사내용 :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국내 총 과실생산량
 - 조사방법 : 통계청의 과실 생산량 등 통계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

-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 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연차평가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12.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농가가 제출한 2012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12.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3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12.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12.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
파악

《홍 보》

- 과실 생산·유통 지원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
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 종		재배면적(m ²)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 ² , m, 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회담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출하조건	순 위	약정률	세부 조건					
	1순위 신청	%	거점APC에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5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2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3순위 신청	%	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농협(사업시행주체)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9 과원 유해조수 포획 트랩설치 지원 사업

1. 목 적

- 까치 등 유해조수 포획으로 유해조수 밀도를 줄여 과실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생태계 파괴,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도모
-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2. 추진방침(배경)

- 자연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따라 농작물 유해조류 급속히 증가
- 유해 조류의 습성상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상품에 가해를 주는 특성이 있어 우수 과실의 보호 및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도모
- 환경 친화적인 조류 기피제(멧돼지 기피제) 및 포획시설 사용으로 친환경 농업 정착
- ※ 조류 인플랜자 예방을 위해 축산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사업대상자를 닭, 오리 등 조류사육 축산농가까지 확대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과원 유해조수 포획트랩설치 지원사업	500	500,000	75,000	175,000	250,000

※ 시군별 내역 : 별첨참조

4.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 유해조류 및 멧돼지 피해 우심 과수원(친환경 인증농가 우선)의 과수농가 및 축산농가
- 지원 사업 : 유해조수 포획트랩, 조류 기피제, 멧돼지 기피제 등
 - 유해조수 포획트랩기로 방제가 어려운(참새 등) 경우에는 방조망 설치 가능

※ 지원 단가 예시(ha당)

- 유해조수 포획시설(1~2기) : 500 ~ 1,000천원
- 조류 기피제 : 1,000천 원(250g / 30개, 5g / 1,500개 사용)
- 멧돼지 기피제 : 700천 원(10g / 625개 사용)

5. 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추진기간 : 2012. 1 ~ 2012. 12

다.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과수 농가 중 친환경인증농가(인증여부 확인)
- 과원 경작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농가
- 영농기록장을 1년 이상 기록하고 있는 농가

2) 사업추진

유해조수 포획 트랩

- 설치기간 : 2012. 1월 ~ 2012. 9월(과실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설치장소 : 유해조수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원(배, 포도, 사과 등)내 설치
- 설치방법 : 붙임참조
 - 형 식 : 유해조류포획 형식(까치, 직박구리, 어치 등 농작물 수확 후 방사)
 - 규 격 : 가로 2,000mm, 세로 1,500mm, 높이 2,000mm
 - 시 공 : 현장설치 조립공사(시공업체)

○ 관리요령

- 설치 후 까치 유인 및 포획이 안될 시 다른 장소로 수시 이동 효과 제고
- 까치 유인을 위하여 포획망 설치 후 2~3마리 까치 투입 및 동물내장, 생선 등 부패한 미끼 활용
- 포획된 까치는 매장 및 소각 처리 등
- 농가별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최신 재배기술 지도

○ 시공방법

- (적용) 본 지방서는 유해조류포획용 트랩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은 사업비와 관계없이 시행한다.
-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및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 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주의문구 부착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류 : 「까치, 물까치, 어치, 직박구리, 이외의 다른 조류 포획 시는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 표시된 주의문구가 잘 보이게 부착한다(미부착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1항 위반).

○ 트랩고정 작업

- 바람이 심하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트랩 고정을 위한 고정장치 작업 실시

※ 반드시 읍, 면, 동장의 서면 인가를 얻어야 함.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는 유해 조수의 포획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 상황 및 가해 조수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동조사내용을 기초로 한 포획 조수명, 포획지역, 포획방법, 포획수량, 포획자,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허가 하도록 하고 있음(유해조수 포획 허가 신청서 서식 : 붙임)

○ 주의사항

- 여름철에는 잡초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트랩내부의 잡초는 제거해 준다. 먹이와 물이 잘 보여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 동물성 먹이로 유인 시 여름철에는 수분증발로 딱딱해 지므로 검정색 비닐에 싸서 작은 구멍만 내준다.
- 15일 이상 미 포획 시 장소를 옮겨준다.
- 먹이와 깨끗한 물을 항상 공급해 준다.
- 과실 수확 시즌이 끝나면 방사해 준다.
- 반드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농촌진흥청 산하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시험장 또는 도 농업기술원,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된 제품)

○ 기타 공사

- 단가산출 내역은 감독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설계도나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을 반드시 설치한다.
- 설치작업이 끝나면 남은 자재나 공구 등을 치우고 정리하여 농가의 시설 및 농작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류기피제

- 사용기간 : 2012. 1월 ~ 2012. 12월(과실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사용장소 : 유해조수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원(배, 포도, 사과 등)
- 농촌진흥청 산하 인증 제품 및 조달청 등록된 제품 사용
- 사용방법
 - 과수 1그루당 3~4개를 상충부와 중간부에 설치
 - ha당 사용량 : 5g/1,500개
 - 닥터배트 250g/30개(250g/1개, 거취대 및 종기 50개)
- 관리요령
 - 시설물에 무해하며, 유막형성으로 성분 증발 및 수분 침투방지에 따라 방조효과 지속
 - 눈, 비, 온도 변화에 안정 상태유지

- 시각, 촉각, 후각 및 미각 등을 동시에 자극하여 즉각적인 기피효과와 학습효과에 의한 효능 저하가 없음
- 성분증발 방지와 수분 침투 방지에 다른 방조효과 지속성
- 미국 FDA의 GRAS목록에 포함된 안전한 성분(인체무해)

멧돼지 기피제

- 사용기간 : 2012. 1월 ~ 2012. 12월(과실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사용장소 : 멧돼지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원(배, 포도, 사과 등)
- 농촌진흥청 산하 인증 제품 및 조달청 등록된 제품 사용
- 사용방법
 - 멧돼지 출몰이 잦은 과수원에 5m 간격으로 지주대를 설치한 후 적로프를 지주대에 두줄로 연결
 - 용기에 1.5m간격의 지그재그 모양으로 제품을 설치하여 걸러줌
 - ha당 사용량 : 10g/625개
 - 준비물 : 제품, 노즐, 용기, 행거, 적로프, 지주대(별도구입)
- 관리요령
 - 시설물에 무해하며, 유막형성으로 성분 증발 및 수분 침투방지에 따라 방조효과 지속
 - 6개월 동안 기피효과 지속
 - 시각, 촉각, 후각 및 미각 등을 동시에 자극하여 즉각적인 기피효과와 학습효과에 의한 효능 저하가 없음
 - 성분증발 방지와 수분 침투 방지에 다른 방조효과 지속성
 - 미국 FDA의 GRAS목록에 포함된 안전한 성분(인체무해)

3) 공급방법

- 업체에서 농가 공급 및 시공
- 시군 형편에 따라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협을 통해 공급 가능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6. 보조금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1)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 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후관리

- 1)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2)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감독하여야 함
- 3)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4)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타당성을 판단하여 도에 승인 요청

7.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12. 2월말

나.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2. 12. 31까지

〈보고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보고('12. 2월말)

시군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농가수	면적 (ha/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천원			
	유해조수 포획 트랩						
	조류 기피제						
	멧돼지 기피제						
	기 타						

※ 농가별 사업현황 자료 시군 비치

2. 사업추진 상황보고(매월 5일 한)

시군	세부사업명	계 획		추진 상황								종합 진도	사업비집행 (천원)		
				완 료		시공중		자재구 입		미착공			계	보 조	자 담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농 가	면 적				
	계	호	ha									%			
	유해조수 포획 트랩														
	조류 기피제														
	멧돼지 기피제														
	기 타														

3.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12. 12. 31한)

시 군	세 부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집 행 상 황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 획		실 적		B/A	예 산 액				집 행 액				
		농가수	면적 (A)	농가수	면적 (B)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호	ha		ha										
	유해조수 포획 트랩														
	조류기피제														
	멧돼지 기피제														
	기 타														

※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과수원 유해조수 포획트랩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 정 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재배과종		재배면적(m ²)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ha/기)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조류포획기							
	조류기피제							
	멧돼지기피제							
기 타								
위와 같이 과원 유해조수 포획트랩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2.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유해조수포획허가 신청서,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10 소득유망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사업

1. 목 적

- 지구 온난화로 배, 과수, 감, 포도 등 주요 과수 재배지역이 북상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
- 아열대 기후화에 대비하여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으로 수입대체 및 과수 농가 소득창출
-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아열대 과수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고정고객 확보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2. 추진방침(배경)

- 아열대 과수 재배는 시설하우스가 필요하고 묘목대가 비싸므로 재배농가 부담경감과 단지화를 위해 시설비 및 묘목대 일부 지원
- 지존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단지화하여 품목별 경쟁력 제고
-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으로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국내 시장 선점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15%)	사군비(35%)	자담(50%)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10	3,334,000	500,000	1,167,000	1,667,000

4. 2012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12월
- 사 업 비 : 3,334백만 원(도비 500, 시군비 1,167, 자담 1,667)
 -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은 별첨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아열대 과수재배를 위한 하우스시설 및 묘목 지원 등
 - * 노지 월동 가능품목은 묘목대 지원, 그 외 품목은 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자
 - 기존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단지화 할 수 있는 단체
- < 우선 지원 대상 >
 - 1순위 : 아열대 과수 품목별 생산자 조직
 - 2순위 : 기존 아열대 과수 재배농가로서 면적확대 희망농가
 - 3순위 : 신규 희망농가로 일정규모 이상 규모화 하고자 하는 농가
- 대상품목
 - 비파, 석류, 한라봉, 파파야, 망고, 아테모야, 블루베리 등 아열대 과수
- 지원 단가
 - 현대식 하우스(온실) : 40,000천원 / 10a
 - * 온풍시설, 보온다겹커튼, 시설복합 환경제어시설 등 설치
 - 비가림 하우스(내재해형) : 20,000천원 / 10a
 - 묘목대 : 2~10천원 / 주, 10a당 약 200주 기준
 - ※ 지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5. 보조금집행 · 정산 및 사후관리

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1)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
-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 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후관리

- 1)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2)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감독하여야 함
- 3)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4)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타당성을 판단하여 도에 승인 요청

6.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12. 2월말

나.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2. 12. 31까지

〈보고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보고('12. 2월말)

시군	세부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농가수	면적 (ha/주)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호	ha	천원			
	현대식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묘 목 대						

※ 농가별 사업현황 자료 시군 비치

2. 사업추진 상황보고(매월 5일 한)

시군	세부 사업명	계 획		추진 상황								종합 진도	사업비집행 (천원)		
				완 료		시공중		자재구입		미착공			계	보조	자담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계	호	ha									%			
	현대식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묘목대														

3.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12. 12. 31한)

시 군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집 행 상 황 (천원)								도 비 집 행 잔 액
		계 획		실 적		B/A	예 산 액				집 행 액				
		농가수	면적 (A)	농가수	면적 (B)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도비	시군	자담	
	계	호	ha		ha										
	현대식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묘목대														

※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 첨부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아 열 대 과 수 재배현황	재배과종		재배면적(m ²)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ha/기)	지 원 단 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현대식 하우스							
	비기립 하우스							
	묘 목 대							
위와 같이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2.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II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I. 사업 개요

1. 목 적

-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규모화·기업화 된 농업회사를 집중 육성하여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한 시장 교섭력 확대
- 설립된 농업회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지,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자생력 조기 배양을 위한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 장비 구입 지원

2. 추진방침

- 비교우위 품목을 중심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를 대상으로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산물 공동선별, 포장, 유통, 가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지원가능한 모든 농림사업은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출자하고 참여하여 설립한 농업회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

3. 사업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량	총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시군비	자부담
4개소	2,000,000 (100%)	1,000,000 (50%)	200,000 (10%)	800,000 (40%)

※ 개소 당 사업비 : 500,000천원(국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II. 사업 시행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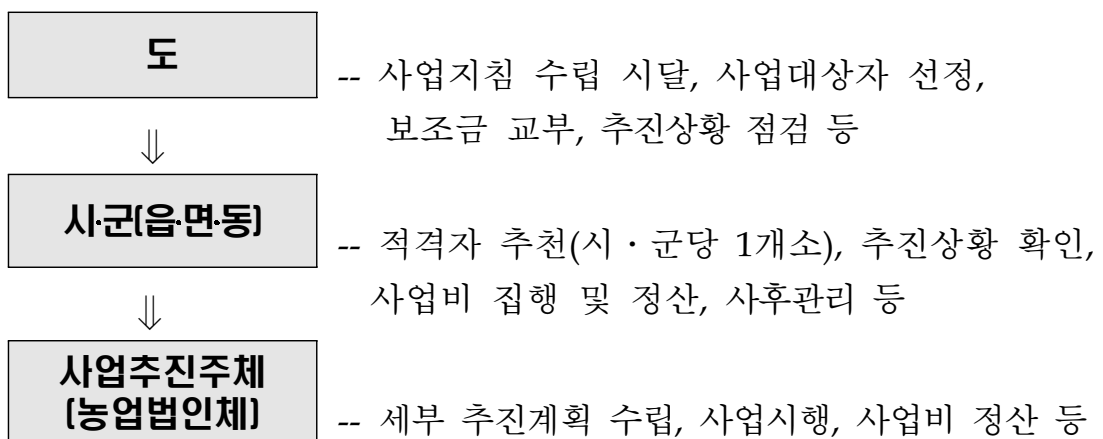
1. 세부사업 시행

- 가)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나) 사업추진 기간 : 2012. 1~12월
- 다) 지원 자격(요건)
 -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출자)한 농업인이 50명 이상으로 출자금액 2억 원 이상인 법인체(단, 2009년 이후 설립한 법인체)

- ※ 시군유통회사(광역유통주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라) 지원 대상 : 농업회사법인체
 - 지역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에서 직접 참여(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체
- 마)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 장비 구입
 - ※ 포장재, 홍보물·카달로그 제작, 홍보·판촉행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추진일정 및 체계

- 가)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1월
- 나)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2월
- 다)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3월
 - ※ 전문가 평가는 원예 및 유통전문가로 구성·운영(세부계획 별도 통보)
 - 사업신청자 또는 시군 업무담당 10분 이내 발표)
 -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라)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3~12월
 - 사업 확정 후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 사업비 30%미만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자체승인, 30%이상은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마) 사업추진 체계



3.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규모화·기업화된 법인체가 생산, 유통역량을 제고하여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수출농산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우수 법인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홍보·판촉비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III. 행 정 사 항

-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식 1, 2)
 - 법인체(1월말) → 시군(2월말) → 도 대상자 결정(3월말)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3) : 매 분기 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4) : 익년도 2월 20일까지

《사업대상자 추천시 시군 유의사항》

- 지원기준(요건) 및 사업비 투자계획 적정성 검토 철저
- 사업 시설부지 및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확인
- 시군당 1개소 추천(2개소 신청시 모두 평가 제외)
- 가공 및 유통시설 인·허가 가능지역인지 확인
- 사업자의 추진의욕, 경영능력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검토 철저

< 서식 1 >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신청서

□ 조직현황

조직의 명칭		설립연월일	
주 소	(대표자)		
전 화	(손 전화 :)		
참여농가 수	호(영농법인 , 작목반 , 개별농가)		
품 목		생산면적/ 생산량(11)	ha/ 톤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시군비(%)	자담(%)
합 계						
가공 시설	소 계					
유통 시설	소 계					
장비 구입	소 계					

- *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체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출자자, 출자금액 확인 가능서류 1부.

2012. .

신청자 : ○○농업회사법인 (인)

추천자 : ○○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서식 2 > - A4용지 5~6장 내외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세부사업계획

□ 필 요 성

- 지역여건(지리적, 유통, 조직 등), 현재 추진상황, 사업필요성, 목적 등

□ 현황 및 육성비전

가. 현 실태

◆ 조직 현황

- 위 치 :
- 조 직 명 : 00농업회사법인(대표 , ☎)
- 참여농가 수 :
- 출자금액 :
- 주 생산품목(계획) :
- 생 산 량 : 톤
- 연간 매출액 : 백만 원
- 주 판매처 :

◆ 전반적 여건

- 생산·가공품목의 산업화 계획(기반, 경영구조 여건 등)
- 원료생산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현황(면적, 생산량 등)
- 가공 :
- 유통 :

나. 육성비전

- 장기적 산업화(기업화) 도달 목표나 비전 제시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11	2012	2013이후	
1. 업체 매출액(백만 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 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 원)				

☐ 사업 추진계획

- 사업 명 :
- 사업 비 : 천원(국비 , 시·군비 , 자담)
-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천원)	소요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가공		000m ² /1동					
시설							
유통		0대					
시설							
장비							
구입							

☐ 운영(마케팅)전략(납품업체 등 구체적 작성)

-
-

☐ 기대효과

-
-

*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 서식 3 >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 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사 업 량			사업비 집행(천원)			
		계 획	실 적	진도(%)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가공								
시설								
유통								
시설								
장비								
구입								

< 서식 4 >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 정산실적

○ 사업추진

세부 사업명		사 업 량			추진기간	세부 사업내역
		계 획	실 적	진도(%)		
계						
가공						
시설						
유통						
시설						
장비						
구입						

○ 사업비 집행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군비	자 담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잔액					

※ 사업비 미집행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12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I. 사업 개요

1. 목 적

-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특작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사업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규모화 및 수출실적이 있는 원예특작분야 단지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을 희망하는 단지에 지원
- 입지여건,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육성

3.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국비	시군비	기타
원예특작생산 유통인프라구축	2,000,000	1,000,000 (50%)	200,000 (10%)	800,000 (40%)

※ 개소 당 최대 500백만 원

II.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1년)

2.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3. 사업내용

- 생산시설 :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시설보완
- 부대시설 :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 유통시설 : 중·소형 저온저장고 등
- 기타시설 : 기준시설외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

4. 지원 자격(요건)

- 5ha이상 규모화 및 수출실적이 있는 원예특작분야 단지 중 사업을 희망하는 조직 및 단체

※ 원예전문단지는 제외(품질개선사업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사전확인 후 신청
- 사업자의 추진의지,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 지원기준 및 사업비 투자계획 적정성 검토 철저

5. 지원기준

가) 생산시설(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 지원 단가 : 신규설치 최대 200백만 원 / 1ha, 시설보완 최대 150백만 원 / 1ha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농림식품부 고시 2010-128호, 2010. 12. 7)」 농업시설 표준 규격 기준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

나) 부대시설(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 지원 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12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의 단가적용

다) 유통시설(저온저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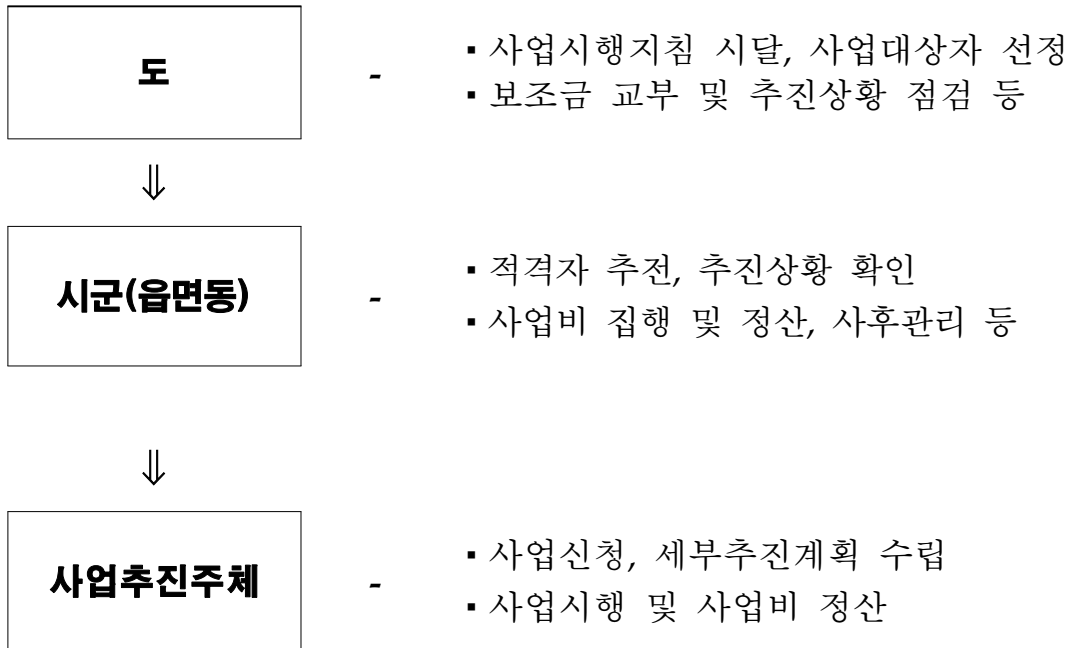
- 지원 단가 : 2백만 원 / 3.3m²
- 설치방법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고 외관철판 1.6mm이상(판넬식은 양면 합산하여 1.2mm이상), 벽두께 100mm이상(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냉동기 3평형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이상, 유니트쿨러(송풍기) 1대, 증발기(제상용)1대, 기타 부속장비 등을 갖춰야 함(단 저장품목에 딸린 기계류 용량 및 외벽두께 설치 조정 가능)

라) 기타시설

- 지원 단가 : 정부 고시 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설치방법 :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시공

6. 추진일정 및 체계

- 가)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1월
- 나)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2월
- 다)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3월
- 라)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3~12월
- 마) 사업추진 체계



7.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반드시 동 변경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와 협의 후 시군 사업계획 변경(사전승인)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서식 1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승인신청)

☐ 조직현황

조 직 명		설립연월일	
주 소	(대표자 :)		
전 화	(핸드폰 :)		
참여농가 수	호(영농법인 , 작목반)		
품 목		생산면적/생산량(11)	ha/ 톤
		연간수출액	백만 원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ha, m³)	천원				
신규시설						
시설보완						
저온저장고						

☐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참여농가 현황(등기, 작목반 등) 1부
3.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

2012. .

신청자 : (인)

추천자 :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서식 2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세부사업 계획

☐ 필 요 성

- 지역여건(지리적, 유통, 조직 등), 현재 추진상황, 사업필요성, 목적 등

☐ 현황 및 육성비전

가. 현 실태

- 위 치 :
- 조 직 명 : (대표 , ☎)
- 참여농가 수 :
- 주 생산품목 :
- 생 산 량 : 톤
- 연간 매출액 : 백만 원(수출지역/수출액 : / 백만 원)
- 주 판매처 :
- 기본계획 : 목표, 생산 및 유통현황

나. 사업성과

- 장기적 산업화(기업화) 도달 목표나 비전 제시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11	2012	2013이후	
1. 참여농가 소득(백만 원)				
2. 일자리 창출(명)				
3. 수출(백만 원)				

☐ 사업 추진계획

○ 사업명 :

○ 사업비 : 천원(국비 ,시군비 ,자담)

○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원가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ha, m ²)	천원				
신규시설						
시설보완						
저온저장고						

☐ 운영전략(자부담확보, 수출지역 및 물량 확대 등 구체적 작성)

-
-

☐ 기대효과

-
-

*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 서식 3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실적(/ 분기)

☐ 사업개요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사업내용	사업량	실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ha, m ²)		(%)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 승인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

< 서식 4 >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업량 : 개 사업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세부 사업명	추진실적(ha, m ² ,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획	실적	비율	

○ 사업비 정산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불용	이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및 잔액발생시 사유)

-
-

13 양잠산물 저온유통 시설 지원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국비(30%)	시군비(30%)	기타(40%)
2개소	101,250	30,375	30,375	40,500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양잠협동조합 포함),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농수산업법인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코자 하는 생산자 조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의 신규 설치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이상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이상 작업실 33㎡이상
 - ※ 에너지 절감을 위한 “풍압기반 자동제상인식시스템” 의무 설치
- * 최근년도 공동계산(매취형, 수탁형)취급액 15억 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은 매출액 2억 이상 또는 공동 계산액 1억 이상

4. 지원형태

가) 재원 : 농안기금

나) 지원조건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시달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12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위한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공고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및 신문 게시
 - 공고내용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

신청조직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공 통》

- 선정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선정시기 : 1~3월 중
- 선정방법
 -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차 서류 및 현장실사(70점), 2차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평가(30점)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1차심의 : '11년도 사업대상의 2배수를 선정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위로 선정
 - 2차심의 : 1차심사후 저온유통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심의 후 선정(저온수송차량은 2차 심의 생략)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최종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 사업 관리

4. 자금배정 단계

《공통사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요청받은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한도배정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를 교부 및 융자금 한도배정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당해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 한도배정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교부·배정받은 보조금·융자금 집행
 - 보조금의 집행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당해 선정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규정 등에 의거 집행
 - * 지원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사업자금의 집행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무통장입금 확인증 등)를 확보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5. 이행 점검 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가) 사후관리 일반

-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경영 지원, 저온유통관련 전문웹사이트 구축
- 저온유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실시

나) 선정 후 자금집행 및 사업 착수 등 점검·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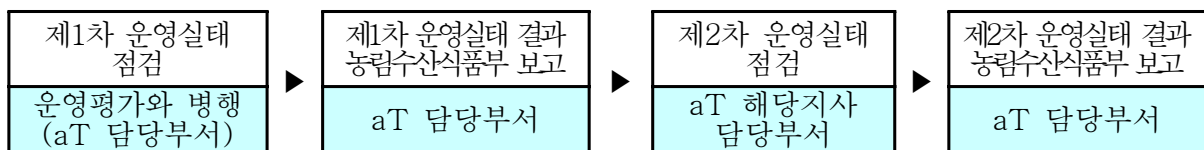
- 자금집행 및 사업 착수 점검(선정당해연도에 한함)
 - 자금집행 및 사업 착수 점검은 선정 후 90일 이내 실시하고 당해연도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차년도 1월중)
 -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 및 현황, 지부담·융자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
 - 선정된 조직(산지·소비지)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수시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로 결과보고
- 농림사업안내문 명시
 - 대상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건축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저온수송차량은 전 차량에 대해 안내문 명시 의무화)
 -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중 II.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2』‘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을 적용하여 명시
- 국고(보조금, 융자금)의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
 - 보조금 부당사용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신청자격을 박탈하며 농안기금운용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후 60일 이내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
 -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이후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을 배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준공일	20년	
▪차량 및 운반구	구입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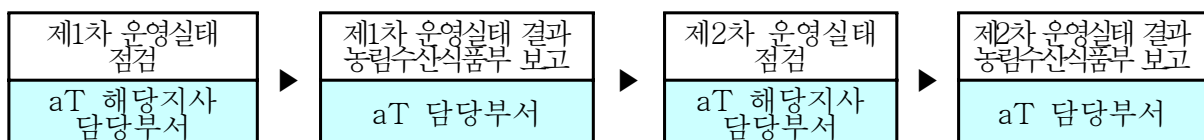
* 정책자금 확인 : 기존 담보제공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확인서 등 담보설정 사유가 정책자금 용도임을 확인하는 서류 징구

다) 저온시설 운영실태 등 점검

- 저온시설 실태 수시점검(선정 후 시설 내용연수에 근거하여 실시)
 - 저온유통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방지(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현지점검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점검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 지사의 유통관련 부서 및 화훼공판장
 - * 저온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 당해 연도 선정사업장의 상반기 점검은 자금집행 및 사업 착수 점검과 병행
 - * 사업선정년도 이후 3년간 상반기 점검은 사업평가와 병행 추진
 -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장의 점검 프로세스



- 선정이후 3년 초과 저온유통사업장의 점검 프로세스



○ 시설의 목적외사용 등에 대한 조치

- 시설의 목적외사용 및 운영상태가 불량한 조직의 경우 부당사용의 정도에 따라 1~3년간 동사업의 신청자격을 박탈

사업대상자

- 지원시설·장비의 운영활성화 및 피드백체계도입을 위한 저온시설 운영 실태 등 점검은 선정이후 지원시설의 내용연수에 근거하여 실시
 - * 사후관리 면제 : 자연재해, 화재, 부도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저온시설 및 수송차량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조치
 - 산지저온시설의 경우 지원시설의 미사용 및 부당사용이 실태점검 중에 적발되면 ‘농안기금운용규정 제29조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 회수에 의거하여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저온수송차량의 경우 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매각하고자 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매각할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의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경영장부 작성 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선정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비율의 증감으로 인한 전년대비 저온유통품 매출 증가분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방법 : 산지유통종합평가(대형산지조직, 중형산지조직) 실시 시 산지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취합
 - 측정방법 : 조직의 채소·버섯류 출하량 대비 채소·버섯류 예냉출하량 비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저온운송차량 지원

- 목 적 :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중장기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로 통합추진)
 - 평가기간 : 사업익년 4~5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 유통사업 계획 및 실적을 농수산물유통 공사에 제출

《사업평가에 따른 환류》

○ 평가결과

- 우수사업자는 산지 유통종합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사업자에게는 산지 유통종합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IV. 2013년도 사업 수요조사

1. 2013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3년도 저온 유통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사업신청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는 사업 참여 희망조직이 제출한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해당부서에 제출(2012. 5월)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3년도 사업 수요조사 방법

- 저온유통사업 희망조직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대형 산지조직, 중형 산지조직 등 산지유통조직 및 원예 브랜드 경영체, 품목별대표조직
 - 조사 시기 : 매년 3~4월경
 -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중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산지유통조직 및 저온 유통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설문지 배포

4. 2012년도 사업별 달라진 내용

□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구 분	현 행(2011)	변 경(2012)
II.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품목조직,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기존 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	○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 수요업체 등이 참여하고 사업 품목의 ~ * 생산자단체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사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
○ 지원 자격	○ ~ 완료하고 참여조직의 매출액 30억 원 이상 또는 공동 계산액 15억 원 이상인 법인체(원예)	○ ~ 완료하고, 최근년도 참여조직의 매출액이 50억 원 또는 공동계산액 30 억 원 이상인 산자유통합성화 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원예)
3. 지원 대상 ○ 원예작물	○ 채소류·특작류· 화훼류	○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 지원 형태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보조 30%, 지방비 70%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생산기반 조정		○ 공정육묘장(고추, 양파), 우량종구생산단지(마늘) 필수설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연차별 사업비 배분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개소당 사업비 한도	○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예산범위내 사업비 규모 증감 가능	○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비 감액 조정
III. 2 ○ 사업자 선정방식	○ 서면평가 40%, 발표평가 60	○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

□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구분	현 행(2011)	변 경(2012)
지원 범위	〈원예작물 분야〉 ○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 표준규격 9,000천 원 / 10a, - 내재해형 15,000천 원 / 10a - 자동제습 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특화작물 분야〉 ① 녹차품질고급화 ② 버섯 생산시설현대화 ③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④ 기타 시군 특화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원예작물 분야〉 ○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 표준규격 9,000천 원 / 10a, - 내재해형 20,000천 원 / 10a - 자동제습 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 지원단가 변경 〈특화작물 분야〉 ① 녹차품질고급화 ② 버섯 생산시설현대화 ③ 유기인삼재배지원 ④ 기타 시군 특화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은 단일신규 사업으로 지원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구분	현 행(2011)	변 경(2012)
지원 방법	○ 시군별 사업계획에 따라 도에서 심사하여 사업량, 사업비 차등지원 (공모방식) - 시군단위(17개소) : 도비 25%, 시군비 75% - 광역단위(2개소) : 도비100%	○ 시군별 일률적으로 1개소씩 사업량, 사업비 지원 및 광역단위 공모방식 병행 추진 - 시군단위(21개소) : 도비 25%, 시군비 75% - 광역단위(3개소) : 도비100%
사업 계획 변경	○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경승인 요청 - 확정 후 사업비의 20%미만은 자체조정, 20%이상은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비 30%미만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자체승인, 30%이상은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구 분	현 행(2011)	변 경(2012)
지 원 대상자	○ 수급불안품목 : 무, 배추, 양파, 대파 등	○ 수급불안품목 :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등 ※ 마늘, 고추는 수급불안품목에서 제외

□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구 분	현 행(2011)	변 경(2012)
○ 지원 항목	○ 에너지 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 순환식 수막시설 - 자동보온덮개 - 난방기용계측기	○ 에너지절감시설에 공기열 추가, 난방기용 계측기 삭제 - 다겹보온커튼 - 순환식 수막시설 - 자동보온덮개 - 공기열

□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구 분	현 행(2011)	변 경(2012)
○ 사업대상 및 지원항목	○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 - 시설현대화 - 단지 증·개축	○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 - 시설현대화 - 단지 증·개축 ○ 일반원예시설(지원항목 추가) - 사업대상자: 품목 지역 단위 시설원예 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하는 APC, 농협, 영농법인 등 - 지원 대상: 양액재배시설, 시설 복합 환경,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시설 증·개축 등 시설 현대화

□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구 분	2011	2012	변 경 사 유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5조 (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지원자격 및 요건	<선정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재심사> * 심의위원회 : 과수발전 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기관관련 단체·독농가 등으로 구성	<선정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재심사> * 심의위원회 : 농정심의회 활용 등 시·군에서 자율적 구성 운영	○지방자율사업으로서· 군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④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⑥2004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및 시설포도(신규과원). 단, 기존과원을 대체하는 과원은 지원 가능 (대체과원)	<지원제외 대상> ④포도·감귤 등의 난방 시설 및 시설하우스 개보수 ⑥2011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단 한·칠레 FTA 폐업지원 대상품목(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의 경우 '04.5.31 이후 조성한 과원	○기존 시설에 개보수 시설 추가 지원은 형편에 어긋남 ○지원대상 제외기간을 한·미FTA 비준에 맞게 조정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주체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 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사업시행주체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농림수산식품부의 후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대체 가능) 등을 개최하여 - 과수발전협의회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신설>	시·군 ○농림수산식품부의...후 농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 농정심의회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체 미등록자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과수발전협의회를 농정 심의회로 대체하여 시·군에서 자율 추진 ○융자, 보조금 지원받는 경영체는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함

구 분	2011	2012	변 경 사 유
	<선정 순위> <신설> ○1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 · 공동계산하는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업인... ⑥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 협의회 등에서...	<선정 순위> ○1순위 : 거점산지유통 센터와 3년 이상 생산량의 50% 이상을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 · 공동 계산하는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 ○3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업인... ⑥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단, 천재 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	○1순위 신설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규모화 달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현대화와 연계 ○과수발전협의회를 농정 심의회로 대체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주진 컨설팅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한...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일괄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단가의 조정절차] ○행정·지도·농협·농가 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발전협의회(사업비 단기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사업주진 컨설팅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한...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기금 사업 운영비에서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삭제>, 전문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단가의 조정절차] ○행정·지도·농협·농가 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농정심의회 등을 개최 하여 세부사업별.....	○기금사업 운영비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지급

구 분	2011	2012	변 경 사 유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4.사업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은 2010년까지 시행(단, 한·미 FTA 비준시 연장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조건 - 융자조건 : 3%,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4.사업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은 2017년 까지 시행 *사업비 지원조건 - 융자조건 :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오자 수정 ○오자 수정
별지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기본요건> 1.기존과원 여부('04년 5월 30일 이전 과원)	<기본요건> 1.기존과원 여부('11년 5월 31일 이전 과원)	○지원대상 제외기간을 한·미FTA 인준에 맞게 조정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	10. 시설하우스 개보수 10-1. 강제환풍기 10-2. 보온덮개교체 10-3. 보온덮개개폐기 10-4. 비상발전기 10-5. 재난방지시스템 10-6 지붕개 폐기 10-7 파이프교체 10-8 하우스운반기	<삭제> * 2013년부터 지원 제외	○ 기존 시설에 추가하여 개보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형편에 어긋남

□ 과원 유해조수 포획트랩설치

구 분	2011	2012	변 경 사 유
지 원 대 상	○ 과수재배농가	○ 과수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 철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 인플랜자 예방을 위해 사업대상자 확대

V. 시군별 사업내역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사 업 비			
	계(100%)	도비(24%)	시군비(56%)	기타(20%)
합 계	1,458,333	350,000	816,666	291,667
목포시				
여수시	4,792	1,150	2,684	958
순천시	40,188	9,645	22,505	8,038
나주시	35,579	8,539	19,924	7,116
광양시	14,267	3,424	7,989	2,854
담양군	56,800	13,632	31,808	11,360
곡성군	165,304	39,673	92,570	33,061
구례군	35,017	8,404	19,610	7,003
고흥군	48,104	11,545	26,938	9,621
보성군	68,308	16,394	38,252	13,662
화순군	22,854	5,485	12,798	4,571
장흥군	151,104	36,265	84,618	30,221
강진군	108,892	26,134	60,980	21,778
해남군	163,054	39,133	91,310	32,611
영암군	91,421	21,941	51,196	18,284
무안군	61,487	14,757	34,433	12,297
함평군	173,800	41,712	97,328	34,760
영광군	65,316	15,676	36,577	13,063
장성군	30,729	7,375	17,208	6,146
완도군	34,325	8,238	19,222	6,865
진도군	40,200	9,648	22,512	8,040
신안군	46,792	11,230	26,204	9,358

□ 유기농 실천보험

시군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보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22,058	1,158,333	278,000	648,666	231,667	926,666
목포시						
여수시	34	1,792	430	1,004	358	1,434
순천시	423	22,188	5,325	12,425	4,438	17,750
나주시	540	28,379	6,811	15,892	5,676	22,703
광양시	32	1,667	400	933	334	1,333
담양군	750	39,400	9,456	22,064	7,880	31,520
곡성군	2,920	153,304	36,793	85,850	30,661	122,643
구례군	147	7,717	1,852	4,322	1,543	6,174
고흥군	630	33,104	7,945	18,538	6,621	26,483
보성군	844	44,308	10,634	24,812	8,862	35,446
화순군	275	14,454	3,469	8,094	2,891	11,563
장흥군	2,623	137,904	33,097	77,226	27,581	110,323
강진군	1,817	95,392	22,894	53,420	19,078	76,314
해남군	2,392	125,554	30,133	70,310	25,111	100,443
영암군	1,307	68,621	16,469	38,428	13,724	54,897
무안군	857	44,987	10,797	25,193	8,997	35,990
함평군	3,076	161,500	38,760	90,440	32,300	129,200
영광군	1,067	56,016	13,444	31,369	11,203	44,813
장성군	471	24,729	5,935	13,848	4,946	19,783
완도군	482	25,325	6,078	14,182	5,065	20,260
진도군	657	34,500	8,280	19,320	6,900	27,600
신안군	714	37,492	8,998	20,996	7,498	29,994

□ 소비자 안심보험

군	사업량 (건)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000	300,000	72,000	168,000	60,000	
목포시						
여수시	10	3,000	720	1,680	600	
순천시	60	18,000	4,320	10,080	3,600	
나주시	24	7,200	1,728	4,032	1,440	
광양시	42	12,600	3,024	7,056	2,520	
담양군	58	17,400	4,176	9,744	3,480	
곡성군	40	12,000	2,880	6,720	2,400	
구례군	91	27,300	6,552	15,288	5,460	
고흥군	50	15,000	3,600	8,400	3,000	
보성군	80	24,000	5,760	13,440	4,800	
화순군	28	8,400	2,016	4,704	1,680	
장흥군	44	13,200	3,168	7,392	2,640	
강진군	45	13,500	3,240	7,560	2,700	
해남군	125	37,500	9,000	21,000	7,500	
영암군	76	22,800	5,472	12,768	4,560	
무안군	55	16,500	3,960	9,240	3,300	
함평군	41	12,300	2,952	6,888	2,460	
영광군	31	9,300	2,232	5,208	1,860	
장성군	20	6,000	1,440	3,360	1,200	
완도군	30	9,000	2,160	5,040	1,800	
진도군	19	5,700	1,368	3,192	1,140	
신안군	31	9,300	2,232	5,208	1,860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단위 : 명,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50%)	시군비(50%)	자담
계	20	40,000	20,000	20,000	
목 포					
여 수					
순 천	1	2,000	1,000	1,000	
나 주	1	2,000	1,000	1,000	
광 양					
담 양	1	2,000	1,000	1,000	
곡 성	1	2,000	1,000	1,000	
구 례	1	2,000	1,000	1,000	
고 흥	1	2,000	1,000	1,000	
보 성	4	8,000	4,000	4,000	
화 순					
장 흥	2	4,000	2,000	2,000	
강 진	1	2,000	1,000	1,000	
해 남	1	2,000	1,000	1,000	
영 암					
무 안	1	2,000	1,000	1,000	
함 평					
영 광	1	2,000	1,000	1,000	
장 성	1	2,000	1,000	1,000	
완 도	1	2,000	1,000	1,000	
진 도	1	2,000	1,000	1,000	
신 안	1	2,000	1,000	1,000	

친환경 생태연못(둑병) 조성사업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단위:개소)	사 업 비			
		계(100%)	도비(30%)	시군비(70%)	자담
합계	150	300,000	90,000	210,000	-
시군계	150	300,000	90,000	210,000	-
목포시	5	10,000	3,000	7,000	
여수시	8	16,000	4,800	11,200	
순천시	3	6,000	1,800	4,200	
나주시	4	8,000	2,400	5,600	
광양시	3	6,000	1,800	4,200	
담양군	10	20,000	6,000	14,000	
곡성군	6	12,000	3,600	8,400	
구례군	5	10,000	3,000	7,000	
고흥군	21	42,000	12,600	29,400	
보성군	3	6,000	1,800	4,200	
화순군	13	26,000	7,800	18,200	
장흥군	6	12,000	3,600	8,400	
강진군	3	6,000	1,800	4,200	
해남군	9	18,000	5,400	12,600	
영암군	3	6,000	1,800	4,200	
무안군	3	6,000	1,800	4,200	
함평군	5	10,000	3,000	7,000	
영광군	7	14,000	4,200	9,800	
장성군	7	14,000	4,200	9,800	
완도군	6	12,000	3,600	8,400	
진도군	13	26,000	7,800	18,200	
신안군	7	14,000	4,200	9,800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단위 : 건, 천원)

시 군	사 업 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15%)	시군비(45%)	자담(40%)
계	15,000	5,400,000	0	810,000	2,430,000	2,160,000
목포시	20	7,200		1,080	3,240	2,880
여수시	219	78,840		11,826	35,478	31,536
순천시	500	180,000		27,000	81,000	72,000
나주시	805	289,800		43,470	130,410	115,920
광양시	430	154,800		23,220	69,660	61,920
담양군	568	204,480		30,672	92,016	81,792
곡성군	460	165,600		24,840	74,520	66,240
구례군	582	209,520		31,428	94,284	83,808
고흥군	963	346,680		52,002	156,006	138,672
보성군	666	239,760		35,964	107,892	95,904
화순군	559	201,240		30,186	90,558	80,496
장흥군	746	268,560		40,284	120,852	107,424
강진군	587	211,320		31,698	95,094	84,528
해남군	2,235	804,600		120,690	362,070	321,840
영암군	944	339,840		50,976	152,928	135,936
무안군	944	339,840		50,976	152,928	135,936
함평군	815	293,400		44,010	132,030	117,360
영광군	650	234,000		35,100	105,300	93,600
장성군	362	130,320		19,548	58,644	52,128
완도군	755	271,800		40,770	122,310	108,720
진도군	486	174,960		26,244	78,732	69,984
신안군	704	253,440		38,016	114,048	101,376

친환경농업기반구축(광역단지조성) 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5	13,000,000	4,700,000	1,770,000	4,130,000	2,4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1,000,000	300,000	150,000	350,000	200,00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5,000,000	1,500,000	750,000	1,750,000	1,000,000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	2,000,000	1,000,000	240,000	560,000	200,000
장흥군						
강진군	1	1,000,000	300,000	150,000	350,000	200,000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1	4,000,000	1,600,000	480,000	1,120,000	800,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8	1,600,000	460,000	246,000	574,000	32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2	400,000	115,000	61,500	143,500	80,000
강진군	2	400,000	115,000	61,500	143,500	80,000
해남군	1	200,000	57,500	30,750	71,750	40,000
영암군						
무안군	2	400,000	115,000	61,500	143,500	80,000
함평군						
영광군	1	200,000	57,500	30,750	71,750	40,000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42,000	15,947,916	15,947,916	0	0	0
목포시	17	6,460	6,460			
여수시	273	103,660	103,660			
순천시	976	370,600	370,600			
나주시	667	253,270	253,270			
광양시	1,657	629,180	629,180			
담양군	2,311	877,520	877,520			
곡성군	887	336,810	336,810			
구례군	2,197	834,230	834,230			
고흥군	2,713	1,030,160	1,030,160			
보성군	2,055	780,310	780,310			
화순군	825	313,260	313,260			
장흥군	2,456	932,570	932,570			
강진군	2,255	856,250	856,250			
해남군	8,744	3,320,200	3,320,200			
영암군	2,518	956,120	956,120			
무안군	1,910	725,250	725,250			
함평군	2,396	909,790	909,790			
영광군	1,938	735,880	735,880			
장성군	293	111,260	111,260			
완도군	1,347	511,470	511,470			
진도군	1,739	660,320	660,320			
신안군	1,826	693,346	693,346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단위 : ha,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50,733	10,991,000	4,396,400	0	6,594,600	0
목포시	28	6,066	2,426		3,640	
여수시	954	206,678	82,671		124,007	
순천시	3,361	728,140	291,257		436,883	
나주시	2,654	574,973	229,989		344,984	
광양시	1,339	290,086	116,034		174,052	
담양군	3,060	662,931	265,172		397,759	
곡성군	2,332	505,214	202,087		303,127	
구례군	4,262	923,336	369,334		554,002	
고흥군	4,146	898,206	359,282		538,924	
보성군	2,377	514,963	205,985		308,978	
화순군	2,641	572,157	228,863		343,294	
장흥군	2,575	557,858	223,143		334,715	
강진군	3,180	688,928	275,571		413,357	
해남군	2,979	645,382	258,153		387,229	
영암군	2,523	546,593	218,637		327,956	
무안군	725	157,067	62,827		94,240	
함평군	3,330	721,425	288,570		432,855	
영광군	1,755	380,210	152,084		228,126	
장성군	2,394	518,646	207,458		311,188	
완도군	445	96,407	38,563		57,844	
진도군	1,939	420,073	168,030		252,043	
신안군	1,734	375,661	150,264		225,397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단위 : 톤,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526,800	26,340,000	26,340,000			
목포시	4,232	211,600	211,600			
여수시	13,406	670,300	670,300			
순천시	44,869	2,243,450	2,243,450			
나주시	46,419	2,320,950	2,320,950			
광양시	29,109	1,455,450	1,455,450			
담양군	15,259	762,950	762,950			
곡성군	23,333	1,166,650	1,166,650			
구례군	7,832	391,600	391,600			
고흥군	43,933	2,196,650	2,196,650			
보성군	25,980	1,299,000	1,299,000			
화순군	21,293	1,064,650	1,064,650			
장흥군	33,269	1,663,450	1,663,450			
강진군	11,200	560,000	560,000			
해남군	56,000	2,800,000	2,800,000			
영암군	13,600	680,000	680,000			
무안군	25,000	1,250,000	1,250,000			
함평군	18,869	943,450	943,450			
영광군	22,729	1,136,450	1,136,450			
장성군	22,731	1,136,550	1,136,550			
완도군	7,350	367,500	367,500			
진도군	20,125	1,006,250	1,006,250			
신안군	20,262	1,013,100	1,013,100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단위 : 톤,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45,400	19,622,570	13,735,800	1,962,256	3,924,514	0
목포시	271	38,095	26,666	3,810	7,619	
여수시	1,330	179,740	125,818	17,974	35,948	
순천시	6,094	827,650	579,355	82,765	165,530	
나주시	9,400	1,271,380	889,966	127,138	254,276	
광양시	3,391	474,430	332,101	47,443	94,886	
담양군	2,392	317,530	222,271	31,753	63,506	
곡성군	4,874	656,840	459,788	65,684	131,368	
구례군	1,938	259,335	181,534	25,934	51,867	
고흥군	11,579	1,567,145	1,097,002	156,714	313,429	
보성군	7,172	956,330	669,431	95,633	191,266	
화순군	3,258	433,350	303,345	43,335	86,670	
장흥군	7,128	962,040	673,428	96,204	192,408	
강진군	11,628	1,545,900	1,082,130	154,590	309,180	
해남군	16,311	2,195,505	1,536,853	219,551	439,101	
영암군	10,989	1,457,280	1,020,096	145,728	291,456	
무안군	8,631	1,198,650	839,055	119,865	239,730	
함평군	8,719	1,155,685	808,980	115,568	231,137	
영광군	7,630	1,021,030	714,721	102,103	204,206	
장성군	8,961	1,236,645	865,652	123,664	247,329	
완도군	1,326	180,300	126,210	18,030	36,060	
진도군	2,714	369,305	258,514	36,930	73,861	
신안군	9,664	1,318,405	922,884	131,840	263,68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30%)	시군비(70%)	자담
계	40,000	42,000,000	0	12,600,000	29,400,000	0
목 포	40	42,000		12,600	29,400	
여 수	560	588,000		176,400	411,600	
순 천	1,280	1,344,000		403,200	940,800	
나 주	1,310	1,375,500		412,650	962,850	
광 양	1,250	1,312,500		393,750	918,750	
담 양	1,920	2,016,000		604,800	1,411,200	
곡 성	1,010	1,060,500		318,150	742,350	
구 례	1,510	1,585,500		475,650	1,109,850	
고 흥	2,250	2,362,500		708,750	1,653,750	
보 성	1,940	2,037,000		611,100	1,425,900	
화 순	960	1,008,000		302,400	705,600	
장 흥	2,590	2,719,500		815,850	1,903,650	
강 진	1,420	1,491,000		447,300	1,043,700	
해 남	7,970	8,368,500		2,510,550	5,857,950	
영 암	2,590	2,719,500		815,850	1,903,650	
무 안	2,100	2,205,000		661,500	1,543,500	
함 평	1,890	1,984,500		595,350	1,389,150	
영 광	1,350	1,417,500		425,250	992,250	
장 성	720	756,000		226,800	529,200	
완 도	1,550	1,627,500		488,250	1,139,250	
진 도	1,920	2,016,000		604,800	1,411,200	
신 안	1,870	1,963,500		589,050	1,374,450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사업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계	267	1,868,000	0	280,000	654,000	934,000
목포시						
여수시	7	49,000		7,350	17,150	24,500
순천시	5	35,000		5,250	12,250	17,500
나주시	9	63,000		9,450	22,050	31,500
광양시	1	7,000		1,050	2,450	3,500
담양군	65	454,000		67,900	159,100	227,000
곡성군	28	196,000		29,400	68,600	98,000
구례군	2	14,000		2,100	4,900	7,000
고흥군	23	161,000		24,150	56,350	80,500
보성군						
화순군	31	217,000		32,550	75,950	108,500
장흥군	19	133,000		19,950	46,550	66,500
강진군	9	63,000		9,450	22,050	31,500
해남군	19	133,000		19,950	46,550	66,500
영암군	9	63,000		9,450	22,050	31,500
무안군						
함평군		0				
영광군	19	133,000		19,950	46,550	66,500
장성군	17	119,000		17,850	41,650	59,500
완도군	4	28,000		4,200	9,800	14,000
진도군						
신안군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계	5	1,000,000	0	200,000	600,000	200,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	200,000		40,000	120,000	40,000
광양시	1	200,000		40,000	120,000	40,00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1	200,000		40,000	120,000	40,000
화순군	1	200,000		40,000	120,000	4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1	200,000		40,000	120,000	40,000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단위 : 건,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	도비(30%)	시군비(70%)	자담
계	1,096	166,500	0	50,000	116,500	0
목포시						
여수시	10	1,520		456	1,064	
순천시	25	3,800		1,140	2,660	
나주시	51	7,752		2,326	5,426	
광양시	40	6,080		1,824	4,256	
담양군	30	4,560		1,368	3,192	
곡성군	91	13,832		4,150	9,682	
구례군	40	6,080		1,824	4,256	
고흥군	30	4,560		1,368	3,192	
보성군	30	4,560		1,368	3,192	
화순군	33	5,016		1,505	3,511	
장흥군	32	4,864		1,459	3,405	
강진군	37	5,624		1,687	3,937	
해남군	186	28,272		8,482	19,790	
영암군	40	6,080		1,824	4,256	
무안군	144	21,888		6,566	15,322	
함평군	96	14,592		4,378	10,214	
영광군	41	6,232		1,870	4,362	
장성군	30	4,560		1,368	3,192	
완도군	40	6,080		1,824	4,256	
진도군	30	4,560		1,368	3,192	
신안군	40	5,988		1,845	4,143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단위 : ha,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60,000	7,200,000	0	480,000	2,400,000	4,320,000
목포시		0				
여수시	300	36,000		2,000	12,000	22,000
순천시	1,500	180,000		12,000	60,000	108,000
나주시	7,100	852,000		57,000	284,000	511,000
광양시	800	96,000		6,000	32,000	58,000
담양군	1,500	180,000		12,000	60,000	108,000
곡성군	2,300	276,000		18,000	92,000	166,000
구례군	1,600	192,000		13,000	64,000	115,000
고흥군	2,300	276,000		18,000	92,000	166,000
보성군	2,000	240,000		16,000	80,000	144,000
화순군	1,900	228,000		15,000	76,000	137,000
장흥군	1,600	192,000		13,000	64,000	115,000
강진군	3,600	432,000		29,000	144,000	259,000
해남군	9,300	1,116,000		74,000	372,000	670,000
영암군	3,700	444,000		30,000	148,000	266,000
무안군	2,400	288,000		19,000	96,000	173,000
함평군	7,300	876,000		58,000	292,000	526,000
영광군	3,500	420,000		28,000	140,000	252,000
장성군	1,700	204,000		14,000	68,000	122,000
완도군	2,600	312,000		21,000	104,000	187,000
진도군	1,300	156,000		11,000	52,000	93,000
신안군	1,700	204,000		14,000	68,000	122,000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체험·생산 시설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0	1,000,000	0	170,000	430,000	400,000
목포시						
여수시		0				
순천시	1	100,000		17,000	43,000	40,000
나주시		0				
광양시		0				
담양군		0				
곡성군	1	100,000		17,000	43,000	40,000
구례군	1	100,000		17,000	43,000	40,000
고흥군		0				
보성군	1	100,000		17,000	43,000	40,000
화순군	1	100,000		17,000	43,000	40,000
장흥군	1	100,000		17,000	43,000	40,000
강진군	1	100,000		17,000	43,000	40,000
해남군	1	100,000		17,000	43,000	40,000
영암군		0				
무안군		0				
함평군	1	100,000		17,000	43,000	40,000
영광군		0				
장성군		0				
완도군	1	100,000		17,000	43,000	40,000
진도군		0				
신안군		0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단위 : ha, 천원)

시 군	합 계	쌀소득보전직불금		사업관리비 및 심사운영비	
		면 적(ha)	사업비 (국비)	심사위원회설치	사 업 비 (국비)
계	127,175,940	180,687	126,480,900	257	695,040
도	12,000				12,000
목 포	84,116	117	81,900	1	2,216
여 수	1,910,697	2,672	1,870,400	18	40,297
순 천	5,454,425	7,729	5,410,300	18	44,125
나 주	8,812,476	12,518	8,762,600	19	49,876
광 양	1,813,824	2,555	1,788,500	11	25,324
담 양	4,841,819	6,873	4,811,100	12	30,719
곡 성	3,581,133	5,077	3,553,900	11	27,233
구 례	2,127,692	3,012	2,108,400	8	19,292
고 흥	8,662,442	12,313	8,619,100	16	43,342
보 성	6,780,114	9,639	6,747,300	12	32,814
화 순	3,959,590	5,611	3,927,700	13	31,890
장 흥	6,082,112	8,649	6,054,300	10	27,812
강 진	6,780,790	9,643	6,750,100	11	30,690
해 남	15,733,033	22,409	15,686,300	14	46,733
영 암	11,378,458	16,204	11,342,800	11	35,658
무 안	6,162,676	8,767	6,136,900	9	25,776
함 평	7,065,950	10,056	7,039,200	9	26,750
영 광	8,069,482	11,482	8,037,400	11	32,082
장 성	4,832,685	6,863	4,804,100	11	28,585
완 도	1,598,014	2,244	1,570,800	12	27,214
진 도	4,243,253	6,034	4,223,800	7	19,453
신 안	7,189,159	10,220	7,154,000	13	35,159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	국 비(100%)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8,200	25,000,000	25,000,000			
목 포	15	45,730	45,730			
여 수	100	304,878	304,878			
순 천	300	914,634	914,634			
나 주	480	1,463,414	1,463,414			
광 양	75	228,658	228,658			
담 양	245	746,951	746,951			
곡 성	250	762,195	762,195			
구 례	145	442,073	442,073			
고 흥	600	1,829,268	1,829,268			
보 성	510	1,554,878	1,554,878			
화 순	240	731,707	731,707			
장 흥	390	1,189,024	1,189,024			
강 진	400	1,219,512	1,219,512			
해 남	900	2,743,902	2,743,902			
영 암	610	1,859,756	1,859,756			
무 안	540	1,646,340	1,646,340			
함 평	460	1,402,440	1,402,440			
영 광	650	1,981,710	1,981,710			
장 성	410	1,250,000	1,250,000			
완 도	100	304,880	304,880			
진 도	390	1,189,025	1,189,025			
신 안	390	1,189,025	1,189,025			

들녘별 쌀 경영체육성 사업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	국 비(50%)	도 비(12%)	시군비(28%)	자 담(10%)
계	20	400,000	200,000	48,000	112,000	40,000
목 포						
여 수						
순 천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나 주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광 양						
담 양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곡 성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구 례						
고 흥	2	40,000	20,000	4,800	11,200	4,000
보 성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화 순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장 흥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강 진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해 남	2	40,000	20,000	4,800	11,200	4,000
영 암	2	40,000	20,000	4,800	11,200	4,000
무 안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함 평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영 광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장 성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완 도						
진 도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신 안	1	20,000	10,000	2,400	5,600	2,000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단위 : ha, 천원)

시 군	면 적(ha)	사 업 비			
		계 (100%)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계	17,200	9,600,000	6,720,000	864,000	2,016,000
목 포		0			
여 수	916	517,230	362,061	46,550	108,619
순 천	760	430,882	301,617	38,780	90,485
나 주	65	39,585	27,709	3,563	8,313
광 양	355	202,550	141,784	18,230	42,536
담 양	8	7,637	5,346	687	1,604
곡 성	401	228,793	160,155	20,591	48,047
구 례	396	224,720	157,304	20,225	47,191
고 흥	1,022	575,316	402,721	51,778	120,817
보 성	169	98,822	69,176	8,894	20,752
화 순	213	123,907	86,735	11,151	26,021
장 흥	96	57,324	40,127	5,159	12,038
강 진		0	0	0	0
해 남	17	12,660	8,862	1,139	2,659
영 암	15	11,551	8,086	1,040	2,425
무 안	7	6,781	4,747	610	1,424
함 평	44	27,873	19,511	2,508	5,854
영 광	2	4,019	2,814	361	844
장 성	69	42,399	29,680	3,816	8,903
완 도	2,409	1,353,546	947,482	121,819	284,245
진 도	3,211	1,791,618	1,254,133	161,246	376,239
신 안	7,025	3,842,787	2,689,950	345,853	806,984

농기계 임대사업(국비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 비(50%)	도비(15%)	시군비(35%)	자 담(%)
계	3	3,000,000	1,500,000	450,000	1,050,000	0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1	1,000,000	500,000	150,000	350,000	
광 양	1	1,000,000	500,000	150,000	350,000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보 성						
화 순						
장 흥						
강 진						
해 남						
영 암						
무 안						
함 평						
영 광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1	1,000,000	500,000	150,000	350,000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비(30%)	시군비(70%)	자 담
계	10	0	0	1,000,000	2,334,000	0
목 포						
여 수						
순 천	1			30,000	70,000	
나 주						
광 양						
담 양						
곡 성	1			50,000	117,000	
구 례	1			50,000	117,000	
고 흥	1			60,000	140,000	
보 성	1			150,000	350,000	
화 순						
장 흥						
강 진						
해 남	1			60,000	140,000	
영 암						
무 안	1			150,000	350,000	
함 평						
영 광	1			150,000	350,000	
장 성	1			150,000	350,000	
완 도						
진 도	1			150,000	350,000	
신 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단위 : ha,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 비(20%)	시군비(40%)	자 담(40%)
계	20,000	8,160,000		1,632,000	3,264,000	3,264,000
목 포	16	3,235		647	1,294	1,294
여 수	8	245		49	98	98
순 천	1420	312,760		62,552	125,104	125,104
나 주	12,718	4,661,300		932,260	1,864,520	1,864,520
광 양	1,404	503,845		100,769	201,538	201,538
담 양	96	40,830		8,166	16,332	16,332
곡 성	77	47,560		9,512	19,024	19,024
구 례	56	32,090		6,418	12,836	12,836
고 흥	144	68,060		13,612	27,224	27,224
보 성	368	198,250		39,650	79,300	79,300
화 순	9	12,185		2,437	4,874	4,874
장 흥	159	61,570		12,314	24,628	24,628
강 진	91	32,735		6,547	13,094	13,094
해 남	530	376,515		75,303	150,606	150,606
영 암	1,620	1,163,510		232,702	465,404	465,404
무 안	523	278,755		55,751	111,502	111,502
함 평	53	18,215		3,643	7,286	7,286
영 광	27	15,855		3,171	6,342	6,342
장 성	579	306,160		61,232	122,464	122,464
완 도	23	6,455		1,291	2,582	2,582
진 도	2	660		132	264	264
신 안	77	19,210		3,842	7,684	7,684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단위 : 조,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 비(15%)	시군비(85%)	자 담
계	26,000	1,040,000		156,000	884,000	
목 포	42	1,680		252	1,428	
여 수	312	12,480		1,872	10,608	
순 천	941	37,640		5,646	31,994	
나 주	2,085	83,400		12,510	70,890	
광 양	254	10,160		1,524	8,636	
담 양	753	30,120		4,518	25,602	
곡 성	932	37,280		5,592	31,688	
구 례	923	36,920		5,538	31,382	
고 흥	1,879	75,160		11,274	63,886	
보 성	1,184	47,360		7,104	40,256	
화 순	1,032	41,280		6,192	35,088	
장 흥	1,083	43,320		6,498	36,822	
강 진	1,295	51,800		7,770	44,030	
해 남	3,446	137,840		20,676	117,164	
영 암	1,796	71,840		10,776	61,064	
무 안	1,354	54,160		8,124	46,036	
함 평	1,712	68,480		10,272	58,208	
영 광	1,275	51,000		7,650	43,350	
장 성	678	27,120		4,068	23,052	
완 도	1,031	41,240		6,186	35,054	
진 도	824	32,960		4,944	28,016	
신 안	1,169	46,760		7,014	39,746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34%)	도 비 (10%)	시군비 (37%)	자 담 (19%)
계	2개소	9,500,000	3,230,000	969,000	3,545,200	1,755,8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	5,700,000	1,710,000	630,058	2,305,142	1,054,8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1	3,800,000	1,520,000	338,942	1,240,058	701,000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자 담(50%)
계	6,667,000	1,000,000	2,333,500	3,333,500
목 포	-	-	-	-
여 수	260,000	39,000	91,000	130,000
순 천	360,000	54,000	126,000	180,000
나 주	400,000	60,000	140,000	200,000
광 양	310,000	46,500	108,500	155,000
담 양	400,000	60,000	140,000	200,000
곡 성	600,000	90,000	210,000	300,000
구 례	250,000	37,500	87,500	125,000
고 흥	260,000	39,000	91,000	130,000
보 성	400,000	60,000	140,000	200,000
화 순	340,000	51,000	119,000	170,000
장 흥	250,000	37,500	87,500	125,000
강 진	250,000	37,500	87,500	125,000
해 남	260,000	39,000	91,000	130,000
영 암	397,000	59,500	139,000	198,500
무 안	300,000	45,000	105,000	150,000
함 평	260,000	39,000	91,000	130,000
영 광	260,000	39,000	91,000	130,000
장 성	350,000	52,500	122,500	175,000
완 도	250,000	37,500	87,500	125,000
진 도	250,000	37,500	87,500	125,000
신 안	260,000	39,000	91,000	130,000

※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비 1,500백만 원이 증액되어 추후 별도 추가 배정 예정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	도 비 (25%)	시군비 (75%)	자 담 (%)
계	24개소	1,187,500		400,000	787,500	
도	3	137,500		137,500		
여수시	1	50,000		12,500	37,500	
순천시	1	50,000		12,500	37,500	
나주시	1	50,000		12,500	37,500	
광양시	1	50,000		12,500	37,500	
담양군	1	50,000		12,500	37,500	
곡성군	1	50,000		12,500	37,500	
구례군	1	50,000		12,500	37,500	
고흥군	1	50,000		12,500	37,500	
보성군	1	50,000		12,500	37,500	
화순군	1	50,000		12,500	37,500	
장흥군	1	50,000		12,500	37,500	
강진군	1	50,000		12,500	37,500	
해남군	1	50,000		12,500	37,500	
영암군	1	50,000		12,500	37,500	
무안군	1	50,000		12,500	37,500	
함평군	1	50,000		12,500	37,500	
영광군	1	50,000		12,500	37,500	
장성군	1	50,000		12,500	37,500	
완도군	1	50,000		12,500	37,500	
진도군	1	50,000		12,500	37,500	
신안군	1	50,000		12,500	37,500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

(단위 : ha,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비 (%)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계	235ha	5,413,000		812,000	1,894,500	2,706,500
목포시						
여수시	9.0	207,300		31,100	72,550	103,650
순천시	4.7	108,260		16,240	37,890	54,130
나주시	15.8	363,940		54,600	127,370	181,970
광양시	5.0	115,170		17,280	40,305	57,585
담양군	23.2	534,390		80,160	187,035	267,195
곡성군	21.8	502,140		75,330	175,740	251,070
구례군	2.4	55,280		8,290	19,350	27,640
고흥군	6.9	158,930		23,840	55,625	79,465
보성군	7.4	170,450		25,570	59,655	85,225
화순군	2.3	52,980		7,950	18,540	26,490
장흥군	4.0	92,140		13,820	32,250	46,070
강진군	4.9	112,870		16,930	39,505	56,435
해남군	35.3	813,100		121,970	284,580	406,550
영암군	6.2	142,810		21,420	49,985	71,405
무안군	23.1	532,090		79,820	186,225	266,045
함평군	17.3	398,490		59,780	139,465	199,245
영광군	6.5	149,720		22,460	52,400	74,860
장성군	3.4	78,320		11,750	27,410	39,160
완도군	7.8	179,670		26,950	62,885	89,835
진도군	10.4	239,550		35,930	83,845	119,775
신안군	17.6	405,400		60,810	141,890	202,700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사 업 비				
	계(100%)	국 비	도 비(30%)	시군비(70%)	자담
계	6,667,000		2,000,000	4,667,000	
목 포					
여 수	190,000		57,000	133,000	
순 천	140,000		42,000	98,000	
나 주	480,000		144,000	336,000	
광 양	100,000		30,000	70,000	
담 양	100,000		30,000	70,000	
곡 성	1,577,000		473,000	1,104,000	
구 례	100,000		30,000	70,000	
고 흥	120,000		36,000	84,000	
보 성	1,000,000		300,000	700,000	
화 순	720,000		216,000	504,000	
장 흥	190,000		57,000	133,000	
강 진	260,000		78,000	182,000	
해 남	100,000		30,000	70,000	
영 압	580,000		174,000	406,000	
무 안	100,000		30,000	70,000	
합 평	180,000		54,000	126,000	
영 광	130,000		39,000	91,000	
장 성	100,000		30,000	70,000	
완 도	180,000		54,000	126,000	
진 도	220,000		66,000	154,000	
신 안	100,000		30,000	70,000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다점보온커튼)

(단위: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68.8	8,977,035	1,795,407	269,311	2,423,800	2,693,110	1,795,407
목포시							
여수시	1.0	130,000	26,000	3,900	35,100	39,000	26,000
순천시	3.5	463,000	92,600	13,890	125,010	138,900	92,600
나주시	5.4	710,000	142,000	21,300	191,700	213,000	142,000
광양시	2.9	382,000	76,400	11,460	103,140	114,600	76,400
담양군	9.8	1,278,035	255,607	38,341	345,070	383,410	255,607
곡성군	1.2	164,000	32,800	4,920	44,280	49,200	32,800
구례군	3.4	438,000	87,600	13,140	118,260	131,400	87,600
고흥군	3.4	438,000	87,600	13,140	118,260	131,400	87,600
보성군	9.8	1,277,000	255,400	38,310	344,790	383,100	255,400
화순군	5.6	730,000	146,000	21,900	197,100	219,000	146,000
장흥군	3.0	390,000	78,000	11,700	105,300	117,000	78,000
강진군	3.1	397,000	79,400	11,910	107,190	119,100	79,400
해남군	0.5	65,000	13,000	1,950	17,550	19,500	13,000
영암군	3.4	440,000	88,000	13,200	118,800	132,000	88,000
무안군	1.0	130,000	26,000	3,900	35,100	39,000	26,000
함평군	1.2	163,000	32,600	4,890	44,010	48,900	32,600
영광군	2.2	290,000	58,000	8,700	78,300	87,000	58,000
장성군	6.7	874,000	174,800	26,220	235,980	262,200	174,800
완도군	1.0	130,000	26,000	3,900	35,100	39,000	26,000
진도군	0.7	88,000	17,600	2,640	23,760	26,400	17,600
신안군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공기열)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용자(30)	자담(20)
계	100.0	30,000,000	6,000,000	900,000	8,100,000	9,000,000	6,000,000
목포시							
여수시	3.0	900,000	180,000	27,000	243,000	270,000	180,000
순천시	6.4	1,920,000	384,000	57,600	518,400	576,000	384,000
나주시	9.0	2,700,000	540,000	81,000	729,000	810,000	540,000
광양시	6.0	1,800,000	360,000	54,000	486,000	540,000	360,000
담양군	18.4	5,520,000	1,104,000	165,600	1,490,400	1,656,000	1,104,000
곡성군	1.0	300,000	60,000	9,000	81,000	90,000	60,000
구례군	3.0	900,000	180,000	27,000	243,000	270,000	180,000
고흥군	5.0	1,500,000	300,000	45,000	405,000	450,000	300,000
보성군	5.0	1,500,000	300,000	45,000	405,000	450,000	300,000
화순군	17.3	5,190,000	1,038,000	155,700	1,401,300	1,557,000	1,038,000
장흥군	3.1	930,000	186,000	27,900	251,100	279,000	186,000
강진군	3.0	900,000	180,000	27,000	243,000	270,000	180,000
해남군	1.0	300,000	60,000	9,000	81,000	90,000	60,000
영암군	5.0	1,500,000	300,000	45,000	405,000	450,000	300,000
무안군	2.4	720,000	144,000	21,600	194,400	216,000	144,000
함평군	2.9	870,000	174,000	26,100	234,900	261,000	174,000
영광군	2.0	600,000	120,000	18,000	162,000	180,000	120,000
장성군	5.0	1,500,000	300,000	45,000	405,000	450,000	300,000
완도군	1.5	450,000	90,000	13,500	121,500	135,000	90,000
진도군							
신안군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지열)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60)	도비(2)	시군비(18)	융자(-)	자담(20)
계	7.0	3,760,000	2,256,000	75,200	676,800	0	752,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0.7	560,000	336,000	11,200	100,800	0	112,00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2	960,000	576,000	19,200	172,800	0	192,000
보성군	0.4	320,000	192,000	6,400	57,600	0	64,000
화순군	2.0	1,600,000	960,000	32,000	288,000	0	32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0.4	320,000	192,000	6,400	57,600	0	64,0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목재펠릿)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30)	도비(3)	시군비(27)	용자(20)	자담(20)
계	31.4	4,748,100	1,424,430	142,443	1,281,987	949,620	949,620
목포시							
여수시	0.1	15,000	4,500	450	4,050	3,000	3,000
순천시							
나주시	1.0	150,000	45,000	4,500	40,500	30,000	30,000
광양시	1.5	225,000	67,500	6,750	60,750	45,000	45,000
담양군	2.0	300,000	90,000	9,000	81,000	60,000	60,00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1.9	285,000	85,500	8,550	76,950	57,000	57,000
보성군							
화순군	7.3	1,103,100	330,930	33,093	297,837	220,620	220,620
장흥군							
강진군	3.3	495,000	148,500	14,850	133,650	99,000	99,000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0.8	120,000	36,000	3,600	32,400	24,000	24,000
함평군	2.0	300,000	90,000	9,000	81,000	60,000	60,000
영광군	1.5	255,000	76,500	7,650	68,850	51,000	51,000
장성군	5.0	750,000	225,000	22,500	202,500	150,000	150,000
완도군							
진도군	5.0	750,000	225,000	22,500	202,500	150,000	150,000
신안군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일반전문단지)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용자(30)	자담(20)
계	19.3ha	15,457,545	3,091,509	463,726	4,173,537	4,637,264	3,091,509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1.0	800,000	160,000	24,000	216,000	240,000	160,000
광양시							
담양군	4.1	3,261,000	652,200	97,830	880,470	978,300	652,200
곡성군	1.0	840,000	168,000	25,200	226,800	252,000	168,000
구례군							
고흥군	4.1	3,310,000	662,000	99,300	893,700	993,000	662,000
보성군							
화순군	4.6	3,698,545	739,709	110,956	998,607	1,109,564	739,709
장흥군							
강진군	3.1	2,468,000	493,600	74,040	666,360	740,400	493,600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0.2	144,000	28,800	4,320	38,880	43,200	28,800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1.2	936,000	187,200	28,080	252,720	280,800	187,200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일반원예시설)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20)	도비(3)	시군비(27)	융자(30)	자담(20)
계	73.3	7,330,225	1,466,045	219,907	1,979,160	2,199,068	1,466,04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8.0	800,000	160,000	24,000	216,000	240,000	160,000
광양시							
담양군	12.0	1,200,000	240,000	36,000	324,000	360,000	240,00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4.2	416,000	83,200	12,480	112,320	124,800	83,200
보성군	14.6	1,466,725	293,345	44,002	396,015	440,018	293,345
화순군	8.5	847,500	169,500	25,425	228,825	254,250	169,500
장흥군							
강진군	1.0	100,000	20,000	3,000	27,000	30,000	20,000
해남군							
영암군	8.0	800,000	160,000	24,000	216,000	240,000	160,000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5.6	560,000	112,000	16,800	151,200	168,000	112,000
장성군	6.4	640,000	128,000	19,200	172,800	192,000	128,000
완도군	3.0	300,000	60,000	9,000	81,000	90,000	60,000
진도군	2.0	200,000	40,000	6,000	54,000	60,000	40,000
신안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20%)	도 비 (9%)	시군비 (21%)	자담 (융자30+자담20%)
계	15	15,480,000	3,096,000	1,393,200	3,250,800	7,740,000
목포시	-					
여수시	-	0				
순천시	1	546,000	109,200	49,140	114,660	273,000
나주시	1	1,965,000	393,000	176,850	412,650	982,500
광양시	-	0				
담양군	1	885,000	177,000	79,650	185,850	442,500
곡성군	1	3,190,000	638,000	287,100	669,900	1,595,000
구례군	1	105,000	21,000	9,450	22,050	52,500
고흥군	1	3,635,000	727,000	327,150	763,350	1,817,500
보성군	1	1,135,000	227,000	102,150	238,350	567,500
화순군	1	890,000	178,000	80,100	186,900	445,000
장흥군	1	100,000	20,000	9,000	21,000	50,000
강진군	1	260,000	52,000	23,400	54,600	130,000
해남군	1	125,000	25,000	11,250	26,250	62,500
영암군	1	1,520,000	304,000	136,800	319,200	760,000
무안군	-	0				
함평군	-	0				
영광군	1	125,000	25,000	11,250	26,250	62,500
장성군	1	895,000	179,000	80,550	187,950	447,500
완도군	1	104,000	20,800	9,360	21,840	52,000
진도군	-	0				
신안군	-	0				

과원 유해조수 포획 트랩설치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계	500	500,000	0	75,000	175,000	250,000
목포시						
여수시	3.5	3,500		525	1,225	1,750
순천시	18.0	18,000		2,700	6,300	9,000
나주시	124.0	124,000		18,600	43,400	62,000
광양시	27.0	27,000		4,050	9,450	13,500
담양군	90.0	90,000		13,500	31,500	45,000
곡성군	14.5	14,500		2,175	5,075	7,250
구례군	14.5	14,500		2,175	5,075	7,250
고흥군	14.0	14,000		2,100	4,900	7,000
보성군	16.5	16,500		2,475	5,775	8,250
화순군	18.0	18,000		2,700	6,300	9,000
장흥군	14.0	14,000		2,100	4,900	7,000
강진군	15.0	15,000		2,250	5,250	7,500
해남군	7.0	7,000		1,050	2,450	3,500
영암군	52.0	52,000		7,800	18,200	26,000
무안군	5.5	5,500		825	1,925	2,750
함평군	15.0	15,000		2,250	5,250	7,500
영광군	10.0	10,000		1,500	3,500	5,000
장성군	21.5	21,500		3,225	7,525	10,750
완도군	8.0	8,000		1,200	2,800	4,000
진도군	2.0	2,000		300	700	1,000
신안군	10.0	10,000		1,500	3,500	5,000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 조성

(단위 : 천원)

시 군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계	10.0	3,334,000	0	500,000	1,167,000	1,667,000
목포시						
여수시		0				
순천시		0				
나주시	0.4	145,000		21,750	50,750	72,500
광양시						
담양군	1.5	533,000		79,950	186,550	266,500
곡성군		0				
구례군		0				
고흥군	1.9	646,000		96,800	226,200	323,000
보성군	1.0	342,000		51,300	119,700	171,000
화순군		0				
장흥군	0.4	132,000		19,800	46,200	66,000
강진군		0				
해남군	0.6	186,000		27,900	65,100	93,000
영암군	0.4	130,000		19,500	45,500	65,000
무안군	0.4	120,000		18,000	42,000	60,000
함평군	1.5	487,000		73,050	170,450	243,500
영광군		0				
장성군	0.5	152,000		22,800	53,200	76,000
완도군	0.7	240,000		36,000	84,000	120,000
진도군		0				
신안군	0.7	221,000		33,150	77,350	110,500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단위 : 개소,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 비(30%)	도 비	시군비(30%)	자 담(40%)
계	2	101,250	30,375		30,375	40,500
목 포						
여 수						
순 천	1	50,625	15,188		15,187	20,250
나 주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1	50,625	15,187		15,188	20,250
고 흥						
보 성						
화 순						
장 흥						
강 진						
해 남						
영 압						
무 안						
함 평						
영 광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